# 2012년도
#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012. 1.

산 림 청
KOREA FOREST SERVICE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숲이 희망이 되는 나라"

# 목 차


＜기획조정관실 소관＞ ····· 1

1. 중기사업계획 및 '13예산 편성 ····· 3
2. 재정사업 성과관리 ····· 5
3. 산림예산 조기집행 ····· 8
4. 창의적 조직문화 형성 ····· 10
5. 산림행정 평가 및 성과관리 ····· 12
6. 산림행정 조직관리 ····· 15
7. 법제업무의 효율성 제고 ····· 18
8. 규제개혁 지속 추진 ····· 20
9. 민원만족도 제고 ····· 22
10. 자체감사 내실화 및 제도개선 감사 ····· 24
11. 고객맞춤형 "SMART 산림행정" 구현 ····· 27
12. 산림공간정보 지원체계 구축 ····· 33
13. 산림통계의 안정적인 생산 및 품질 향상 ····· 37

＜산림자원국 소관＞ ····· 41

1. 제5차 산림기본계획('13～'17) 수정안 마련 ····· 43
2.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 ····· 45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 47
4. 산림 R&D사업 운영체계 개편 ····· 50
5. 녹색자금 투명성제고 및 녹색사업단 경쟁력 강화 ····· 52
6. 한국임업진흥원 설립 및 조기정착 ····· 55
7. 조 림 ····· 57
8. 녹색일자리 사업 ····· 96
9.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 100

10. 숲가꾸기 ····· 126
11. 공공산림가꾸기 ····· 139
12. 종묘생산관리 ····· 147
13.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관리 ····· 153
14. 경제림육성단지 관리 ····· 157
15. 남북 산림협력 사업 ····· 162
16.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 166
17. 국산목재의 안정적 수급 ····· 171
18. 목재이용 활성화 및 목재산업 육성 ····· 173
19. 임업기계화 촉진 ····· 176
20. 전문 임업기능인 양성 ····· 181
21.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 186
22.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 192
23.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추진 ····· 197
24. REDD+ 탄소배출권 확보기반 및 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 ····· 203
25. 양자간 산림외교 다변화 및 협력강화 ····· 207
26. 다자간 산림협력 확대 ····· 210
27. UNCCD COP10 의장국 역할 수행 ····· 213
28. 창원이니셔티브 후속사업 추진 ····· 215
29. 임산물 통상협상 대응 철저 ····· 218
30. 임산물 수출확대 ····· 221
31. 해외 산림자원개발사업 지원 강화 ····· 224
32. 국제산림협력 확대 ····· 227

**＜산림이용국 소관＞** ····· 229

1. 미래지향적 산지관리제도 마련 ····· 231
2.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 235
3. 산지관리제도 개선 및 조기정착 ····· 238
4.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및 산지복구 강화 ····· 241

5. 국유림 총괄 조정기능 강화 및 경영계획 수립 ····· 244
6. 효율적인 국유림(재산) 관리 ····· 266
7.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및 사후관리 ····· 273
8. 조림대부·분수림의 입목 매수 ····· 277
9. 국가소송 및 국유재산 권리보전 ····· 280
10. 지방산림청 업무효율성 제고 ····· 282
11.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체계 정비 ····· 284
12. 산림휴양서비스 제고 ····· 287
13. 국립자연휴양림 경영 개선 ····· 295
14. 산림교육 활성화 ····· 298
15. 자연친화적인 녹색문화 확산 ····· 303
16. 산림치유 활성화 ····· 306
17. 자연친화적인 수목장제도 확산 ····· 309
18.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시범사업 ····· 311
19.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 313
20.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사업 추진 ····· 316
21.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 ····· 319
22. 사유림 경영 기반 구축 ····· 322
23. 산림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강화 ····· 325
24. 단기임산물 산업화 기반구축 ····· 329
25.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 334
26. 임가 소득 안전망 구축 ····· 341
27. 국가숲길 지정 추진 ····· 343
28.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 347
29.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 354

**<산림보호국 소관>** ····· 363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 ····· 365
2.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체계 확립 ····· 369

3. 산림생물자원의 현지내·외 보전기반 구축 ····· 373
4. 불법 산림피해방지 대책 추진 ····· 381
5. 도시숲 조성·관리 ····· 386
6. 가로수 조성·관리 ····· 394
7. 학교숲 조성·관리 ····· 397
8. 전통 마을숲 복원 ····· 401
9. 산림경관 보전·관리 ····· 404
10. 나라꽃 무궁화 보급·확대 사업 ····· 406
11. 새만금 그린네트워크 구축 사업 ····· 409
12. 산불원인 사전제거 및 감시 체계 구축 ····· 411
13. 산불 진화역량 강화 ····· 415
14. 산불조사기능 강화 ····· 419
15. 산사태 재해예방·대응체계 확립 ····· 423
16. 생활권 중심의 사방사업 확대 ····· 427
17. 산림복원 ····· 431
18. 백두대간의 보호·관리 강화 ····· 434
19.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관리체계 강화 ····· 437
20.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 439
21.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안정화 ····· 443
22. 솔잎혹파리방제 내실화 ····· 446
23. 참나무시들음병 총력대응 ····· 448
24. 돌발·외래·일반 병해충 적기대응 ····· 450
25. 생활권 수목진료시책 추진 ····· 452
26.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 455

**〈 부 록 〉** 201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 459

# 기획조정관실 소관

# 1. 중기사업계획 및 ’13 예산 편성

| 목 표 |
| --- |
| ◇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산림강국 실현 |
| ◇ 산업·경관·복지가 어우러진 선진 녹색국가 기반 마련 |

## 가. ’13 예산안 편성여건

o ’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유럽 국가재정 위기 등 불안요소로 인해 사업구조조정 및 재정건전화 노력이 강화될 전망

## 나. 기본방향

o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기후변화 대응 투자 확대 및 글로벌 그린리더십 구현,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산림재해방지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산림투자

## 다. 세부추진계획

### 1) ’12～’16 중기사업계획 수립

o REDD+ 시범사업 등 탄소배출권 해외 기반구축에 투자를 확대하고, 규모 있는 시범·선도 프로젝트를 신규 발굴하여 중기사업계획에 반영

### 2) 2013년도 예산편성 추진

o 각종 사업성과평가 결과를 환류(feedback)하여 세출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신규 프로젝트 및 국책사업 완료소요 중심으로 재원배분 및 예산편성

### 3) 2012년도 예산집행 및 배정 관리

o 예산 전용·이용·예비비·이월 등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 및 배정 관리를 통해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

## 라. 추진일정

o ’12～’16 중기사업계획 수립 및 기획재정부 제출 : 2012. 1. 31

o ’13예산안 편성지침 및 부처별 지출한도 확정 통보 : 2012. 4월말

o 산림청 예산요구서 기획재정부 제출 : 2012. 6월말

o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 및 확정 : 2012. 7～9월

o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 2012. 10. 2

o ’13년도 자치단체보조금 예산(안) 통지 : 2012. 10. 15

o 국회 예산안 심의 및 확정 : 2012. 10～12월

# 2. 재정사업 성과관리

목 표

◇ 재정성과관리 강화로 재정지출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
◇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고 구조조정 추진

## 가. 정책여건

o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강화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예산환류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추세임.

- '09회계년도부터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를 국회 제출
- 국회, 감사원 등에서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있음

o '09.1.1부터 국가회계법이 시행되면서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정부회계에 도입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음.

## 나. 기본방향

o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여 재정사업 구조조정 추진

- 성과와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성과지표 개발, 직원역량 강화로 성과제고

o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집행목표를 설정하고, 집행 사전준비를 '11년 연말까지 이행하여 집행의 효율성·건전성 제고

## 다. 세부추진계획

### 1)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부처상위권 유지

o 미흡등급 최소화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73.8점)를 초과한 75점 이상을 획득하여 평가대상부처(32개) 중 3위권 이내의 목표달성

- 평가대상 5개 사업 : 산림자원이용증진, 산림녹색공간조성, 산림자원협력, 산림생태계보전, 녹색공간조성

o 전문가 자문, 전문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평가담당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활용도 증진

## 2) 재정성과 목표관리 강화

o 2011년도 성과보고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자율적 검증절차 강화
- 성과측정 결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도록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법무감사담당관실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회에 제출

o 주요국의 산림부문 성과관리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강화 추진
- 비용·편익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사업의 효과성 평가가 강화되도록 관리

o 만족도 점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재정사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일괄 추진하여 객관성·신뢰성 제고

o 재정사업 성과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정책평가위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 실시

o 프로그램예산체계와 성과목표체계를 일치화하여 2013년도 성과계획서 수립
- 2013회계년도 예산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사업비 등이 일치되도록 하여 예산과 성과의 연계성 및 환류 강화
- 성과목표와 프로그램(항), 관리과제와 단위사업(세항)이 각각 1대 1 대응되도록 하여 성과중심의 재정관리체계 확립

## 3) 재정사업 자율평가 강화

o 정부의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을 기준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항목별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 제시
- 2012년도 자율평가 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11. 12월 중 선정

o 평가대상 사업부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평가는 과별로 외부 위탁 추진
- 제안서 기술평가시 재정성과 담당자를 참여토록 하여 상호 정보교류

o 재정사업 모니터링은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피드백
- 사업목적 달성,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해 성과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외부 지적사항, 민원, 이해관계자간 갈등에 대해서는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자율평가서에 대한 자체 평가를 엄격히 하고 성과관리 제고 노력, 성과평가서 작성의 충실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기여자에게 포상 계획

### 4)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o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사전예방 강화
  - 산림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o 예산낭비 사례가 신고되면 담당 사업과에서 현지조사 후 10일 이내 회신
  - 조사결과가 미온적이거나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실 주관으로 산림정책평가위원과 함께 현지조사 추진

o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 3천만원 한도에서 지급

## 라. 추진일정

o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 '12년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실시계획 시달 : 2011. 12월
  - '12년도 자율평가 대상사업의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 2012. 1～12월
  - '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제출(기획재정부) : 2012. 3. 10
  - '11년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서 제출(지역발전위원회) : 2012. 3. 20
  - '12년도 재정분과 소위 워크숍 및 사업현장 확인 : 2012. 8월
  - '12년도 재정사업 만족도 조사 추진 : 2012. 2～12월
  - '12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우수부서 및 기여자 포상 : 2012. 12월

o '11년도 성과보고서 및 '13년도 성과계획서 제출
  - '11년도 성과보고서 제출(기획재정부, 감사원, 국회) : 2012. 2. 28
  - '13년도 성과계획서 제출(기획재정부, 국회) : 2012. 6. 30

# 3. 산림예산 조기집행

목 표

◇ 2012년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목표(62.3%) 달성
◇ 우수부서 인센티브 강화로 자율적 목표달성 분위기 조성

## 가. 정책여건

o 2012년도 대내외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반기 예산조기집행정책을 강화할 방침(청와대, 기획재정부)

-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증대
- 주요기관들 전망에 따르면, '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4% 이하로 예측
- 국내경기는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국제교역 둔화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4% 성장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 최근 주요 기관들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하향 조정

o 기획재정부는 산림청의 '12년 상반기 집행목표를 62.3%로 설정('11년은 60.1%)

- 부처 전체 집행목표도 2.6%상향 설정('11년 57.4% → '12년 60%)

## 나. 기본방향

o 우수기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율적인 집행률 제고 분위기 유도

o 연례적 집행부진 및 이월사업에 대한 분석 및 집중관리로 집행률 제고

## 다. 세부추진계획

### 1) 자율적 집행률 제고 노력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o 우수부서 및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다양화

- 표창 및 포상금 확충('11년 1,180만원 → '12년 2,000만원)
- 조기집행 우수기여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 확충

o 조기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연말 부서평가에 반영(5~10%)

o 집행실적 우수기관 및 부서에 대한 기본경비 증액('13년 예산)

### 2)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 추진

o '11년까지의 집행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o 사업현장 및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여 집행 애로사항을 해결

o 제도개선으로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실적제고시 특별 가점 부여

### 3) 집행실적 정기 점검

o 월 1~2회씩 자체 점검회의 개최, 월 2회 기획재정부 점검회의 참석

o 월 1회 지자체 현장 점검 및 독려를 통한 실집행률 제고 노력

o 1월초까지 지자체와 산림청간 재정사업 맵핑을 완료하여 시스템에 의한 실적 점검

## 라. 추진일정

o 2012년도 산림예산 조기집행 계획 수립 : 2011. 12월

o 2011회계연도 이월예산 조기 확정 : 2012. 1월

o 국고보조사업 재정시스템 관리 구축 : 2012. 1월

o 집행점검 회의 및 현장점검 실시 : 2012. 1~6월

o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평가 및 포상 : 2012. 7~8월

# 4. 창의적 조직문화 형성

목 표

◇ 창의적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현장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한 산림행정의 발전 도모

## 가. 정책여건

o 공정한 사회 구현, 공생발전 등 국가정책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림행정 업무혁신 노력이 필요

## 나. 기본방향

o 산림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역량 강화
o 산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

## 다. 세부추진계획

### 1) 창의적 조직문화 및 직장분위기 조성

o 상시적인 직원 아이디어 발굴체계 구축 및 토론을 통한 정책·제도개선 추진
- e-푸른샘을 통해 연중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되, 사안에 따라 주요 정책별·테마별 공모 추진
- 제안자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는「직원 아이디어 실현회의」운영

o 자발적인 학습분위기 확산을 위한「공무원 연구모임」운영 내실화
- 우수 연구모임의 운영 수범사례 발굴·포상 및 운영비 지원 강화

o「산림행정이슈 토론모임」운영을 내실화하여 선제적 이슈대응 체계구축 및 직원들의 창의력 향상에 기여

o 창의적 공직문화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관리 활동 추진
- 기관별 특성에 맞는「변화관리 워크숍」등 활동 지원

o 대전청사 합동으로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3청사 아카데미」운영

o 조직 구성원간의 팀웍 강화 및 산림행정 이해 도모를 위한「현장체험의 날」운영
- 현장체험의 취지에 맞게 산림현장, 일선 소속기관, 유관기관, 임업인 등 방문

### 2)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 전개

o 불필요한 일 버리기, 업무 간소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 활동 전개

o 직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데이트 추진

o 일선기관의 현장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 3) 현장과의 소통 및 산림행정 정책네트워크 강화

o「산림행정연구회」,「산림정책평가위원」,「산림청 정책자문위원」등을 활용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정책네트워크 강화

o「시·도 산림부서장 협의회」운영을 활성화하여 산림정책 비전 공유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

- 본청과 시·도간 상시 소통채널 확보 및 퇴직공로패 수여 등 협력 강화

o 농림수산식품분야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농림수산식품 기관 방문프로그램」 자율적 운영

o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현안 점검을 위한 "현안점검회의" 운영

o 임업인,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의 소통을 위한「현장특임관」운영 내실화

- 형식적인 활동건수 위주의 활동은 지양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현장특임관」활동과제 부여

### 4)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 활성화

o '12.1.28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40명) 재구성

- 정책자문위원 의견 및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부 위원 교체

o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정례회의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으로 운영 내실화

o 정책자문위원과 산림청 핵심 간부와의 만찬모임 정례화(분기 1회 이상)

## 라. 추진일정

o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재구성 : 2012. 1월

o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계획 수립 : 2012. 2월

o 시·도 산림부서장 협의회 실시 : 2012. 6월

o 전 직원 변화관리 워크숍 실시 : 2012. 6월

# 5. 산림행정 평가 및 성과관리

목 표

◇ 특정평가에 역량 집중 및 실효성 있는 성과제도 운영
◇ 각종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기여

## 가. 정책여건

o 특정평가 부문의 지속적 확대('09년 7개→'11년 9개) 및 부처별 평가순위 발표 등으로 부처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o 성과관리 및 자체·특정평가의 기반이 되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반영토록하여 국정기조와의 연계 강화

o 지자체에 대한 산림행정 평가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합동평가로 전환된 이후 지자체장 및 산림부서의 관심도 고조

## 나. 기본방향

o 특정평가에 역량을 집중하는 대응체계 구축으로 정부업무평가 상위권 달성

o 국정기조를 반영한 성과관리계획 수립으로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평가 결과환류를 강화하여 성과관리 수준향상 및 실효성 확보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평가역할 제고

## 다. 세부추진계획

### 1)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평가제도 운용

< 정부업무평가 체계 >

| 구 분 | | 평가시행기관 |
|---|---|---|
| 자체평가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자체평가위원회) |
| 특정평가 | ① 핵심 과제 | 국 무 총 리<br>(정부업무평가위원회) |
| | ② 일자리 창출 과제 | |
| | ③ 서민생활 안정 과제 | |
| | ④ 녹색성장 과제 | |
| | ⑤ 정책관리역량 | |
| | ⑥ 정책홍보 | |
| | ⑦ 규제개혁 | |
| | ⑧ 정책만족도 | |
| | ⑨ 민원만족도 | |
| 지자체평가 | 산림정책관리, 휴양·치산사업 등 | 행정안전부장관<br>(합동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 소속기관평가 | 고유과제, 공통과제, 종합평가 | 산림청장(산림정책평가위원회) |

o 특정평가

- 매월 특정평가 점검회의 개최 및 전문기관의 컨설팅 실시로 평가대상 38개 부처 중에서 상위권 달성
- 과제별 주관·협조부서 지정 및 보고서 작성 T/F팀 운영
  · 특정평가(핵심과제,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대상 과제는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후 3월중 현안점검회의에서 선정 완료
- 부처 성과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기관 과제 소관과에 대한 가감점 부여로 과장급 직무성과 평가에 환류
  ※ 우수 : 가점 5점, 미흡 : 감점 5점
- 특정평가 과제선정 및 평가결과를 본청 평가에 반영
  ※ 주관·협조 부서, 우수기관 달성 등에 따라 차등 반영

o 주요정책 자체평가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모든 관리과제(사업부서별 주요정책)에 대하여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 결과 본청 부서평가 반영률을 확대하여 실효성 제고
  ※ 본청평가 반영률 : ('10) 60% → ('11) 70% → ('12) 80%

o 본청·소속기관 평가

< 평가 과제 및 비중 >

| 평가분야 | 평 가 과 제 | 비중 |
|---|---|---|
| 주요정책·고유과제<br>(본청 22개부서) | • 고유업무, 주요정책과제 | 100% |
| 자율선정 과제<br>(지방청 외 6기관) | • 3개 자율선정과제 | 100% |
| 지정사업 과제<br>(5개 지방청) | • 8개 분야 : 숲가꾸기 일관시스템(5개)+ 주요사업(3개)<br>※ 산림토목(임도·사방), 재해방지(산불·병해충), 재산관리 | 100% |

- 전년도 평가 개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금년도 평가제도 개선에 반영
- 평가결과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반영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11년 20% →'12년 25%)하는 등 인사부문에 환류 강화

o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행정안전부 주관 '12년 지자체합동평가시 산림분야 시책 및 지표 수용도 제고
  ※ (공통지표) 조림·숲가꾸기·산불·병해충·산지관리·등산로·도시숲
  (부분지표) 임도·사방·휴양·목재생산·펠릿
- 평가결과 우수기관·공무원 포상 및 해외연수, 예산(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공
  ※ 포상금 2억5천(광역시·도별 구분 시상 / 우수 5기관, 공무원 16명)

### 2) 성과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운영 강화

o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점검결과 환류 강화
-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 등 효율적 점검 강화(반기→분기)
-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결과는 주요정책 자체평가에 반영(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6조에 따라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반기 점검 의무화

o BSC(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강화를 통한 조직 성과관리 수준향상
- 성과관리시행계획・특정평가・직무성과계약・개인 성과평가 지표 및 연두 업무계획 등을 연계한 통합 시스템 운영 및 본청 평가 실시

### 3) 산림정책평가위원회 평가 역할 및 운영 활성화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 정기회의 개최(5월, 12월), 현장설명회(8월~9월) 실시

o 평가위원의 산림정책 이해도 증진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연 1회) 및 산림정책 자료 제공(매월 1회 이상)

## 라. 추진일정

o 성과관리계획 수립 : 2012. 2월

o 본청・소속기관 평가 및 자체평가 계획 수립 : 2012. 4월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개최 : 2012. 5월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현장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 : 2012. 8~9월

o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공개 및 포상 : 2012. 10월

o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 2012. 7월, 10월

o 특정평가 추진실적 제출(국무총리실) : 2012. 7월, 10월

o 주요정책 자체평가(산림정책평가위원회) : 2012. 12월

o 본청・소속기관 평가 : 2012. 1~12월

o 본청・소속기관 평가 결과 포상 : 2013. 1월

# 6. 산림행정 조직관리

목 표

◇ 조직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관리

## 가. 정책여건

o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 필요

- 산림자원 육성과 이용에 대한 국민 요구 증가, 산림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에 대한 관심 고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필요성 증대 등
-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을 위한 국가간 산림협력 증대, 산림을 통해 지구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등

o 산림행정조직 선진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선제적 활동 요구

## 나. 기본방향

o 산림행정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관리 추진

o 신규 산림행정 수요 및 현안 대응을 위한 기구 및 인력 확충

o 내실있는 유동정원제·총액인건비제 운영 및 자체 조직진단 실시

## 다. 세부추진계획

### 1) 조직 운영 효율성 증진

o 국제산림협력 분야 확대에 따른 해외자원협력관(고위 나) 신설

- 금번 정부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UNCCD 의장국 역할 및 AFoCO 창설·운영, 국가간 산림자원 협상을 책임지고 추진할 해외자원협력관 신설 및 전담부서 확대 개편(해외자원개발담당관·국제협력팀)

o 2012년 소요정원으로 확보된 기구 및 인력 증원을 위한 직제개정 추진

- 기구설치 :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사업사업단(한시 직제, '12~'14)
- 증　　원 : 16명(4급 1, 5급 2, 6급 4, 7급 2, 연구관 1, 연구사 6)

o 한국임업진흥원 설립('12.1.26)에 따른 국립산림과학원 인력 이관(51명)

### 2) 신규 산림행정 수요 및 현안 대응 인력 확보

o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수시직제 추진

o 2013년 소요정원 확보 및 중기('12~'16년) 인력운영 계획 수립
- 단기소요는 '13년 소요정원에, 중기소요는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반영

### 3) 내실있는 유동정원제 운영

o 신규 행정수요 등에 탄력적 대처를 위하여 유동정원 지정·운용
※ '11년 유동정원 지정 및 운영 현황 : 지정 30명, 배정 28명

o '10~'11년간 운영실적 분석을 통한 내실있는 운영방안 마련으로 유동정원 지정 및 배정 재검토

### 4) 2012년 총액인건비제 운영

o 의도적 절감재원 마련의 적정성 재검토 등을 반영하여 자체 세부운영계획(안) 수립·시행
- '07~'10년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상향에 따른 소요예산 마련
※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각각 별도수립

### 5) 2012년 자체 조직진단 실시

o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능 분석 및 재설계 도출
- 실·국·과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토론 등 의견수렴 포함
- 조직진단 결과는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에 반영

o 자체 조직진단으로 기능분석 및 재설계 미도출시 외부 용역 수행

### 6)「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o 지방산림청 조직의 현행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대응

o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12.6.30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계획 제출 ('11.9.30, 산림분야 현행유지 의견 제출)

### 7) 미래지향적인 산림행정조직 발전 방안 마련

o 「산림행정조직 선진화 방안」 실무작업팀 회의 운영(매주 월요일)

- 실무작업팀(팀장 : 차장) 및 분야별 5개 작업반(반장 : 국장) 구성・운영

※ 산림정책 개발, 자연공원 관리, 도시공원 관리, 야생동식물 관리, 조직 발전방안

o 조직・기능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야별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조직 발전 전략 마련

※ 필요시 외부전문가 자문 및 대외 설득 논리 개발 등 용역 수행

## 라. 추진일정

o 2013년 소요정원 요구 및 중기('12~'16년) 인력운영 계획 마련

- 2012년 정부조직관리지침 알림(본청 및 소속기관) : 2012. 2월
- 2013년 소요정원(안) 및 중기인력운영 계획 제출(행안부) : 2012. 4월말

o 2012년 자체 조직진단 실시 : 2012. 4월말

o 2012년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수립

- 2012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알림 : 2012. 3월
-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계획(안) 확정・제출(행안부) : 2012. 4월말

o 2012년 소요정원 및 산림재해 예방 조직 확대 등을 위한 직제 개정 : 2012. 7월

o 2012년 유동정원제 운영계획 수립・시행 : 2012. 8월

o 「산림행정조직 선진화 방안」 실무작업팀 회의 운영 : 연중

# 7. 법제업무의 효율성 제고

목 표

◇ 정책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추진
◇ 의원 입법 및 타 부처 법령안 협의에 적극 대응
◇ 법률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하여 하위법령 제때마련

## 가. 정책여건

o 공생사회의 구현 및 하위법령의 상위화 추세 등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입법수요 증가는 지속될 전망

o 지방분권 활성화 등 사회가 다양화·전문화 되어가는 추세로 의원입법에 의한 법령 제·개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나. 기본방향

o 서민생활의 안정과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관련 법령을 적극 발굴하여 입법계획에 반영, 적기 추진

o 의원 입법 및 타 부처 법령 협의에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 다. 세부추진계획

### 1)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적기 추진

o 정책여건 변화 및 규제개혁 등의 입법수요를 반영하고, 주요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11.11) 및 추진

o 법률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하여 법률안 제·개정시 하위법령을 미리 마련하는 등 신속한 입법을 추진

o 자체 법령정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여 법령개정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 2) 의원발의 법안 및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 내실화

o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리적 문제, 산림정책의 부합 여부 및 재정소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법률 집행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

o 의견 요청된 법령안은 철저한 사전검토와 주요내용을 요약·통보하는 등 소관과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타 부처 법령 제·개정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 법령의견조회/공문생산 : ('10) 3,011/ 488건 ⇒ ('11.12.21 현재) 3,896/ 636건

o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해 적극적 의견제시 및 제·개정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

## 라. 추진일정

o 「산림조합법」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정부입법 추진

- 법제처 제출 : 2012년 7월 31일
- 국 회 제 출 : 2012년 9월 30일
-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8. 규제개혁 지속 추진

목 표

◇ 서민·중소기업 등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개혁 추진

## 가. 정책여건

o 기업현장 애로개선,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등을 위한 규제개혁 요구는 한층 증가할 것으로 전망

o 규제일몰제 확대, Negative 방식 규제도입 등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심사는 강화 추세

o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증진을 위해 현 정부 출범 후 규제개혁성과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전망

## 나. 기본방향

o 서민·중소기업 등 국민생활 불편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

o 자체 규제심사 강화로 신설·강화되는 규제 최소화

o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성과 홍보 및 교육 강화

## 다. 세부추진계획

### 1)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집중 발굴

o 각 지방청별로 구성된 "지역별 규제개혁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현장의 애로개선사항 발굴

o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및 지자체 건의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o 건의된 규제개혁 내용에 대하여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개선방안 마련

o 등록된 산림규제 건수의 30% 이상을 규제개혁과제로 발굴(24건) 개선

### 2) 중소기업 관련 기존 규제의 대대적 정비 추진

o **(중소기업 규제적용 차등화)** 기업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던 규제를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완화시켜 차등 적용
- 규제의 기준·절차·시기·주기·제재 등의 규제부담을 조정하여 완화

o **(중소기업 친화적 규제기반 조성)** 중소기업에 불공정을 초래하는 규제 우선 개선
- 중소규모 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원칙적으로 제거
- 소규모 영세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업종에 적용되는 규제 우선 발굴·개선

o '12년 규제개혁 전략과제 선정시 중소기업 규제적용 차등화 관련 세부과제 중점·발굴

### 3) 자체 규제심사 강화로 신설·강화되는 규제 최소화

o 내실있는 규제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 정부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규제를 신설·강화하여 국민·기업의 자율성 증진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철회·개선권고율 20% 이상 유지

o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몰제, Negative 규제방식을 적용

### 4)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

o 규제개혁으로 인한 제도개선 사항 및 현 정부 출범 후 산림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로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 보도자료 배포, 현장설명회, 홍보물 제작 배포, 온라인 홍보 등 활용

o 산림인력개발원 및 국무총리실 등에서 운영하는 규제개혁과정 교육 이수
- 산림인력개발원 규제개혁과정 위탁교육 운영(2기, 60명)
- 국무총리실·지식경제부 등 주관 규제개혁 사이버교육과정 이수

## 라. 추진일정

o '12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제출 : 2012. 1월

o 규제개혁 언론홍보(본청, 지방청) : 법령 제·개정시

o 규제개혁 현장설명회 개최(각 지방청) : 분기별 1회

o 산림인력개발원 규제개혁과정 교육 추진 : 2012. 5월, 10월

o '12년도 정부업무 규제개혁 평가보고서 제출(국무총리실) : 2012. 10월

o '12년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 2012. 10월~11월

# 9. 민원만족도 제고

목 표

◇ 민원행정 제도개선 향상으로 민원만족도 극대화

## 가. 정책여건

o 국민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원의 확대

o 민원 요구 내용이 갈수록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 되어가는 추세

o 산지이용 확대 및 국유림대부와 관련하여 수용이 어려운 국민요구 증대

## 나. 기본방향

o 신속하고 공정한 국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

o 생활밀착형 민원제도 중점 개선으로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

o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고객만족 극대화

## 다. 세부추진계획

### 1)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감축 추진

o 분기별 고충 및 빈발민원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령 및 제도 개선

o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처리사례를 국민신문고에 등재확대(현재 648건 등재)

o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자체 모니터링 강화 및 민원 Q&A에 자주묻는 사례 등재 확대로 민원신청건수 감축 유도

### 2) 국민신문고 모니터링 강화, 민원처리실태 분석 및 환류

o 월별 접수·처리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준수율, 민원답변 성실도,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을 분석하고 개선 조치 실시

o 개인별 민원처리 현황을 수시 모니터링 하여 일일 처리기간 만료예고 등 미흡 부분에 대한 개별 통보 및 시정조치

o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답변 등 불만민원 사후관리 강화

o 민원보호담당관의 민원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및 민원상담 강화
- 서류 및 전화민원 상담, 민원답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민원만족도 조사

### 3) 산림행정서비스 만족도 극대화 추진

o 산림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취약분야를 파악, 개선함으로써 산림행정서비스 품질향상 및 민원 만족도 제고
- 조사시기 : 연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0월)
- 조사분야 : 민원만족도(인터넷, 일반), 내부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 조사결과 :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

### 4) 직원 및 신규자에 대한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 강화

o 고객만족 서비스 기관별 맞춤형 순회교육 실시(5~6월)
- 기관별 맞춤형 순회 교육을 통해 직원 마인드 혁신 및 고객응대 스킬 향상
- 교육대상 : 본청 및 1·2차 소속기관 전 직원
- 교육방법 : 기관별 민원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주제를 선정하고 전문 강사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실시

o 산림인력개발원 신임실무자과정에 '민원만족도 제고방안' 교과편성 및 교육실시

### 5) 갈등관리업무 강화로 갈등예방 및 정책의 효율적 추진

o 갈등관리과제 신규 발굴 및 갈등유발 법령을 발굴하여 개정 등 추진

o 갈등관리과제에 대한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업무추진 단계별 대응

o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및 운영활성화(현안사항 발생 시 탄력적 운영)

### 6) 제안제도 활성화 및 민원인의 건의사항 적극 수용

o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적극 발굴 및 채택 실시

o 민원보호담당관 상담을 통한 민원 건의사항 등 적극 발굴 및 수용

o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생활밀착형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

## 라. 추진일정

o 국민신문고 모니터링 및 민원처리실태 분석 : 연중

o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 2012. 3월

o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 : 2012. 4월부터

o 산림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 2012. 6월·10월

# 10. 자체감사 내실화 및 제도개선 감사

목 표

◇ 자체감사개선 및 현장 애로·문제해결 위주의 도와주는 감사
◇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와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 가. 정책여건

o 차질없는 국정업무수행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강화 필요

o 공정한 사회정착을 위한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개선 필요

o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우려

## 나. 기본방향

o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제도개선 감사

o 예산집행의 낭비 및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감사활동 강화

o 청렴한 산림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청렴생활 정착 및 공직기강 확립

## 다. 세부추진계획

### 1) 감사분야

o 주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감사사항을 선정하여 문제 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감사 실시(30개 기관 대상)

- 종합감사 : 남부지방청, 중부지방청,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센터
- 특정감사 : 민간단체(녹색문화재단, 농산물유통공사, 조경수협회, 목재공학회)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훈련원, 지역조합(3) 등
- 성과감사 : 산림기본계획, 중장기계획, 시책수립 이행 실태 감사

o 산림기본계획과 각 분야별 중장기계획, 시책수립 이행 실태에 대한 본청감사 추진

o 사전예방적 자체감사활동 강화

- 일상감사 강화를 통한 사업추진의 행정적 낭비 요인 및 시행착오 사전 예방 도모(일상감사 업무량을 고려하여 감사인력 보강 검토)
- 감사담당자별로 문제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상시 모니터링 실시(재산관리, 숲가꾸기, 임도·사방, 예산·회계분야 등 담당자 지정제 실시)
- 동일·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전산망 공개 및 감사사례집 발간·배포(감사원 및 자체감사 주요 지적·우수사례)

o 감사원 권장 자체감사활동 개선 대책 추진

- 연구 및 회계 등 관련 외부전문가 자체감사에 참여
- 감사대상 직원에게 의견 수렴절차 마련(수감자 입장에서 감사 미비사항 확인·개선)
-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 인력 확보(행정관리 협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을 마련하여 감사결과의 객관적 처리 도모
- 감사결과 이행관리를 감독하는 이행관리 책임제 실시(재감사 및 처벌요구 등)
- 감사실무 매뉴얼 마련(감사절차 등 감사실무 매뉴얼 제작) 등

o 감사 정보 공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민·관 감사 협의회 운영

- 구성(14명), 운영(연2회)
  · 산 림 청(7) 법무감사담당관, 감사계장, 감사담당
  · 산림조합(7) 중앙회 감사실장·팀장, 조합감사위원회 실장·기획상시감사팀장

o 산림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민감사관(2명) 지속적 운영

- 산림분야 비리·불만사항 제보 및 자체 감사 활동에 참여
- 알선·청탁 등 부패유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시정 건의 등

o 모범·우수 공무원 및 부서 발굴·포상

- 업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부서·발굴 포상
- 묵묵히 일하는 숨은 선행·모범공무원 발굴·포상
  ※ 감사원장 표창 추천 또는 자체 표창
-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이행
  ·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더라도 일정요건(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없을 것, 국민편익, 합당한 결재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과감히 면책

### 2) 청렴분야

o 알선·청탁 관리 시스템을 내부홈페이지에 구축 및 시행
- 공무원이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부정부패 사전예방

o 실시간 Clean-Call제 지속적 실시 및 기관장 취약시기 청렴SMS 서비스 시행
- 민원 성실성 조사를 위한 Clean-Call 설문지 발송 및 모니터링 실시(수시)
- 추석 등 명절 및 취약시기에 청렴관련 문자, 음성 등 발송(수시)

o 청렴산림공무원 발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측정 등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
- 청렴산림공무원상 수시 발굴,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측정 2회실시

### 3) 공직기강분야

o 공정사회 기준에 맞지 않는 관행 및 제도 발굴·개선 추진

o 명절연휴,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집중 점검

o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사례 집중점검

o 언론보도, 외부기관 통보, 민원내용 등 모니터링 강화

o 관행적 공직비리 관련자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기준 적용

## 라. 추진일정

o '12년 자체감사·부패방지·공직기강확립 계획 등 수립(연초)

o 자체감사활동 개선대책 추진(연중)

o 모범공무원 및 우수부서 발굴 포상(수시)

o 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수시)

o 시민감사관 자체감사활동 참여(상·하반기)

o 민·관 감사협의회 운영(상·하반기)

o 산림청 공무원행동강령 자가 측정(상·하반기)

o 취약시기 청렴알리미 서비스(핸드폰 문자 발송)(수시)

# 11. 고객맞춤형 “SMART 산림행정” 구현

| 목 표 |
| --- |
| ◇ 내·외부 수요자가 공감하는 통합산림행정정보시스템 구축<br>◇ 안전한 산림행정 구현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사회 실현 |

## 가. 정책여건

o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산림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필요
- 폭증하는 데이터의 관리개선방안 마련 및 클라우드기반의 정보화 추진

o 무선인터넷 활용 증가와 스마트폰의 보급·확산 등 모바일 기반의 생활 서비스와 업무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
-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 국가사회 전반으로의 정보화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 패러다임 및 트랜드 변화

o 최근 지능화되고 진화되는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09.30)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 및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필요

## 나. 기본방향

o “SMART 산림행정” 구현을 위한 산림정보화 기본계획 실천

o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국민포털서비스 구현

o 정보화종합설계도(EA)에 기반을 둔 IT거버넌스 체계 구축

o 안전하고 중단없는 정보서비스 제공과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보보안 사고예방 및 조기대응 체계 마련

## 다. 세부추진계획

### 1) 국가산림정보화 기반조성 3단계 추진

o 종묘·조림·벌채(매각) 업무의 표준시스템 구축(1,090백만원)
- 북부지방청을 정보화시범관리소로 지정하고, 산림자원통합시스템 시범운영
- 산림자원업무중 숲가꾸기사업은 정보화시스템으로 처리(상반기)
- 국유림경영정보, 국유재산관리 시스템 등과 연계방안 마련
- 정보화시범관리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자자, 스마트 탭 장비, 터치스크린 등 우선 보급

o 현장중심의 모바일 전자야장 등 서비스 확산(400백만원)
- 표준지조사(전자윤척), 생산재 검척 등 현장업무 모바일서비스 확대
- 산림조사야장, 매목조사야장 등 종이야장을 전자야장으로 확대(6종→11종)
※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내부 결재 업무시간 50% 절감 가능

o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http://www.nature.go.kr)을 명실상부한 범국가적 생물정보제공시스템으로 확대 구축
- 지리정보 기반 전국 상세 생물분포정보 DB구축 및 시스템 개발
※ 국문 85,000건, 영문 85,000건, 이미지 170,000면
- 생물조사정보 응용시스템 및 모바일 기반 정보입력시스템 개발
-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식물종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o 산림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콘텐츠 확충(3과목, 80백만원)

## 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국민 포털서비스로 개선(800백만원)

o 숲에ON, 국가생물종지식정보 등 12종 사이트 서비스통합 구현
- 사이트의 서비스는 통합하되, 기관별 콘텐츠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하고 산림청사이트 정체성 컨설팅 결과 반영
- 장애인 등 정보화소외계층이 어려움 없이 포털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축

o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사이트는 “전자정부개발프래임워크” 적용

## 3) 언제 어디서나 산림업무가 가능하도록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o 정부의 “Smart Korea 추진전략”과 연계한 산림행정 스마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워크의 선도적 역할 도모

o 인터넷 방송, 화상회의 정착과 스마트 폰 기반의 모바일 근무환경 마련
- 메일, 간단한 일정관리 등은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처리

## 4) 정보화종합설계도(EA)에 기반을 둔 정보화업무관리시스템 구축

o 정보화 기획·사업·성과간 연계를 강화하여 예측가능한 정보화 추진

o 예산 투자의 적절성, 시스템 중복성 제거 등으로 성과와 시스템의 품질을 제고

o 정보화사업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정보시스템, 메뉴얼 등 성과품 품질강화
- 산림청 정보화사업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련 훈령에 반영
- 내·외부 정보표준기술을 준용하여 구축함으로써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임

o 각 시스템에 보유중인 산림DB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 구축
- '12년도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산림청 데이터 표준지침을 적용
- 데이터 연계 또는 통합을 통해 데이터 중복구축과 중복관리를 제거
- 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마련

## 5) 법・제도・지침 등 개선

o 대국민 서비스 통합과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에 따른 관련 훈령 개정
- 전사적인 차원에 데이터관리체계 수립과 데이터품질 향상을 위하여 데이터표준 및 절차를 정보기술아키텍처 규정에 반영
-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이트 통합에 따라 콘텐츠의 관리・운영 등을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반영

o 정보통신 인프라와 서비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클라우드, 스마트폰, 무선랜 등)에 대응하는 관리적・제도적 기반마련 및 관련 규정 반영

## 6)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2,844백만원)

o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ayer Agreement)을 기준으로 장기계약(2년) 체결을 통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추진 및 서비스 수준 향상 (1,282백만원)

※ 서비스수준협약 : 최적의 비용으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서비스 목표 수준을 달성하고 품질저하를 예방하는 활동을 사업자와 협의 하에 수립

o 산림행정정보시스템의 365일×24시간 안정적인 운영관리 추진

o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강화
- 온-나라, 웹메일, PC 등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장애 지원요청 시 방문 및 원격지원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지원
- 산림자원통합시스템, 대국민업무포털 등 응용시스템에 대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추진

o 유명산자연휴양림 등 38개 휴양림 통신속도 고속화 추진(2Mbps→5Mbps) (1,316백만원)

o 본청 및 소속기관 노후 전산장비(PC 151대, 노트북 30대, 프린터 34대) 215대와 SW등 정보자원 교체(246백만원)

o IT정책변화(클라우드 기반 확산)에 따른 산림인력개발원 전산교육용 PC (40대)를 가상화하여 운영

o 정보화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월 집행내용 점검

### 7)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강화

o 정보지식 활용능력 진단 및 2012 산림청 정보지식인대회 개최(7월중)

o Forest IT포럼 등을 통하여 현장 산림업무의 정보화 아이디어 발굴 및 최신 IT기술 전파(매월)

o 정보화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 대상 정보화교육 추진
- 정보기술과정, 프레젠테이션 및 포토샵 등 전문 교육 추진

o 유관기관간 정보화 정책 공유 및 정보기술 교류 강화
- 산림조합중앙회(6월), 농진청・실용화재단(11월)등 유관기관과의 정보화 정책 공유 및 정보기술 공동 활용방안 마련

### 8) 사이버테러 등 보안사고 예방 및 조기대응 체계 마련(469백만원)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보안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o 내・외부 보안환경 변화에 따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 정보보안 마스터플랜(2013~2015) 수립을 통한 보안관리체계(개인정보 보호 포함) 확립
- 주기적인 교육 및 점검, 보완조치 수행을 통한 외주 용역업체 보안관리 강화
- 좀비PC 차단 및 인터넷망PC 자동복구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한 개인 PC 보안 강화

※ 자동복구솔루션 : PC 재시작시 기본프로그램 이외의 설치된 프로그램을 자동 삭제함으로서, 불법S/W 및 악성 프로그램 설치 등을 예방

o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연계한 국가정보보호 활동 강화
- 웹사이트 및 개인 PC 해킹 등의 보안 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전 예방활동을 통한 침해사고 최소화('11년 18건 → '12년 10건 이하)
- 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통한 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o 전 직원 보안인식 제고를 통한 보안사고 사전예방
- 전 직원 대상 연2회 이상 보안교육 실시
- 자체 사이버 위기 모의훈련 실시(7월중)

o 국가 사이버 침해 대응력 제고 및 기반시설 보호 강화(월 1회)
-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물리적・관리적 보안 인프라 및 정책/관리 체계 정비

- 해킹 탐지 및 처리·대응, 정보보안 장비 운영,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추진결과 분석 등을 통한 정보보안 관리 및 보고체계 강화
- 신규 및 고도화사업, 주요시스템 등에 대해 웹 취약점, 서버취약점 점검 등을 통한 주기적인 웹사이트·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수행

o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에 따른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인정보보호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을 통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 개인정보 보유시스템(휴양림예약시스템 등 14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추진
- 주기적인 웹사이트 개인정보 보안점검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 방지

## 라. 추진일정

o 산림정보화 기본계획중 실행계획 수정 : 2012. 2월

o '13년 주요 시행계획(안) 마련 : 2012. 4월
- 정보화시행계획, 개인정보시행계획, 성과시행계획 등

o 국가산림정보화 기반조성사업
- 정보화사업 최종예산 및 사업범위 확정 : 2011. 11월
- 행정안전부 사전검토 심의 : 2011. 12월
- 통합정보화 사업발주 : 2012. 1월
- 사업관리(착수, 워크숍, 중간보고, 완료보고) : 2012. 3~11월
- 최종검수 및 인수 : 2012. 12월

o 정보화사업(재정사업 평가) 수행 : 2012. 10월

o 노후 전산장비 교체 : 2012. 5월

o 정보화 운영·유지보수
- '12년 통합운영·유지보수 계획 : 2011. 11월
- '12년 통합운영·유지보수 발주 : 2011. 12월
- '12년 통합운영·유지보수 실행 : 2012. 1~12월

o '13년 정보화예산 확보
- 중기사업계획 마련 : 2012. 1월
- 정보화예산 : 2012. 2~8월

o 정보보안 체계 및 정보화 기반확충

- 내부 정보보호 지침 등 체계마련 : 2012. 3월
- 전직원 정보보안 교육 : 2012. 1월, 9월
- 정보보안담당자 워크숍 : 2012. 5월
- 노후 방화벽시스템 교체 : 2012. 6월
- 사이버 모의훈련 : 2012. 6월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시스템운영 : 매월

o 정보화 교육

- 정보지식 활용능력 진단 : 상반기
- 산림청 정보지식인대회 : 2012. 9월
- Forest IT포럼 : 매월
- 정보화 전문 교육(프리젠테이션 등) : 분기별

# 12. 산림공간정보 지원체계 구축

목 표

◇ 스마트 산림행정을 위한 산림공간정보 서비스 체계 확립
◇ 산림공간정보 데이터 정밀화를 통한 산림분야 경쟁력 확보

## 가. 정책여건

o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정부 도래 등 급변하는 추세
o 범정부 차원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으로 국가공간정보 통합운영
o 세계 10위 산림관리 선진국을 위한 제5차 산림기본계획 수립
o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가로 다양하고 정확한 각종 지도정보 요구 증대

## 나. 기본방향

o 산림공간정보 기반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림행정 지원
o 산림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통한 고품질의 산림정보 인프라 확충
o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한 산림공간정보 DB 정밀화사업 추진
o 안정적인 산림공간정보 유통 및 관리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림공간정보 기반의 효율적인 산림행정 지원

o 공간정보 기반의 정확하고 신속한 산림정책 결정 지원체계 확립
- '산림공간정책지원시스템' 활용 확대를 통한 효율적 업무처리 지원
- 초기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밀 디지털항공사진 서비스를 통한 과학적인 산림정책 추진 지원
- 산림재해 분야 관련 주제도 확보 및 업무 활용기반 마련

o 수요자 중심의 On-line 산림공간정보 유통시스템 운영
- 정밀임상도(1/5,000), 정밀산림입지토양도(1/5,000)의 유통기반 확충
- 산림GIS 자료 관리 및 제공의 On-line화 : 타 부처, 연구·학술기관 등
- 산림GIS 데이터의 안정적인 자료관리 및 갱신체제 구축

##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

o「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연차 사업으로 추진
- 사이버 국토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통합사업 추진('08～'12)
- 임상도 등 산림주제도 정밀도 향상을 통한 내·외부 산림경쟁력 확보
- 전자정부 예산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통합추진(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o 1/5,000 임상도 제작사업(전자정부예산)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의한 1/5,000 축적의 수치임상도 제작
  ·('08～'10)220만ha→ ('11)183만ha → ('12)185만ha(연차별 추진)
- 입체항공사진을 이용한 검수체계 내실화 및 임상도 품질관리 강화
- 추진체계 : 국토해양부(총괄), 산림청(주관), 국립산림과학원(검수)
- 대상지역 : 강원·경기 일원(※ '12년 완료목표, 예산액 : 약 130억(잠정))

o 1/5,000 산림입지토양도 제작사업(자체예산 : 국가산림통계)
- 산사태위험예측, 맞춤형조림지도 등의 기반이 되는 1/5,000 산림입지 토양도 제작
  ·('08～'10) 87만ha → ('11) 35만ha → ('12) 35만ha → ('13～'16) 431만ha (사업완료)
- 엄격한 사업관리 및 현장검수, 교육 등을 통한 산림입지도 품질관리 강화
- 추진체계 : 산림청(총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수토보전과(주관)
- 대상지역 : 전남 일부(소요예산 : 23.5억원)

o 국가공간정보 및 산림공간정보 시스템 연계추진 : 국토해양부 합동
- 국가공간정보와 산림공간정보간 On-line 자료 연계 및 활용체계 구축

## 3) 산림공간정보 이용의 활성화 및 내·외부 인프라 구축

o 산림GIS·GPS 활용 장비확충
- 소속기관의 활용기반 마련(18대, 223백만원)
  ·GIS용 PC(8대), GPS 장비(8대), 칼라플로터(2대) 등
- 지자체 GIS·GPS 장비확충 지원(88대, 475백만원 : 국고보조)
  ·GIS장비세트(40세트) : GIS용 PC, 칼라플로터, GIS 소프트웨어
  ·GPS장비(48대) : 측량용 GPS 장비
  ※ 본 국고보조사업은 일몰제 적용하여 2012년까지만 지원하고 중단

o 산림 GIS 및 GPS 시스템 장비유지 관리

- 산림GIS 시스템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한 최적기능 유지
  · 시스템 운영 및 활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 맞춤형 GPS장비 유지보수를 통한 활용 극대화 지원
  ·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교체, 수리, 교육 등)을 통한 장비 성능 최적화
  · 현지순회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Help Desk 운영을 통한 만족도 제고

### 4) 산림공간정보 활용 교육 및 교류 강화

o '2012년 전국 Forest IT 컨퍼런스' 개최

- 산림 정보기술의 아이디어 발굴, 최신 산림 IT 기술 전파 및 수요창출

※ FGIS, 모바일 등 IT기술의 산림분야 활용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신기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산림분야 정보화 수준향상 및 발전방향 모색

o 산림공간정보 활용 안정화·극대화를 위한 산림GIS 교육실시

- 산림인력개발원 전문과정(산림공간정보시스템반) 교육(2회 70명)
- 임상도 및 산림입지도 제작과정 자체과정 교육(4회 140명)
- 소속기관별 자체활용교육 지원(산림공간정보 보안교육 등 : 수시)

o 「2012년 디지털 국토엑스포」 행사 참가 및 산림공간정보관 운영

- 국가공간정보 엑스포에 우리 청 GIS 활용성과·사례 등 전략적 홍보실시
- 우리 청 우수사례 세미나 발표 및 전시 등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

o GIS관련 정책·기술 교류 강화

-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정책 교류 강화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주요정책 심의 등(산림청장은 당연직 심의위원임)
- 연속지적도,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GIS/RS자료 확보 및 현업 활용 지원
- 국가공간정보세미나 참가, 부처별 신기술 확보 등 GIS 기술교류 확대
  · 디지털국토엑스포(국토해양부), 영상정보연례회의·워크숍(국정원) 등

## 라. 추진일정

o 산림공간정보 세부사업 추진계획 시달 : 2012. 1월

o 산림GIS교육 실시(정규2회, 전문위탁4회, 자체-수시) : 분기별

o 소속기관 GIS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 2012. 4~5월

o 소속기관 GIS, GPS 장비 확충 : 2012. 1~3월

o 2012년 전국 Forest IT 컨퍼런스 개최 : 2012. 6월

o 2012년 디지털국토엑스포 대회 참가(전시부스 운영) : 2012. 10월

o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및 DB갱신 : 2012. 2~12월

o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GIS·GPS장비지원) 추진 : 2012. 2~12월

o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 추진(임상도, 산림입지도 확대제작 및 On-line자료 연계) : 수시

o 2012년 GPS장비유지보수 추진(순회유지보수 및 교육) : 분기별

o 산림GIS 홍보 및 타 부처, 기관간 기술교류 추진 : 수시

o 산림GIS 자료 확보·유통 및 갱신 : 수시

# 13. 산림통계의 안정적인 생산 및 품질 향상

목 표

◇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림·임업통계의 안정적인 생산 및 품질 향상으로 산림정책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

## 가. 정책여건

o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시행 등 정책과 통계의 연계 강화 필요성 대두

o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요구하는 활동자료 통계기반 구축 필요

o 한·중 FTA 협상 등에 대비, 신뢰할 수 있는 임업통계생산 요구 증대

o 한국임업진흥원 신설에 따른 산림·임업통계조사 사업추진체계 재정립 필요

## 나. 기본방향

o 산림정책과 산림통계의 연계 강화 및 산림통계의 정책 활용도 제고

o 교토의정서에 대응하여 탄소 흡수원 및 축적 증대 활동자료 DB 구축

o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산림·임업통계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o 국내·외 산림통계 수요에 대응하여 산림통계의 품질 향상 추진

## 다. 세부추진계획

### 1) 정책과 통계의 연계 강화 및 활용도 제고

o 산림정책 수립 시 산림통계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
- 산림통계의 현업부서 활용에 필요한 개선 요구사항 수렴·반영
- 산림통계의 조사표 설계, 조사결과 평가 등에 관련 부서의 참여 확대
- 통계를 활용한 산림정책·제도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 발굴 포상
  ※ 매년 연말에 실시되는 임업통계담당자 워크숍에서 발표 및 시상

o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운영 강화
- 법령 제·개정시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에 의거 통계청이 구비토록 요구하거나 자발적으로 개발·개선을 제시한 통계지표들의 개발·개선 이행사항을 관리

## 2)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

o 사유림경영정보 DB 구축 확산

- 충북 시범 DB 구축을 기반으로 대전, 경기, 충남, 경남으로 확산 구축

  ※ 2015년까지 사유림경영정보 DB 구축 완료 계획

- 사유림경영정보의 지속적인 현행화 방안 추진

  · 새올(산림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및 법·제도·지침 제·개정 등

o 탄소흡수원 확충 활동 검증을 위한 산림항공사진 DB 구축

- 정사항공사진 115 도엽 제작('11 : 577 도엽 → '12 : 115 도엽)

  ※ '90년 전후 우리 산림에 대한 정사항공사진(692 도엽) DB 구축을 완료하여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재조림 활동 검증 기반 구축

- '72~'80 기간에 촬영한 항공사진 6만매 중 2만매에 대한 디지털 사진 제작

## 3) 안정적인 산림 및 임업통계 생산

o 국가산림자원조사 사업관리·분석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위탁

-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산림자원조사본부 간 3자 협력체계 구축
- 국가산림자원조사 분석 시 산림자원조사본부 통계전문가 지원

o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2년차 조사를 차질없이 추진

- '07년 표본점(816 plot)을 대상으로 산림자원조사를 실시하여 5년경과에 따른 산림자원의 변화상황 분석

  ※ '06년 표본점(832 plot)의 산림자원 변화상황 분석 보고(4월)

o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는 산림식생조사구(204 plot)에서 병행 실시

- '11년 조사 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조사안정화 방안 마련(3월)

o 조사 통합 등에 따라 국가산림자원조사지원시스템 재구축 추진

-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항목 추가 관리, 시스템을 통한 통계 분석 및 조사결과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o 임가의 소득, 생산비 등 경제지표 생산을 위한 임업통계조사 추진

- 차질없는 조사를 위해 1월 초에 사업을 발주하고 3월말 사업 착수
- 임가 간담회, 조사원 교육 등을 통해 임업통계조사 표본임가 관리 강화
- 임업경영실태조사의 사업기간을 확대(4개월→6개월)하여 조사 품질 확보

※ '13년 사업 위탁을 대비 보고회 및 현지지도 시 한국임업진흥원 적극 참여

o 산림 및 임업통계조사 결과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공표
- 임산물생산비조사(4월), 임가경제조사(5월), 산림기본통계(6월), 임산물생산조사(7월), 임업경영실태조사(10월)

o 안정적인 표본 임가 재구축을 위해 시범조사 추진
-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임가경제 및 생산비를 조사할 표본임가를 구축하기 위해 대상 임가에 대한 적합성, 조사 참여의향 등을 시범조사(3개월)

## 4) 산림 및 임업통계의 품질개선 추진

o 산림통계발전 중기계획(안) 마련
- 한국임업진흥원 신설, 국가산림자원조사체계 개편,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계발전 중기계획(안) 작성

o '11 산림기본통계 품질진단 개선과제 후속조치 추진
- 이용자 요구사항 파악 체계 마련, 조사표 통합 및 조사항목 축소 등

o 행정조직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는 임산물생산조사의 개선 추진
- 밤, 대추를 대상으로 시범 표본조사 추진
- 임산물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품목은 조사 제외 검토
※ 약용작물에 대한 통계 집계방법을 농식품부와 재협의

o '11년 최초로 실시한 임업조사의 활용방안 마련
- 임업분야 활용 확대를 위한 2012년 조사 개선(안)을 마련 통계청과 협의
※ 한국임업진흥원, 통계자문교수, 수행업체 등을 통해 개선의견 도출

o 통계청 등 전문기관의 자문·감리 등을 통해 통계 품질 향상 추진
-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 방식 등 수시 벤치마킹
- 통계개발원 또는 통계전문기관의 통계 감리를 통해 품질 진단 및 개선
- 임업통계조사 중간·최종보고회시 통계청 전문가 참석 정례화

o 산주 현황 분석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산림경영소득과 주관)
-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 확보를 위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o 신뢰성 있는 산림·임업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담당자 및 조사원 교육 강화
- 소속기관 및 지자체 산림·임업통계 담당자 교육(1월) 및 워크숍(12월) 실시
- 임가경제조사 및 임산물생산비조사 현지 조사원 수시 교육 실시

### 5) 산림・임업통계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

o 통계 품질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 추진
- 임업경영실태조사 및 관상수 시업상황조사를 통계청 범정부통계포털시스템(나라통계)을 통해 구축

☞ 2012년 승인통계 10종 중 8종 통계에 대한 시스템 구축 완료

o 산림・임업통계의 대국민 접근성 제고 및 자료 현행화
- 우리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계정보 제공
-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시스템 등에서 서비스되는 산림・임업통계를 정기적으로 현행화
- 간추린 임업통계, 임업통계연보, 기타 조사 결과보고서 제공 범위 확대

※ 과거 통계자료의 전자 문서화 및 시스템 등록 추진

## 라. 추진일정

o 2012년 임업통계담당자 교육실시 : 2012. 1월

o 2011년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보고 : 2012. 3월

o 2011년 임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표 : 2012. 4월

o 2011년 임가경제조사 결과 공표 : 2012. 5월

o 2011년 산림기본통계조사 결과 공표 : 2012. 6월

o 2011년 임산물생산조사 결과 공표 : 2012. 7월

o 2012년 간추린 임업통계 발간 : 2012. 8월

o 2012년 임업통계연보(제42호) 발간 : 2012. 9월

o 2012년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 공표 : 2012. 10월

o 2012년 임업통계담당자 워크숍 실시 : 2012. 12월

o 임업통계조사 표본 임가 간담회 : 2012. 2~12월

# 산림자원국 소관

# 1. 제5차 산림기본계획('13～'17) 수정안 마련

목 표

◇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비전 및 정책 선포

## 가. 정책여건

o 2012년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08～'17) 시행 5년차로 중간점검의 시점

o 차기 정부('13～'17)의 방향에 맞는 새로운 비전의 산림정책 수립 필요

o 생태계와 자원의 보고인 산림의 가치제고,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산림 휴양서비스 제공, 국제산림협력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 나. 기본방향

o 기존 제5차 산림기본계획을 토대로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수립

o 현 정책의 문제점 및 제약요인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 정책 마련

o 일반 국민, 산림단체, 임업인 등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다. 세부추진계획

### 1) 현시점의 산림 현황과 향후 5년간의 정책여건 변화 검토

o 제5차 계획 수립 시('07)와 현재의 산림·임업의 내·외부 여건 변화 파악

o 산림자원 이용・관리의 장기전망 및 국제 산림정책 동향 분석

- 과학원 등 관계전문가 합동작업을 통한 비전과 목표 재검토 추진

### 2) 제5차 산림기본계획 전반기 평가(성과 및 반성 위주)

o 기존 제5차 계획의 핵심과제별 주요 성과 및 반성 등 평가

- 산림정책과를 중심으로 각 과제별 실무자를 포함한 '산림정책 T/F팀'을 구성하여 제5차 계획에 대한 전반기 주요 성과 및 반성 등을 점검

o 지방청, 지자체, 학계, NGO, 임업단체 등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 지방청, 지자체의 지역산림계획 추진 시 애로사항, 학계 및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여 새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3) 새로운 정책 목표 설정 및 주요 정책과제 발굴

o ‘산림정책 T/F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새로운 비전 및 목표 재설정
  - 국내·외 정책여건과 국제동향, 전반기 계획 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차기 정부에 걸맞은 산림비전과 그에 부응하는 목표 재설정

o 비전과 목표에 따라 기존과제 보완 또는 신규과제 발굴 등 초안 마련
  - T/F팀 내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변경계획의 초안 작성
  - 기본계획 초안을 기준으로 지방청 지역산림계획(안) 수립 추진

o 정책토론회를 통한 변경계획 초안에 대한 전문가, 관계부처 검토 추진
  - 각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결과 반영

### 4) 제5차 산림기본계획(’13～’17) 수립 및 확정

o 내부검토를 거쳐 후반기 제5차 산림기본계획 최종안 수립
  - 국별 소관 계획안 검토회의를 통해 정책방향 구체화 및 내용 보완
  - 회의 결과를 토대로 후반기 제5차 산림기본계획(’13～’17) 최종안 수립

o 산림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
  - 농림수산식품부, BH 등 상위기관에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보고 추진

## 라. 추진일정

o ‘산림정책 T/F팀’ 구성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 : 2011. 12월

o 현재 및 향후 5년간의 국내·외 여건 및 산림전망 파악 : 2012. 1월

o 제5차 산림기본계획 분야별 전반기 주요 성과 및 반성 점검 : 2012. 1월

o 학계, NGO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2012. 2월

o 후반기(’13～’17) 정책개발을 위한 T/F팀 워크숍 개최 : 2012. 2월

o T/F팀 내 실무 작업반 구성 및 운영 : 2012. 1～9월

o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2012. 5～6월

o 신규 추진과제에 대한 예산 반영 협의 진행 : 2012. 5～8월

o 초안을 토대로 지방청 지역산림계획(안) 수립 추진 : 2012. 9～12월

o 후반기 기본계획 최종안 수립 및 산림정책심의회 심의·의결 : 2012. 9월

o 제5차 산림기본계획(’13～’17) 확정 및 고시 : 2012. 12월

# 2.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

목 표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산림부문의 탄소배출권 거래기반 구축

## 가. 정책여건

o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후속조치 이행 필요

o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경감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산림부문 탄소배출권 거래기반 필요

o 산림부문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지자체, 국민, 기업 등의 실천여부가 성패를 결정하므로 이들의 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필요

## 나. 기본방향

o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 이행

o 산림부문 탄소배출권 거래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사업 사업유형 확대 및 참여기업 다변화

o 기후변화 시대에 산림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 확산 도모

## 다. 세부추진계획

### 1) 기후변화 대응 산림부문 정책 및 법적 기반 마련

o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법률」 시행령 작성
- 산림, 재조림, 산림경영 등의 정의 및 활동범위를 규정
-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세부 항목 및 수립 절차와 방법을 명시
-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구성, 임면, 운영방법 등 명시
-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내용 규정

o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 법 시행과 동시에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여건 및 전망, 연구개발, 통계 구축,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심층 분석

o 산림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 수립
- 미국, 일본, EU 등 기후변화 대응 선진 국가의 R&D 계획 및 실적 분석
- 우리나라의 산림부문 기후변화 연구현황 분석 및 진단
- 기후변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방안 마련

o LULUCF 주무부처로서 역할 확립

### 2)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

o 산림탄소상쇄를 기존의 조림에서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등으로 확대
- 산림탄소상쇄 사업 구분 및 분류체계 구축
- 국제기준에 부합한 표준 매뉴얼 개발
- 산림청-과학원-녹색사업단(산림탄소센터)간 유기적 협조로 운영 체계 확립

o 산림탄소상쇄 참여기업을 에너지 다소비 기업, 지자체 등으로 다변화
- 지방산림청에 지방산림탄소센터를 시범 설립하여 지역 요구에 밀착 대응
-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을 개발하여 기업들의 선택폭을 확대

o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환경부, 녹색위)와 지속 협의

### 3) 기후변화시대 산림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홍보 강화

o ‘기후변화와 산림’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컨텐츠 및 메뉴 개발을 강화하고 국내 정책 및 해외동향을 지속 업데이트

o 방송, 철도, 대중교통 등 일반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별 기획시리즈 연재 및 각종 캠페인 활동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o 교사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산림아카데미’ 운영(산림과학원)

## 라. 추진일정

o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 : 연중
o「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법률」시행령 작성 : 2012. 3/4분기
o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수립 준비 : 연중
o 산림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R&D 로드맵 수립 : 2012. 10월
o ‘기후변화와 산림’ 아카데미 운영 : 분기별

#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목 표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기반구축
◇ 국내산림인증기구 설립 추진

## 가. 정책여건

o 국제적「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행 평가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경영인증의 필요성 인식 확산

o 몬트리올프로세스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과 지표" 개정('08년)에 따른 우리나라의 관련 기준과 지표 개정 및「산림지속성지수」의 산정 필요

## 나. 기본방향

o FSC 산림경영인증림 확대 및 국내 산림경영인증제 도입기반 마련

o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과 지표 개정 및「산림지속성지수」 산정결과 정책 반영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림경영인증림 확대 및 국내인증 도입 기반마련

o 국유림의 FSC 산림경영인증림 확대 및 산림경영인증 심사기관 다변화

- 산림경영인증림의 유지 개소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경영계획구 단위에서 당해 기관의 전체 경영면적으로 확대하여 인증심사 추진

  * 함양관리소 본심사, 홍천관리소 등 7개소 유지 및 갱신 심사

- 생산량 증가를 통한 산림경영인증 목재 인지도 제고 및 유통·활용기반 마련

- 산림경영인증 심사기관(1개)의 다변화(2개)로 심사과정의 경쟁을 통한 업무효율성 모색

o 국내 “산림경영인증제” 도입을 위한 가칭 한국산림인증기구(KFCS, Korea Forest Certification System) 설립

- 한국임업진흥원 주도하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산림기술인협회 등 업계의 동의 확보 후 추진
  * PEFC의 국제상호인증은 1개국 1산림인증단체 원칙을 고수
- 지위 및 성격이 독립적이고 제3자 인증기관의 성격을 분명하게 함
- 설립에 필요한 기준지표 및 심사원 자격 등 심사체계를 분명하게 함
- 이사회, 전문가회, 사무국, 감사위원회, 평의회로 구성하되 이사회는 사회명망가로 구성하고, 평의회 기구는 환경NGO,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함
  * 유럽・북미 상호인증기구인 PEFC와의 상호인증 협의 등은 추후 추진

## 2)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과 지표 개정 검토 추진

o 몬트리올프로세스 기준과 지표[1]가 ’08년 개정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관련 기준과 지표[2]는 ’05년 개발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14년 국가보고서 작성에 대비하여 기준과 지표의 개정 검토 필요
- 몬트리올프로세스뿐만 아니라 헬싱키프로세스(범유럽프로세스)의 기준과 지표 등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기준과 지표 선정
- 기준과 지표 개정에 따라 「산림기본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등의 개정여부 검토

## 3) 산림지속성지수의 산정결과 활용 기반 마련

o ’09년 최초로 「산림지속성지수」 산정 이후 2년 만인 ’11년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수준을 다시 측정

- ’09년의 “산림지속성 지수[3]”에 대한 현행화 등 개선・보완
- 이에 따른 산림지속성 지수 산출 프로그램의 고도화 추진기반 마련
  * PC환경에서 엑셀을 기반으로 한 수작업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하던 방법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11년, 과학원)

---

1) 몬트리올프로세스 SFM C&I 개정 내역 : 7개 기준 67개 지표 → 54개 지표
   - 정량지표(1~6기준, 47개 지표 → 44개 지표), 정성지표(7기준, 20개 지표 → 10개 지표)

2) 우리나라 SFM C&I 개발 내역 : 7개 기준 28개 지표

3) 산림지속성지수 : 3개 부문(산림의 건강성·경제성·공익성) 19개 지표

o 산출 결과 산림지속성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하여 지속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

- 본청, 소속기관, 지자체가 활용하여 정책에 환류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산림지속성지수의 개선·보완, 지수 산출프로그램 고도화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지표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추진

## 라. 추진일정

o '11년도 산림지속성지수의 산정결과 본청 각과 및 소속기관 통보 : 2012. 2월

o 산림경영인증 본심사(함양), 갱신 및 유지심사(홍천 등 7개소) : 2012. 1~12월

o 국내인증기구 도입을 위한 한국임업진흥원 협의 : 2012. 3월

o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산림기술인협회 등 관련단체 협의 : 2012. 4~6월

o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과 지표 개정 검토 : 2012. 9월

o 한국임업진흥원 산하에 국내인증기구 설립 추진 : 2012. 하반기

# 4. 산림 R&D사업 운영체계 개편

목 표

◇ 지속가능한 녹색복지국가 실현을 선도하는 산림과학기술개발

## 가. 정책여건

o '12년도 R&D사업 예산 큰 폭 증액 : 총 892억 확보(정부안)
-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 연구 등 순수사업비 대폭 증액(702억, 19.7% 증)
* 한국임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연구개발비 53억원 이관

o 산림 R&D사업 운영체계 개선 요구(국회 지적)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타 분야와의 산·학·연 컨소시엄 활성화 요구
- 산림청 R&D통합관리(본청, 과학원 및 수목원) 시스템 구축 시급

## 나. 기본방향

o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 연구 등 신규 R&D 사업 역점 추진
- 산사태, 산불, 해안림 연구 및 Seed Vault 기반구축 등 집중 투자

o R&D사업 운영체계 개선 및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공동연구 강화
- 다학제적 융복합 연구 추진을 위한 타학문 분야 적극 참여 유도

o 연구성과 도출 극대화를 위한 유연성 있는 과제관리
- 사업단 과제의 유연성 있는 관리를 통한 연구기간 및 연구비 다양화

## 다. 세부추진계획

### 1) 기획·자유과제 및 기초연구사업단 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

o 기초연구사업단·기획공모과제·자유공모과제 선정 평가 차별화
- '11년 사업단 4개(30억), 기획 14개(35억), 자유응모 46개(60억) 과제 수행

o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자 유전자원 수집 분야 등 적극 투자

### 2) R&D 사업 운영체계 개선 및 산·학·연 컨소시엄 확대

o 산림 R&D 사업 총괄 및 조정 기능 강화
- '국·공립 산림연구기관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실무협의 강화

o 연구개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팀 구성 유도
- 과제선정 평가시 산학연 컨소시엄 과제에 대한 가점 부여(최대 5점)

### 3) 연구과제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제운영·관리 강화

o 산림분야 R&D 공모사업 선정시 사전 심사 강화
- 맞춤형 특허동향조사를 100% 실시(신규예산 8억원 확보)

o 연구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지방임업연구 적극 지원
- 산림청 R&D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성과 모니터링 전문인력 배치
- 지역소득개발 연구사업 및 지방 전문연구소 설립 적극 지원

## 라. 추진일정

o 기획·자유 및 사업단 계속과제 연차평가 : 2012. 1월
- 연구성과 평가를 통하여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유연성 있게 조정

o '12년도 기획 및 사업단 신규과제 공모 및 선정평가 : 2012. 1~2월
- 산·학·연 컨소시엄 활성화 유도 등 산림 R&D사업 운영체계 개선

o 기획·자유 및 사업단 계속과제 협약 및 신규과제 협약 : 2012. 3~4월

o 산림과학기술위원회 개최 : 2012. 4월

o 국·공립 연구기관협의회 개최 : 2012. 8월

o 산림분야 R&D 발전방안 워크숍 : 2012. 9월

o 산림청 R&D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2012. 11월

o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작성 : 2012. 12월

# 5. 녹색자금 투명성제고 및 녹색사업단 경쟁력 강화

목 표

◇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체계 개선으로 투명성 제고
◇ 녹색사업단 자체사업 발굴 및 경쟁력 강화
◇ 「산림비전센터」의 설립 및 운영·관리

## 가. 정책여건

o 녹색자금의 투명한 사용에 대한 국회, 언론 및 일반국민들의 관심 고조
o 복권위의 평가를 통한 복권기금 배분비율 조정으로 평가의 중요성 부각
o 임업인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산림비전센터” 설립 필요성이 제기

## 나. 기본방향

o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업무를 외부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투명성 제고
o 녹색사업단 직영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o 국토녹화 위업을 기념하고 임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산림비전센터」운영

## 다. 세부추진계획

### 1)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체계 개선

가) 평가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관련 지침 개정 및 새로운 평가툴 마련

o 평가결과를 다음 사업지원 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상위규정인「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개정
-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하위규정인「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 규정」제정

o 녹색자금 성격에 부합하는 평가지표와 평가매뉴얼 개발
- 사업의 질적인 부분까지 평가할 수 있는 평가표 개발

나) 외부 평가전문기관에 평가업무 위탁

o 평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 위탁 실시
- 산림·복지·회계·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

다)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로 사업성과 제고

o 평가 상위 기관에는 지원금 확대, 계속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o 평가 하위 기관에는 지원금 축소, 지원중단 등 페널티 부여

☞ 복권위의 기관평가에서도 '11년도에 이어 6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 2) 녹색사업단 자체사업 발굴 및 경쟁력 강화

가) 녹색사업단 직영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o 백두대간숲생태원 운영

- 동절기 프로그램, 시즌특별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비수기 고객 확보 및 방학, 사회적 이슈 등의 트랜드에 맞춘 특별프로그램 운영
- 유·청소년, 유관기관, 정부·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단체고객 발굴 등을 통하여 운영의 경제성 확보

o 사회복지나눔숲 조성

- 숲속의 집, 편시설 임대사업을 넘어 각종 산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산림교육·문화사업 중심의 시설운영으로 기존 산림휴양시설과의 차별화 추진
- 대규모 건축물보다 프로그램 운영, 산림휴양을 위한 숲속교실, 야외공연장, 캠핑장, 산책로 등의 공간조성에 주력

나) 기존 출연금(920억원)을 활용한 적극적 투자사업 추진

o 대전지역내에 녹색사업단 자체 사옥 확보 추진

- 총규모 100억원 이내에서 수익성과 투자성이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자체 사옥 및 임대사업 추진

o 해외산림자원 확보 추진

- 파라과이('12년 목표 : 1,000ha) 및 인도네시아('12년 조림목표 : 1,000ha)
- 뉴질랜드 등 조림선진국을 대상으로 투자타당성 조사 및 투자진출 모색

## 3) 「산림비전센터」의 설립 및 운영·관리

가) 「산림비전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 보완

o 설립취지,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 리모델링 실시

- 건물외관을 「산림비전센터」의 이미지에 걸맞도록 개선·보완(정문확장, 외벽 보완 등)
- 옥상녹화, 산림교육홍보관 등 설치를 통한 시민개방형 휴게공간 조성
- 스마트워크 시설, 회의장 등을 설치하여 산림청 업무능률 향상 도모

나)「산림비전센터」운영・관리

o 산림청 서울사무소, AFoCO 및 관련기관・단체를 입주시켜 명실상부한 임업인 소통의 장으로 활용
- 산림비전센터의 지속적 운용 등을 고려하여 임차비・관리비 결정(전문기관 산정)
- 일정 규모 이상은 센터 운영차원에서 일반인에게 임차

o 산림비전센터 관리・운영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관리
- 산림비전센터의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사업단 고유 목적사업추진 및 인력운용의 효율화, 사업추진의 신속성 등을 통한 경영개선 도모
- 산림비전센터의 성공적 설립 및 원활한 업무추진과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하여 사업단 상주직원 근무

## 라. 추진일정

o 녹색자금 운용・관리
- 평가지표, 평가 매뉴얼 개발 및 평가규정 마련 : 2011. 11~2012. 2월
- 외부 평가전문기관에 평가업무 위탁 : 2012. 3월
- 외부 평가전문기관 평가 및 결과 보고 : 2012. 3~2013. 2월
- 평가결과 환류적용 : 다음 녹색자금지원 사업자 선정시

o 사회복지나눔숲
- 기본, 실시설계 : 2011. 11월 ~ 2012. 4월
- 조성계획 승인 : 2012. 4~5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2012. 6월 ~ 2013. 5월

o 파라과이 조림사업
- 토지확보 및 조림식재 : 2012. 7~9월
- 추가대상지 식재 : 2012. 9월

o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 토지확보 및 조림식재 : 2012. 9~10월

o 목재장기비축기지 조성사업
- 적정조림대상지 선정 및 투자타당성 조사 : 2012. 7월
- 현지법인 설립 및 조림 실시 : 2012. 10월

o 산림비전센터 설립
- 건물 리모델링 실시 : 2011. 12월 ~ 2012. 7월
- 관련단체입주 : 2012. 4월
- 산림비전센터 개관식 : 2012. 4월

# 6. 한국임업진흥원 설립 및 조기정착

목 표

◇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기관 조기정착을 통하여 안정화
◇ 국립산림과학원을 일부 법인화하여 새로운 공공기관 설립
◇ 신설기관의 조직안정화와 임업의 산업화를 위하여 지원추진

## 가. 정책여건

o 국가주도의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파생과 실용화를 위한 법인화 추진('08.1)

o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11.7.25)
- 과학원의 연구기능은 제외하고 사업기능은 법인화 실시

o 과학원 및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서 처리하던 민원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처리

o 신설기관의 조기정착과 수익창출 등 임업의 산업화 요구 증대

## 나. 기본방향

o 한국임업진흥원의 성공적인 설립 및 정착

o 기관 안정화를 위한 한국임업진흥원 지원체계 구축

o 산림청 위탁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자체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업무영역 확장

## 다. 세부추진계획

### 1) 한국임업진흥원의 성공적인 설립

o 법령개정 및 한국임업진흥원 제규정 제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한국임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필수규정 제정(설립위원회)
  · 정관, 이사회운영, 인사, 복무, 회계, 직제 규정 등

o 임직원선발
- 임원의 공모 및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한 산림청장 임명
- 과학원 직원의 전환대상자 선정 보직발령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직원승계 및 보직발령

o 공공기관 승인 신청 및 지정협의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정 승인신청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승인을 위한 협의

o 기관설립 준비 및 홍보실시
- 장비이전, 업무이관, 사무실정비, 시스템구축 등 설립준비
- 설립기념행사(1.26)
- 안내문발송, 홍보 리플렛 제작, 각종행사 연계홍보

### 2) 한국임업진흥원의 지원체계 정비

o 한국임업진흥원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산림관련 법령 및 각종 규정에 한국임업진흥원 위탁 근거 규정마련

o 한국임업진흥원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의 공동발전협의체 구성・운영

o 공공기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조직평가 및 업무평가 실시

o 경영평가에 대응하고 신규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직원워크숍 실시

### 3) 한국임업진흥원 사업 확대 및 기관 활성화 방안 추진

o 산림청 각 실과의 사업 중 한국임업진흥원 위탁가능사업 발굴
- 임업통계사업, 휴양・치유분야 평가사업 등

o 한국임업진흥원의 자체 신규사업 개발로 수익사업 발굴
- 지자체 산림개발 계획참여, 위탁사업 확대

## 라. 추진일정

o 임직원 선발 및 사무실 입주공사 실시 : 2011. 12월

o 설립등기 신청 : 2011. 12월

o 한국임업진흥원 공공기관 지정 추진 : 2012. 1월

o 한국임업진흥원 개원 행사 : 2012. 1. 26

o 예산집행 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 2012. 1월

o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 직원연찬회 : 2012. 2월

o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전략 토론회 : 2012. 5월

# 7. 조　림

목　표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

- 조림 16,943ha, 40,330천본, 707억원 -

## 가. 정책여건

o 세계적인 산림면적 감소 및 경제성장으로 인한 목재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목재자원 공급을 위한 경제림육성이 시급

o 지구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요증가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녹색일자리 공급확대 필요

o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낮아 산주들이 목재생산용 장기수 조림을 기피하고, 특용수·유실수 식재를 선호

o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등에서 벌채를 환경파괴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

o 주 5일제근무 확대 등 여가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산림욕, 등산, 캠핑 등 숲을 찾는 산림휴양 인구의 증가

## 나. 기본방향

o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우량 목재자원 공급기반 조성
- 이용가치가 적은 불량림은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갱신
- 설계·감리제도의 정착과 문제점 개선으로 조림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o 목재펠릿 등 바이오매스 원료 공급을 위한 바이오순환림 조성 확대
- 국·사유림을 연계하여 대면적 단지화 조성 중점추진
- 리기다소나무림을 산업용재로 공급하고 바이오순환림으로 조성

o 도로변 경관조림 및 덩굴류 집중제거로 아름다운 숲 조성
- 산불피해지 복구,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추진
- 특용수·유실수 등 현금보조 조림으로 다양한 조림 수요에 대처

# <2012년 조림계획 : 16,943ha, 707억원>

| 구분 | 사업내용 | '12년 조림계획<br>(국고보조금) |
|---|---|---|
| ① 경제림조성 | ▪ 보조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
| | ▪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 바이오매스 등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조림 및 단기소득 조림<br>-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수조림 등<br>▪ 3,000본/ha, 479만원/ha | ▪ 11,736ha, 392억원<br>· 국유림: 1,060ha, 34억원<br>· 민유림:10,676ha, 358억원 |
| ② 큰나무조림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 ▪ 3,487ha, 208억원<br>· 국유림: 840ha, 76억원<br>· 민유림: 2,647ha, 132억원 |
| 가. 큰나무공익조림 | ▪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등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수종 식재(수고 1.5m 내외)<br>▪ 350본/ha, 1,167만원/ha | ▪ 1,087ha, 66억원<br>· 국유림: 40ha, 5억원<br>· 민유림: 1,047ha, 61억원 |
| 나. 산림재해방지조림 | ▪ 산사태, 산불·병해충 및 태풍 피해지의 신속한 복구와 예방을 위한 조림<br>▪ 1,500본/ha, 887만원/ha | ▪ 2,400ha, 142억원<br>· 국유림: 800ha, 71억원<br>· 민유림: 1,600ha, 71억원 |
| ③ 유휴토지조림 | ▪ 보조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
| | ▪ 한계농지, 마을공한지 등에 식생복원 및 소득 증대를 위해 특용수, 조경수 등을 식재<br>▪ 800본/ha, 282만원/ha | ▪ 1,020ha, 20억원<br>· 민유림: 1,020ha, 20억원 |
| ④ 지역특화조림 | ▪ 보조율 : 국고 70%, 지방비 30% | ▪ 700ha, 52억원<br>· 국유림: 300ha, 11억원<br>· 민유림: 400ha, 41억원 |
| 가. 금강소나무육성 | ▪ 강원·경북지역의 문화재용 특수재, 고급 대경재 생산을 위한 금강소나무림 보전 및 후계림 육성<br>▪ 천연하종, 인공식재, 숲가꾸기 등 350만원/ha | ▪ 400ha, 13억원<br>· 국유림: 300ha, 11억원<br>· 민유림: 100ha, 2억원 |
| 나. 안면소나무육성 | ▪ 충남 태안지역의 문화재용 특수재, 고급 대경재 생산을 위한 안면소나무림 보전 및 후계림 육성<br>▪ 천연하종, 인공식재, 숲가꾸기 등 350만원/ha | ▪ 100ha, 2억원<br>· 민유림: 100ha, 2억원 |
| 다. 섬지역산림가꾸기 | ▪ 강한 해풍, 척박한 토양 등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훼손되고 있는 섬지역 산림의 녹화<br>▪ 객토, 유기질비료, 물주기, 자생수종의 식재 및 보육 등 2,012만원/ha | ▪ 100ha, 14억원<br>· 민유림: 100ha, 14억원 |
| 라. 대구경관림조성 | ▪ 2013년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장 주변 경관림 조성<br>▪ 도로변 공한지 등 회의장 주변 녹화조림 20억원 | ▪ 1개소, 14억원<br>· 민유림: 1개소, 14억원 |
| 마. 장성편백림조성 | ▪ 전남 장성지역 편백림을 특화숲으로 조성 및 관리<br>▪ 편백 조림 및 학습시설 1,167만원/ha | ▪ 100ha, 8억원<br>· 민유림: 100ha, 14억원 |

# <2012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 구분 | 종전 | 변경 |
|---|---|---|
| 경제림조성 통합단비 | o 내역사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단비적용 및 사업량 배정<br>- 경제수일반조림(331만원/ha)<br>- 바이오순환림조성(510만원/ha)<br>- 생태조림(108만원/ha)<br>- 속성경제수조림(450만원/ha)<br>- 큰나무일반조림(720만원/ha)<br><br>※ 지자체 자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분류기준이 모호하여 사업실행에 혼선 | o 내역사업 통합단비 적용<br>- 예산편성 단비를 ha당 479만원으로 통합<br>o 경제림조성 종류를 조림목적에 따라 구분<br>① 목재생산조림<br>② 바이오순환림조성<br>③ 특용수조림<br>o 조림방법은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br>- 소묘, 중묘, 대묘, 움싹, 파종, 천연하종 등 탄력적 선택<br>※ '12년부터 목재생산목적 대묘조림은 경제림조성으로 실행 |
| 바이오순환림 | o 바이오순환림의 개념<br>- 간벌재로 목재펠릿 원료를 공급하는 산림<br><br>o 속성수 식재를 통한 조성<br>- 생태조림(맹아갱신)은 포함되지 않음<br>o 바이오순환림의 60% 이상을 백합나무로 조성 | o 바이오순환림 개념의 확대<br>- 펄프재, 표고자목 등 소,중경재를 산업용재로 공급하는 산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br>o 생태조림(맹아갱신) 적용 가능<br>- 단벌기 순환림으로 조성<br>o 백합나무 60% 식재비율 삭제<br>- 지역별 적합수종으로 식재 |
| 특용수조림 | o 속성경제수조림에 특용수 일부 반영<br>- 용재수종 70%, 특용수 30% 식재<br>- 용재수종 조림지에 특용수 병행 식재 | o 경제림조성 사업량의 10% 범위 안에서 지자체 자율적으로 실행<br>- 주거지·경작지 주변에 조림 지원<br>- 민간보조로 편성 가능<br>※ 산주 희망수종 직접 구매 |
| 산림재해 방지조림 | o 재해 복구지에 한하여 조림<br>- 산불, 병해충 등 재해 피해지의 복구조림 | o 조림 대상지의 확대 적용<br>- 재해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조림도 가능(산사태등)<br>o 조림면적의 확대<br>- ('11) 600ha → ('12) 2,400ha |
| 설계감리 | o 간접노무비 비율 11%<br>- 전문공사로 적용<br>o 동력식혈기 품셈 없음<br>- 인력공정 적용(12인/ha) | o 간접노무비 비율 10.8%<br>- 조경업종으로 분리 적용<br>o 동력식혈기 품셈 신설<br>- 5인1조 기계운용, 10.3인/ha<br>o 산림경영정보 DB구축을 위한 조림지관리도 및 관리대장 관리<br>- 실시설계·감리시 작업지시도, 필지별 사업내역서를 전자파일로 제출 |

## 다. 세부추진계획

### 1) 경제림조성

(단위 : ha, 백만원)

| 구 분 | 계 | 국유림 | 민유림 |
|---|---|---|---|
| 사업량 | 11,736 | 1,060 | 10,676 |
| 사업비 | 39,188 | 3,426 | 35,761 |

※ 보조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o 경제림육성단지(450개, 292만ha)를 중심으로 경영목적에 맞게 조림방법과 식재본수를 다양화하여 경제적이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경제림 조성의 종류>

① 목재생산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산림을 조성하는 조림
-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백합나무 등 지역별 중점 조림수종을 단순화하여 대면적·집단화 조성

※ 조림지 여건을 고려하여 소묘, 중묘, 대묘, 움싹, 파종, 천연하종 등 적절한 조림방법을 적용

② 바이오순환림조성

- 목재펠릿, 펄프재, 표고자목 등 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는 산림을 조성
- 백합나무, 참나무류, 포플러류, 아까시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 속성수 식재 또는 움싹갱신(생태조림)으로 조성

※ 최종적으로 대경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밀식 조림하여 간벌재를 바이오매스로 활용

③ 특용수조림

- 주거지·경작지 주변 등 산림관리가 쉬운 지역에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유실수·특용수 조림(경제림조성 사업량의 10% 범위 안에서 실행)
-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종 및 옻나무, 두릅나무, 헛개나무 등 특용수종을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식재

※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거나, 현금보조방식으로 산주가 직접 구매하여 식재하는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실행

## 가) 목재생산조림

o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조림수종의 선택과 집중으로 생산성 증진

- 현재 경제림 조성의 조림수종이 지나치게 많아 묘목생산, 식재 및 수확벌채의 비효율성 등 임업경영의 수익성이 저하

- 목재, 바이오매스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지역별 조림수종은 단순화하고 대면적으로 규모화하여 조림

  ┌ 확대 : 소나무, 낙엽송, 참나무류(상수리 제외), 백합나무, 자생수종
  ├ 축소 : 잣나무,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 현수준 유지 또는 확대 : 삼나무, 편백 등(기후변화 대비 수종)

o 목재생산 등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은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을 선정하여 대규모 집단화 추진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

| 강원·경북 | 경기, 충남·북 | 전남·북, 경남 | 남부해안 및 제주 |
|---|---|---|---|
| 소나무<br>낙엽송<br>잣나무 | 소나무<br>낙엽송<br>백합나무 | 소나무<br>편백<br>백합나무 | 편백<br>삼나무<br>가시나무류 |

※ 큰나무공익조림, 유휴토지조림 등 경관수종, 유실수・특용수는 지역특성 및 산주 수요를 반영하여 조림(붙임 조림권장 수종 참조)

o 묘목의 종류 및 식재본수는 현지 입지여건과 산림경영 목적에 적합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실행

- 소묘·중묘·대묘, 움싹·파종·천연하종 등 조림지 여건에 맞는 다양한 조림방법을 적용

※ '12년부터 목재생산 목적의 대묘조림은 경제림조성으로 추진

- ha당 3,000본을 기준으로 수종별 특성과 입지여건에 따라 조정 식재
  - 일반 노지묘, 침엽수 용기묘(2-0), 활엽수 용기묘(1-0) 3,000본/ha 식재
  - 비옥지에 낙엽송을 조림하는 경우 2,000본/ha 식재
  - 대경재 생산을 위해 백합나무를 조림하는 경우 1,100본/ha 식재
  - 백합나무로 바이오순환림 조성시는 2,000본/ha 이상 식재
  - 소나무, 잣나무, 편백 등 대묘는 1,500본/ha 식재

<주요 수종의 묘목규격>

| 수종별 | 소묘 | 중묘 | 대묘 | 비고 |
|---|---|---|---|---|
| 소나무 | 1-1 | 2-0(용) | 1-1-2 | |
| 낙엽송 | 1-0 | 1-1 | - | |
| 잣나무 | 2-2 | 2-3 | 2-2-3 | |
| 편백 | 1-1 | 1-1-1, 2-0(용) | 1-1-2, 1-2-2 | |
| 삼나무 | 1-1 | 1-1-1 | - | |
| 리기테다소나무 | 1-1 | 2-0(용) | - | |
| 백합나무 | 1-0, 1-1 | - | - | 식재후 대절 |
| 가시나무류 | - | 2-0(용) | - | |

※ 조림용 묘목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된 묘목을 수급(종묘 생산지증명 등)

o 조림목의 활착률을 높이고 사후관리 비용 절감을 위하여 종묘사업실시요령에서 정하는 규격 묘목으로서 묘령 및 규격이 큰 중·대묘 조림을 확대

- 산림내 유기물이 축적에 따른 조림목의 경쟁 식생 번성에 대응하고, 농·산촌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증가에 대처
- 경제림 조성을 위한 소나무, 낙엽송, 편백 등 중점 조림수종의 묘목 크기를 상향 조정하되, 속성수, 활엽수 조림은 중·대묘 조림 지양
- 중·대묘 식재본수는 묘목 규격 상향에 따라 적정비율로 하향 조정

※ 소묘(3,000본/ha)와 대묘(1,500본/ha)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비옥도와 생장속도를 감안하여 설계에 의하여 적정 본수 산출

o 용기묘 조림은 우량 대경재 생산이 가능한 침엽수 용재수종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

- 용기묘 생산 효율성, 현지 적응성이 높은 수종을 중심으로 확대
-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육성단지를 위주로 용기묘 조림 추진

※ 단벌기 경영 목적의 산림은 용기묘 조림 대상에서 제외(상수리나무 등)
예) 표고자목 생산, 목재칩 생산을 위한 바이오순환림조성 등

o 리기다소나무림, 불량활엽수림 수종갱신 지속적 추진

-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벌채시기에 도달한 녹화수종,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불량림은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갱신

o 조림목의 절단 방지 및 효율적인 풀베기 작업을 위해 조림목 표시봉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대나무 등 환경친화적인 천연소재 사용

o 허가(신고)에 의한 벌채지 및 훼손지가 방치되지 않도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의무조림 및 조림명령 철저 이행

o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식생기후대 북상에 따른 조림수종의 변경은 지역별로 점진적으로 조정

- 장기적으로 제주도에서 생육하고 있는 상록활엽수종 등 난대 수종을 온대 중부지방까지 확대

- 온대 중・남부 지역 잣나무・리기다소나무림 등의 수확지에 기후변화 대응 시범조림을 추진하여 점진적 변화를 유도

- 편백, 백합나무 등 기후대 적응 범위가 넓은 수종을 확대하되, 조림수종의 조정은 산림기후대 북상 추이에 따라 신중히 검토

o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난대·아열대 수종 시험조림 및 대체수종 개발

- 지방청별로 3~5ha를 시험조림한 후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와 연계하여 적응성 및 생육상황 모니터링

※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 난대 유망수종 자원화 연구('08~'12)

- 북부·동부·중부는 편백 등 난대수종, 남부·서부는 붉가시나무 등 난대·아열대 수종 시험 식재

※ 리기테다소나무는 바이오순환림으로 온대중부 지역까지 조림 확대

## 나) 바이오순환림조성

o 목재펠릿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속성수 식재 또는 움싹갱신(생태조림)을 활용하여 바이오순환림을 조성

- 바이오순환림 조성계획에 따라 '20년까지 10만ha 조성

- 소・중경재 단벌기 순환림 또는 대경재 생산림의 간벌재를 바이오매스로 활용

※ 실행요령은 붙임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관리 요령', '바이오순환림 조성계획'(자원육성과-940호, 2009.2.26) 및 '바이오순환림조성 실행계획'(산림자원과-3673호, 2009.12.18) 참조

o 조성대상지는 가급적 토지생산성이 높고, 임도 등 기계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선정

- 리기다소나무 벌채지, 백합나무 조림지는 바이오순환림으로 우선 조성

※ '리기다소나무 갱신요령' 참조(산림자원과-3407호, 2005.9.6)

o 펠릿공장, 탄소순환마을 등 수요처와 국·사유림을 연계하여 대면적 단지화 조성을 중점 추진

- 기관별 바이오순환림 시범단지 운영 및 연차별 조성계획을 준수하여 추진
  - 대면적 시범단지(개소당 50ha 이상) : 지자체(도) 및 지방청별 2개소
  - 국·사유림 연계 시범단지 :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북부, 중부, 서부 각 1개소

※ 시·도별 연차별 조성계획(변경) 및 시범단지 내역은 붙임 참조

o 불량림 벌채, 비료주기 등 설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셈적용 등 원가계산에 차질 없도록 반영

- 바이오순환림 조성시 공정산출 및 설계 참고사항
  - ·불량림의 벌채가 수반되는 경우는「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의하여 벌채공정 반영
  - ·운재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위 요령으로 공정 반영
  - ·조림목의 빠른 생육을 위하여 반드시 전면적 비료주기 작업 실행
  - ·기타 식재공정 등은 일반 조림사업에 준하여 설계

o 조림수종은 지역별 산림식생기후대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고, 식재본수는 대상지별 입지여건과 묘목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식재수종 : 백합나무, 리기테다소나무, 참나무류, 포플러류, 아까시나무 등 (자작나무는 온대북부 지역에 식재)
- 식재본수
  - 백합나무, 포플러류 : 2,000본/ha 이상
  - 기타수종 : 3,000본/ha 이상

※ 백합나무 2천본구 식재간격은 2×2.5m 또는 5×1m 등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하고, 대절 후 2개 이상 움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풀베기 또는 어린나무가꾸기시 정리

o 척박지, 능선부 및 산정부 등 백합나무 식재가 부적합한 대상지는 임지여건을 고려하여 침엽수 용재수종을 대상교호 또는 군상혼효로 식재하되, 간벌재를 바이오매스, 산업용재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ha당 3,000~5,000본까지 밀식

※ 대상·혼효 식재한 용재수종은 바이오순환림 단지면적에 포함

o 조림비용의 절감과 조림지 사후관리 어려움을 감안하여 움싹, 천연치수 등 자연복원력을 이용한 저비용·고효율 조림 추진

- 자연복원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움싹, 천연치수 발생 상황에 따라 보완식재(300본~1,000본/ha)
- 보완식재하는 묘목은 움싹, 천연치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속성수로 식재

o 바이오순환림 조성지의 조림 및 사후관리 등 이력을 「바이오순환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 관리번호, 면적, 식재수종, 본수, 종자산지, 실행자 등 조림이력 및 풀베기, 덩굴제거 등 사후관리 이력을 벌채 수확 때까지 관리

o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매뉴얼 및 연차별 운영 모식도 등 체계화(국립산림과학원)

- 바이오순환림 조성 시험연구를 통해 기후대별 수종개발과 식재본수, 간벌시기, 간벌량 및 적절한 수확기 등 효율적인 시업체계 규명

**< 백합나무 대절 요령 >**

▶대절한 백합나무

※ 대절 요령 : 초두부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 식재 후 눈 2~3개를 남기고 지상부 줄기의 3㎝ 부위를 잘라 줌

▶ 대절 후 당년도 7월경

## 다) 특용수조림

o 주거지, 경작지 주변 등 산림관리가 쉬운 지역에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유실수·특용수 조림

-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종과 옻나무, 두릅나무, 헛개나무 등 특용수종을 식재

  ※ 수종제한은 없으나 산지전용 허가·신고대상은 국고보조 제외

- 식재본수는 비옥도, 묘목의 크기 등 토양 및 수종별 특성에 따라 조정

  ┌ 유실수(감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등) : 400~800본/ha
  └ 특·약용수종(옻나무, 두릅나무 등) : 1,500본/ha

o 특용수조림 사업량은 경제림 조성 사업량의 10% 범위 안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 ha당 보조 규모는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 다른 조림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제림조성 평균단비(4,788천원/ha) 이내에서 지원

o 보조방법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발주하거나, 현금보조방식으로 산주가 희망하는 묘목을 직접 구매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추진

- 산주희망, 지자체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비 또는 민간보조로 편성

o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수를 조림하는 산주에게 특용수조림을 우선 지원

- 기 조성된 운재로·작업로의 유지 보수와 비료주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정 반영

o 국유림의 임도, 등산로 주변에는 용재수종 뿐만 아니라 유실·특용수종을 심어 국민들이 찾아오는 숲으로 조성

- 머루, 다래, 오디 등 열매나무와 옻나무, 두릅나무 등 특·약용수 식재

**<특용수조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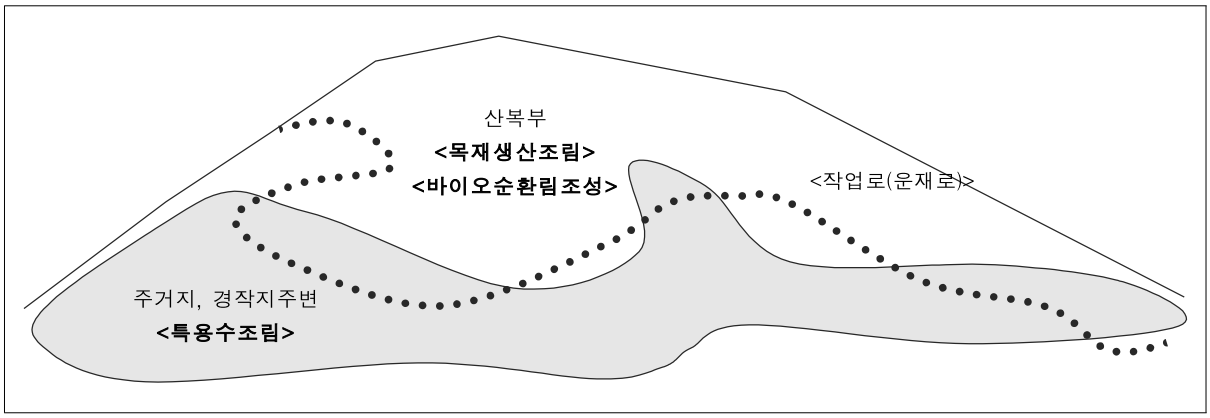


## 2) 큰나무조림

### 가) 큰나무공익조림

(단위 : ha, 백만원)

| 구분 | 계 | 국유림 | 민유림 |
|---|---|---|---|
| 사업량 | 1,087 | 40 | 1,047 |
| 사업비 | 6,574 | 467 | 6,107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o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등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경관수종을 식재

-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등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되, 가급적 지자체별 역점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효과 제고
- 경관수종(수고 1.5m 내외)은 350본/ha 기준으로 식재하되, 조림목의 크기에 따라 식재본수를 가감하여 실행
- 경관조성, 산불예방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목류, 조경수 식재 가능

## 나) 산림재해방지조림

(단위 : ha, 백만원)

| 구분 | 계 | 국유림 | 민유림 |
|---|---|---|---|
| 사업량 | 2,400 | 800 | 1,600 |
| 사업비 | 14,186 | 7,093 | 7,093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o 산사태, 산불, 병해충 및 태풍 피해지 등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 및 예방으로 산림경관 회복 및 생활환경 개선

- 산사태 피해지는 우선 복구를 지원하고, 주택가, 농경지 주변 산사태 우려지는 재해에 강한 숲으로 조성
- 산불 및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등 병해충피해지는 자연복구와 병행하여 인공복구 추진

o 식재수종은 대묘(1,500본/ha) 이상 큰나무를 식재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소묘 또는 관목류 식재 병행

- 피해목 벌채, 비료주기 및 대묘식재 등 기본 공정에 반영

o 태풍으로 인하여 부러지거나 쓰러진 입목 피해지는 2차적인 재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목을 제거하고 집단피해지는 재조림 추진

- 단목(單木), 소규모 분산 피해지는 숲가꾸기 산물처리 방법에 따라 조재 후 임내정리 또는 매각 처분
- 피해목 제거 후 재조림이 필요한 집단 피해지는 조림예정지 정리 작업 후 조림계획에 반영

※「산림자원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제4항에 따라 산물처리

### 3) 유휴토지조림

(단위 : ha, 백만원)

| 구분 | 계 | 국유림 | 민유림 |
|---|---|---|---|
| 사업량 | 1,020 | - | 1,020 |
| 사업비 | 2,013 | - | 2,013 |

※ 보조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o 한계농지, 마을 공한지 등 유휴지에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실수·특용수·조경수·용재수종 등을 식재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의 한계농지
- 2년 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 「지적법」 제5조에 의하여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 '유휴토지조림 5개년 계획' 참조(산림자원팀-1731호, 2006.11.27.)

o 조림수종은 유실수, 산지과수, 특·약용수 위주로 추진하되,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 조림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조림

※ 밤나무는 과잉 생산을 감안 지원대상 수종에서 제외

o 국고보조 단비는 경제수조림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자력 부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기준(단비) 범위 안에서 지원

- 산지과수, 유실수(매실, 감, 호두, 대추, 자두나무 등) : 400~800본/ha
- 특·약용수종(옻나무, 두릅나무 등) : 1,500본/ha
- 목재생산 목적의 용재수종(장기수조림) : 3,000본/ha

※ 조림지 사후관리의 비용절감을 위해 식재시 부직포 등 잡초제거 비용 지원

o 유휴토지 조림 후 5년간은 타용도 전용 및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 판매, 고사시킬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산림사업 보조금의 반환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 조치

o 기후변화 대응 신규 산림조성에 대한 산림사업 실적으로 별도 관리되므로 반드시 계획량 이상으로 추진

- 한계농지 이외에도 식생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 공한지, 도심지 자투리 땅, 녹지조성 대상지, 도로·하천변에도 조림 가능

## 4) 지역특화조림

### 가) 금강소나무 육성

(단위 : ha, 백만원)

| 구분 | 계 | 국유림 | 민유림 |
|---|---|---|---|
| 사업량 | 400 | 300 | 100 |
| 사업비 | 1,295 | 1,050 | 245 |

※ 보조율 : 국고 70%, 지방비 30%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금강소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의 향토수종으로 목재가치가 높고 역사적·문화적으로 우리 민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종임

o 병해충, 산불 등 자연적·인위적 환경변화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통한 후계림 육성이 시급함

※ 숲에 낙엽이 쌓여 씨앗발아가 어렵고, 낙엽활엽수와의 경쟁에서 쇠퇴

<분포현황>

o 금강소나무는 강원, 경북의 백두대간에 주로 분포(373천ha)

- 강원(강릉, 삼척 등) : 226천ha(국유림 28%, 민유림 72%)
- 경북(봉화, 울진, 영양 등) : 147천ha(국유림 25%, 민유림 75%)

※ 금강소나무(*P. densiflora* for. *erecta*)는 소나무(*Pinus densiflora*)의 한 품종으로 곧고 통직하게 자라는 특성이 있음

<사업개요>

o 우리나라 대표수종인 강원·경북지역 금강소나무림의 보전·관리 및 후계림 육성으로 문화재용 특수재 및 고급대경재 생산

-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로 우량임분 육성
- 천연하종, 파종조림, 식재조림 및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로 후계림 조성

<추진요령>

o 문화재용 특수재, 고급대경재 생산을 목표로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우량형질로 육성

- 솎아베기 : 동령림은 생육밀도 조절, 다층림은 상층의 송지채취 또는 산불피해를 입은 대경목 위주로 실시
- 천연림 보육 : 미래목 위주의 금강소나무 육성

o 임지의 여건에 따라 모수작업, 모두베기를 통하여 적정 임분 관리

- 남향 또는 남동향 사면의 노령목 주벌 수확지는 모수작업을 적용
- 벌기에 도달한 임분 또는 과거 송지채취·산화피해를 받은 노령목 분포지역은 모두베기 실시
- 단순림, 혼효림, 단목림 등 임분의 형태에 따라 전문가 현장토론 등을 거쳐 적정 작업종을 결정하여 시행

o 후계림 조성은 일조량, 토질, 경사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천연하종 및 파종조림으로 갱신하고, 식재조림을 병행 실시

- 천연하종 및 파종은 일조량이 많아 종자 발아율이 높은 남동, 남서 사면에 실시
- 어린묘, 대묘, 용기묘조림은 모든 곳에 조림이 가능하나 북향의 경우 생육이 다소 저조하므로 신중히 식재

o 금강소나무 생육분포도 작성 및 DB화하여 각종 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이력 기록관리 및 사후관리 철저

- 후계림 보전을 위한 인공갱신 시험시업지에 대한 생육상황 조사
- 문화재용 특수재 목재생산림 지역 등 사후관리 철저

o 대관령, 소광리 등 지명도가 높은 지역은 금강소나무 시범전시림으로 조성하고 숲 체험 교육장으로 이용

## 나) 안면소나무 육성

(단위 : ha, 백만원)

| 구분 | 계 | 국유림 | 민유림 |
|---|---|---|---|
| 사업량 | 100 | - | 100 |
| 사업비 | 245 | - | 245 |

※ 보조율 : 국고 70%, 지방비 30%

###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안면소나무는 고려시대부터 궁궐재 등으로 공급된 목재가치가 높은 우리나라 고유의 향토수종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우수경영산림으로 선정

o 병해충, 산불 등 자연적·인위적 환경변화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통한 후계림 육성이 시급함

※ 안면소나무 보전·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7～'08년, 충청남도)

<분포현황>

o 충남 안면읍·고남면 일원에 4,802ha 분포(공유림 3,550ha)
  -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안면소나무림은 약 2,770ha
  ※ 수령 80～120년(직경 30㎝ 이상)의 성숙림은 381ha(141천본) 분포

<사업개요>

o 형질이 뛰어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안면소나무림의 보전·관리 및 후계림 육성으로 문화재용 고급대경재 생산 및 관광 자원화
  -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로 우량임분 육성
  - 천연하종, 파종조림, 식재조림 및 비료주기 사후관리로 후계림 조성

<추진요령>

o 밀도조절 등 숲가꾸기 및 후계림 조성을 통해 문화재용 고급대경재를 생산하는 우량림으로 육성
  -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동령림은 밀도조절을 실시하고, 성림지는 솎아베기 후 안면소나무 복층림으로 조성
  - 천연하종, 파종 및 인공식재로 후계림을 조성하여 안면소나무림 확대

o 강산성 토양은 질소질 비료와 석회를 시비하고, 솎아베기로 토양내 공기 유통 및 수분흡수를 촉진하여 안면소나무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교정

o 안면소나무림에 생육하는 리기다소나무는 벌채하여 안면소나무 후계림으로 조성하고, 부실초지 등 유휴지는 복구조림 실시

## 다) 섬지역산림가꾸기

(단위 : ha, 백만원)

| 구분 | 계 | 국유림 | 민유림 |
|---|---|---|---|
| 사업량 | 100 | - | 100 |
| 사업비 | 1,409 | - | 1,409 |

※ 보조율 : 국고 70%, 지방비 30%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강한 해풍과 척박한 토양 등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훼손되고 있는 섬 지역 산림의 녹화 및 식생복원으로 산림경관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o 자생수종의 식재 및 보육,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 섬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림 및 숲가꾸기 적용이 필요

<추진방향>

o 자생수종 중심의 조림·숲가꾸기 추진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o 섬지역 고유의 산림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o 주거지역, 관광지 및 뱃길 가시권 지역의 산림을 우선 추진

<사업개요>

o 자생수종 중심으로 섬 지역 특성에 맞는 조림 방법을 적용하고, 신속한 녹화를 위한 특수공정 적용

- 난대지역은 동백나무, 후박나무, 돈나무 등 난대 자생수종으로서 교목류, 관목류를 식재하여 섬 지역 고유의 산림생태계로 복원
- 큰나무조림을 확대하여 활착률을 높이고 객토, 유기질비료, 수목 운반시 수분접착 마대 활용 등 신속한 산림녹화를 위한 특수공정 개발·적용
- 식재수목의 규격 및 식재본수는 현지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단비표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기준이며, 실제 사업실행은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o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및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 건강한 산림가꾸기 추진

- 치수보육, 움싹조절 등 숲가꾸기를 병행 실시하고, 자생수종으로서 형질이 우량한 나무는 보육작업
- 산림경관을 해치는 덩굴류와 생태계교란종은 제거

※ 사업 제외대상

· 일반 산림지역에서 실행하는 조림 및 숲가꾸기 적용이 가능한 지역
· 산사태, 토사유출 등이 우려되어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
· 국립공원으로서 조림 및 숲가꾸기가 불가능한 지역
· 수목식재 등 산림조성 대상지가 없고 관목류·초본류 식재만 가능한 지역

## 라) 대구경관림조성

(단위 : ha, 백만원)

| 구분 | 계 | 국유림 | 민유림 |
|---|---|---|---|
| 사업량 | 1개소 | - | 1,400 |
| 사업비 | 1개소 | - | 1,400 |

※ 보조율 : 국고 70%, 지방비 30%

o 2013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에너지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장 주변의 경관림 조성

- 총회장 주변 녹화사업 6개소, 고속도로변 사면녹화 및 환경개선 사업

### 마) 장성편백림조성

(단위 : ha, 백만원)

| 구분 | 계 | 국유림 | 민유림 |
|---|---|---|---|
| 사업량 | 100 | - | 100 |
| 사업비 | 817 | - | 817 |

※ 보조율 : 국고 70%, 지방비 30%

o 우리나라 대표적 조림성공지인 전남 장성 편백림을 특화림으로 육성하여 산림녹화를 기념하고 나무심기에 대한 산림교육 공간으로 활용
- 장성 서삼면·북일면 일원 축령산 인근 산촌생태마을, 한옥마을 등과 연계하여 편백림 관광단지화 조성

o 편백 나무심기를 중심으로 마을숲, 산책로 및 가로수길 조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되,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을 나무심기에 집중
- 불량림 친환경적 벌채 또는 강도간벌 후 큰나무 식재
- 마을 공한지 등에 경관 창출을 위한 편백 식재로 주민생활 개선 및 관광자원화
- 축령산 둘레길과 연계한 편백림 산책로는 벌채 및 조림사업시 만들어진 작업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
- 편백 가로수길 조성은 가급적 어린나무가꾸기 및 솎아베기 대상 입목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이식 수목의 활착률 제고방안 강구

o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12.2월 이전에 마치고 식재 및 산책로 조성 등을 10월까지 완료
-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 상황점검 철저

## 5) 설계・감리

(단위 : ha, 백만원)

| 구분 | 계 | 국유림 | 민유림 |
|---|---|---|---|
| 사업량 | 5,046 | 833 | 4,213 |
| 사업비 | 1,434 | 237 | 1,197 |

※ 보조율 : 국고 70%, 지방비 30%

o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및 공무원이 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시행
-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경제림육성단지관리계획 등 기관별로 수립한 조림계획은 기본설계로 활용 가능

o 실시설계는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당해년도 사업 실행전에 실시하거나 전년도에 실시

-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동력식혈기 품셈기준 등 개정된 설계지침 준수

o 이윤율, 간접노무비 등 원가계산 요율 기준은「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을 적용

- 간접노무비는 조경업종으로 적용하고, 일반관리비는 전문공사로 간주

o 조림사업 실행자(시공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없으며, 1회 풀베기 이후 조림지 활착상황을 포함하여 감리 실행

o 임업기계화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동력식혈기 품셈기준을 신설

o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변경에 따라 간접노무비의 적용비율을 종전 전문공사에서 조경업종으로 적용

o 산림경영정보 DB 구축과 조림통계의 전산화를 위해「조림지관리도」및「조림지관리대장」을 전자파일로 관리

-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시 작업지시도, 필지별 사업내역서를 전자파일로 제출받아 지자체·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 세부적인 시행방법은「조림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참조

## 6) 비료주기

o 산불피해지 등 지력회복이 필요한 산림과 척박지 등 재해우려지에 우선 실시하고, 바이오순환림, 경제수조림지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실행

- 경제림조성, 산림재해방지조림, 지역특화조림 등에 포함된 비료주기 공정을 활용하여 조림사업과 병행하거나 분리하여 별도 사업으로 실행

< '12년 비료주기 관련 총사업량 >

(단위: ha, 천kg)

| 구분 | 계 | | 경제림조성 (30kg/ha) | | 산림재해 방지조림 (90kg/ha) | | 금강·안면 소나무육성 (360kg/ha) | | 섬지역 산림가꾸기 (700kg/ha) | | 장성편백림 조성 (360kg/ha) | |
|---|---|---|---|---|---|---|---|---|---|---|---|---|
| | 면적 | 시비량 | 면적 | 시비량 | 면적 | 시비량 | 면적 | 시비량 | 면적 | 시비량 | 면적 | 시비량 |
| 계 | 14,836 | 854 | 11,736 | 352 | 2,400 | 216 | 500 | 180 | 100 | 70 | 100 | 36 |
| 민유림 | 12,676 | 642 | 10,676 | 320 | 1,600 | 144 | 200 | 72 | 100 | 70 | 100 | 36 |
| 국유림 | 2,160 | 212 | 1,060 | 32 | 800 | 72 | 300 | 108 | - | - | - | - |

주) 해당 사업에 기본공정으로 포함된 비료주기임

o 조림목의 뿌리가 활착된 5~6월경(식재 1개월 이후)에 실시하되,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름, 가을철에도 시비

- 초기생장 동안 많은 양분이 요구되는 낙엽송이나 활엽수류는 조림 후 3년간 집중적으로 시비
- 비료주기는 실행시기에 따라 식재작업과 동시 발주하거나 분리하여 개별사업으로 추진(전년도 조림지 등)
- 이듬해 시비할 경우에는 봄철 나무심기가 집중되기 전에 우선 실행하여 조림사업 노동력 분산

※ 시비 작업요령은「산림과 임업기술(II)」산림조성편(229쪽), 붙임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관리 요령' 참조

## 7) 조림지가꾸기

(단위 : ha, 백만원)

| 구분 | 계 | 국유림 | 민유림 |
|---|---|---|---|
| 사업량 | 27,086 | 3,050 | 24,036 |
| 사업비 | 18,037 | 3,651 | 14,386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o 조림지 사후관리의 사업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해 풀베기 및 덩굴 제거를 통합사업으로 실행

- 덩굴류가 없는 조림지는 기존대로 풀베기만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덩굴류 제거사업을 별도 시행

<풀베기 작업요령>

o 작업시기는 5~7월에 실시하고, 연 2회 실시할 경우 8월에 추가 실시

- 잡초목이 무성할 경우에는 연 2회 실시하며, 특히 양수의 경우에는 다른 수종보다 우선 실시
- 비료를 준 조림지는 식재당년과 이듬해에는 연 2회의 풀베기 실시
- 한해·풍해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9월 이후의 풀베기는 피함

o 조림 당년도를 포함하여 3~5년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림목의 수고가 풀베기 대상물 수고에 비해 약 1.5배 또는 60~80㎝ 정도 더 클 때까지 실시

- 잣나무, 소나무류는 5~8회, 낙엽송, 참나무류는 5회를 기준으로 풀베기 대상물의 생장상황에 따라 가감

o 작업방법은 예초기, 낫 등을 이용하여 현지여건에 알맞게 적용하되, 조림목의 식별이 어려운 조림지는 조림목 보호를 위해 인력으로 둘레베기 실시 후 예취기 사용

- 반드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림지 여건에 따라 작업 횟수, 공정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실시

o 풀베기 기간이 끝나면 어린나무가꾸기를 조속히 실행하여 공백기간 동안 조림목이 천연치수, 움싹에 의해 피압되지 않도록 조림지 관리 철저

<덩굴제거 작업요령>

o 조림지 및 도로변에서 산림에 피해를 주는 칡, 가시박 등 덩굴류 제거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

-「덩굴류 제거 5개년 계획」에 따라 조림지 및 도로변 덩굴류 집중 제거
- '09~'10년에 기실행한 '덩굴류 집중제거 사업'과 연계하여 재발생한 덩굴류는 봄철 조림사업이 완료되는 5월부터 집중 제거
- 조림지는 가급적 숲가꾸기 기능인력을 투입하고, 도로변 등 성림지 덩굴제거는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최대한 활용

※ '덩굴류 제거 5개년 계획' 참조(자원육성과-1270호, 2008.12.5.)

<덩굴제거 우선순위>

① 조림지
② 고속도로변 > 국도·지방도변 > 마을도로, 농로 등
※ 도로에서 조망되는 가시지역은 모두 제거대상에 해당함
③ 그밖에 일반 산림지역
※ 산주,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피해가 신고된 산림은 우선 제거

o 덩굴류 제거시에는 맹독성 약제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썩는 비닐랩밀봉, 기계 및 인력굴취 등 친환경적인 제거 방법을 확대

- 덩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작업횟수를 연간 2~3회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사업효과 제고
- 입목이나, 야생동식물, 경작지, 수자원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인력에 의한 제거

o 약제처리 시에는 토양 및 수질오염 등 산림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철저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
- 약제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 디캄바액제는 증발에 의한 약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고온(30℃ 이상)에서 작업 중지
- 약제처리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

o 조림 후 5년이 경과된 조림지로 조림목이 피압되어 생육에 지장이 있는 조림지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조속히 실행하여 조림 성공률 제고

## 8) 조림사업의 기계화 추진

o 농·산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 임업여건 변화에 따라 기계화 도입으로 사업성과 제고 및 사업비 절감

- 식재구덩이 파기, 덩굴제거, 풀베기 등 조림사업의 기계화 작업을 확대하여 작업의 효율성 제고

o 조림용 동력식혈기를 도입하여 작업의 편리성과 조림목 활착률 제고

- 동력식혈기 사용시 곡괭이 등에 의한 인력작업에 비해 식재구덩이를 충분히 팔 수 있어 뿌리 활착에 도움
- 용기묘 식재시에는 가급적 'OK 식재기'를 활용하고, 식재기 사용이 어려운 석력지 등은 인력 또는 기계에 의한 식혈방법 적용

o 조림용 동력식혈기 작업시 적정한 소요인력, 기계경비 등은 품셈기준 적용

- ha당 3,000본 식재시 보통인부 10.3인 및 5인당 동력식혈기 1대 적용
- 동력식혈기 감가상각비, 식혈날 등 소모품 대가 및 유류대 등 연료비 적용

※ 동력식혈기 공정 및 품셈은 개정된 조림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참고

o 덩굴제거,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 작업시 기계이용 활성화

- 덩굴제거 대상지 여건에 다라 인력굴취, 비닐랩밀봉과 병행하여 칡뿌리 절단기 적극 활용
- 풀베기 작업은 예초기 사용을 확대하되, 조림목 피해가 없도록 표시봉을 설치하고 낫에 의한 둘레베기 실행 후 작업

※ 풀베기 및 덩굴제거 공정 및 품셈은 개정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 참고

## 9) 밀원수 조림

o 주요 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 기피 및 생리적 쇠퇴현상 등으로 분포면적이 크게 감소

- '60~'70년대 국토녹화기에 아까시나무를 연료림으로 조성하였으나, 이후 경제발전으로 연료재를 활용하지 않아 대부분 소규모로 분포
- 아까시나무에 대한 산주의 거부감으로 조림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며 채밀수종이 아까시나무에 편중

o 지역특색 및 조림사업 여건에 따라 밀원수종을 다양화하여 조림 추진

- 바이오순환림 조성시 꿀의 채밀량이 많은 백합나무를 지속적으로 조림하고, 경관조림 및 가로수종에 적합한 이팝나무, 마가목 등 밀원수종 조림
- 유휴토지에 특용수종 조림시 헛개나무, 마가목, 층층나무, 음나무 등 조림 지원

<주요밀원수종>

| 개화기 | 교목류 | 소교목류 | 관 목 |
|---|---|---|---|
| 3월 | 동백나무 | 사스레피나무, 회양목, 매실나무 | 진달래 |
| 4월 | 왕벚나무, 산벚나무, 마가목 | | 산딸기, 복분자 |
| 5월 | 아까시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오동나무, 백합나무, 옻나무 | 때죽나무 | 쪽재비싸리, 찔래나무, 말발도리, 쥐똥나무 |
| 6월 | 밤나무, 헛개나무, 감나무, 참죽나무, 피나무, 황벽나무, 산딸나무 | | 싸리나무류 |
| 7월 | 황칠나무 | 모감주나무, 좀목형 | 싸리나무류 |
| 8월 | 음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 두릅나무 | |
| 9월 | | 붉나무, 산초나무 | |
| 10월 | | 차나무 | |

o 국·공유림을 중심으로 밀원수종 산림의 조림 확대 및 관리 강화

- 국유림은 바이오순환림과 연계하여 아까시나무림 단지조성
  ※ '10년부터 5개 지방산림청에서 각 3ha 이상 조성 추진중
- 공유림은 지자체에서 시범단지 조성(도별 1~2개소)
- 사유림은 밀원수종 조림 희망지역에 조림사업비 우선 지원

<지자체별 밀원수단지 조성계획>

| 구분 | 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남 | 경북 |
|---|---|---|---|---|---|---|---|
| 합계 | 228ha | 6 | 6 | 27 | 106 | 75 | 8 |
| 지자체 | 13개 시·군 | 남양주시(3)<br>가평군(3) | 강릉시(3)<br>양구군(3) | 영동군(27) | 공주시(100)<br>논산시(3)<br>보령시(3) | 곡성군(50)<br>구례군(23)<br>강진군(2) | 안동시(3)<br>영양군(5) |
| 수종 | | 헛개나무<br>피나무 | 미정 | 아까시나무 | 아까시나무<br>옻나무 등 | 아까시나무<br>헛개나무 | 아까시나무<br>헛개나무 |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6955(2011.11.21.)호

o 숲가꾸기 작업시 아까시나무, 싸리나무 등 밀원식물 존치

- 숲가꾸기 작업으로 산림내 햇빛 투과량을 증가시켜 하층식생 발생 및 생물종 다양화 유도

※ 3ha 이상 밀원산림 분포 : 3,741개소, 29,278ha('10년)

## 10) 특수수종 시험조림

o 메타세콰이아 및 개잎갈나무(히말라야시다) 등 특수수종의 산지 시험조림으로 다양한 조림수요에 대처

- 묘목 및 조림대상지를 제공하고 종자채취, 양묘, 조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시업내용을 사진 및 문서로 상세히 기록·관리(남부·서부지방청)
- 시험조림지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적응시험 및 모니터링 연구

※ 루브라참나무 등 도입수종의 조림 가능성 지속적 연구 추진(과학원)

## 11) 운두령 특수활엽수 시범단지 조성

o '06년 FSC 인증을 취득한 운두령 지역 특수활엽수 조림지에 산림경영과 목재생산 기술개발·연구를 위한 시범단지 조성(북부지방청)

- 소 재 지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원 국유림 170ha
- 조림수종 : 자작나무, 물박달나무, 들메나무, 피나무, 굴참나무, 산벚나무, 가래나무, 물푸레나무 등('77～'88년 조림)

o 기존 조림지와 연계한 조림확대 및 숲가꾸기로 활엽수 조림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연구 및 방문자 기술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 활엽수 특수용재 생산을 위한 연차별 조림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활엽수림에 대한 체계적인 무육·관리 기술 정립

- 지황 및 임황인자 DB구축과 하층식생 천이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임목생장량 변화 측정 및 희귀·유용식물 등 실태조사 추진
- 임업종사자, 학술분야 등 관계자 방문 시 조림지 견학을 위한 탐방로 개설, 정책홍보를 위한 안내시설 등 방문자 편의를 위한 시설물 설치

## 12) 아이디어 공모 채택 사업 추진

o 산림청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서 채택된 2개 과제에 대한 시범 추진

o 소금을 활용한 덩굴류 제거 : 동부지방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협조하여 덩굴류 제거 효과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제거 효과를 과학적으로 구명한 후 효과 입증시 전국으로 확대 보급 계획

o 백년의 명품숲 조성 : 지역 대표수종을 연차별(100년)로 조림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명품 인공조림지 조성

- (규모) 도・지방청별로 100ha~300ha 규모로 집단화된 산림을 대상

※ 5월말까지 대상지 선정 보고, 연말까지 추친 계획 수립

- (방법) 대상지를 100개 벌구로 구획한 후 매년 조림 및 숲가꾸기 실시
- (기록관리) 산림행정 약사・조림현황 등을 기록한 석판을 매년 조림지 입구에 적재하여 조림탑 조성
- (소요예산) 기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비를 활용

## 13) 제67회 식목일 기념행사 추진

o 식목일을 맞아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추진

- 세계적인 이슈인 지구온난화, 황사 등 지구 환경문제 해결을 나무심기로 상징화

o 기관별 식목일 기념행사는 국가기념일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4월5일 식목일 당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산불예방 등 기관실정에 따라 조정

- 어린이, 지역주민, 기업 등 많은 국민들이 나무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무심기 체험행사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전개

<국민참여 식목일 행사 대상지>

① 2012년 조림지

- 경제림육성단지, 산림재해복구지, 지역특화숲 등 조림사업 예정지

② 생활권 주변지역

- 공원, 도시녹지대, 기관청사 주변, 마을 또는 아파트단지내 공한지, 주요도로 및 철도 조망권내 산림

③ 4대강 희망의 숲 조성지

-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수변공간에 국민이 참여하는 숲 조성

## 라. 추진일정

o '12년 조림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배분 : 2011. 12월

o 지역별 조림계획수립 및 조림예정지정리 : 2011. 12월 ~ 2012. 2월

o 봄철 나무심기 및 제67회 식목일 행사추진 : 2012. 3~4월

o 풀베기, 덩굴제거 등 조림지 사후관리 : 2012. 5~10월

o 조림지 활착상황조사 : 2012. 6~9월

o 가을철 나무심기 추진 : 2012. 9~11월

o '13년 조림설계 및 조림예정지정리 : 2012. 11~12월

<붙임 1>

# 조림 권장 수종

## □ 경제림 조성용 집중 조림수종

| 강원·경북 | 경기, 충남·북 | 전남·북, 경남 | 남부해안 및 제주 |
|---|---|---|---|
| 소나무<br>낙엽송<br>잣나무 | 소나무<br>낙엽송<br>백합나무 | 소나무<br>편백<br>백합나무 | 편백<br>삼나무<br>가시나무류 |

※ 경관조림, 유실수·특용수 조림 등은 조림 권장수종, 지역특성 및 산주수요 등을 반영하여 식재

## □ 바이오매스용 조림수종

○ 백합나무, 리기테다소나무, 포플러류, 참나무류, 아까시나무, 자작나무 등

※ 자작나무는 온대북부지역에 한함

## □ 조림 가능수종(78개)

| 구분 | | 조 림 수 종 |
|---|---|---|
| 용재수종<br>(27) | |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삼나무,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분비나무, 버지니아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백합나무, 자작나무, 음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피나무, 노각나무, 서어나무, 가시나무, 박달나무, 거제수나무, 이태리포플러, 물푸레나무, 오동나무, 황철나무, 들메나무 |
| 경관수종<br>(20) | | 은행나무, 느티나무, 복자기, 마가목, 벚나무, 층층나무, 매자나무, 화살나무, 산딸나무, 쪽동백, 이팝나무, 채진목, 때죽나무, 가죽나무, 당단풍나무, 낙우송, 회화나무, 칠엽수, 향나무, 꽝꽝나무, (백합나무) |
| 유실·특용수종<br>(16) | |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옻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충나무, 두릅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산수유, 고로쇠나무, (음나무) |
| 기타<br>수종<br>(15) | 내공해수종 | 산벚나무, 사스레피나무, 오리나무, 참죽나무, 벽오동, 까마귀쪽나무, 해송, 버즘나무, (은행나무), (상수리나무), (가중나무), (때죽나무) |
| | 내음수종 | 주목, 녹나무, 전나무, 비자나무, (서어나무), (음나무) |
| | 내화수종 | 황벽나무, 굴참나무, 아왜나무, (동백나무) |

※ 조림 권장수종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식재 가능

<붙임 2>

#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 □ 바이오순환림의 개념

o 짧은 기간(20~35년)에 목재를 수확하여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와 산업용재를 공급하는 산림

※ 바이오순환림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임도, 기계화 등 인프라 확충 필수

<바이오순환림의 탄소순환>

<바이오매스 수확>

## □ 바이오순환림에 적합한 수종 및 적지

o 백합나무, 포플러류, 참나무류, 아까시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 속성수

※ 백합나무, 포플러류 2,000본/ha, 기타 수종은 3,000본/ha 이상 식재

o 바이오순환림 조성에 적합한 지역

- 토심이 깊고 비옥한 지역으로 토지생산성이 높은 지역
- 대면적으로 집단화·단지화 조성이 가능한 지역
- 도로, 임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
- 경사가 완만하여 조림·벌채작업에 기계화가 용이한 지역

## □ 연차별 바이오순환림 조성계획

| 계 | '09년까지 | '10년 | '11년 | '12년 | '13~'20 |
|---|---|---|---|---|---|
| 100천ha | 6천 | 6천 | 8천 | 6천 | 74천 |

## □ 백합나무를 이용한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례

▶ 조성대상지(경기 양평)

▶ 조림 3년차(경기 화성)

▶ 성림지(전남 강진)

[참고 1]

#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관리요령

1. 관리목표

백합나무를 이용한 양질의 목재 및 바이오매스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2. 목표로 하는 산림

다음과 같은 목표 생산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림

가. 소경재

(1) 목표지름 : 20cm 미만

(2) 용도 : 펠릿, 칩, 톱밥, 펄프재, 표고자목 등

나. 중경재

(1) 목표지름 : 20cm 이상 40cm 미만

(2) 용도 : 펠릿, 칩, 건축내장재, 소형가구재, 공예재, 일반제재(각재, 판재), MDF, 합판 등

다. 대경재

(1) 목표지름 : 40cm 이상

(2) 용도 : 고급제재(각재, 판재), 건축내장재, 가구재, 펠릿/칩(수확부산물) 등

3. 관리대상

백합나무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해 조성된 바이오순환림으로서 아래와 같음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요존국유림)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안의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

다. 그 밖에 바이오매스 생산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4. 관리의 원칙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은 '2. 목표로 하는 산림'에 따라 목표 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산림사업의 시기, 강도, 횟수 등을 정하여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함

5. 대상수종

조림수종은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구분하여 식재

가. 주수종은 생산목표재인 백합나무를 식재

나. 부수종은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위해 또는 보조적 바이오매스 생산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종 식재

6. 종묘

종묘생산・관리의 일반사항은 종묘사업실시요령(산림청 예규)에 정한 바를 따르며 아래와 같은 묘목유형 사용

가. 묘령 : 1-0묘, 1-1묘

나. 생산유형: 노지묘, 용기묘, 체세포 배양묘

7. 조림

가. 대상지

III영급 이상의 벌기령에 도달한 리기다소나무 갱신지, 기타 수종갱신 대상지 및 신규 조림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1) 바람에 노출된 풍충지(풍충지)를 제외한 지역

(2) 사토, 식토를 제외한 양토, 미사질 양토, 사양토, 미사질 식양토 지역

(3) 산정을 제외한 산복, 산록, 계곡부

(4) 전토심 60cm 이상

(5) 산림입지도(1/25,000)를 활용하여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지 선정

(6) 대상지의 입지, 토양조건을 감안하여 세부 조림구역 선정

나. 벌채

조림대상지의 벌채방법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표3에 제시된 '친환경 벌채 세부기준'을 준용하되 극양수인 백합나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서 제시된 '임연부, 주능선부, 계곡부 존치' 방법을 우선 적용

다. 묘목관리

묘목관리는 종묘사업실시요령(산림청, 예규)에서 정한 바를 따르되 운반 및 보관은 아래와 같이 함

(1) 운송도중이나 상하차 시 묘목이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2) 포장된 묘목은 2~3일 이내 조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식하거나 서늘한 창고에 보관

라. 조림

(1) 식재시기

식재는 이른 봄 묘목의 눈이 트이기 전에 남부지방은 3월 초순, 중부지방은 3월 중순이후에 실시

(2) 식재본수

간벌재 활용을 고려하여 2,000본/ha 이상 식재

(3) 식재간격

간벌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2.5m × 2.0m 간격으로 식재

(4) 대절처리

조림 후 지상부 줄기의 3cm 부위를 잘라줌

8. 숲가꾸기

가. 풀베기

(1) 작업시기

6~7월에 실시하며 연 2회 실시하는 경우 8월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2) 작업횟수

식재당년에 1~2회 실시하고, 지피식생이 많은 곳은 2년차에 1회 실시

나. 덩굴제거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인력제거, 칡뿌리절단기, 비닐랩밀봉처리, 약제처리 등을 적용하고 작업방법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준용

다. 비료주기

(1) 작업시기

식재 당년 6월 하순에 1차 시비를 실시하고 2년차 및 3년차에 해빙이 된 후부터 잎이 나오기 전 사이에 3년 연속 실시함. 이후 5년마다 후기생장 촉진을 위해 시비를 실시하되, 벌기령을 단축하고 조기에 목재생산을 위해서는 매년 시비도 가능함

(2) 시비방법 (수목용 UF완효성복합비료, 산림용 고형복합비료)

나무줄기로부터 20~30cm 떨어진 곳에 일정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산림용 고형복합비료 또는 수목용 UF완효성복합비료 시비

(3) 시비량

집약적 관리가 가능한 경우 연차적으로 식재당년에 본당 60g, 2년차에 90g, 3년차에 120g 시비(비옥지에서는 3년차 시비 생략 가능)하며, 집약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 식재당년 본당 60g을 시비하고 식재 3~5년 후 본당 150g을 시비

※ 임분 관리여건 및 토양조건 등을 감안하여 시비시기 및 시비량을 조정하여 적용

라. 어린나무가꾸기

식재 5년차부터 간벌재 수확을 위한 솎아베기를 실시하면서 불량목을 함께 제거하므로 별도의 어린나무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

마. 가지치기

백합나무는 자연낙지가 잘 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지치기가 필요 없음

바. 솎아베기

바이오순환림의 특성상 바이오매스를 중간에 수확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1~2회 솎아베기(어린나무가꾸기 포함)를 실시하며 벌기령에 따라 솎아베기 횟수를 달리할 수 있음(시업체계 참조)

10. 시업체계

벌기령 20년, 25년, 35년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벌기령에 도달한 임분은 임목의 생장상태에 따라 중경재 또는 대경재 생산을 위해 벌기령을 연장할 수 있음

가. 벌기령 20년 (지위지수 22)

(1) 임령 10년 (50% 열식 제거; 1열 제거 1열 잔존)에 솎아베기 1회 실시하고 임령 20년에 수확

(2) 목표생산재 : 소경재

나. 벌기령 25년 (지위지수 22)

(1) 임령 8년(50% 열식 제거; 1열 제거 1열 잔존)과 임령 15년(50% 제거; 열내 첫 번째 임목 제거, 두 번째 임목 잔존, 세 번째 제거...)에 솎아베기 2회 실시하고 임령 25년에 수확

(2) 목표생산재 : 소경재(간벌재), 중경재(주벌재)

다. 벌기령 35년 (지위지수 22)

(1) 임령 8년(50% 열식 제거; 1열 제거 1열 잔존), 임령 15년(50% 제거; 열내 첫 번째 임목 제거, 두 번째 임목 잔존, 세 번째 제거...), 임령 25년(40% 제거; 우세목 잔존, 불량목 및 열세목 제거)에 3회 실시하여 임령 35년에 수확

(2) 목표생산재 : 소경재(1~2차 간벌재), 중경재(3차 간벌재) 대경재(주벌재)

라. 벌기령 연장

(1) 벌기령 20년 임분은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단벌기 수확 시스템이지만 중·대경재 생산을 위해 벌기령을 35년으로 조정이 가능함

(2) 벌기령 35년 임분은 40cm 이상의 대경재 생산을 위해 벌기령을 40년 이상으로 조정이 가능함

11. 수확 및 산물의 처리 등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

#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의 솎아베기 후 입목본수 기준

(단위 : 본/ha)

| 수 종 | 가슴높이 지름(㎝) | | | | | | | | | | | |
|---|---|---|---|---|---|---|---|---|---|---|---|---|
|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 벌기령 20년 | 2,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 | - | - | - | - | - |
| 벌기령 25년 | 2,000 | 1,000 | 1,000 | 1,000 | 1,000 | 500 | 500 | 500 | 500 | 500 | - | - |
| 벌기령 35년 | 2,000 | 1,000 | 1,000 | 1,000 | 1,000 | 500 | 500 | 500 | 500 | 500 | 300 | 300 |

<시업기준 예시 : 식재본수 2,000본/ha, 지위지수 22 기준>

○ 소경재 : 목표수확기 20년, 목표흉고직경 18cm

| 구분 | 횟수 | 시기 | 평 균 흉고직경 | 평 균 수 고 | 본 수 | 수확량($m^3$/ha) | |
|---|---|---|---|---|---|---|---|
| | | | | | | 간벌 | 주벌 |
| 솎아베기 | 1회 | 10년 | 10cm | 11m | 1,000본 | 38.4 | 184.7 |

○ 중경재 : 목표수확기 25년, 목표흉고직경 30cm

| 구분 | 횟수 | 시기 | 평 균 흉고직경 | 평 균 수 고 | 본 수 | 수확량($m^3$/ha) | |
|---|---|---|---|---|---|---|---|
| | | | | | | 간벌 | 주벌 |
| 솎아베기 | 1회<br>2회 | 8년<br>15년 | 9cm<br>18cm | 9m<br>15m | 1,000본<br>500본 | 25.2<br>68.8 | 197.4 |

○ 대경재 : 목표수확기 35년, 목표흉고직경 40cm

| 구분 | 횟수 | 시기 | 평 균 흉고직경 | 평 균 수 고 | 본 수 | 수확량($m^3$/ha) | |
|---|---|---|---|---|---|---|---|
| | | | | | | 간벌 | 주벌 |
| 솎아베기 | 1회<br>2회<br>3회 | 8년<br>15년<br>25년 | 9cm<br>18cm<br>25cm | 9m<br>15m<br>20m | 1,000본<br>500본<br>200본 | 25.2<br>68.8<br>71.0 | 248.9 |

[참고 2]

# 연차별 바이오순환림 조성계획

(단위:ha)

| 구분 | 계 | 2009까지 | 2010 | 2011 | 2012 | 2013～2020 |
|---|---|---|---|---|---|---|
| 계 | 100,116 | 6,116 | 6,000 | 8,000 | 6,000 | 74,000 |
| <민유림> | 90,107 | 5,457 | 5,000 | 7,000 | 5,450 | 67,200 |
| 경기 | 6,507 | 407 | 200 | 500 | 400 | 4,000 |
| 강원 | 10,393 | 493 | 500 | 800 | 600 | 8,000 |
| 충북 | 11,632 | 532 | 600 | 800 | 700 | 9,000 |
| 충남 | 15,536 | 1,436 | 1,000 | 1,200 | 900 | 11,000 |
| 전북 | 13,921 | 921 | 1,000 | 1,200 | 800 | 10,000 |
| 전남 | 14,792 | 692 | 1,000 | 1,200 | 900 | 11,000 |
| 경북 | 10,618 | 668 | 500 | 800 | 650 | 8,000 |
| 경남 | 7,508 | 308 | 200 | 500 | 500 | 6,200 |
| <국유림> | 10,009 | 659 | 1,000 | 1,000 | 550 | 6,800 |
| 북부 | 1,482 | 152 | 220 | 220 | 90 | 1,000 |
| 동부 | 941 | 151 | 120 | 120 | 50 | 600 |
| 남부 | 930 | 80 | 150 | 150 | 50 | 600 |
| 중부 | 2,804 | 159 | 240 | 240 | 165 | 2,200 |
| 서부 | 2,762 | 117 | 240 | 240 | 165 | 2,200 |
| 과학원 | 290 | - | 30 | 30 | 30 | 200 |

※ '12년은 예산확보액 기준이며, '13년부터 예산편성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3]

# 바이오순환림 시범단지

## □ 대면적 시범단지(25개, 1,732ha)

| 단지명 | 소 재 지 | 단지면적(ha) | | | 운영기관 |
|---|---|---|---|---|---|
| | | 계 | 기조성 | 향후조성 | |
| 계 | 25개 단지 | 1,732 | 338 | 1,394 | |
| 민유림 | 15개 | 1,173 | 234 | 939 | |
| **경기 진위** | 경기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103번지 | 50 | 15 | 35 | 경기도 |
| **강원 원주** | 강원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산40번지 일원 | 50 | 12 | 38 | 강원도 |
| **강원 화촌** |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산174번지외 30필 | 140 | 30 | 110 | |
| **충북 봉양**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산27번지외 7필 | 67 | 27 | 40 | 충청북도 |
| **충북 불정** | 충북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산15-1번지외 2필 | 50 | - | 50 | |
| **충남 계룡** |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 산1-1번외 2필 | 50 | 15 | 35 | 충청남도 |
| **충남 연산** |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고양리 산2번지 | 50 | - | 50 | |
| **전북 진안**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정곡리, 연장리 일원 | 62 | 22 | 40 | 전라북도 |
| **전북 적상** |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산80번지외 14필 | 50 | 8 | 42 | |
| **전남 별량** | 전남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산331번지외 12필지 | 100 | 20 | 80 | 전라남도 |
| **전남 이양** | 전남 화순군 이양면 대산리 산113-1번지 | 50 | 27 | 23 | |
| **경북 안덕**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산14번지외 21필 | 76 | - | 76 | 경상북도 |
| **경북 상운** | 경북 봉화군 상운면 문촌리 산34번지외 4필 | 70 | - | 70 | |
| **경남 산청** | 경남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 산70번지 | 100 | - | 100 | 경상남도 |
| **경남 마리** | 경남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 산59-1번지외 150필 | 208 | 58 | 150 | |
| 국유림 | 10개 | 559 | 104 | 455 | |
| **북부 양동** | 경기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63임반 | 57 | 47 | 10 | 북부지방 산림청 |
| **북부 여주** |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거리 6임반 | 98 | 7 | 91 | |
| **동부 김삿갓** |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24임반 | 50 | 30 | 20 | 동부지방 산림청 |
| **동부 하장** | 강원 삼척시 하장면 한소리 137-1임반 | 50 | - | 50 | |
| **남부 가은**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61임반 | 50 | - | 50 | 남부지방 산림청 |
| **남부 일월** | 경북 영양군 일월면 가천리 41임반 | 54 | - | 54 | |
| **중부 정안** | 충북 괴산군 정안면 문방리 산15-1 | 50 | - | 50 | 중부지방 산림청 |
| **중부 안내**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오덕리 산45-1 | 50 | 20 | 30 | |
| **서부 송지** | 전남 해남군 송지면 마봉리 산87-1 | 50 | - | 50 | 서부지방 산림청 |
| **서부 벌교** |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옥전리 산110-3 | 50 | - | 50 | |

## □ 국·사유림 연계 시범단지(7개소, 626ha)

| 단지명 및 소재지 | 단지면적(ha) | | | | | | | 운영기관 |
|---|---|---|---|---|---|---|---|---|
| | 계 | 국유림 | | | 사유림 | | | |
| | | 소계 | 기조성 | 향후 조성 | 소계 | 기조성 | 향후 조성 | |
| **계** | 626 | 292 | 70 | 222 | 334 | 50 | 284 | |
| **<백곡 국사단지>**<br>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산 75-7외5 | 85 | 35 | 5 | 30 | 50 | - | 50 | 충북 + 중부청 |
| **<비봉 국사단지>**<br>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산18-1번지 | 59 | 39 | 32 | 7 | 20 | - | 20 | 충남 + 중부청 |
| **<산내 국사단지>**<br>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산 32외8필 | 85 | 33 | - | 33 | 52 | 18 | 34 | 전북 + 서부청 |
| **<돌산 국사단지>**<br>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산391번지 | 140 | 80 | - | 80 | 60 | - | 60 | 전남 + 서부청 |
| **<남산 국사단지>**<br>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산65번지 | 80 | 30 | - | 30 | 50 | 10 | 40 | 북부청 + 강원 |
| **<안내 국사단지>**<br>옥천군 안내면 오덕리 산45-1외10필 | 80 | 50 | 20 | 30 | 30 | - | 30 | 중부청 + 충북 |
| **<성수 국사단지>**<br>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산70-4번지 | 97 | 25 | 13 | 12 | 72 | 22 | 50 | 서부청 + 전북 |

※ 운영기관은 앞에 표기된 기관이 운영의 주된 역할을 하는 기관임을 뜻함

<붙임 3>

# 리기다소나무림 갱신

## □ 리기다소나무림 갱신 확대추진(12천ha 갱신, 1,800천㎥ 산업용재 공급)

o 벌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 쇄신을 위한 홍보 및 주민설명회 추진
- 산림청 : 리기다소나무림 갱신의 필요성과 목질계 바이오매스 공급을 위한 바이오순환림의 필요성 등 홍보
- 시도, 지방청 : 사업계획 수립 및 주민 설명회 개최 등 벌채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 쇄신, 현재 보다 좋은 경제림과 풍치조성, 목질계 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을 위한 당위성 설명

o 벌기령이 지나 쇠퇴하고 있는 리기다소나무림을 친환경적 방법으로 벌채하여 바이오순환림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조성
- 50ha이상 리기다갱신모델림(26개소, 4,814ha)을 교육·홍보장소로 활용
-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갱신 대상지는 임분구조 개선사업 실행

## □ 리기다소나무 벌채지는 바이오순환림으로 조성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벌채허가 및 신고를 이행하고, 리기다소나무림 갱신 추진요령(산림자원과-3407호, '05.9.6)에 따라 실행

o 모두베기는 최대 50ha 이내로 하고, 하나의 벌채구역이 5ha 이상인 경우에는 "친환경 벌채 기준"에 따라 벌채 시행(5ha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o 산림생태계 및 경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벌채
- 형질우량 단순림은 단목택벌식 벌채방법을 적용하여 복층림 조성
  · 임분의 평균 흉고직경, 축적이 수확표에 의한 흉고직경, 축적 보다 높은 임지
  · 형질우량목 200본/ha 정도를 고르게 존치(임목간 거리 7m 내외)
- 형질불량 단순림은 대상벌채방법 적용
  · 임분의 평균흉고직경, 축적이 수확표에 의한 흉고직경, 축적 보다 낮은 임지
  · 식재열을 기준하여 3~5열 벌채, 3~5열 잔존 교호로 실시하고, 열식간벌 지역은 7~9열 기준 교호로 실시

o 리기다소나무 벌채지는 가급적 바이오순환림 단지로 우선 조성

<붙임 4>

# 용기묘 조림요령

## □ 묘목운반 및 보관

o 운반 예정일 2~3일 전에는 관수를 중지하여 약간 건조상태 유지
- 약간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용기내의 분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자동차 운반시 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강구

o 묘목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한 후 식재지 현지까지 운반한 후 그늘에 보관
- 경운기 등에 의한 소운반시에도 파손에 주의

※ 묘목 운반시 묘목이 장시간 식재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o 조림예정지 현장에 도착하면 「묘목운반상자」를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

## □ 식재요령

o 괭이, 삽 등을 사용하거나, 용기묘 식재 전용장비인「OK 식재기」또는 동력 식혈기를 사용

※ 용기묘 조림의 소요공정은 식재봉을 이용한 소요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양상태가 식재봉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식재' 또는 '식혈식재' 등의 작업 방법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음

o 식재봉을 이용하여 분의 길이와 같은 깊이로 동일하게 발로 식재봉을 눌러준 후 조심스럽게 꺼내어 식재 구멍이 무너지거나 구멍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
- 식재구멍을 판 후에는 가급적 용기묘 뿌리에 붙어있는 분이 깨지지 않도록 육묘판에서 묘목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식재봉으로 만든 구멍에 식재

o 식재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어지므로 묘목의 뿌리 부분을 밟지 않도록 하고 식재목의 분 가장자리 땅 부분에서 묘목 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 식재구멍과 용기묘의 분이 흙으로 밀착되도록 함
- 만약 구멍이 클 경우에는 주변의 흙을 이용하여 구멍을 채워줌

o 상수리나무 및 소나무 등 용기묘의 식재본수는 ha당 3,000본을 기준으로 하며, 토양 비옥도 등 현지여건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식재
- 상수리나무(1-0), 소나무・낙엽송・편백(2-0) : 3,000/ha
- 묘간거리 1.8m × 열간거리 1.8m

## □ 조림지 뒷정리

o 묘목운반용 상자나 작업도구 및 자재는 물자절약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빠짐없이 수거

<붙임 5>

# 생태조림 실행요령

## □ 생태조림이란?

o 자연복원력으로 생태이입이 가능한 산림에서 자연발생한 천연치수·움싹 등을 보육하고 일부 보완 식재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조림방법
- 그루터기 및 천연치수를 조절하고 공간이 생기는 지역에서는 묘목을 식재 (식재본수는 공간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식재)

## □ 대상지 선정

o 벌채지로서 1~2년 경과되었으나 산림조성이 되지 않은 임지
o 산불피해지 자연복원 대상지로서 천연치수보육 및 보완조림이 필요한 임지
o 조림실패지로서 치수보육과 보완조림이 필요한 임지
o 맹아갱신지로서 움싹보육과 보완조림이 필요한 임지

## □ 벌근정리는 벌채시 이행

o 맹아갱신 조림의 벌근정리 사업을 별도의 조림사업으로 실행하지 않으므로 벌채 허가시 근주정리요령 준수를 허가조건으로 명시
※ 벌근 정리요령은 산림과 임업기술(II)산림조성 193쪽 참조

## □ 움싹 및 천연치수 조절방법

o 1개 벌근에서 자란 3~5개의 움싹 중 세력이 왕성한 움싹 1~2개를 남기고 제거
o 자연적으로 발생한 우량치수를 적정 간격으로 유지하고 불량치수를 제거
- 우량치수의 간격은 조림목보다 밀한 상태로 존치(8,000본/ha, 1㎡당 1본 기준)

## □ 보완식재

o 생태조림 대상지에 공간이 있는 경우 천연치수와 같은 수종이나 유사한 수종으로 인공 식재하여 어린나무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보완 식재
- 500본/ha을 기준으로 현지실태에 가감하여 조정실행
- 묘목규격 및 수종은 천연치수와의 경쟁을 고려하여 결정

## □ 사업에 따른 유의사항

o 벌채시에 벌채업자에게 근주정리가 되도록 지도감독 철저
o 당해연도 2월 이전 벌채지의 움싹·천연치수의 발생상황에 따라 당해연도 가을철 이후 보완조림 가능
o 보완식재는 일정공간이 확보된 장소를 선정, 예정지 정리작업을 철저히 하여 천연치수나 맹아목에 피압되지 않도록 주의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벌채지등에서의 산림조성 참고

<붙임 6>

# 금강소나무 분포현황

(단위:ha)

| 시·도 | 시·군 | 총면적 | 국유림 | 민유림 |
|---|---|---|---|---|
| 계 | 계 | 373,546 | 99,092 | 274,454 |
| 강원도 | 소계 | 226,439 | 62,873 | 163,566 |
| | 춘천시 | 6,672 | 875 | 5,797 |
| | 원주시 | 7,984 | 227 | 7,757 |
| | 강릉시 | 27,021 | 6,726 | 20,295 |
| | 동해시 | 2,752 | 633 | 2,119 |
| | 태백시 | 3,618 | 1,739 | 1,879 |
| | 속초시 | 2,822 | 214 | 2,608 |
| | 삼척시 | 11,701 | 7,375 | 4,326 |
| | 홍천군 | 11,334 | 2,236 | 9,098 |
| | 횡성군 | 11,718 | 983 | 10,735 |
| | 영월군 | 18,789 | 5,701 | 13,088 |
| | 평창군 | 27,135 | 6,427 | 20,708 |
| | 정선군 | 19,429 | 6,268 | 13,161 |
| | 철원군 | 10,505 | 1,380 | 9,125 |
| | 화천군 | 7,172 | 1,766 | 5,406 |
| | 양구군 | 9,981 | 3,063 | 6,918 |
| | 인제군 | 24,191 | 13,190 | 11,001 |
| | 고성군 | 8,670 | 1,199 | 7,471 |
| | 양양군 | 14,945 | 2,871 | 12,074 |
| 경상북도 | 소계 | 147,107 | 36,219 | 110,888 |
| | 영주시 | 12,914 | 1,368 | 11,546 |
| | 청송군 | 23,032 | 1,525 | 21,507 |
| | 영양군 | 19,526 | 5,756 | 13,770 |
| | 봉화군 | 26,242 | 8,037 | 18,205 |
| | 울진군 | 40,151 | 16,771 | 23,380 |
| | 영덕군 | 25,242 | 2,762 | 22,480 |

# 8. 녹색일자리사업

목 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하여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인 숲가꾸기 등 13개 사업을 통해 녹색 일자리 창출

- 고용인원 : 44,264명, 예산액 : 8,791억원 -

## 가. 정책여건

o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성장 동력의 필요성 대두 및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자원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 필요

-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 및 고용사정이 어려울때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산림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o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제691호, '09.2.11)에서 발표한「녹색뉴딜 사업의 재조명』중 녹색숲가꾸기사업이 일자리 창출 속도와 투자조정의 용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o 산림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기후변화대응에 직접적으로 기여

## 나. 기본방향

o 그동안 육성과 보호위주의 산림정책 페러다임을 탄소순환과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다양한 산림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

o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숲가꾸기 산물 수집확대를 통한 화석연료 대체 촉진으로 탄소흡수원 확충 및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선도적 기여

o 산림분야 녹색뉴딜사업(1핵심, 5연계)을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

o 녹색일자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걸맞는 새로운 일자리 발굴

## 다. 세부추진계획

### 1) '12예산 및 고용계획

| 구분 | 사 업 명 | 고용계획 | | 예산(억원) |
|---|---|---|---|---|
| | | 상시인원(명) | 연인원(천명) | |
| 계 | | 44,264 | 9,402 | 8,791 |
| 핵 심 | 녹색 숲가꾸기 | 24,004 | 5,627 | 4,727 |
| 연 계 | 산림재해예방 및 훼손산림복원 | 16,835 | 2,920 | 3,452 |
|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 284 | 71 | 152 |
| | 산림서비스증진 | 2,779 | 694 | 288 |
| | 생태숲 조성 | 75 | 18 | 88 |
| | 생활림조성・관리 | 287 | 72 | 84 |

###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 가) 녹색 숲가꾸기

o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산림자원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4,727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24,004개 창출

- 숲가꾸기(250천ha), 산물수집(150만㎥) : 17,003개
- 묘목생산(41백만본), 조림(17천ha) : 2,566개
- 임도사업(간선 및 소형임도 664㎞, 구조개량 700km) : 4,435개

#### 나) 산림재해예방 및 훼손산림복원

o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사전예방 및 조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림훼손지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사업 추진에 3,452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6,835개 창출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9,950명) : 9,950개
- 산림병해충 방제(93천ha) 및 예찰・방제단(1,000명) 운영 : 4,050개
- 산림복원(65ha) 및 사방댐(695개소) 시설 : 2,835개

#### 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o 숲가꾸기 산물 등 산림부산물을 펠릿 등의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 및 화석연료 대체사업에 152억을 투자하여 일자리 284개 창출

- 펠릿제조시설(1개소) 및 보일러(2,800대) 보급 : 234개
- 산림탄소순환마을(2개소) 조성사업 신규 추진 : 50개

### 라) 산림서비스증진

o 산림서비스도우미(숲해설가, 수목원코디네이터, 등산안내인 등)를 소속 기관 및 지자체에 배치하여 숲의 다양한 이해와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산림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에 288억원 투자하여 일자리 2,779개 창출

-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 1,776개
- 산림재해감시원 배치 : 1,003개

### 마) 생태숲 조성

o 산림생물자원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산림식물의 현지 내 보존 및 생태계 교란 외래수종 특별관리사업에 88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75개 창출

- 생태 숲(24개소) 조성 : 75개

### 바) 생활림 조성·관리

o 도시 및 생활권내에 숲을 조성·관리함으로써 녹색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에 84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287개 창출

- 도시숲 모델(2개소) 및 전통 마을숲(3개소), 학교 숲(145개소), 국유지 도시림(2개소), 국유지 무궁화동산(1개소) 조성 추진

## 라. 추진일정

o 녹색일자리사업 추진실적 입력 : 매월 말일(월 1회)

- 산림청 지식포털 게시판 일자리창출 코너 활용

o 녹색일자리사업 추진성과 보고 : 연말

o 녹색일자리사업 홍보(미담사례 등) : 수시

< 붙임 >

# 2012년 녹색일자리사업(녹색뉴딜) 사업별 추진계획

(단위: 억원, 명)

| 사 업 명 | 사업량 | 예산 | 고용계획 | |
|---|---|---|---|---|
| | | | 상시인원 | 연인원 |
| 합 계 | | 8,791 | 44,264 | 9,402,209 |
| 1. 숲가꾸기 | | 2,780 | 17,003 | 4,113,370 |
| o 정책숲가꾸기 | 250천ha | 2,473 | 13,738 | 3,297,120 |
| o 숲가꾸기패트롤 | 25명 | 307 | 25 | 6,250 |
| o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3,000명 | | 3,000 | 750,000 |
| o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240명 | | 240 | 60,000 |
| 2. 묘목생산 | 41백만본 | 42 | 943 | 235,750 |
| 3. 조림사업 | 17천ha | 707 | 1,623 | 389,689 |
| 4. 임도사업 | 간선 및 소형임도 664㎞<br>구조개량 700㎞ | 1,198 | 4,435 | 888,400 |
|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9,950명 | 337 | 9,950 | 1,492,500 |
| 6. 산림병해충방제 | | 698 | 4,050 | 860,000 |
| o 산림병해충방제 | 93천ha | 683 | 3,050 | 610,000 |
| o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 1,000명 | 15 | 1,000 | 250,000 |
| 7. 산림복원사업 | 65ha | 100 | 276 | 55,200 |
| 8. 사방댐 조성관리 | 695개소(댐)<br>440개소(준설) | 2,317 | 2,559 | 511,800 |
| 9.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 펠릿제조시설 1개소<br>펠릿보일러 2,800대 | 126 | 234 | 58,500 |
| 10.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 2개소 | 26 | 50 | 12,500 |
| 11. 산림서비스증진 | | 288 | 2,779 | 694,750 |
| o 산림서비스도우미 | 1,776명 | 176 | 1,776 | 444,000 |
| o 산림재해모니터링 | 1,003명 | 112 | 1,003 | 250,750 |
| 12. 생태숲 조성 | 24개소 | 88 | 75 | 18,000 |
| 13. 생활림 조성·관리 | 도시숲 4, 마을숲 3, 학교숲 145, 무궁화동산 1개소 | 84 | 287 | 71,750 |

# 9.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목 표

◇ 취약계층 및 청·장년실업자 등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숲가꾸기 및 산림서비스증진)에 고용하여 산림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 고용인원 : 19,782명, 예산액 : 306,907백만원 -

## 가. 정책여건

o 정부에서 추진하는 300만개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필요

o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해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 활용에 대한 사업 확대 절실

o 최근 웰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산림휴양 등에 대한 수요 증가

o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산림재해가 대형화되고,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산림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나. 기본방향

o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 등에게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

- 전문임업기능인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전문기술훈련 후 정착하도록 유도

o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을 확대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에너지 대체효과 제고

o 휴양림 등에 산림서비스도우미를 고용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재해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강화

o 전문지식 및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일자리부터 전문화된 상설일자리로 발전시켜 취약계층 및 청·장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 다. 세부추진계획

### 1) '12예산 및 고용계획

| 사 업 명 | 고용계획(명) | 예산(백만원) | 고용기간 |
|---|---|---|---|
| 계 | 19,782 | 306,907 | |
| 숲가꾸기사업 | 17,003 | 278,026 | 10~12월 |
| 산림서비스도우미 | 1,776 | 17,636 | 10월 |
| 산림재해모니터링 | 1,003 | 11,245 | 10월 |

### 2) 적기사업추진을 위해 지침마련, 참여자 선발 등 사전준비 철저

o 취약계층, 청·장년실업자 등에게 안정적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예산배정 즉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 및 참여자 선발 등 준비
- 모집공고 및 안내는 현수막, 지역방송,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

o 매월 계획된 인원(상시고용인원)을 각 사업별 선발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선발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선발·관리 철저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업참여자가 연 200일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유도(200일 이상 근로자 현황은 9월부터 보고)

o 녹색일자리 정보체계 및 네트워크 효율적 활용
- 노동부의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www.ilmoa.go.kr)에 공공산림가꾸기 및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참여자에 대한 모집공고, 선발처리상황 및 참여자 등록, 지원금관리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철저히 관리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참여자에 대하여 수시로 중복취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별도 지침으로 시달되는 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제한 가이드 참조)

o 기타 사업별 선발기준, 근로계약, 사업장 선정 및 추진요령 등은 별도 시달하는 『'12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에 따라 추진

### 3) 예산집행 및 관리 철저

#### 가) 투명한 임금지급 방안강구

o 임금은 주급 또는 월급 형태(매월 25일 기준)로 지급하되, 반드시 참여자의 개인별 계좌입금으로 지급
- 공공산림가꾸기 : 일반 40,000원/일, 기술 45,000원/일(부대비 5,000원 별도)

- 산림서비스도우미(8개사업) : 41,000/일(부대비 5,000원 별도)
  ·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숲길안내인,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o 유급휴일, 연차휴가,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시 부대비는 제외

### 나) 『산림서비스도우미』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 · 관리

o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양성 평등한 방식으로 참여자 선발 및 예산 집행
  - 2012년 여성수혜자 비율 성과목표 : 30%

o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산림서비스도우미 8개 사업은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공공서비스분야 여성 참여율 향상에 노력

### 다) 사업내역 변경 승인절차 이행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o 산림서비스도우미 중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세부사업(숲해설가, 등산안내인 등)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작성하여 산림자원과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라) 목적 외 예산집행 및 근로자 고용 금지

o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자산취득비(산림서비스도우미 활동장비 등)는 예산내역서에 있는 목적대로 집행(2008 예산 · 결산 국회 심의시 지적사항)

o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으로 고용한 인력을 사업별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 외의 업무에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2007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4)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o 참여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로 정착 유도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 2주 교육실시(산림조합중앙회 3개 훈련원)
  - 산림서비스도우미 : 3일~5일 교육실시(산림인력개발원 등)

o 교육경비 및 임금 지급방법
  - 교육경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
    · 교육경비 : 인력개발원(25,000원/일), 산림조합중앙회훈련원(36,000원/일)
  - 참여자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에는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임 지급
  - 참여자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에 준하여 지급

## 5) 참여자 노무관리

o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예외규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 가능

o 일자리 참여자의 모집·선발 등의 관리 철저로 퇴직금 지급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참여자선발은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선발기준을 공개하여 선발하고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 또한,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단절사업으로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적극 설명
- 특히, 형식적인 공개모집을 통하여 매년 같은 근로자들이 선발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여 관리

◀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자 퇴직금 관련 질의회신(노동부) ▶

o 산림청 운영지침은 **매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o 또한 **업무가 매번 반복되어 수행되나 임시적 성격의 사업일 경우**,

- **공개채용 결과 일부 근로자가 다시 채용**된다 해도 이는 **우연한 결과일 뿐**인 것이므로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o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음**

<산림청 녹색일자리창출팀-1144(2009. 9. 17)>

## 6)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추진

o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시 정부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위주로 고용하기 위하여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 특정(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6개)

- 숲가꾸기,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림병해충방제(예찰·방제단운영) : 50%
- 산림서비스도우미 및 산림재해모니터링 : 40%
- 국제산림협력(해외인턴지원) : 20%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취업취약계층 범주 : <붙임 1> 참조

o 전문지식 및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일자리부터 전문화된 상설일자리로 발전시켜 취업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 7) 추진사항에 대한 중앙점검 실시

o 산림분야 일자리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산림청 해당과와 합동으로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실시('12. 8~9월)

o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 라. 추진일정

o '12년 근로자 신청·접수 및 선발 : 2011. 12월 ~ 2012. 1월

o '12년 일자리사업 착수(예산배정 즉시) : 2012. 1월

o 근로자 기술교육 : 2012. 3~10월

o 중앙 현장 지도·점검 실시 : 2012. 8~9월

o 고용실적 보고(매월) : 다음달 5일까지

o 취업취약계층 참여자 현황보고(반기보)
- 상반기 : 2012. 7. 5일까지
- 하반기 : 2013. 1. 5일까지

< 붙임 1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취업취약계층 범주

## 1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액(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 2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 청년(만 29세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 3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 구 분 | 첨 부 서 류 | |
|---|---|---|
| 배우자가 없는 여성 | 가족관계등록부<br>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 구직등록후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서 |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 4 고령자(만 55세 이상)

## 5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 6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붙임 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2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 8. 31

보건복지부장관

# 2012년 최저생계비

## □ 2012년 최저생계비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금액(원/월)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2,325,580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 2,602,257원)

## □ 2012년 현금급여기준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금액(원/월) | 453,049 | 771,408 | 997,932 | 1,224,457 | 1,450,982 | 1,677,506 | 1,904,031 |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26,525원 증가(8인가구: 2,130,556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3 >

# '12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계획(총괄)

**(총 19,782명, 306,907백만원)**

## □ 숲가꾸기 분야 : 17,003명, 278,026백만원

○ **정책숲가꾸기(13,738명, 247,283백만원)**
- 임업기능인에 의한 기술적인 숲가꾸기 실시(1973년부터 실시)

○ **공공산림가꾸기(3,265명, 30,743백만원)**
- 저소득 청·장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숲가꾸기에 고용(2005부터 실시)

## □ 산림서비스증진 : 2,779명, 28,881백만원

### <산림서비스도우미 : 1,776명, 17,636백만원>

○ **숲해설가(570명, 6,322백만원)**
- 산림문화·휴양 이용객에게 산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올바른 숲탐방 서비스 제공

○ **숲생태관리인(186명, 2,118백만원)**
-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올바른 산행문화를 확립하고, 휴양림 내 산림을 휴양에 적합한 쾌적한 숲으로 조성·관리

○ **숲길조사관리원(247명, 2,335백만원)**
- 숲길조사 자료를 DB화하여 산림청 산악정보사이트에 게재,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행정보 제공

○ **숲길안내인(129명, 1,252백만원)**
-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등산서비스 제공

○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92명, 771백만원)**
- 산촌마을의 소득증대 도모와 산촌체험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수목원코디네이터(104명, 921백만원)**
- 수목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수목원 안내 및 해설 등 관람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도시녹지관리원(351명, 3,052백만원)**
- 도시산림공원 등 도시녹지에 대한 안내 및 생태교육, 가로수 실태조사, 병해충피해 등 도시녹지자원의 조사·관리

○ **학교숲코디네이터(97명, 865백만원)**
- 식재·관리 및 수목관리 컨설팅 지원 등 학교숲 조성 및 사후관리 강화

### <산림재해모니터링 : 1,003명, 11,245백만원>

○ 산림재해분야(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 산림훼손 등)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각종 산림재해 방지활동을 강화

<붙임 4>

# ’12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예산(총괄)

(단위 : 명, 천원)

| 사 업 명 | 세부사업별 | 구분 | ’12년 | | 비 고 |
|---|---|---|---|---|---|
| | | | 인원 | 예산 | |
| 산림서비스도우미 | 소 계 | | 1,776 | 17,636,000 | |
| | | 국유림 | 441 | 6,442,000 | |
| | | 민유림 | 1,335 | 11,194,000 | |
| | 숲 해 설 가 | 계 | 570 | 6,321,703 | |
| | | 국유림 | 254 | 3,672,057 | |
| | | 민유림 | 316 | 2,649,646 | |
| | 숲 생 태 관 리 인 | 계 | 186 | 2,118,230 | |
| | | 국유림 | 92 | 1,330,036 | |
| | | 민유림 | 94 | 788,194 | |
| | 숲 길 조 사 관 리 원 | 계 | 247 | 2,334,620 | |
| | | 국유림 | 35 | 556,992 | |
| | | 민유림 | 212 | 1,777,628 | |
| | 숲 길 안 내 인 | 계 | 129 | 1,251,682 | |
| | | 국유림 | 28 | 404,793 | |
| | | 민유림 | 101 | 846,889 | |
| |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 계 | 92 | 771,423 | |
| | | 국유림 | - | - | |
| | | 민유림 | 92 | 771,423 | |
| | 수 목 원 코 디 네 이 터 | 계 | 104 | 920,619 | |
| | | 국유림 | 8 | 115,655 | |
| | | 민유림 | 96 | 804,964 | |
| | 도 시 녹 지 관 리 원 | 계 | 351 | 3,052,441 | |
| | | 국유림 | 18 | 260,224 | |
| | | 민유림 | 333 | 2,792,217 | |
| | 학 교 숲 코 디 네 이 터 | 계 | 97 | 865,282 | |
| | | 국유림 | 6 | 102,243 | 일자리지원 예산 |
| | | 민유림 | 91 | 763,039 | |

※ 숲가꾸기사업 세부사항은 산림자원분야(숲가꾸기) 시책 참조

<붙임 4-1>

# 국유림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추진계획

## □ 총 괄

(단위 : 명, 천원)

| 기 관 별 | 합계 | | 숲해설가 | | 숲생태관리인 | | 숲길조사관리원 | |
|---|---|---|---|---|---|---|---|---|
| | 인원 | 예산 | 인원 | 예산 | 인원 | 예산 | 인원 | 예산 |
| 합 계 | 441 | 6,442,000 | 254 | 3,672,057 | 92 | 1,330,036 | 35 | 556,992 |
| 산 림 청 | 3 | 75,182 | - | - | - | - | 2 | 37,914 |
| 산 림 과 학 원 | 5 | 72,285 | 5 | 72,285 | - | - | - | - |
| 인 력 개 발 원 | 2 | 28,914 | - | - | 2 | 28,914 | - | - |
| 국 립 수 목 원 | 23 | 332,509 | 15 | 216,854 | - | - | - | - |
| 휴 양 림 관 리 소 | 174 | 2,514,284 | 92 | 1,330,036 | 80 | 1,156,553 | - | - |
| 품 종 관 리 센 터 | - | - | - | - | - | - | - | - |
| 북 부 지 방 청 | 71 | 1,032,723 | 45 | 650,561 | 10 | 144,569 | 5 | 79,785 |
| 동 부 지 방 청 | 36 | 525,230 | 26 | 375,880 | - | - | 3 | 49,370 |
| 남 부 지 방 청 | 39 | 570,102 | 25 | 361,423 | - | - | 5 | 79,785 |
| 중 부 지 방 청 | 35 | 510,773 | 25 | 361,423 | - | - | 3 | 49,370 |
| 서 부 지 방 청 | 53 | 779,998 | 21 | 303,595 | - | - | 17 | 260,768 |

| 기 관 별 | 숲길안내인 | | 수목원코디네이터 | | 도시녹지관리원 | | 일자리사업 지원 | |
|---|---|---|---|---|---|---|---|---|
| | 인원 | 예산 | 인원 | 예산 | 인원 | 예산 | 인원 | 예산 |
| 합 계 | 28 | 404,793 | 8 | 115,655 | 18 | 260,224 | 6 | 102,243 |
| 산 림 청 | - | - | - | - | 1 | 14,459 | - | 22,809 |
| 산 림 과 학 원 | - | - | - | - | - | - | - | - |
| 인 력 개 발 원 | - | - | - | - | - | - | - | |
| 국 립 수 목 원 | - | - | 8 | 115,655 | - | - | - | - |
| 휴 양 림 관 리 소 | 1 | 14,456 | - | - | - | - | 1 | 13,239 |
| 품 종 관 리 센 터 | - | - | - | - | - | - | - | - |
| 북 부 지 방 청 | 6 | 86,742 | - | - | 4 | 57,827 | 1 | 13,239 |
| 동 부 지 방 청 | 4 | 57,827 | - | - | 2 | 28,914 | 1 | 13,239 |
| 남 부 지 방 청 | 5 | 72,285 | - | - | 3 | 43,370 | 1 | 13,239 |
| 중 부 지 방 청 | 2 | 28,914 | - | - | 4 | 57,827 | 1 | 13,239 |
| 서 부 지 방 청 | 10 | 144,569 | - | - | 4 | 57,827 | 1 | 13,239 |

## □ 인건비(110-03)

(단위 : 명, 천원)

| 기 관 별 | 합 계 | | 숲해설가 | | 숲생태관리인 | | 숲길조사관리원 | |
|---|---|---|---|---|---|---|---|---|
| | 인원 | 예산 | 인원 | 예산 | 인원 | 예산 | 인원 | 예산 |
| 합 계 | 441 | 5,071,500 | 254 | 2,921,000 | 92 | 1,058,000 | 35 | 402,500 |
| 산 림 청 | 3 | 34,500 | - | - | - | - | 2 | 23,000 |
| 산림과학원 | 5 | 57,500 | 5 | 57,500 | - | - | - | - |
| 인력개발원 | 2 | 23,000 | - | - | 2 | 23,000 | - | - |
| 국립수목원 | 23 | 264,500 | 15 | 172,500 | - | - | - | - |
| 휴양림관리소 | 174 | 2,001,000 | 92 | 1,058,000 | 80 | 920,000 | - | - |
| 품종관리센터 | - | - | - | - | - | - | - | - |
| 북부지방청 | 71 | 816,500 | 45 | 517,500 | 10 | 115,000 | 5 | 57,500 |
| 동부지방청 | 36 | 414,000 | 26 | 299,000 | - | - | 3 | 34,500 |
| 남부지방청 | 39 | 448,500 | 25 | 287,500 | - | - | 5 | 57,500 |
| 중부지방청 | 35 | 402,500 | 25 | 287,500 | - | - | 3 | 34,500 |
| 서부지방청 | 53 | 609,500 | 21 | 241,500 | - | - | 17 | 195,500 |

| 기 관 별 | 숲길안내인 | | 수목원코디네이터 | | 도시녹지관리원 | | 일자리사업 지원 | |
|---|---|---|---|---|---|---|---|---|
| | 인원 | 예산 | 인원 | 예산 | 인원 | 예산 | 인원 | 예산 |
| 합 계 | 28 | 322,000 | 8 | 92,000 | 18 | 207,000 | 6 | 69,000 |
| 산 림 청 | - | - | - | - | 1 | 11,500 | - | - |
| 산림과학원 | - | - | - | - | - | - | - | - |
| 인력개발원 | - | - | - | - | - | - | - | - |
| 국립수목원 | - | - | 8 | 92,000 | - | - | - | - |
| 휴양림관리소 | 1 | 11,500 | - | - | - | - | 1 | 11,500 |
| 품종관리센터 | - | - | - | - | - | - | - | - |
| 북부지방청 | 6 | 69,000 | - | - | 4 | 46,000 | 1 | 11,500 |
| 동부지방청 | 4 | 46,000 | - | - | 2 | 23,000 | 1 | 11,500 |
| 남부지방청 | 5 | 57,500 | - | - | 3 | 34,500 | 1 | 11,500 |
| 중부지방청 | 2 | 23,000 | - | - | 4 | 46,000 | 1 | 11,500 |
| 서부지방청 | 10 | 115,000 | - | - | 4 | 46,000 | 1 | 11,500 |

## □ 운영비(합계)

(단위 : 천원)

| 사업별 / 기관명 | 합계 | 숲해설가 | 숲생태 관리인 | 숲길조사 관 리 원 | 숲 길 안내인 | 수 목 원 코디네이터 | 도시녹지 관 리 원 | 일 자 리 사업지원 |
|---|---|---|---|---|---|---|---|---|
| 합 계 | 407,134 | 231,903 | 83,996 | 31,955 | 25,564 | 7,304 | 16,434 | 9,978 |
| 산 림 청 | 12,717 | - | - | 1,826 | - | - | 913 | 9,978 |
| 산 림 과 학 원 | 4,566 | 4,566 | - | - | - | - | - | - |
| 인 력 개 발 원 | 1,826 | - | 1,826 | - | - | - | - | - |
| 국 립 수 목 원 | 20,999 | 13,695 | - | - | - | 7,304 | - | - |
| 휴양림관리소 | 157,949 | 83,996 | 73,040 | - | 913 | - | - | - |
| 품종관리센터 | - | - | - | - | - | - | - | - |
| 북 부 지 방 청 | 63,910 | 41,085 | 9,130 | 4,565 | 5,478 | - | 3,652 | - |
| 동 부 지 방 청 | 31,955 | 23,738 | - | 2,739 | 3,652 | - | 1,826 | - |
| 남 부 지 방 청 | 34,694 | 22,825 | - | 4,565 | 4,565 | - | 2,739 | - |
| 중 부 지 방 청 | 31,042 | 22,825 | - | 2,739 | 1,826 | - | 3,652 | - |
| 서 부 지 방 청 | 47,476 | 19,173 | - | 15,521 | 9,130 | - | 3,652 | - |

## □ 국내여비(220-01)

(단위 : 천원)

| 사업별 / 기관명 | 합계 | 숲해설가 | 숲생태 관리인 | 숲길조사 관 리 원 | 숲 길 안내인 | 수 목 원 코디네이터 | 도시녹지 관 리 원 | 일 자 리 사업지원 |
|---|---|---|---|---|---|---|---|---|
| 합 계 | 134,555 | 77,499 | 28,070 | 10,679 | 8,543 | 2,441 | 5,492 | 1,831 |
| 산 림 청 | 2,748 | - | - | 610 | - | - | 307 | 1,831 |
| 산 림 과 학 원 | 1,526 | 1,526 | - | - | - | - | - | - |
| 인 력 개 발 원 | 610 | | 610 | - | - | - | - | - |
| 국 립 수 목 원 | 7,018 | 4,577 | - | - | - | 2,441 | - | - |
| 휴양림관리소 | 52,784 | 28,070 | 24,409 | - | 305 | - | - | - |
| 품종관리센터 | - | | - | - | - | - | - | - |
| 북 부 지 방 청 | 21,358 | 13,730 | 3,051 | 1,526 | 1,831 | - | 1,220 | - |
| 동 부 지 방 청 | 10,678 | 7,933 | - | 915 | 1,220 | - | 610 | - |
| 남 부 지 방 청 | 11,595 | 7,628 | - | 1,526 | 1,526 | - | 915 | - |
| 중 부 지 방 청 | 10,373 | 7,628 | - | 915 | 610 | - | 1,220 | - |
| 서 부 지 방 청 | 15,865 | 6,407 | - | 5,187 | 3,051 | - | 1,220 | - |

## □ 보험금(320-03)

(단위 : 천원)

| 사업별 / 기관명 | 합계 | 숲해설가 | 숲생태 관리인 | 숲길조사 관 리 원 | 숲 길 안내인 | 수 목 원 코디네이터 | 도시녹지 관 리 원 | 일 자 리 사업지원 |
|---|---|---|---|---|---|---|---|---|
| 합 계 | 766,811 | 441,655 | 159,970 | 60,858 | 48,686 | 13,910 | 31,298 | 10,434 |
| 산 림 청 | 5,217 | - | - | 3,478 | - | - | 1,739 | - |
| 산 림 과 학 원 | 8,693 | 8,693 | - | - | - | - | - | - |
| 인 력 개 발 원 | 3,478 | - | 3,478 | - | - | - | - | - |
| 국 립 수 목 원 | 39,992 | 26,082 | - | - | - | 13,910 | - | - |
| 휴양림관리소 | 302,551 | 159,970 | 139,104 | - | 1,738 | - | - | 1,739 |
| 품종관리센터 | - | - | - | - | - | - | - | - |
| 북 부 지 방 청 | 123,455 | 78,246 | 17,388 | 8,694 | 10,433 | - | 6,955 | 1,739 |
| 동 부 지 방 청 | 62,597 | 45,209 | - | 5,216 | 6,955 | - | 3,478 | 1,739 |
| 남 부 지 방 청 | 67,813 | 43,470 | - | 8,694 | 8,694 | - | 5,216 | 1,739 |
| 중 부 지 방 청 | 60,858 | 43,470 | - | 5,216 | 3,478 | - | 6,955 | 1,739 |
| 서 부 지 방 청 | 92,157 | 36,515 | - | 29,560 | 17,388 | - | 6,955 | 1,739 |

## □ 자산취득비(430-01)

(단위 : 천원)

| 사업별 / 기관명 | 합계 | 숲해설가 | 숲생태 관리인 | 숲길조사 관 리 원 | 숲 길 안내인 | 수 목 원 코디네이터 | 도시녹지 관 리 원 | 일 자 리 사업지원 |
|---|---|---|---|---|---|---|---|---|
| 합 계 | 51,000 | - | - | 51,000 | - | - | - | - |
| 산 림 청 | 9,000 | - | - | 9,000 | - | - | - | - |
| 산 림 과 학 원 | - | - | - | - | - | - | - | |
| 인 력 개 발 원 | - | | - | - | - | - | - | - |
| 국 립 수 목 원 | - | - | - | - | - | - | - | - |
| 휴양림관리소 | - | - | - | - | - | - | - | - |
| 품종관리센터 | - | - | - | - | - | - | - | - |
| 북 부 지 방 청 | 7,500 | - | - | 7,500 | - | - | - | - |
| 동 부 지 방 청 | 6,000 | - | - | 6,000 | - | - | - | - |
| 남 부 지 방 청 | 7,500 | - | | 7,500 | - | - | - | - |
| 중 부 지 방 청 | 6,000 | - | - | 6,000 | - | - | - | - |
| 서 부 지 방 청 | 15,000 | - | - | 15,000 | - | - | - | - |

※ 보상금 : 9,000천원은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기관 수시배정 계획

< 붙임 4-2 >

# 민유림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추진계획

## □ 산림서비스도우미(소계)

(단위 : 명, 천원)

| 구 분 | 고용인원 | 2012년도 예산 | | |
|---|---|---|---|---|
| | | 계 | 국고보조금 | 지방비 |
| 계 | 1,335 | 18,656,668 | 11,194,000 | 7,462,668 |
| 서 울 | 30 | 419,206 | 251,524 | 167,682 |
| 부 산 | 52 | 726,702 | 436,021 | 290,681 |
| 대 구 | 41 | 572,978 | 343,787 | 229,191 |
| 인 천 | 41 | 572,977 | 343,787 | 229,190 |
| 광 주 | 19 | 265,525 | 159,315 | 106,210 |
| 대 전 | 29 | 405,275 | 243,165 | 162,110 |
| 울 산 | 29 | 405,275 | 243,165 | 162,110 |
| 경 기 | 176 | 2,459,609 | 1,475,766 | 983,843 |
| 강 원 | 144 | 2,012,411 | 1,207,447 | 804,964 |
| 충 북 | 86 | 1,201,855 | 721,113 | 480,742 |
| 충 남 | 133 | 1,858,687 | 1,115,211 | 743,476 |
| 전 북 | 112 | 1,565,213 | 939,127 | 626,086 |
| 전 남 | 155 | 2,166,137 | 1,299,682 | 866,455 |
| 경 북 | 139 | 1,942,534 | 1,165,520 | 777,014 |
| 경 남 | 124 | 1,732,907 | 1,039,744 | 693,163 |
| 제 주 | 25 | 349,377 | 209,626 | 139,751 |

## □ 산림서비스도우미(숲해설가)

(단위 : 명, 천원)

| 구 분 | 고용인원 | 2012년도 예산 | | |
|---|---|---|---|---|
| | | 계 | 국고보조금 | 지방비 |
| 계 | 316 | 4,416,077 | 2,649,646 | 1,766,431 |
| 서 울 | 10 | 139,706 | 83,824 | 55,882 |
| 부 산 | 10 | 139,750 | 83,850 | 55,900 |
| 대 구 | 14 | 195,651 | 117,391 | 78,260 |
| 인 천 | 12 | 167,701 | 100,621 | 67,080 |
| 광 주 | 3 | 41,925 | 25,155 | 16,770 |
| 대 전 | 10 | 139,750 | 83,850 | 55,900 |
| 울 산 | 3 | 41,925 | 25,155 | 16,770 |
| 경 기 | 29 | 405,277 | 243,166 | 162,111 |
| 강 원 | 29 | 405,277 | 243,166 | 162,111 |
| 충 북 | 25 | 349,377 | 209,626 | 139,751 |
| 충 남 | 31 | 433,227 | 259,936 | 173,291 |
| 전 북 | 28 | 391,302 | 234,781 | 156,521 |
| 전 남 | 35 | 489,128 | 293,477 | 195,651 |
| 경 북 | 35 | 489,127 | 293,476 | 195,651 |
| 경 남 | 30 | 419,252 | 251,551 | 167,701 |
| 제 주 | 12 | 167,702 | 100,621 | 67,081 |

## □ 산림서비스도우미(숲생태관리인)

(단위 : 명, 천원)

| 구 분 | 고용인원 | 2012년도 예산 | | |
|---|---|---|---|---|
| | | 계 | 국고보조금 | 지방비 |
| **계** | 94 | 1,313,657 | 788,194 | 525,463 |
| 서 울 | - | - | - | - |
| 부 산 | 2 | 27,950 | 16,770 | 11,180 |
| 대 구 | 2 | 27,950 | 16,770 | 11,180 |
| 인 천 | - | - | - | - |
| 광 주 | - | - | - | - |
| 대 전 | 3 | 41,925 | 25,155 | 16,770 |
| 울 산 | 2 | 27,950 | 16,770 | 11,180 |
| 경 기 | 10 | 139,750 | 83,850 | 55,900 |
| 강 원 | 14 | 195,651 | 117,391 | 78,260 |
| 충 북 | 8 | 111,800 | 67,080 | 44,720 |
| 충 남 | 13 | 181,677 | 109,006 | 72,671 |
| 전 북 | 10 | 139,752 | 83,851 | 55,901 |
| 전 남 | 8 | 111,800 | 67,080 | 44,720 |
| 경 북 | 12 | 167,702 | 100,621 | 67,081 |
| 경 남 | 7 | 97,825 | 58,695 | 39,130 |
| 제 주 | 3 | 41,925 | 25,155 | 16,770 |
| | | | | |

## □ 산림서비스도우미(숲길조사관리원)

(단위 : 명, 천원)

| 구 분 | 고용인원 | 2012년도 예산 | | |
|---|---|---|---|---|
| | | 계 | 국고보조금 | 지방비 |
| 계 | 212 | 2,962,713 | 1,777,628 | 1,185,085 |
| 서 울 | 3 | 41,925 | 25,155 | 16,770 |
| 부 산 | 2 | 27,950 | 16,770 | 11,180 |
| 대 구 | - | - | - | - |
| 인 천 | 1 | 13,975 | 8,385 | 5,590 |
| 광 주 | 2 | 27,950 | 16,770 | 11,180 |
| 대 전 | - | - | - | - |
| 울 산 | 6 | 83,850 | 50,310 | 33,540 |
| 경 기 | 31 | 433,226 | 259,936 | 173,290 |
| 강 원 | 27 | 377,326 | 226,396 | 150,930 |
| 충 북 | 20 | 279,501 | 167,701 | 111,800 |
| 충 남 | 17 | 237,577 | 142,546 | 95,031 |
| 전 북 | 19 | 265,527 | 159,316 | 106,211 |
| 전 남 | 29 | 405,277 | 243,166 | 162,111 |
| 경 북 | 27 | 377,327 | 226,396 | 150,931 |
| 경 남 | 28 | 391,302 | 234,781 | 156,521 |
| 제 주 | - | - | - | - |

## □ 산림서비스도우미(숲길안내인)

(단위 : 명, 천원)

| 구 분 | 고용인원 | 2012년도 예산 | | |
|---|---|---|---|---|
| | | 계 | 국고보조금 | 지방비 |
| 계 | 101 | 1,411,482 | 846,889 | 564,593 |
| 서 울 | 4 | 55,900 | 33,540 | 22,360 |
| 부 산 | 2 | 27,950 | 16,770 | 11,180 |
| 대 구 | 1 | 13,975 | 8,385 | 5,590 |
| 인 천 | 2 | 27,950 | 16,770 | 11,180 |
| 광 주 | - | - | - | - |
| 대 전 | - | - | - | - |
| 울 산 | 2 | 27,950 | 16,770 | 11,180 |
| 경 기 | 12 | 167,702 | 100,621 | 67,081 |
| 강 원 | 12 | 167,702 | 100,621 | 67,081 |
| 충 북 | - | - | - | - |
| 충 남 | 9 | 125,775 | 75,465 | 50,310 |
| 전 북 | 6 | 83,850 | 50,310 | 33,540 |
| 전 남 | 19 | 265,526 | 159,316 | 106,210 |
| 경 북 | 12 | 167,700 | 100,620 | 67,080 |
| 경 남 | 18 | 251,552 | 150,931 | 100,621 |
| 제 주 | 2 | 27,950 | 16,770 | 11,180 |

## □ 산림서비스도우미(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단위 : 명, 천원)

| 구 분 | 고용인원 | 2012년도 예산 | | |
|---|---|---|---|---|
| | | 계 | 국고보조금 | 지방비 |
| 계 | 92 | 1,285,705 | 771,423 | 514,282 |
| 서 울 | - | - | - | - |
| 부 산 | - | - | - | - |
| 대 구 | - | - | - | - |
| 인 천 | - | - | - | - |
| 광 주 | - | - | - | - |
| 대 전 | - | - | - | - |
| 울 산 | - | - | - | - |
| 경 기 | 9 | 125,775 | 75,465 | 50,310 |
| 강 원 | 24 | 335,401 | 201,241 | 134,160 |
| 충 북 | 6 | 83,850 | 50,310 | 33,540 |
| 충 남 | 7 | 97,825 | 58,695 | 39,130 |
| 전 북 | 14 | 195,652 | 117,391 | 78,261 |
| 전 남 | 19 | 265,527 | 159,316 | 106,211 |
| 경 북 | 8 | 111,800 | 67,080 | 44,720 |
| 경 남 | 5 | 69,875 | 41,925 | 27,950 |
| 제 주 | - | - | - | - |

## □ 산림서비스도우미(수목원코디네이터)

(단위 : 명, 천원)

| 구 분 | 고용인원 | 2012년도 예산 | | |
|---|---|---|---|---|
| | | 계 | 국고보조금 | 지방비 |
| 계 | 96 | 1,341,607 | 804,964 | 536,643 |
| 서 울 | - | - | - | - |
| 부 산 | - | - | - | - |
| 대 구 | 2 | 27,950 | 16,770 | 11,180 |
| 인 천 | 2 | 27,950 | 16,770 | 11,180 |
| 광 주 | - | - | - | - |
| 대 전 | 2 | 27,950 | 16,770 | 11,180 |
| 울 산 | 2 | 27,950 | 16,770 | 11,180 |
| 경 기 | 28 | 391,301 | 234,781 | 156,520 |
| 강 원 | 7 | 97,827 | 58,696 | 39,131 |
| 충 북 | 2 | 27,950 | 16,770 | 11,180 |
| 충 남 | 25 | 349,377 | 209,626 | 139,751 |
| 전 북 | 7 | 97,827 | 58,696 | 39,131 |
| 전 남 | 4 | 55,900 | 33,540 | 22,360 |
| 경 북 | 4 | 55,900 | 33,540 | 22,360 |
| 경 남 | 7 | 97,825 | 58,695 | 39,130 |
| 제 주 | 4 | 55,900 | 33,540 | 22,360 |

## □ 산림서비스도우미(도시녹지관리원)

(단위 : 명, 천원)

| 구 분 | 고용인원 | 2012년도 예산 | | |
|---|---|---|---|---|
| | | 계 | 국고보조금 | 지방비 |
| 계 | 333 | 4,653,695 | 2,792,217 | 1,861,478 |
| 서 울 | 10 | 139,750 | 83,850 | 55,900 |
| 부 산 | 32 | 447,202 | 268,321 | 178,881 |
| 대 구 | 17 | 237,577 | 142,546 | 95,031 |
| 인 천 | 20 | 279,501 | 167,701 | 111,800 |
| 광 주 | 10 | 139,750 | 83,850 | 55,900 |
| 대 전 | 10 | 139,750 | 83,850 | 55,900 |
| 울 산 | 10 | 139,750 | 83,850 | 55,900 |
| 경 기 | 46 | 642,853 | 385,712 | 257,141 |
| 강 원 | 26 | 363,352 | 218,011 | 145,341 |
| 충 북 | 18 | 251,552 | 150,931 | 100,621 |
| 충 남 | 23 | 321,427 | 192,856 | 128,571 |
| 전 북 | 20 | 279,501 | 167,701 | 111,800 |
| 전 남 | 33 | 461,177 | 276,706 | 184,471 |
| 경 북 | 33 | 461,177 | 276,706 | 184,471 |
| 경 남 | 25 | 349,376 | 209,626 | 139,750 |
| 제 주 | | - | | |

## □ 산림서비스도우미(학교숲코디네이터)

(단위 : 명, 천원)

| 구 분 | 고용인원 | 2012년도 예산 | | |
|---|---|---|---|---|
| | | 계 | 국고보조금 | 지방비 |
| 계 | 91 | 1,271,732 | 763,039 | 508,693 |
| 서 울 | 3 | 41,925 | 25,155 | 16,770 |
| 부 산 | 4 | 55,900 | 33,540 | 22,360 |
| 대 구 | 5 | 69,875 | 41,925 | 27,950 |
| 인 천 | 4 | 55,900 | 33,540 | 22,360 |
| 광 주 | 4 | 55,900 | 33,540 | 22,360 |
| 대 전 | 4 | 55,900 | 33,540 | 22,360 |
| 울 산 | 4 | 55,900 | 33,540 | 22,360 |
| 경 기 | 11 | 153,725 | 92,235 | 61,490 |
| 강 원 | 5 | 69,875 | 41,925 | 27,950 |
| 충 북 | 7 | 97,825 | 58,695 | 39,130 |
| 충 남 | 8 | 111,802 | 67,081 | 44,721 |
| 전 북 | 8 | 111,802 | 67,081 | 44,721 |
| 전 남 | 8 | 111,802 | 67,081 | 44,721 |
| 경 북 | 8 | 111,801 | 67,081 | 44,720 |
| 경 남 | 4 | 55,900 | 33,540 | 22,360 |
| 제 주 | 4 | 55,900 | 33,540 | 22,360 |

< 붙임 5 > - 보고서식(월보)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실적(OO월)

[기관명 :  ]

(단위 : 명, 백만원)

| 사업별 | 세부사업 | 계획인원(명) | 인원지원실적(명) | | | | | | | 예산액(백만원) | 예산집행실적(백만원) | | | | | | | | | 비고 |
|---|---|---|---|---|---|---|---|---|---|---|---|---|---|---|---|---|---|---|---|---|
| | | | 연고용인원 | | | 지원인원 | 1일고용인원 | 여성참여인원 | 200일이상고용인원 | | 누계 | | | 국 비 | | | 지방비 | | | |
| | | | 누계 | 전월 | 금월 | | | | | | 계 | 전월 | 금월 | 소계 | 전월 | 금월 | 계 | 전월 | 금월 | |
| 합 계 | | | | | | | | | 9월부터 작성 | | | | | | | | | | | |
| 산림서비스도우미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숲 해 설 가 | | | | | | | | | | | | | | | | | | | |
| | 숲 생 태 관 리 인 | | | | | | | | | | | | | | | | | | | |
| | 숲 길 조 사 관 리 원 | | | | | | | | | | | | | | | | | | | |
| | 숲 길 안 내 인 | | | | | | | | | | | | | | | | | | | |
| | 산촌마을운영매니저 | | | | | | | | | | | | | | | | | | | |
| | 수목원코디네이터 | | | | | | | | | | | | | | | | | | | |
| | 도 시 녹 지 관 리 원 | | | | | | | | | | | | | | | | | | | |
| | 학교숲코디네이터 | | | | | | | | | | | | | | | | | | | |
| 산림재해모니터링 | 산림재해감시원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하고 서식은 절대 변경하지 마시오.

※ 작성요령('12년부터 고용인원보고 월보, 예산집행현황도 월보)

- **연고용인원** : 1일고용인원×고용일수(주차, 연가 등 유급휴가 포함)
- **지원인원** : 본 사업에 참여한 모든 인원(누적 수치로 작성)
- **1일고용인원** : 1일 고용하는 상시인원(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
- **여성참여 인원** : 본사업이 성별영향평가대상 사업으로서 여성참여율 통계작성에 필요
- **200일이상 고용인원** : 근로자 개인이 200일이상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수
  * 1년동안 본사업에 200일이상 참여한 근로자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9월 이후부터 누적수치로 작성

< 붙임 6 > - 보고서식(반기보)

# 2012년 상/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 참여자 현황

<기관명> (단위 : 명)

| 사업명 | 참여인원 (A) | 참여인원 중 취업취약계층 채용현황 | | | | | | | 비취약계층 (C) | 비율 (B/A) |
|---|---|---|---|---|---|---|---|---|---|---|
| | | 계(B) | 저소득층 | 6월이상 장기실업자 | 여성가장 | 고령자 | 장애인 | 북한이탈자, 결혼이주자 | | |
| 합계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공공산림가꾸기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 | | | | | | | | | |
| 산림서비스 도우미 소계 | | | | | | | | | | |
| 숲해설가 | | | | | | | | | | |
| 숲생태관리인 | | | | | | | | | | |
| 숲길조사관리원 | | | | | | | | | | |
| 숲길안내인 | | | | | | | | | | |
|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 | | | | | | | | | |
| 도시녹지관리원 | | | | | | | | | | |
| 학교숲코디네이터 | | | | | | | | | | |
| 수목원코디네이터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산림재해감시원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해외인턴지원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 | | | | | | | | | |

※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는 "취업취약계층의 범주"를 숙지하여 작성

# 10. 숲가꾸기

목 표

◇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
- 경제림육성단지에 숲가꾸기를 집중하여 산림가치 제고
- 숲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품질 높은 숲가꾸기 추진

o 숲가꾸기 : 250천ha(국유림 45, 민유림 205)
o 산물수집 : 150만㎥(국유림 40, 민유림 110)
※ 예산 : 247,283백만원(국유림 76,976, 민유림 170,307)

## 가. 정책여건

o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녹색성장이 확산
o 기후변화 대비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내실있는 숲가꾸기 필요
o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가 필요
o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 요구가 높은 실정
o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를 위해 기계·장비·작업도 등 인프라 구축 요구 증대
o 자연환경보전, 재해 예방, 야생 동·식물 서식지 관리 등 숲가꾸기 분야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

## 나. 추진방향

o 숲가꾸기를 통해 경제림 300만ha를 육성하고, 산림자원의 질적 개선 도모
o 산림의 6대 기능별 고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 사업 실행
o 숲가꾸기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정책숲가꾸기 확대
o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숲가꾸기 도입 등 업무영역 확대
o 도로변 가시권 및 인공림을 우선 추진하여 경제적 가치 제고와 가시적 성과 창출
o 숲가꾸기 일관시스템 정착으로 산물의 수집 및 활용 확대
o 실시설계·감리제도 정착을 위한 평가·모니터링 및 기술교육 강화
o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 강화
o 숲가꾸기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방청·지자체별 현장 토론회 내실화
o 숲가꾸기 효과 계량화, 사업 평가, 실적 관리 및 홍보 강화
o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실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다. 세부추진계획

### 정책 분야

### 1 2단계「숲가꾸기 5개년 계획(2009~2013)」4차년도 내실화

o '13년까지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편익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기술적·생태적인 숲가꾸기 125만ha, 산물수집 650만㎥ 추진

o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 주요추진 방향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숲가꾸기 추진
-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 탄소최적화 경영을 위한 숲가꾸기 제도 및 시업체계 마련
- 숲가꾸기 설계·감리 품질 향상 및 기술인력 관리 개선

o 이를 위해, 금년도는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내실화하고, 산물수집을 확대하여 산업용재 및 에너지 자원으로 공급 확대
- 숲가꾸기 계획면적 : 250천ha(국유림 45천ha, 민유림 205천ha)
- 숲가꾸기 산물수집 : 100천ha(국유림 20천ha, 민유림 80천ha), 150만㎥

### 2 경제림 육성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숲가꾸기 확대

#### 1) 경제림 단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집중하여 임업생산성 제고

o 숲가꾸기 사업은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으로 실행하고, 사업구역을 집단화·규모화하여 우량 대경재 생산단지로 육성

#### 2) 국립공원 등 법적 제한림으로 숲가꾸기 사업 영역 확대

o 국립공원 등 법적 제한으로 방치되었던 산림에 대해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숲가꾸기를 도입하여 경관·생태기능 강화

※ 자연환경보전림 숲가꾸기 가이드라인 별도 시달 계획임.

#### 3) 대나무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o 탄소흡수능력이 뛰어나며 자원의 순환력이 우수한 대나무 숲에 대해 생육환경에 적절한 임분 관리를 통해 대나무 숲의 건강성을 증진·보전

### 4) 국유림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다층림가꾸기 추진

o Ⅳ영급 이상 되는 국유림을 대상으로 다층림가꾸기 신설(1천ha)

- 실시설계부터 후계림 수종 선정, 예정지 정리 등 조림계획을 사전에 반영하여 기존 숲가꾸기 방식과는 차별화
- 다층림 조성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과거 시행착오 최소화

o 다층림 조성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다양한 작업방식 적용 유도

- 형질우량림 뿐만 아니라 불량림에 대한 적극적 갱신 유도방안으로 활용
- 숲가꾸기와 조림의 개별 분리추진에서 벗어나, 숲가꾸기 과정에서 불량 임지는 일정 면적으로 벌채 후 공지조림(인공조림 또는 천연하종 등)을 통해 갱신하여, 숲가꾸기와 조림이 연계된 개념으로 추진

< 다층림 가꾸기 >

· 솎아베기와 후계림을 미리 조성하여 산림자원의 순환구조를 앞당기고, 수직적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 생산량 증대 및 숲의 급격한 충격 완화
- 상층 : 장벌기 우량대경재로 육성할 입목 위주로 집중 관리
- 하층 : 후계림 육성을 위한 나무심기 또는 천연하종갱신 환경 조성
※ 기관별 사업량 및 예산은 수요조사를 통해 별도 배정 예정

### 5) 사찰산림과 대학교 학술·연습림에 숲가꾸기 지원

o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공익성이 높은 사찰산림과 대학교 학술·연습림에 대하여 산림의 기능에 맞게 숲가꾸기 지원

- 산림청과 대한불교 조계종간「사찰 산림의 보호 및 공익적 가치 증진 협약」 체결('08.12.11) 후속조치로 사찰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실행
-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대학교 학술·연습림에 대해 해당 대학과 지자체·지방청이 상호 협력하여 사업 추진

### 6) 산주 동의를 높여서 산주와 함께하는 산림사업 실현

o 산주의 정확한 주소파악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초본 열람), 지자체 세무부서의 협조를 받아 사업 동의서 발송

- 사업 동의서 발송 시 '숲가꾸기 사업안내 리플렛' 등 설명자료 첨부

o 인터넷을 통한 숲가꾸기 산주 신청 서비스 홍보 및 이용 활성화

o 숲가꾸기 설계시 산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방법 등 충분히 설명

## 3 산물수집 확대 및 재해에 강한 산림 육성

### 1) 산물수집을 확대하여 목재·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

o 설계 단계부터 산물수집·활용을 고려한 일관시스템을 정착시켜 생산량 증대

- 수집량 : ('11) 130만㎥ → ('12) 150만㎥

o 이용 목적을 고려한 생산재 공급으로 자원의 효용가치 제고

o 작업임도 개설 및 임업기계화를 병행하여 생산비용 절감

### 2) 숲가꾸기 산물 처리로 재해요인 사전 제거

o 산불·수해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의 산물을 반드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재해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옮겨 부식이 촉진되도록 단목 처리

- 계곡부의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도로·임도·농경지,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 등으로부터 사면거리 30m 내외 지역

o 산사태 위험지 1등급 지역내 숲가꾸기 산물 전량 수집

### 3) 재해예방 차원의 숲가꾸기 확대로 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

o 도심 생활권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차원의 숲가꾸기 확대

- 산사태 위험지 1등급 지역에 숲가꾸기를 우선 실시하여 나무의 뿌리발달 촉진 등 재해에 대한 저항성 증진

※ 산사태,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긴급히 예방하거나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자법(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개정('12년 시행)

o 산불,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실시

- 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재해에 취약한 소나무단순림에 숲가꾸기 확대

- 소나무재선충병·솔잎혹파리·참나무시들음병·아까시나무의 황화현상 등이 발생한 지역은 산림병해충 방제 차원에서 숲가꾸기 사업 실행

※ 특히, 전남, 경남 등의 소나무단순림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숲가꾸기를 확대하여 소나무 숲의 건강성 증진 도모

## 4 주요 도로변 숲가꾸기 등 가시권 산림정비 강화

### 1) 고속도로, 주요 국도 등 가시권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추진

※ 사업 실행 우선순위 : ① 고속도로변 산림 ② 국도변 산림 ③ 지방도변 산림 ④ 시・군・구 도로변 산림 ⑤ 휴양관광지 주변 산림 등

### 2) 노선별・거점별로 숲가꾸기를 완료하여 가시적 성과 제고

o 솎아베기, 천연림보육・개량, 덩굴류제거, 가지치기 등 세부사업 통합 실행
o 한국도로공사, 지방국도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 추진으로 성과 제고
o 국・사유 구분 없이 주 사업시행기관에서 노선별로 사업 완결

## 5 녹색댐 조성사업

### 1) 사업 추진체계

o 산림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숲가꾸기 사업 추진
- 양 기관이 "녹색댐 조성사업" 공동 추진 협약 체결('07.11.20)

o 사업 시행 절차
- 기본계획 수립(산림청) → 기본설계(한국수자원공사) → 연간 사업계획 수립(산림청) → 실시설계, 숲가꾸기, 감리(국유림관리소, 시・군)

### 2) 사업 추진요령

o 기본설계에 따라 가급적 댐유역별 사업량 전체를 묶어서 일괄 실시설계
- 예산 부족 등으로 '12년에 책정된 사업량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량을 축소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시행
- '12년 사업량이 적어 별도의 실시설계를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 2~5년간 사업량을 묶어 일괄 실시설계를 하거나, 기존 숲가꾸기 사업에 포함하여 설계

o 세부적인 사업요령은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참조하여 실행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과 표준 매뉴얼의 수원함양림 작업 기준

o 녹색댐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는 기존의 숲가꾸기 사업비를 활용

o 실시설계서 검토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 착수 전에 감리 용역을 발주

o 녹색댐 추진 실적자료 관리 철저
- 기 기본계획 수립 완료('05~'11년, 26개댐)한 댐유역의 지자체별(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실적자료 정리 및 이력 관리 철저

※ 기본계획에 의한 댐별, 연도별, 개소별 현지 숲가꾸기 추진실적('06~'11년) 관리

## 실 무 분 야

### 1 숲가꾸기 설계·감리 품질향상

#### 1) 기본 사항

o 50ha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개소는 반드시 설계·감리 실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등에 따라 현지여건에 맞게 시행
- 부실 설계·감리 근절·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사전교육 등 실시

o 소규모(50ha 미만) 산주 직접 사업지는 지자체에서 위탁 설계·감리업체 지정

- 위탁 설계·감리업체의 완료 보고서 수리 후 보조금 지급
- 산주부담금을 원가 계산에 반영하여 실시설계 추진

· 숲가꾸기 사업의 조기발주 및 연중 사업실행을 위하여 익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설계를 통하여 전년도에 50% 이상 사업면적 확보 및 설계 완료

o 현장과 부합하는 숲가꾸기 설계로 사업 품질 향상 도모

- 정확한 현지조사, 산림 여건을 반영한 숲가꾸기 설계도·서 작성
- 특히, 전 구역을 천연림 개량과 같은 단일 사업종으로 설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천연림 갱신 등 다양한 작업종 반영

o 숲가꾸기 대상지 내에 부수적(附隨的)인 산림사업이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산림사업 통합 설계 시행

- 숲가꾸기 대상지 내에 일부 면적이 포함되는 송이산 가꾸기, 단기소득 임산물 식재, 병해충 방제 등 포괄적인 숲가꾸기 사업 범위에서 실행
- 단, 숲가꾸기를 수반하는 경우 유사한 작업은 숲가꾸기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스프링쿨러 같은 시설물과 단기소득 묘목대 등은 집행 불가

· 예시)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시 One-stop 방식(솎아베기 → 산물수집 → 임내정리)을 위한 실시설계에 포함된 임내정리비 반영 가능

## 2) 세부 적용 기준

o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는 산주실행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실행하는 경우는 미반영

o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은 부가가치세를 미반영

| |
|---|
|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되,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시에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방지(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대급 지급시 정산처리) |

o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윤과 수수료를 중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윤과 수수료는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o 숲가꾸기 품셈 적용시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 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함

o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시행자가 보험에 가입한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처리하며, 관계법령에서 매년 고시하는 내용을 확인

| |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 04-159-8, '08.12.29)** |
| ・산재보험료 : 2천만원 미만 사업인 경우도 가입(고용노동부 고시)<br>・고용보험료 : 노무비의 0.7～1.3%(사용자 부담금, 국토해양부 고시)<br>※ 1개월 미만의 일일 고용사업인 경우에도 보험료 반영(고용보호법 제2조 6호)<br>・국민연금보험(국토해양부 고시)<br>※ 단 1개월 이상 사업인 경우만 적용<br>・국민건강보험(국토해양부 고시)<br>・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고용노동부 고시)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세부사용계획에 따라 항목별로 지출하고,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는 업체에 지출시 반드시 세금고지서를 첨부하여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정산처리

-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4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o 숲가꾸기 설계도・서에 의거 실행되지 않은 공정과 실행할 필요성이 없는 공정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감액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정산처리

## 2 숲가꾸기 예산집행 철저

### 1) 예산 집행 및 관리

o 숲가꾸기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매월 집행률 및 실집행률을 파악하고 있으니, 예산 배분계획에 따라 현지 집행 추진

- 시・도(시・군・구)의 예산 편성시 세부사업명을 '정책숲가꾸기(보조)', '공공산림가꾸기(보조)'로 통일하여 향후 예산집행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치

o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선금규정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으로 노임체불 등을 방지하고, 업체의 부담 경감

- 계약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를 선금으로 지급
- 선금은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숲가꾸기 사업의 선금 지급 요령 >

・근거 법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
・근거 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8, 2008.12.29) '제9장 선금의 지급 등(제32조부터 제38조)'

※ 회계예규에서 선금의 사용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노임인 숲가꾸기 사업에 선금 지급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

### 2) 산주 자부담 지원방안 강구

o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산주 자부담을 지원하거나, 융자제도(숲가꾸기 산림사업 종합자금) 홍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

※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산주 자부담을 지방비로 지원

o 부득이할 경우 숲가꾸기 산물로 대체하거나 산주 노동력 제공을 권장

## 3 사업장 지도 감독 등 현장관리 강화

### 1) 외부 모니터링 확대 및 인적자원 실무역량 강화

o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설계・감리를 확대하여 전문성 제고

- 익년도 사업지에 대한 사전설계로 설계 품질향상 및 행정력 절감

※ 외부 설계・감리 : ('11) 133천㏊ → ('12) 173천㏊ (총 사업량의 70%)

o 중앙 차원의 숲가꾸기 전문 모니터링단 운영

- 정부·학계·외부전문가 등으로 전문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지역별로 감사 수준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사업 방지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o 숲가꾸기 실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술력 향상

- 숲가꾸기 담당자 현장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상반기)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훈련원에 위탁하여 3일 집합교육으로 실행
- 도 주관으로 해당 시·군에 소재한 설계·감리 및 시공업체 소속 산림기술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상반기)

## 2) 선목사업 분리발주 및 사업 시행자 자격확인 철저

o 설계용역 의뢰 단계에서부터 설계·감리용역의 규모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사업 발주

o 선목과 솎아베기를 분리발주 할 수 있으며, 선목은 반드시 선목 자격이 있는 자가 사업 실행

o 선목사업을 분리발주 할 경우는 도태간벌의 미래목, 정량간벌의 제거 대상목을 미리 선목한 후에 사업 착수

- 미래목 선목 : 천연림보육(솎아베기 단계)·인공림의 도태간벌에 적용
- 제거대상목 선목 : 정량간벌에 적용(가슴높이 지름 10㎝ 이상)

o 독림가, 임업후계자가 아닌 산주 실행사업은 미래목 선정, 작업자의 자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미래목 선정자 실명 기록 유지)

o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감리 및 사업담당 공무원은 작업원 운영계획서(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16호 서식)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시 점검
- 감리 용역시 계약사항에 하도급 사례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추가
- 사업담당 공무원은 준공 처리 전에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문서 보관
- 현장 지도 점검 시 하도급 사례에 대한 작업자들의 신고 강화를 위해 부당한 하도급 사례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

※ 사업시행자의 작업원 운영계획서상의 작업원 명단(자격 등)과 현장 근로 작업원의 일치 여부를 수시 확인

o 자격미달 또는 자격 중복 기술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한 사업, 위법 및 지침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설계·감리업체의 기술자와 산림사업법인과의 등록인력 중복 여부 점검
- 설계·감리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는지에 대해 수시 점검
- 사업계약시 담당 공무원은 계약업체의 기능인영림단 구성요건을 반드시 확인

·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관리시스템(http://fec.foa.go.kr/legal/)' 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현장대리인의 이중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o 6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영림단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자격증 발급을 독려하여 기술자격 관리 철저

### 3) 일정규모 이상의 숲가꾸기 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 정례화

o 50ha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지자체·지방청 주관으로 분기별 일제점검 추진

o 부실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동일사례 재발 방지

o 지방청·지자체는 학계, 전문가 등으로 숲가꾸기 기술위원회를 구성 운영

< 숲가꾸기 기술 위원회 >

o 목적과 구성
- 목 적 : 숲가꾸기 사업 평가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정부사업에서 거버넌스 확대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제고
- 구 성 : 공무원, 학계, NGO, 산주(공·사유림), 전문가 등
- 역 할 : 숲가꾸기 사업의 모니터링, 기술지도, 제도개선 의견제시, 홍보 등

o 시·군, 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지 자체 평가를 실시
- 시기 및 횟수 : 상·하반기 각 1회

o 도, 지방청별 평가 계획 및 평가 결과를 산림청에 통보

### 4) 숲가꾸기 현장토론회 활성화

o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 현장 토론회 추진
- 도·지방청 주관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토론회 개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상의 산림 기능별 토론
  · 숲에 대한 경영목표, 작업방법, 작업강도 등 토론
  · 임업기계장비의 활용, 산물수집 확대 방안 등 숲가꾸기 기술 공유
  ※ 산림청에서는 자체 현장토론회시 지자체와 지방청 요구에 따라 지원

o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사업 추진 및 장기 모니터링 추진

### 5) 숲가꾸기 안전사고 예방

o 작업 실행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및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

o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구급약품 비치, 상황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개인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작업장갑, 무릎보호대, 통신장비 등

o 안전깃발 릴레이, 안전캔디 데이, 1일 안전인사 등 현장 무재해를 위한 안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별 안전사고 예방 우수사례 전파

### 6) GPS를 이용한 표준지 보존·관리

o 숲가꾸기 사업의 표준지는 반드시 GPS좌표를 기록하고 도면화

- 표준지는 지형도상에서 일정 격자의 교차점에 배치하도록 하며 임도변, 도로변 등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만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

· 표준지 설치 목적은 사업비 산출근거, 작업단·영림단에게 작업방법의 현장 설명에 활용, 사업 전·후의 대조구 역할 등으로 사업면적에 포함됨.
· 표준지 조사는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함.

o 표준지에 대해서는 사업 전후 대비, 사후 점검이 용이하도록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보존

- 도로변, 주요 시설 가시권 등 경관적 목적이 있을 경우 숲가꾸기 작업을 하도록 설계서에 반영하고, 사업 실행 사유를 설계도서에 기록

### 7) 산림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o 국가 산림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자원 업무(종자, 묘목, 조림, 숲가꾸기, 벌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정보통계담당관실)

- '11년에는 북부지방산림청 중심으로 시스템 시범 운영

o '12년부터 5개 지방청으로 확대하여 산림자원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 사업 대상지 조사, 실시설계, 현지점검, 준공검사 등을 시스템에서 처리

o 산림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교육 실시 (정보통계담당관실과 협조)

## 4 숲가꾸기 사후관리 및 홍보

### 1) 숲가꾸기 사업 실적자료 관리 철저

o 계약 건별, 필지별 등 숲가꾸기 사업 이력에 대한 DB 구축
- 산물수집 및 활용실적 자료를 집행기관별 명확히 관리하여 보고(월보 등)

o 숲가꾸기 추진과정상의 사진 등 자료관리 철저
- 주요 사업지의 세부사업 추진 공종별로 전·중·후 대비 사진기록관리 및 실적 보고(월보 등)시 현장 사진중심의 보고체계 강화
- 민원 발생 우려지 등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상자료로 기록 관리

### 2) 숲가꾸기 사업 평가

o 민유림 : 수시 현장 점검 및 지자체 합동평가(행정안전부 주관)에 의함

o 국유림 : 소속기관 평가 계획에 의함

### 3) 숲가꾸기 사업 홍보 강화

o 숲가꾸기 사업 착수 전 주요 사업지별「숲가꾸기사업 발대식」개최를 통해 숲가꾸기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
- 지역 언론매체, 반상회보,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기능과 역할 및 녹색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부각

o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변의 숲가꾸기 홍보 입간판 정비
- 노후화된 홍보 입간판 도색 또는 철거, 입간판 주변 풀베기 등 수시 정비

o 숲가꾸기 사업이 수해 등 재해를 유발하거나 밀원수종·꿀벌을 감소시킨다는 등 잘못된 언론보도 사전 대응
- 숲가꾸기 사업의 재해예방 효과 등 순기능에 대해 홍보 강화

### 4) 숲가꾸기 기간 행사 추진

o 숲가꾸기 기간(11.1~11.30) 행사를 범국민적 행사로 확대 실시
- 숲가꾸기 1일 체험시 학생,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으로의 참여 확대
- 숲가꾸기 산물을 활용한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를 병행하고 홍보를 강화
- 산물수집 기계장비 실연 등

o 산림청 및 산하기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숲가꾸기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숲가꾸기 장소 제공 및 장비대여, 기술지도

### 5) 사랑의 땔감나누기

o 사랑의 땔감 나누기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물의 일부를 지역내 취약계층(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공공시설(양로원, 마을회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
-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연중 실시하되, 동절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집중지원
- 2012년 지원 목표량 : 10천 세대에 50,000㎥ 지원(1세대 당 평균 5㎥ 지원)

## 라. 추진일정

o 2012년도 숲가꾸기 발대식 : 2012. 1월

o 2012년도 숲가꾸기 사업 시책 설명회 : 2012. 1월

o 숲가꾸기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 : 2012. 상반기

o 숲가꾸기 기간행사 계획 보고 : 2012. 10. 15

o 숲가꾸기 일관시스템 모델숲 품평회 : 2012. 11월

o 지역별 숲가꾸기 현장 토론회 : 2012. 매월

o 숲가꾸기 사업장 일제점검 결과보고 : 2012. 3・6・9・12월

o 숲가꾸기 자체 평가 결과 보고 : 2012. 6월, 12월

o 2011년 국고보조사업 정산 보고 : 2012. 3월

o 사랑의 땔감나누기 추진 : 2012. 10 ~ 2013. 2월

o 숲가꾸기 기간행사 실적 보고 : 2012. 12. 5

※ 매월 5일 기준으로 숲가꾸기 추진실적(월보) 제출

# 11. 공공산림가꾸기

목 표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자원의 활용 제고

o 고용인원 : 3,265명(국유림 25, 공・사유림 3,240)

※ 예산 : 30,743백만원(국유림 915, 공・사유림 29,828)

## 가. 정책여건

o 국내・외적으로 일자리 중심의 경제회복 정책이 강조되면서 정부에서는 '국가고용전략 2020'을 수립('10.10월)하여 고용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

o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산림분야 과제인 숲가꾸기를 통해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등 농산촌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가 요구

o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재생 에너지원인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을 높이기 위해 산물수집의 확대와 임업 기능인력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

o 산림재해의 예방・복구, 도로변 경관림 조성,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수원함양림 육성 등 공공성이 높은 산림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

## 나. 추진방향

o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계층, 장기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의욕 고취

o 저소득계층 및 청년실업자 등 실질적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고 집중적인 산림기술교육을 통해 산림분야 직업인으로 양성

o 주요 도로변, 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산림내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

o 전국 산림에서 발생되는 산림피해의 예방과 신속한 복구 및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산림현장 민원의 조기 처리에 '숲가꾸기 패트롤' 인력 투입

o 숲가꾸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자원조사 및 체계적인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DB 구축

## 다. 세부추진계획

### 공 통 사 항

#### 1)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개요

o 3개 분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숲가꾸기 패트롤

o 운영 인원 : 3,265명
- 지방청 : 25명(숲가꾸기 패트롤 25명)
- 지자체 : 3,240명(수집단 3,000명, 자원조사단 240명, 숲가꾸기 패트롤)

※ 지자체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인원(도별 5명, 8개도 40명)은 지자체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인원 내에서 별도 선발하여 운영

o 운영기관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o 사업추진 : 연중 실행(고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하되, 가능한 1월부터 조기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2) 주요 사업 내용

o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공공성이 강한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및 정책 숲가꾸기 실행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산물 활용 촉진

o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숲가꾸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자원 조사 업무와 산림사업 DB구축 등의 관리 등

o **(숲가꾸기 패트롤)** 산림에서 발생되는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에 신속 대응하고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현장 민원 처리

#### 3) 모집 공고 및 신청 자격

o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는 전년도말 또는 연초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기관별 홈페이지, 게시판, 일간지 등에 사업내용을 공고한 후 공개채용 실시

o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선발 시 작성된 대기자 명단을 활용하여 수시 고용하거나 또는 추가모집 가능

o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 4) 사업 참여자 선정

o 취약계층 고용 기준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참여자 선정 시 정부지원이 필요한 실질적 취업 취약계층을 50%이상 고용(숲가꾸기 패트롤 제외)

※ 취약계층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자

< 일자리 사업의 취업 취약계층 범주>

| 취업 취약계층 | 범 주 |
|---|---|
| 1. 저소득층 | o 최저생계비 150% 이하<br>* 건강보험료 납입액(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
| 2. 6개월이상 장기 실업자 | *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br>* 청년(만 29세이하)의 경우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
| 3. 여성가장 | o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 |
| 4. 고령자 | o 만 55세 이상 |
| 5. 장애인 | o 장애인 증명서로 확인<br>*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 6.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

※ 20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의 취약계층 범주

< 2012년 최저생계비 >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금액(원/월)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2,325,580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 2,602,257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6호(2011. 8. 31), 시행일 2012년 1월 1일 이후

o 사업 참여자 선정주체

- 지방산림청 :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 지방자치단체 : 도지사 및 시장·군수

## 5) 임금 및 교육 훈련

o 인건비 지급 기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 일반인부 : 40,000원/1일, 기술인부 : 45,000원/1일(일반인부임+기술수당)
- 부대경비 : 5,000원/1일(간식비 3,000, 교통비 2,000)

| |
|---|
| · 기술수당은 유급휴일(주차·연차휴일) 및 교육기간에도 소정근로(일급)에 포함하여 "통상임금"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급<br>· 단, 부대경비는 실제 근로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 |

〈숲가꾸기 패트롤〉

- 인 부 임 : 55,000원/1일
- 부대경비 : 5,000원/1일(간식비 3,000, 교통비 2,000)

| |
|---|
| · 숲가꾸기 패트롤 인부임과 기술수당의 별도 구분 없이 일괄 인부임 성격으로 지급<br>· 인부임은 유급휴일(주차·연차휴일) 및 교육기간에도 동일금액(55천원/1일)으로 지급<br>· 단, 부대경비는 실제 근로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 |

o 교육 훈련

- 근로자 기술교육은 2주의 교육기간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의 경우는 신규 3주, 보수 1주의 교육을 추진
- 교육기간 중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임을 지급

※ 숲가꾸기 기술교육 기관별 인원배정을 참고(붙임 5)하여 근로자 전원 교육 이수 추진

## 6) 안전 관리

o 안전 관리

-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산재보험 가입 조치
- 개인별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현장에 구급약품 비치
-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초 건강진단 실시
- 감독공무원은 사업 착수 전 또는 수시로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 기록 유지

o 안전 장구 구입

- 사업 시행기관별로 작업자별 개인 보호구 구입 지급

※ 개인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작업장갑, 무릎보호대, 통신장비 등

- 여성 근로자의 참여 증가에 따라 필요시 탈의 및 간이화장실로 이용 가능한 텐트형 파라솔 등 편의시설 구입·제공

### 7) 대행 제도

o 행정력 절감을 위한 대행제도 시행

- 근로자 선발, 예산 집행을 제외한 현장 기술지도 업무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산림조합계통조직)하도록 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급

※ 지자체 수수료 요율은 순수 인부임의 7%로 대행할 수 있음

## 세부 사업별 기준

### 1)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o 선발 대상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과 업무보조요원으로 구분하여 선발

※ 단, 업무보조요원은 산림관련 대학졸업자 등 청년실업자,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및 산림조합 퇴직자 등으로 전체 참여자의 20% 이내에서 선발

- 지방자치단체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고용 배정인원 내에서 숲가꾸기 패트롤 단원 선발

o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2012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지침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o 시행 대상사업은 공공성이 높은 산림사업 분야로 확대 추진하고 사업종별 사업추진 요령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름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관련 기술교육을 필히 이수하도록 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위한 산물수집 중점 실행

- 특히, 도로변·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산림과 재해위험지역의 숲가꾸기 산물은 전량 수집을 원칙으로 추진

o 주요 사업내용

-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 도로변 산림관리 사업(덩굴류 제거 등)
-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사업
- 숲가꾸기 이후 산물 발생대상지 임내정리 및 산물수집
- 산불, 풍수해, 병해충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산물수집 등

### 2)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o 숲가꾸기 중장기 계획 수립에 필요한 대상지 자원조사 등 조사인력 지원

- 산림자원조사 정보 및 산림사업 실행이력 관리 등 산림정보 전반에 관한 DB구축 등 조사·관리요원으로 활용

o 대상 기관 : 숲가꾸기 자원 조사가 필요한 도(道) 또는 시·군

o 고용 대상

- 대학 졸업자로서 미취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등 2012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지침에 의한 자격대상자

o 기술 교육

- 신규교육 3주, 보수교육 1주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일정은 교육훈련기관의 여건에 따라 조정실행 가능

### 3) 숲가꾸기 패트롤

o 전국 산림에서 발생되는 산림피해 및 산림 내 민원 등 긴급사항의 처리로 생활권 주변 숲을 변화시키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 구현

- '10년 북부·남부·중부지방산림청의 시범 운영사례를 확산시켜 '11년부터 지자체 등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

o 운영기관 : 5개 지방산림청, 8개 도(13개단)

- 지방청 : 북부·동부·남부·중부·서부지방산림청(5개단)
- 지자체 :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8개단)

o 주요 사업내용

- 주요 도로변 등 산림 내 덩굴류,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 주거지, 농경지 주변 등 생활권 주변 산림 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 산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현장 민원 처리 및 산림재해 예방·복구 활동
- 현장 활동 기록유지 및 기타 사업기관이 지시한 제반 산림업무

o 숲가꾸기 패트롤 구성 및 운영

- 숲가꾸기 패트롤은 1개단에 5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
- 지방청은 숲가꾸기 패트롤 모집공고에 의하여 근로자를 선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고용 배정인원 내에서 숲가꾸기 패트롤 단원을 별도 선발(5명 내외) 운영

-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술 교육을 이수하고 기계톱 등 장비활용이 가능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로 채용
-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에 필요한 차량, 기계톱, 예취기, 안전장구 등 기계·장비·물품은 관련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 시·도(산림환경연구소 및 사업소 등) 및 지방산림청 소속으로 운영
  ※ 다만, 시·도의 경우 지역여건 및 실정에 따라 주요 시·군에서 운영 가능
- 시·군의 행정구역 구분 없이 가능한 도 및 지방청의 행정·관할구역 단위로 활동

o 임금지급
- 주 5일 근무 원칙으로 1일 급여는 인부임 55,000원과 부대비 5,000원을 지급 다만, 기술수당은 1일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숲가꾸기 패트롤 근로자 고용 즉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 조치

o 관련예산 배정
- 지방산림청 : '12년 숲가꾸기 패트롤 예산 활용
- 지자체(8개도) : '12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예산 활용

o 기타 세부사항은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지침' 및 '2012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지침'을 적용

## 교육훈련 및 점검단 운영

### 1) 기술교육훈련

o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확대 등을 위해 숲가꾸기 일자리 근로자 3,265명에 대한 기술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전문 임업인으로 육성
- 숲가꾸기 기술교육(패트롤) : 65명(2주)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 : 2,960명(2주)
- 숲가꾸기자원조사단교육 : 240명(4주)

### 2) 사업 점검단 운영

o 공공산림가꾸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자체 점검단을 구성하고 현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실시(상·하반기 각 1회 이상)

o 인건비 적정 지급 여부, 사업추진 실적, 일자리 창출 홍보, 안전사고 예방 노력도 등 중점 점검

## 라. 추진일정

o 근로자 신청・접수, 선발 : 2011. 12월 ~ 2012. 1월

o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발대식 : 2012. 1월

o 근로자 기술교육 : 2012. 2~7월

o 산물수집 등 추진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매월)

o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현장 점검 : 2012. 5월, 10월

o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매월)

o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성과 보고 : 2012. 12월까지

# 12. 종묘생산관리

목 표

◇ 종자공급원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여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안정적 우량묘목 생산

o 사업량 : 종자생산 45톤, 묘목생산(성묘) 41백만본

## 가. 정책여건

o 산림용 종자공급원(채종원·채종림·채종임분) 관리 등이 미비하여 우수 종자 공급에 차질 우려

o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 농촌인력 고령화 등에 따른 우량묘목의 안정적 생산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

o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조직배양묘목 생산 등 선진 양묘 기술 도입이 필요하며 조림면적 감소 등으로 국·민유양묘장 기능 위축

## 나. 추진방향

o 산림용 종자공급원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여 우수종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종자의 생산·유통·관리 등 국가관리체계를 강화

o 간이온실 확충 등 시설양묘 확대를 통한 양묘장 재해예방 및 우량묘목 생산기반 강화

o 조직배양묘목 생산 확대 등 선진양묘기술 도입 및 국·민유양묘장의 경영 개선을 통한 양묘산업 활성화 도모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체계 강화

#### 가) 종자공급원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여 우수종자 생산성 향상

o 종자 미 결실 채종원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현실여건에 맞게 정비

- 시험림, 다목적채종림에 편입된 채종원 등 종자채취가 어렵거나, 종자결실이 불량한 채종원은 현실여건에 맞도록 정비
- 채종원에 대한 종자결실 및 채취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

o ’10년 수립된 중장기 종자생산 계획 따라 채종원 조성 확대

- 채종원 확대 : (’11) 739ha → (’12) 750ha
  · 2025년까지 채종원 1,500ha를 조성하여 산림용 종자 90%이상 공급
  · 주요 조림수종 종자는 채종원, 시범사업·특색사업 등을 위한 종자는 채종림(임분)에서 채취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유도
- 지구온난화 및 탄소배출권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용수종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채종원 조성
- 지방청 및 도에서는 채종원 확대를 위하여 소관 국·공유림 지역 채종원 조성부지 확보 등 적극 협조

o 지방청 및 각 도에서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채종림(임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확인을 통한 정비 실시

- 기준미달 채종림(임분)은 해제하고 지역별 조림 수종 위주로 추가지정
  · 소나무, 낙엽송, 편백, 백합나무 등 주요 조림수종은 확대, 상수리, 자작은 축소, 채종원산으로 전량 수급 가능한 잣나무는 제외
  · 채종림(임분)은 가급적 국·공유림을 중심으로 지정하되, 지정·해제 시에는 반드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협의
    ※ 채종림(임분) 확보가 어려운 희귀 수종은 단목형태 또는 소수의 우량입목에 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협의하여 채종목으로 지정
- 기관별 조림계획에 상응한 수종별 종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채종림(임분)을 확보(지방청·도)

o 숲가꾸기, 작업임도,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을 통해 채종림(임분) 종자 결실 환경 개선 사업을 실행하여 종자 생산성을 극대화

- 종자결실환경 개선사업 : 관리도로, 종실가해 해충방제, 밀도조절(솎아베기) 등
- 채종림(임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요령을 제정 운용(’12.1월 중)

### 나) 산림용 우수종자 생산 및 기계화

o 산림용 종자는 반드시 종자공급원(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에서 채취하여 우수종자를 공급

- 우수 산림용 종자생산 : 45톤
  · 종자공급원 외에서 무단채취 하는 사례가 없도록 종자채취 현장지도 점검 강화
    ※ 싸리, 아까시 등 북한황폐산림복구용 종자는 일반 우량임분에서 생산 가능
- 채종원산 종자는 소량이라도 반드시 채취하여 우수 산림용 종자 공급
  · 채종원산 종자 공급 목표 : 30% 이상

o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 조림정책 변화에 따른 종자생산 확대

- 주 수종 :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편백, 잣나무, 삼나무, 가시나무류
- 바이오순환림 : 백합나무, 리기테다소나무, 포플러, 아까시, 참나무류

o 종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 및 전문인력 육성 추진

- 각 도에서는 종묘생산업 등록자, 임업종묘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종자채취단'을 구성하고 도급계약으로 종자채취 실시

  ※ 지방청은 현행대로 종자채취 실행

- 채종원 종자채취 작업 시 기계(버켓크레인, 세이커 등) 사용을 활성화하고 표준 작업공정을 제작(보완)하여 결과 보고(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종자채취 공정 및 단비 현실화 추진

### 다) 산림용 종자 유통·관리 강화

o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체계(생산-검사-보관-유통) 강화

- 국가지정 산림용 묘목생산사업은 검증된 종자 이외의 사용은 제한
- 종자유통시장에 대한 조사·분석 및 보고(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종자의 유통질서 확립과 불량종자 퇴출을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

o 종자저장고 설치·운영

- 종자결실(풍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종자수급(국가비축)을 위하여 종자저장고 신축(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종자저장고(GeneBank) : 최대 51톤 저장규모

  ※ '11년 착공 '12년 완공/ 종자 및 유전자원 저장, 각종 검사·분석

o 산지증명제도 운영

- 산림사업용 종자의 산지증명제도 정착(산지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는 종자 검사 불가)
- 불량종자의 차단 및 산지확인을 위하여 원산지 식별기술 개발

  · ('11까지) 3종[소나무, 낙엽송, 상수리] → ('12) 1종[잣나무]

o 채종원 통합관리시스템 및 종자유통관리시스템 보완

- GIS시스템과 연계한 '채종원 및 종자생산시스템' 개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시스템 개발 : ('10) 시스템개발 착수 → ('14) 개발완료 및 고도화

  ※ 시스템 개발 시「산림용 종자유통관리정보시스템」보완 병행

## 2) 우량·건전 묘목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조성

### 가) 묘목생산 및 기반 강화

o 우량묘목의 생산·공급

- ('11) 41백만본(19천ha) → ('12) 41백만본(17천ha)
- 바이오순환림 조성을 위한 묘목생산 : ('11) 19백만본 → ('12) 18백만본
  · 바이오순환림 조성용 묘목 중 백합나무 : ('11) 10백만본 → ('12) 7백만본

o 목재생산 등 경제림 육성을 위한 「**지역별 집중 양묘수종**」 위주로 묘목생산

| 강원·경북 | 경기 | 충남·북 | 전남·북, 경남 | 남부해안 및 제주 |
|---|---|---|---|---|
| 소나무<br>낙엽송<br>잣나무 | 소나무<br>낙엽송<br>백합나무 | 소나무<br>낙엽송<br>백합나무 | 소나무<br>편백<br>백합나무 | 편백<br>삼나무<br>가시나무류 |

- 경관수, 유실수·특용수는 지역특성 및 산주 수요를 반영하여 양묘

o 형질이 우수한 묘목 생산·보급을 위한 클론임업의 활성화

- 조직배양에 의한 클론묘목 생산기술 개발을 확대(국립산림과학원)
  · ('11까지) 백합나무 → ('12) 백합나무, 이태리포플러, 낙엽송 등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클론생산) → 국·민유 양묘장(묘목으로 육성) → 산지조림용으로 공급
  · 백합나무 조직배양묘 생산 : ('11) 30만본 → ('12) 40만본

o 간이온실 확대 보급 등 시설양묘 확대, 토양조사 등을 실시하여 우량묘목 생산기반을 강화

- 시설양묘 확대 : ('11) 17% → ('12) 20% → ('15) 30%
- 민간양묘장에 대한 토양조사 실시 및 토양개량사업 확대

### 나) 묘목 품질향상

o 조림용 묘목검사의 강화

- 묘목검사는 경력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철저히 이행
  · 병해충 진단, 도장묘목 판단 등 필요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합동 실행
- 묘목검사 실명제 실시(조림지 사후관리대장에 명기)

o 2011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산림용묘목 품질인증 제도』도입 추진

- 생산공정 인증 등 각 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도입 방안 모색

o 묘목생산자(지) 실명제 정착(각 도 및 지방청)

- 양묘시업 포지에 종자공급원 및 종자산지번호가 표시된 표찰 설치
- 묘목수급 시 품질표시(용기묘는 박스 전면에 부착)

※ 종자(산지증명)→양묘장(산지표시)→묘목수급(산지, 생산자, 묘목검사자)→조림(산지, 생산자)

### 3) 국유양묘장 활성화 및 민간양묘장 묘목생산 경쟁력 강화

o 국유양묘장 운영 활성화

- 묘목생산 경진대회(품평회)를 개최하여 우수 양묘기술을 전파하고 양묘장 근무 직원 사기진작 및 관심 제고
  - · 산·학·연 양묘전문가로 평가반을 편성, 국유양묘장에 대한 묘목생산 과정, 주요 수종 묘목의 품질 등을 평가(11월)
  - · 우수 양묘장(양묘왕)을 선발 표창하고, 양묘분야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산지양묘장 조성·운영을 통한 중·대묘 생산 기반 조성
  - · 중심양묘장에서 생산한 묘목을 조림지 인근 산지양묘장에서 1~2년 순화하여 묘목의 산지적응력 제고(20개소 48ha)
  - · 대상지의 타당성 조사 및 2013년 예산 반영 추진
- 민간위탁 국유양묘장 직영화 추진
  - · 계약기간, 예산 및 운영인원 등을 감안 2013년부터 직영화 추진

o 묘목 대행생산자를 확대하고 묘목생산 기반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 양묘사업 경쟁력 강화

- 민간 양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산림용 묘목대행생산자 지정을 확대(각 도)
- 양묘장 재해예방 시설 등 묘목생산기반조성 지원을 강화
  - · 종묘생산기반 : 종자(40톤), 토양개량(12ha)
  - · 시설양묘기반 : 간이온실(14동), 관정(대형 3공, 중형 5공)
  - · 클론생산기반 : 조직배양시설(2동), 클론재배시설(2동)
- 민간양묘장에 대한 토양조사 실시(국립산림과학원)

## 라. 추진일정

o 2012년 파종용 종자 확보상황 파악·보고 : 2012. 1. 10

o 채종림 관리 규정 마련 : 2012. 1. 30

o 2011년 민간위탁 국유양묘장 운영현황 분석 결과 보고 : 2012. 1. 30

o 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 등 종자공급원 정비현황 보고 : 2012. 2. 5

o 2012년 양묘시업 상황 파악·보고 : 2012. 5. 31

o 2012년 종자결실 예찰 조사·보고 : 2012. 7. 20

o 2012년 묘목생산 실태 조사·보고 : 2012. 10. 31

o 국유양묘장 묘목생산 경진대회(품평회) 개최 : 2012. 11. 15

o 2012년 종자채취 결과 파악·보고 : 2012. 11. 30

o 2012년 종묘가격 협의회 및 결정 : 2012. 12. 5

# 13.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관리

목 표

◇ 산림식물에 대한 품종보호제도 정착과 산림유전자원의 수집·보존·평가 및 이용 활성화

o 특성조사요령(TG) 제정 : ('11까지) 108종 → ('12) 140종

o 품종보호 출원 유도 : ('11까지) 122품종 → ('12) 150품종

## 가. 정책여건

o '12년부터 품종보호 대상 종이 모든 식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신품종에 대한 로열티 문제 대비와 종자산업 육성, 국산 신품종 개발지원 필요

o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CBD-ABS) 국제규범인「나고야 의정서」가 채택(2010. 10.)됨에 따라 국내 산림유전자원의 주권 수호와 가치창출을 위한「산림유전자원 국가관리 및 개발」사업추진 필요

## 나. 추진방향

o 품종보호 대상 종 확대에 따른 과학적이고 공정한 출원품종 심사와 재배시험 수행

o 신품종 개발촉진을 위한 육종가 기술 및 재정 지원 확대

o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산림유전자원의 국가관리체계 확립 및 조사·수집·보존·평가 및 이용 활성화

## 다. 세부추진계획

### 1) 품종보호제도 정착

o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s) 개발

- 신품종개발 및 출원심사의 기준이 되는 특성조사요령 개발
  · ('11까지) 소나무, 표고버섯, 참나물 등 108종 → ('12) 산사, 꿩의다리 등 30종
- 신품종 육종가 지원확대와 이미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출원 적극 유도
  · ('11까지) 밤나무, 표고버섯, 구절초 등 122품종 → ('12) 복분자딸기 등 28품종

o 출원품종의 재배시험 및 특수검정 기술개발

- 기 조성된 재배시험포지(2) 및 신규 조성포지를 활용하여 출원품종의 재배시험 실시

  · 재배시험 : ('11) 82품종 → ('12) 두릅나무 '해뜰날 3호' 등 45품종

- 신품종 심사 및 개발에 필요한 대조품종을 수집하여 품종보존원 조성

  · 품종보존원 : ('11까지) 밤나무 등 150품종, 0.6ha → ('12) 40품종, 0.4ha

o 로열티 문제에 대비한 국내 개발 신품종의 신속한 출원등록 및 보급

-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 직무육성 품종의 신속한 등록 추진

- 이미 알려진 품종의 권리보호를 위해 품종보호 대상 종 확대 후 1년 이내 출원을 유도

o 출원품종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단속

- 품종심사기관(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과 종자업 등록기관(시·도) 합동으로 계도·단속

  · 유통질서 계도·단속기간 : 3월~11월

o 신품종 육성가 지원

- 육종가 기술·정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실시 및 '10년기 구축된 '품종보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격서비스 제공

- 개인 육종가 및 재배자를 대상으로 신품종 출원 기술교육 및 지원방안 마련

  · 세미나 등 교육실시 : ('11까지) 5회 → ('12) 2회

  · 육종가 지원을 위한 '13년도 예산 확보 추진

o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

- 품종심사 전담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인력·장비 등 인프라 확충 추진

  · 인력 확충 : '12년도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 반영

  · 품종심사 관련 장비 등 : 기능성 품종 출원과 분쟁종자 대비시험을 위한 HPLC, DNA분석장비, 버섯재배 심사 관련 시설의 확충 추진

## 2) 산림유전자원의 국가관리

o 산림유전자원 기본계획(10년 단위)에 따른 '12년 시행계획 수립

- 근거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생명자원법") 제2조

- 시행 : '12. 1월 1일 ~ 12월 31일
- 대상(책임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내용 : 책임기관별 소관 유전자원의 수집, 평가, 보존, 정보화 등 4개 분야

[책임기관별 소관 유전자원]

・국립산림과학원 : 조림・용재・환경・특용수종,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미생물, 균류(버섯 등), 산림해충 및 천적곤충, 산림 선충 등
・국립수목원 : 야생하는 자생식물 및 희귀・특산식물, 산림 내 자생하는 일반 곤충 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조림・용재수종의 수형목 클론 및 채종원 종자, 산림식물 신품종(등록품종, 표준품종, 대조품종, 재배종 등)

o 산림유전자원의 조사・수집・보존・증식 및 이용활성화

- 2012 산림유전자원 시행계획에 따라 3개 책임기관별로 식물, 곤충, 미생물 등 산림유전자원의 조사・수집 및 표본 인프라 구축
- 산림유전자원 Gene Bank 시설공사(1,808㎡)
  ・('10) 실시설계 → ('11. 9) 착공 → ('12~'13) 준공 및 시범운영 → ('14) 정상 운영
  ・산지조림용 종자 단기저장 : 산림종자 수급(국가비축)을 위한 단기저장(51톤)
  ・산지조림용 종자 중장기저장 : 채종원 등 산림종자공급원산 종자의 중장기 저장
  ・DNA 및 영양체 초저온 저장 : 클론・품종의 DNA, 생식질, 세포주 초저온 동결 장기저장

o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 확대

-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신규지정
  ・('11까지) 2개 지정 ((주) 참농지기, 제주대학교) → ('12) 3개 기관(단체) 신규 지정
  ※ 공・사립수목원의 관리기관 지정 확대 추진

o 나고야의정서(ABS) 발효에 대비한 내・외부 고객에 대한 인식제고

- '11년 9월 구성된 Help desk의 활성화,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등
- 농수산생명자원법 하위법령 개정 및 가칭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의 국내입법 추진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라. 추진일정

o 2012년 산림유전자원 시행계획 수립보고 : 2011. 12. 5

o 품종보호출원,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접수처리 및 출원품종와 재배시험 : 연중

o 산림유전자원 Gene Bank 시설 공사 : 연중

o 나고야의정서 발효 대응 인식제고 : 연중

o 품종심사 관련 인력·장비 등 인프라 확충 : 연중

o 2012년도 산림유전자원 시행계획 사업수행 : 2012. 12월

o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추진 자체평가보고 : 2012. 12. 14

o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 연차보고서 : 2012. 12. 21

# 14. 경제림육성단지 관리

목 표

◇ 경제림육성단지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사업 투입여건 조성 및 집중투자로 목재생산 기반 구축

o 경제림육성단지 300만ha( ← 현재 292만ha)
- 목재생산 경제림단지 150만ha, 일반 경제림단지 150만ha

##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사막화 등으로 세계 산림면적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탄소배출권 확보 등으로 목재 수요 증가에 대비한 국내목재 공급기반 구축 필요

o 우리 산림이 중·장년기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순환형 자원구조가 되도록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 필요

o 경제림육성단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국유림 및 인공 조림지를 중심으로 목재생산 경제림으로 지정하여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 나. 추진방향

o 목재생산 기능강화를 위한 경제림육성단지 재정비
- 임상,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재생산, 일반경제림으로 구역 분류
- 단지별 영급, 수종, 임목축적, 임도 등 기초통계 자료 구축

o 지역별, 단지별로 모델림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지역별, 단지별로 대표할 수 우량한 산림을 모델림으로 지정·관리
- 모델림은 국민, 임업인, 학생 등의 교육 및 홍보장소로 적극 활용

o 경제림육성단지 구역 조정에 따라 관리 매뉴얼 보완
- 구역별 관리목표, 관리방안 및 산림사업 추진방법 등

## 다. 세부추진계획

### 1) 경제림육성단지 구역을 재조정하여 목재생산기능 강화

o 목재생산 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역 재분류 실시
- 산림경영의 효율성이 낮은 소규모, 분산된 지역은 제외
- 국유림 확대정책과 연계하여 국유림 경제림육성단지 비율 확대
- 사유림의 준보전 산지는 가급적 제외하고 보전산지 위주로 지정
- 임상,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재생산이 유리한 지역 중심으로 조정

| 현 행 | | 변 경 | |
|---|---|---|---|
| | | 목재생산 경제림 | 일반 경제림 |
| · 경제림단지 292만ha | ⇨ | · 규모 : 150만ha<br>· 고급우량재, 장기경제수 | · 규모 : 150만ha<br>· 단기특용수, 속성수 |

o 구역 조정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관리 매뉴얼 보완
- 구역별 관리목표, 관리방안 및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추진방법 등 보완

### 2) 영급 구조조정 및 통계 정비를 통한 자료관리 강화

o 벌채 확대를 통해 현재 Ⅲ~Ⅳ영급에 집중되어 있는 산림을 순환형 구조로 개선
-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 벌기령에 도달한 산림의 벌채 확대

o 경제림육성단지 기초 통계자료 구축
- 단지별로 영급, 수종, 임목축적, 임도 등 기초자료 구축
- 산림청 공간정보 포탈시스템과 연계한 경제림육성단지 관리 프로그램 구축

### 3) 경제림육성단지에 산림사업 집중 추진

o 산림사업 대상지 선정시 경제림육성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실행
- 현재 약 50% 수준인 경제림육성단지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실행 비율을 70%이상으로 확대
- 경제림육성단지의 조림, 숲가꾸기 사업추진 실적을 소속기관 및 지자체 평가시 반영

o 경영목적, 수종,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산림사업 실시
- 경제림육성단지 경영목적에 맞도록 목재생산 경제림은 장기수 위주, 일반경제림은 특용수, 속성수 위주의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

- 시·도별 기후 등을 고려하여 용재가치가 뛰어난 침·활엽수를 조림 수종으로 단순화하여 집중 조림
- 백합나무 조림의 경우 강원지역은 제외하고 기타 지역은 적지에만 식재하며, 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

### 4) 지역별, 단지별로 대표 할 수 있는 모델림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

o 경제림육성단지 중 지역·단지별로 우량하고 집단화 된 산림을 모델림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
- 분포면적, 재적 등 산림현황 및 조림, 숲가꾸기 등 사업 이력내역을 구체적으로 관리
- 국민, 학생, 임업인 등이 현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산림으로 관리

o 금강소나무, 안면소나무, 편백림 등 특색 있는 수종 집중 관리
- 특색 있는 경제림은 침엽수림, 활엽수림 등 일반적으로 관리하기보다 수종별로 소나무림, 낙엽송림 등으로 관리하고 수종별 비율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

### 5) 경제림육성단지의 숲가꾸기는 솎아베기 위주로 사업실행

o 인공림 솎아베기 위주의 작업을 우선 실행
- 과거 약도 솎아베기를 실시한 임지에 대한 추가작업 실시
- 인공조림지는 임목 생장단계별로 필요한 숲가꾸기 작업을 반드시 실행

o 천연림은 미래목 중심의 천연림 보육방식 적용을 확대
- 천연림 개량사업은 지양하고 천연림 Ⅲ~Ⅳ 영급 중 형질이 불량한 임지는 적극적 갱신

## 라. 추진일정

o 경제림육성단지 재분류 및 구역 조정 : 2012. 1~3월

o 경제림육성단지 관리 매뉴얼 보완 : 2012. 1~3월

o 지역별, 단지별로 대표할 수 있는 모델림 지정 : 2012. 2월

o 경제림육성단지 통계관리 프로그램 구축 : 2012. 6월

o 경제림육성단지 산림사업 추진실적 보고(붙임 서식 1) : 반기보
※ 반기 실적을 익월 말까지 제출

o 경제림육성단지 지정·관리, 산림사업 추진상황 점검 : 수시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 추진

< 참고 1 >

# 경제림육성단지 현황

## □ 총 괄

| 구 분 | 단지수 | 면적(천ha) | 시·군 수 |
|---|---|---|---|
| **총 계** | **450** | **2,919** | |
| **시·도계** | **345** | **2,339** | **128** |
| 강원 | 37 | 283 | 15 |
| 경기 | 30 | 191 | 12 |
| 경남 | 62 | 326 | 19 |
| 경북 | 66 | 673 | 22 |
| 전남 | 45 | 268 | 21 |
| 전북 | 32 | 205 | 13 |
| 충남 | 39 | 190 | 15 |
| 충북 | 34 | 203 | 11 |
| **지방청계** | **105** | **580** | **25** |
| 북부청 | 22 | 221 | 6 |
| 동부청 | 29 | 195 | 6 |
| 남부청 | 17 | 109 | 5 |
| 중부청 | 16 | 14 | 4 |
| 서부청 | 21 | 41 | 4 |

< 서식 1 >

# 경제림육성단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1. 면 적

| 구분 | 단 지 명 | 면 적(천ha) | | | 비 고 |
|---|---|---|---|---|---|
| | | 상반기까지 면 적 | 하반기 면적 증 감 | 현재면적 | |
| 시・도, 지방청계 | | | | | |
| 시・군, 관리소계 | | | | | |
| | 000 | | | | |
| | 000 | | | | |

## 2. 사업 추진실적

### 가. 조림

(사업량 : ha, 사업비 : 천원)

| 구분 | 사업별 | 총사업(A) | | | | 경제림육성단지 사업(B) | | | | 비율(B/A) | | | |
|---|---|---|---|---|---|---|---|---|---|---|---|---|---|
| | | 사업량 | | 사업비 | | 사업량 | | 사업비 | | 사업량 | | 사업비 | |
| |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 시・도, 지방청계 | | | | | | | | | | | | | |
| 시・군, 관리소계 | | | | | | | | | | | | | |
| | 경제수조림 | | | | | | | | | | | | |
| | 큰나무조림 | | | | | | | | | | | | |
| | 지역특화조림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나. 숲가꾸기

(사업량 : ha, 사업비 : 천원)

| 구분 | 사업추진 현황 | 총사업(A) | | | | 경제림육성단지 사업(B) | | | | 비율(B/A) | | | |
|---|---|---|---|---|---|---|---|---|---|---|---|---|---|
| | | 사업량 | | 사업비 | | 시업량 | | 사업비 | | 시업량 | | 사업비 | |
| |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 시・도, 지방청계 | | | | | | | | | | | | | |
| 시・군, 관리소계 | | | | | | | | | | | | | |
| | o 어린나무가꾸기 | | | | | | | | | | | | |
| | o 큰나무가꾸기 | | | | | | | | | | | | |
| | - 솎아베기 | | | | | | | | | | | | |
| | - 천연림보육 | | | | | | | | | | | | |
| | - 천연림개량 | | | | | | | | | | | | |
| | o 기 타 | | | | | | | | | | | | |

### 다. 임 도

(사업량 : km, 사업비 : 천원)

| 구분 | 단지명 | 총사업(A) | | | | 경제림육성단지 사업(B) | | | | 비율(B/A) | | | |
|---|---|---|---|---|---|---|---|---|---|---|---|---|---|
| | | 사업량 | | 사업비 | | 시업량 | | 사업비 | | 시업량 | | 사업비 | |
| |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 시・도, 지방청계 | | | | | | | | | | | | | |
| 시・군, 관리소계 | | | | | | | | | | | | | |
| | ooo | | | | | | | | | | | | |
| | ooo | | | | | | | | | | | | |

# 15. 남북 산림협력 사업

목 표

◇ 철저한 북한 산림복구 준비로 푸른 한반도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지원

## 가. 정책여건

o 남북의 정치·군사적 요인에 따라 사업 추진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
- 천안함 사건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북사업 추진 곤란
- 남북과 정치적 연관성이 적은 제3국가나 국제기구 등을 통한 간접적인 협력 필요성 대두

o 북한은 산림황폐화 등의 요인으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취약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통일 시 비용 부담으로 작용
- 북한 황폐산림 복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필요
- 북한 산림복구를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권과 연계할 필요성 증대

o 북한은 당국간 협력사업 보다 지자체·민간단체와의 개별 접촉을 선호

## 나. 추진방향

o 남북 관계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

o 국제기구 또는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남북협력 추진

o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종자 및 묘목 준비

o 정부·지자체·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o 남북 간 산림협력사업을 지원하고 협력 방안을 제시할 연구용역 추진

## 다. 세부추진계획

### 1) 남북 상황에 따른 대응 계획 수립

o 북한 산림복구 추진 계획('09.12)에 남북 관계에 따른 시나리오별 사업 추진 계획 포함

o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에 북한 산림복구 계획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추진

### 2)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인 북한 산림 복구 추진

o FAO를 통해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개도국(북한) A/R CDM 및 REDD+ 워크숍 개최 및 교육 훈련 사업 실시
- 개도국(북한)의 A/R CDM, REDD+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A/R CDM,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양묘장 조성 추진

o FAO와 북한 내 탄소배출권 조림, REDD+ 등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추진
※ '05년 제18차 CDM 집행위원회(EB)에서 '일방(Unilateral CDM)' 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북한에 조림 CDM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08년 북한 내 국가 CDM 사업 승인기구(DNA)가 설치됨

o 국제기구와 제3국을 활용하여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지원
- 북한 산림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 획득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3) 남북 산림협력사업 준비

<종자・묘목 준비>

o 북한 황폐산림 복구에 대비한 국내 종자・양묘 준비 계획 수립
-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종자와 묘목 준비

o 중국(연변) 또는 국내 고도가 높은 지역에 북한 지원용 양묘장 조성 추진
- 경제수, 사방수종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소득 증진을 위한 유실수종 조성 추진

o 종자 채취 및 저장
- 북부・동부지방산림청은 싸리・오리・아까시나무 등 사방사업용 종자를 일반산림사업용 종자 채취와 병행하여 채취한 후 생산지 표시를 반드시 부착하여 전량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이송하여 저장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채취된 종자를 일반 산림용 묘목과 구분하여 별도 보관・관리하고, 매년 발아실험 실시
※ 채취된 종자별로 저장기간 종료 시에는 전량 폐기

<(가칭) 북한 산림복구 기술 지원단 구성・운영>

o 남북관계 개선 시 북한 산림복구를 지원할 양묘, 조림, 병해충, 사방분야 전문가(국립산림과학원, 품종관리센터 등)로 구성된 지원단 구성

o 정기적인 세미나,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한 정보 교류

<연 구>

o 남북산림협력 사업 추진 대비 기본 자료 구축 등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 민간(NGO, 기업)·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 지원 추진체계 정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연구 기간 및 연구기관, '11～'12, 국립산림과학원)

<정부-지자체-민간 협조 체계구축 >

o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유지 및 정기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북한 산림협력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

o 남북 산림협력사업 관계관 워크숍 개최
  - 대상 : 산림청, 통일부, 국정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관계자
  - 시기 : 사업 종료 및 익년도 사업 계획 수립 전 반기별 1회 개최
  - 내용 : 양묘, 조림, 협상능력, 인력관리 등에 대한 주제로 실시

o 대북 산림협력 민간단체와 협의체 구성 및 정기 간담회 개최
  - 대상 : 겨레의 숲, 평화의 숲 등 민간 단체 및 민간 전문가
  - 시기 : 분기 1회 간담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반기별 1회는 양묘장, 조림지 등에서 현장토론회 개최
  - 내용 : 추진 실적, 애로 사항, 향후계획 등에 대한 의견 교환

< 지자체, 민간단체 지원>

o 신규 양묘장 조성 및 기존 양묘장 복구 지원을 통해 현지 묘목 생산능력 향상 도모

o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주관으로 추진하는 양묘장 조성지에 대한 자문 및 기술 전수
  - 양묘장 적지, 수종별 양묘 시업방법, 토양·양묘포지 관리 등 종자관리 및 묘목생산과 관련된 전문 기술
  - 민간단체가 산림종자용 종자 구입 요청 시 산림청 보관 우량종자 공급

o 산림병해충 발생지역 공동조사·공동실행·공동평가를 통해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를 제고하고, 약제·자제 및 기술인력을 지원

o 산림병해충 전문 기술인력 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산림병해충 피해 판단 및 피해지 조사를 요청할 경우 산림청 관계자 및 전문가 기술 지원
  - 산림병해충 약제 등 기자재 선정 및 수송 등에 산림청 전문가 참여

### 4) 북한 산림복구 필요성에 대한 홍보 전개

o 식목일을 전후하여 북한의 산림황폐 실태를 홍보하여 북한 나무심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o 오피니언 리더로 하여금 북한 산림 복구 필요성에 대해 칼럼 및 기고

### 5) 남북관계 개선 시 남·북한 공동 나무심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

<나무심기>

o 북한 산림복구 필요성 확산 및 남북 산림협력 교두보 확보를 위하여 정부,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다양한 나무심기 행사 추진

o 식목일 전후에 남·북한 공동나무심기 및 묘목을 지원하여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분위기 조성

- 우선적으로 북한지역에 공동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여건이 조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북한에 근접하고 상징성이 큰 지역에서 실시

o 북한 요청이 있을 경우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자재 및 기술 인력 지원

| 산림청 주관 공동 나무심기 행사(예시) |
|---|
| o 산림청 주관 공동 나무심기 행사(예시)<br>- 기 간 : 식목일 전후(제67회 식목일과 연계하여 추진)<br>- 참여 단체 : 산림청, 민간단체(겨레의 숲, 미래숲 등 참여)<br>- 대상 지역 :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br>- 지원 묘목 : 잣나무 대묘 또는 상록수 |

## 라. 추진일정

o 남북 상황에 따른 대응 계획 수립 : 2012. 2월

o 북한 산림복구 대비 종자·양묘 계획 수립 : 2012. 2월

o 남북관계 개선시 공동 나무심기 행사 : 2012. 3~4월

o FAO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능력배양 운영 : 2012. 상반기부터

o 북한 산림복구용 종자 채취·저장 : 2012. 11월

o 간담회 및 워크샵 개최 : 연중

o 남북관계 개선시 대북 산림협력사업 지원 : 연중

o 남북산림협력관련 홍보활동 전개 : 연중

# 16.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목 표

◇ 목재펠릿의 수요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활용 촉진

o 가정용 보일러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

o 신규 대량 수요처인 산업용 보일러, 지역난방 보급사업 추진

◇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 원료공급 체계 구축

o 수변구역 에너지림 조성을 통해 목재펠릿 가격 인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산림바이오매스 원료경합에 대비

## 가. 정책여건

o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의 중요성 대두

o 정부에서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1% 보급을 골자로 한『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바이오매스는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

o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원료경합에 대비하여 산림바이오매스의 신규 공급처 조성 필요

## 나. 기본방향

o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관시스템 구축 확대

o 목재펠릿 생산시설 및 안정적 원료공급처 기반조성 등 수급 인프라 구축

o 목재펠릿 이용 다변화 및 품질관리 강화

o 목재펠릿 수요·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다. 세부추진계획

### 1)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사업의 다양화

o **(지자체 보급사업)** 농산촌주택용, 주민편의시설용 및 사회복지시설용 이외 신규로 지역단위 집중난방 시설 보급사업 추진

| 구 분 | 주택용 |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 | 지역단위 집중난방 시설 |
|---|---|---|---|
| 대상 | 농산촌 주택 | 경로당, 마을회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 집단화지역 |
| 보일러 용량 | 20㎾ 내외 | 20㎾ 내외 | - |
| 보급량(예산) | 2,800대(3,948백만원) | 200대(470백만원) | 3대(450백만원) |
| 기준단가 | 4,700천원 | 4,700천원 | 300,000천원 |
| 지원(%) 국고/지방비/자부담 | 30/40/30 | 50/50/- | 50/20/30 |

* 58.14㎾이하 보일러는 2012년 가정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기준(별도 시달)에 적합한 보일러에 한하여 보급 계획

*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의 경우 보일러 기본 규격은 20㎾이나 시설 규모가 크거나 작을 경우 펠릿보일러 설계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가능

* 지역단위 집중난방이란 40~50가구가 밀집한 곳에 펠릿보일러 1대와 예비용 기름 보일러를 놓고, 배관을 하여 집집마다 열을 공급하는 방식

o **(산업용보일러 보급사업)** 펠릿 소비량도 많고 4계절 수요가 있는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모사업 추진

- 2012년 1/4분기와 2/4분기로 구분하여 공모를 통해 보일러 설치를 지원받을 대상 업체(이하 지원 대상 업체) 선정(붙임 1참조)
- 지원형태(사업시행주체) : 민간보조(산림청)
-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 : 3억원/대, 국고 50%·자부담 50%

o **(펠릿난로 보급사업)** 소속기관 및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 보급

- 지원형태(사업시행주체) : 국가기관 직접사업(산림청, 지방청)
-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 : 200백만원/대, 국고 100%

## 2) 숲가꾸기 산물 등을 활용한 목재펠릿 제조시설 설치

o 펠릿제조시설은 '11년 12월 사업공모로 선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설치 추진

- '12년 1월말까지 해당 지차체와 원료수급 등에 관한 MOU 체결
- '12년 12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5월까지 착공)

※ 설치대상 : 미정

### 3) 목재펠릿 보일러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

o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된 보일러 중 열효율, 생산설비 보유여부, 기술개발 노력, A/S 계획 등 항목을 추가심사 하여 선정

- 열효율 : 인증기준 85% → 자체심사 기준 87%

o 소비자가 비교 후 우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에 따른 성능 심사표 및 주요부품의 규격, 제조사, 원산지 등 사전 정보 제공

o 불법영업, 비정상 설치 등으로 발생한 일체의 책임을 본사에서 지도록 설치업체 자격을 보일러 제조사 본사로 제한

- 영업점, 대리점 등 명의의 설치 및 대금청구 불가

o 개별 보일러 마다 가격을 심사하여 개별 기업별로 기준가격 결정

- 업체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서와 우리청 자체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한 결과를 비교하여 결정

### 4) 수변 에너지림 조성으로 안정적인 바이오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

o 주요 강·새만금 등 수변지역 유휴토지에 목재 에너지림을 조성하여 바이오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

- '12년 새만금(30ha), 강변(20ha) 지역에 조성, 효율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포플러 식재 시 2~3년마다 수확, 30톤/ha, 1회 식재 5회 수확가능

※ 총 사업 규모 : 5,000ha(새만금 1천ha, 수변지역 유휴지 4천ha)

o 새로운 탄소흡수원 확충 및 탄소배출 저감으로 기후변화 대응

- RPS 시행 등에 따른 바이오매스 수요 확대에 대비

## 라. 추진일정

o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2012. 1월

o 펠릿제조시설 조성사업 세부추진 사업계획서 제출 : 2012. 1월말까지

o 목재펠릿 품질시험 : 상·하반기 2회

o 펠릿보일러 및 제조시설 조성사업 추진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o 지자체 자체 및 중앙점검반 현지지도 점검 : 상·하반기 2회

o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 : 2013. 2월말까지

< 붙임 1 >

# 2012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기준(요약)

## 1 품질인증 보일러 보급

❑ (보급대상 보일러) 품질 인증된 보일러로서 "① 열효율 87%이상이며 ② 300리터급 축열조를 부착할 수 있는 것" 중 적정성 평가 결정

○ 목재펠릿 보일러 심의위원회(5인 이상의 전문가)를 구성 심의

* 적정성평가 : 보급업체의 **재무상태**, **기술능력**, **사후관리 방안** 등을 심사

* 인증품은 안정성시험, 성능검사, 자동 청소기능 부착 등 성능 개선

❑ (참여 자격) 보일러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만 참여

○ OEM[4], 수입업체 등 직접 생산을 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참여 불가

○ 설치는 제조사, 제조사 직영 영업·대리점 또는 제조사 위탁 업체

○ 하자보수, 자부담 미수납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조사 부담

## 2 원가계산용역을 통한 가격결정

❑ (보급 기준가격 결정)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아 별도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재심의 의뢰 결정

○ 이를 통해 적정가격 책정과 경쟁을 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전망

❑ (보조금 지급대상 및 기준) 보조금 지급대상은 보일러 및 축열조, 설치비에 한하며 기준단가는 470만원이하로 결정

○ 기준단가 : 축열조 포함 470만원이내, 축열조 미포함 400만원이내

○ 보조금은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은 30%

4)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일부 부품을 "아웃소싱"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자로 인정가능, oem의 경우 품질인증도 불가

## 3 하자보수 이행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강화) 3회 이상 동일 하자 발생 및 3일 이내 하자 미이행시 자격정지, 모니터링에 따라 시정 요구후 7일 이내에 불이행시 등록 취소

○ 제조사 소비자 안내문과 펠릿 구매처 정보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교육

○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품질보증서(3년),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설치 농가에 제출 의무화

❑ (자부담 이행 강화) 설치가 완료되면 보일러 제조사에서 최종 점검후 대금 청구

○ 자부담 수취 증빙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준공검사후 보조금 지급

❑ (대리점에 예비부품 비치) 대리점 등에 예비부품 제공을 의무화

○ 산림청에서 향후 추진하는 A/S이행 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도 예비부품을 제공

## 4 기타 참고사항

❑ (보급대상) 농산어촌 지역(읍·면 및 농촌형 동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거가 가능한 건물로, 1세대 또는 건축물 당 1대를 지원

❑ 2012년 보급사업 대상 보일러 등록 및 심사 기간

○ '11. 12월부터 수시 접수가능, '12년도 7월1일부터 홀수월만 접수

○ 심사는 3개월이내, 원가계산용역 등을 감안 2개월이내 연장 가능

❑ (설치실적 보고 의무화) 보일러 제조업체는 매분기별 보일러 보급현황을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

# 17. 국산목재의 안정적 수급

목 표

◇ 목재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 및 국산재 공급 확대
o 국산목재 자급률 16% 달성(4,400천㎥)

◇ 용도별 맞춤형 목재 공급으로 목재 이용 확대

## 가. 정책여건

o 세계 경제의 침체, 목재자원 보유국의 수출 규제, 자원 보호 등으로 수입 여건 악화

o 신재생에너지원 목재펠릿 등 목질 바이오매스 신규 수요 증가로 산업 원료난 우려

o 기후변화 대응방법으로 탄소를 장기간 고정하는 목제품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

o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증가, 웰빙과 로하스의 영향으로 한옥, 목조건축, 문화재 등 목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나. 기본방향

o 국산목재 공급 확대로 안정적인 목재수급 및 산업 원자재 부족난 해소

o 국내외 수입 여건 변화에 따른 목재 수급 변화에 능동적 대처

o 용도별 맞춤형 목재 공급과 수요 예측으로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

o 임목부산물의 적극 활용을 통해 늘어나는 목질 자원의 산업용 원료난에 대처

## 다. 세부 추진계획

### 1) 목재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 및 국산재 공급 확대

o 국산목재 공급 확대
- 목재 자급률 : ('11) 15% → ('12) 16%
- 국산재 생산량 : ('11) 4,200천㎥ → ('12) 4,400천㎥
- 국유림의 입목처분·직영벌채 공급 확대 : ('11) 140,000㎥ → ('12)128,600㎥

o 산업용재(펄프·보드 및 합판용)의 안정적 공급 추진
- 수급이 불안정한 하절기(6~8월)에 벌채를 확대하여 적기공급 지원
- 목재저장센터, 목재 집하장을 활용한 용도별 분리 매각 확대

o 친환경 벌채 설계·감리제도 시범 도입으로 목재 생산 품질 향상
- 벌채로 인한 산림·경관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벌채사업 확대 어려움
  * 국유림 100ha(5개 지방청), 사유림 300ha(8개도)
- 벌채사업 기계화 공정 반영 및 재적 산정 방식 개선으로 벌채 효율성 제고
- 기업경영림 지정·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하여 기업체의 산림경영 활성화

### 2)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o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용도 개발
- 간벌 소경목 활용도를 높이고 국산재의 다양한 용도 개발을 적용·홍보하기 위한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시범사업을 사유림 지역에 추진
- '12년 5개소(대구, 경기, 강원, 경북, 경남) 810백만원

o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조경용 수목을 공용·공공용 사업으로 활용하는 "나무은행 사업" 운영 확대
- 26개 시·군(전남, 강원) 및 제주(2개시), 광특 1,640백만원
- 나무은행 신규 조성지 실태 및 불법 수목 굴취에 대한 합동 점검 실시

o 국산목재 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목재 수급 전망
- 주요국(12개국) 해외목재 수입 정보를 제공하여 수입 여건 변화에 대응
- 목재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원목 수급 현황 파악

## 라. 추진일정

o '12년도 목재수급전망 수립 : 2012. 1월

o 목재이용실태조사 및 해외목재정보수입 사업 실시 : 2012년 1월

o '12년도 목재수급 및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심의회 개최 : 2012. 1월

o '12년도 목재수급계획 수립 : 2012. 2월

o 친환경 벌채 설계·감리제도 지침 마련 : 2012. 2월

o '12년도 목재수급 점검 및 간담회 개최 : 2012. 5월, 10월

o 입목벌채허가신고실적 및 용도별 목재공급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o 지방청 평가 : '12년 11월

# 18. 목재이용 활성화 및 목재산업 육성

목 표

◇ 기후변화에 대응과 탄소저장고로서의 목재이용 활성화
◇ 종합적인 목재산업 육성 기반을 확충하여 경쟁력 강화
◇ 목재이용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Post 2012 체제 적응을 위한 탄소저감 노력과 목재에 기반한 탄소저장 기능 평가체계의 필요성 대두

o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원 수요증가와 세계적인 목재자원보호 정책으로 산업용 원자재 부족난 심화

o 웰빙과 LOHAS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친환경 목재를 활용한 생활용품, 한옥 및 목조주택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

## 나. 기본방향

o 목재 및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표시 체계를 마련하여 탄소저감 노력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o 목재이용·가공 시설을 현대화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고품질 저가의 목재제품 공급 및 산업경쟁력 강화

o 범국민적인 목재이용 캠페인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목재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목재체험 공간 확대

## 다. 세부추진계획

###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법령 제정

o 국산재 수급을 확대하고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2012~2016)

o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체계적인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입법추진

## 2) 국산목재 이용 촉진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o 목재이용·가공시설 개선 및 신규 조성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목제품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목재유통센터 시설 현대화 2개소(여주·동해) 및 목재가공시설 1개소(경남 합천) 조성

o '11년 신규 조성된 목재전문 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정상적 운영을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타 지역으로 확대 여부 검토
- 인천 북항 배후단지, 강원 횡성 우드테크노타운

o 지역별 고유 목재를 확보하고 용도·규모 등 수요자 요구에 부합한 국유림 생산 목재 공급이 가능하도록 목재저장센터 활성화 추진
- ('10) 1개소(북부청) → ('11) 5개소(동·남·중·서부청)

o 목재산업 분야 육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업정책자금 지원
- 목가공 시설, 국산원자재 구입 등 5개 분야 164억원 지원

o 목재산업 관련 등록협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상시 소통을 위한 정례 간담회 개최
※ '11 목재산업 관련 등록 법인 : 19개(사단 17, 재단 2)

## 3) 목재 및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o 신속한 목재제품 품질조사·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엄격한 품질·규격 기준을 적용
- 한국임업진흥원 발족과 더불어 품질검사·분석을 전담토록 하고 품질관리 현장 조사·점검은 5개 지방청의 단속반 활용

o 품질관리 제도 시행에 따른 법령·제도 확충을 위해 관계규정 및 국립산림과학원 품질관리 관련 고시 정비
- 품질·규격 표시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를 고시에 명시하고 현장 활용 가능한 매뉴얼 구축

o 품질관리 대상 품목에 대한 국제적 적용기준 및 사례를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국내적용 기준 연구
- 목재제품 품질관리·인증 품목(8종) : 합판, 방부처리목재, 제재목(구조용 및 건조목), 목재펠릿, 목탄, 목초액, 섬유판, 파티클보드

o WPC(Wood Plastic Composites, 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등 목질계 신소재분야 품목 발굴 및 관리기반 마련
- 관련 부처와 중복 또는 상충되는 품목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하여 목재산업 분야 외연확대

### 4) On-Off Line을 연계한 목재이용 캠페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내실 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o 기 구축된 「목재문화정보 시스템(e木구비)」의 일반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목재문화체험장, 목재체험교실 등과 연계하여 입체적인 목재이용정보 제공
- 연중 목재체험 정보 제공, 무료 체험교실 운영, 목재관련 지역별 행사, 목재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 실시간 안내

o 지역의 목재문화·이용 증진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정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1일 1회이상 목재이용 홍보 노출 추진
- 지방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일간지, 공중파 방송, 사거리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o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프로그램 효율성 강화 및 자치단체별 우수 사례 전파를 통하여 이용객 증가 도모
- 시설 확대 위주에서 이용객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성공요인 분석, 이용객 유치 성과 등을 망라한 우수 사례집 발간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누계) : ('11) 18개소 → ('12) 23개소

o 목재체험교실 운영실태 조사 및 성과평가 등 내실화 방안 마련

o '11년 목재산업박람회 강·약점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12년이후 범국민적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
- 국내 최대 규모의 목재문화·이용 행사로 정착되도록 추진

## 라. 추진일정

o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 2012. 1~3월

o '13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공모 : 2012. 1월

o 목재문화·이용 캠페인 추진계획 수립 : 2012. 2월

o 목재산업박람회 계획수립 및 행사개최 : 2012. 6월

o 목재문화활성화 사업 추진성과 분석·평가 : 2012. 12월

o 목재문화정보 시스템(e木구비) 운영 : 연중

o 목제품 품질관리 제도 시행 : 연중

# 19. 임업기계화 촉진

목 표

◇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의 개발·보급으로 임업기계화 촉진

o 기계장비 보급 : 513대(지방청 65, 지자체 448)

##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으로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이용은 점차 확대될 전망

o 사유림은 전문 인력 부족, 임도 등 작업여건 미비 등으로 국유림에 비해 임업기계화 수준은 낮은 실정

o 기계화 산물수집 시범사업을 통한 기계화영림단 양성 및 기계장비의 보급으로 사유림 기계화 산물수집의 도입여건은 성숙

## 나. 기본방향

o 숲가꾸기 산물 수집량 증대에 대비한 임업기계장비의 확대 보급

o 사유림의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산물수집 시범사업의 확대 추진

o 임업기계지원센터의 경영수지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운영

## 다. 추진계획

### 1) 임업기계장비 개발·보급 및 기계화영림단의 지속적 양성

o 임업기계장비 개발 및 보급 확대(국립산림과학원)
- 임업기계장비 개발 시 소형 작업도구(덩굴제거 낫 등) 개발도 연구사업 추진
- 실연사업 등을 통해 개발 장비 적극적인 홍보 추진

o 임업기계장비는 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구입 기종 선정(1월중)
- 기계장비는 지역실정, 사업량, 장비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선정
- 기계화영림단을 양성하는 시·군은 기본 장비를 세트화하여 보급 추진
  · 기본 장비 셑 : 트랙터집재기, 우드그랩, 소형윈치, 2드럼 윈치류
- 화물차량·가공장비 구입 예산은 목재펠릿 제조시설이 있는 시·군에 우선하여 배정 활용

o 임업기계장비는 상반기 중 구입완료 될 수 있도록 1월 중 조달계약 등 조기발주

- 자체개발 장비는 제작기간, 성능검증 등을 고려하여 납품일이 지체되지 않도록 생산업체와 사전에 조율
  · 산림생산기술연구소에서 신규 개발한 스윙야더는 관련업체와 공동 추진하여 3월까지 제작하여 보급(지방청별 1대)
- 신규로 개발 보급된 구입 장비는 성능, 안전성 검증을 위해 산림생산기술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수 조치
  ※ 기 개발되어 공식 검사필증 등이 있는 기계장비는 전문기관의 검수 제외

o 현재의 '기능인 영림단'을 '기계화 영림단'으로 단계적 전환 육성

- (국유림) 15개단 : 북부청 4, 동부청 4, 남부청 3, 중부청 2, 서부청 2
- (민유림) 8개단 : 기계화 시범사업 시군과 연계하여 도별 1개단을 양성
  ※ 시범사업 추진(시 · 군) : ('10) 8 → ('11) 16(신설 8) → ('12) 24(신설 8)
- 선정된 기계화영림단에 대하여는 임업기계훈련원의 기계화영림단 과정 등 기계화교육 과정을 우선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 해당 시군 및 산림조합, 임업기계훈련원에서는 시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계화 교육이 이수될 수 있도록 협조

## 2) 기계화 시범사업 확대 추진 및 현장 기술지원 강화

o 지방청은 임업기계화 시범단지 및 숲가꾸기 모델 숲 등에서 임업기계장비 실연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기계화 촉진

- 지방청별 시범단지 등에 집중하여 임업기계화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사유림 임업기계의 시범 모델림으로 활용

o 지자체별 기계화 산물수집 시범사업 확대 추진(16→24시군)

- 숲가꾸기 사업량, 임도(작업도)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도별 3개단씩 기계화영림단을 양성하여 시범운영(특 · 광역시, 제주도 제외)
- 숲가꾸기 산물수집 장비는 기계화영림단을 양성하는 시군에 우선 배정하고, 기타 운반 · 가공장비 등은 지자체 수요 및 영림단 현황 등을 감안하여 배정
- 기계화영림단 운영 시·군에 대하여는 연중 사업이 가능하도록 숲가꾸기 사업량, 소형임도 등의 기반시설을 타 시 · 군보다 우선하여 배정
- 지자체별 현지 실정에 부합되도록 기계화 영림단 시범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교육훈련, 장비구입, 산물수집 설계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
- 지자체별 보유 임업기계장비는 정책숲가꾸기 도급계약시 산물수집이 계획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기간 중 산림조합 등에 장비 대여

o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술자문평가단 및 기술지원반 운영

- 원활한 사업 실행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기술자문평가단 및 기술지원반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기간 중 지도 및 모니터링 실시
  - ·기술자문평가단 : 공무원, 대학교수, 단체의 전문가로 구성, 분기별 지도
  - ·기술지원반 : 국유림 기계화영림단 등으로 구성, 관할지역 순회지도

o 윈치류 등 산물수집 장비의 사용법 및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마련

- 소형 윈치류 및 트랙터집재기 사용법에 대한 현장 매뉴얼 작성

### 3) 임업기계장비의 보관 등 사후관리 철저

o 임업기계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업기계장비 운영지침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장비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임업기계장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요장비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 기관별 보유한 기계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내용연수 경과 장비 등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불용처리

o 지자체 보유 임업기계장비는 정책 숲가꾸기 도급계약 시 산물수집이 계획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기간 중 산림조합 등에 장비 대여

-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운용일지 기록관리

o 임업기계장비 보관 장비고 설치

- 장비고 등이 없어 장비가 분산 관리되거나 야외에 보관되고 있는 장비는 간이 장비고 또는 컨테이너를 확보하여 장비를 보관

### 4)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o 산림조합중앙회 소관 임업기계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 지자체의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량 등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자체 사업 물량 확보에 노력
- 기계운전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강화 및 현장 토론회 등 실시
- 기계장비의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인근 지자체 및 일반산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산림지, 전문지, 등) 실시
- 상·하반기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o 지방산림청 소관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

- 지방청 보유 중·대형 임업기계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청 소관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
- 북부·남부청에서는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성과를 반기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고

## 5)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등 임업인 지원

###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임업기계장비 구입 등

o 산림조합에서는 산주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기계장비(동력기계톱 등 15종)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관련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o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융자 지원하고 있는「산림사업 종합자금」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임업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 지원자격 : 임업기계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지원조건
  - ·임업기계장비 구입자 : 금리 3%, 융자비율 70%, 융자한도 30백만원)
  -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금리 4%, 융자비율 70%, 융자한도 100백만원)
  - ※ 2012년도 종합자금 신청 : 2012. 1. 20일까지 해당 산림조합
- 자금용도
  - · 임업기계장비 구입 :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임업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 · 임업기계장비 생산 :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임업기계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생산」관련 대상 장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3에서 정한 임업기계장비(15종)

### 나) 임업용 면세유류의 공급업무 철저

o 산림조합중앙회는 면세유류의 공정한 공급 관리를 위해 전년도 기종별 면세유 사용량을 종합 분석하여 산주 및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

o 임업용 면세유류는 기획재정부에서 상·하반기 공급한도량 배정전이라도 전년도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o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연 2회이상 면세유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면세유류가 타용도 등으로 부정사용 되지 않도록 지속적 지도·감독 철저

o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5조 규정에 의거 신고된 임업기계는 보유 현황을 재 신고(2년마다)토록 하고, 신고 기간내 재 신고하지 않은 임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

## 라. 추진일정

o 임업기계장비 구입 : 2012. 6월까지

o 임업기계장비 운영실태 점검 : 상・하반기

o 임업기계장비 자체 실연회 및 토론회 : 수시

o 윈치류 등 산물수집 장비의 사용법 및 안전사고 방지 매뉴얼 마련 : 하반기

**< 지방산림청 보고 >**

o 임업기계장비 구입상황 보고 :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임목생산 실적보고 :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 : 반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중요장비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 2012. 12. 31

o 임업기계장비보유 및 운영현황 보고 : 2012. 12. 31

**< 지자체 보고 >**

o 임업기계장비 구입상황 보고 :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기계화 산물수집 시범사업 추진상황 보고 :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임업기계장비보유 및 운영현황 보고 : 2012. 12. 31

**< 산림조합중앙회 보고 >**

o 2011년도 임업용 면세유류 한도량 신청 : 2012. 1. 15

o 영세율 적용대상 임업용 기계류 구입실적 보고 : 2012. 1. 30

o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 보고 : 익월 15일까지

o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 :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면세유류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실적 보고 : 2011. 12. 31일까지

o 임업기계장비보유 및 운영현황 보고 : 2012. 12. 31일까지

# 20. 전문 임업기능인 양성

< 목 표 >

◇ 『기후변화 산림종합대책』에 따른 숲가꾸기 등 녹색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농·산촌 인력난에 따른 전문 임업 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산림관리 전문가 양성

o 제5차 산림기본계획('08~'17) : ('07) 10,000명 → ('17) 20,000명

## 가. 정책여건

o "저탄소 녹색성장" 의 국가 비전 아래 마련된 "기후변화 산림종합대책"에 의한 숲가꾸기, 수종갱신 등 산림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도시 녹색공간 확충과 산림서비스 생산 증진을 위해 도시숲, 학교숲, 가로수, 산림공원, 치유의 숲과 수목장림 조성 등 다양한 산림사업 추진

o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와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전문화된 임업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양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o 영림단의 소득 및 고용제도 불안정 등으로 타 직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또한 산림사업 실행시 안전사고 재해율이 높은 편임

## 나. 기본방향

o 숲가꾸기, 산림서비스증진분야 등 산림사업의 확대 및 기계화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전문 임업기능인력 양성 및 영림단 조직·운영의 활성화

- 녹색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전문 임업기능인력 양성 및 산림사업의 능률향상을 위한 기계화영림단 확대

o 전문 임업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로드맵 구축

- 다양한 산림수요를 담당할 분야별 전문기능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직업훈련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산림사업의 현장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성화된 중간 전문 임업기능 인력 등 양성

o 산림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별 교육시스템 및 전문 임업 기능 인력을 내실 있게 양성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 정비 및 교육시설 확충

## 다. 세부추진계획

### 1) 임업기능인 양성

o 녹색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산촌 지역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임업기능인으로 유도

o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전문 산림작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영림단원들에게 임업기계분야 교육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임업기계분야 전문 교육 : 기계화영림단 과정, 윈치시스템기계수 과정, 가선 시스템기계수 과정, 산림기능사 양성 과정 등
- 임업기계분야 이수자에 대하여 기계화영림단 양성·확대 및 임업기계장비 지원

### 2) 임업기능인 교육

#### 가) 기능인영림단 교육

o 기능인영림단원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구분하고 과정별로 전문 산림기술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

- 기본교육(1년차) : 안전예방, 숲에 대한 이해, 기초 임업기계장비 등 교육
- 심화교육(2년차) : 간벌 등 목재 생산기술, 임업기계장비 사용요령 등

※ 교육과정별 교과목 확정은 임업훈련원 등 관계자와 협의·운영

o 산림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

- 영림단원 교육시 과목별 안전한 산림작업 실행요령 방법을 구성하고,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 및 실습 시간을 확대 운영
- 필요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사고예방 전문 강사를 적극 활용
- 산림분야 안전사고예방 요령 프리젠테이션 및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임업기능인 기술교재의 안전예방 분야를 재편

o 임업기능인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간담회) 정례화

- (개최시기) 그동안 추진되어 온 임업기능인 양성 교육에 대하여 이해 관계자가 모여 교육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추진과정에 대하여 정기적(상·하반기)으로 간담회 개최
- (참석대상) 산림조합중앙회 및 3개 임업훈련원 등 이해당사자
- (주요과제) 임업기능인 교육내용, 교육생의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 등
- (정책반영) 임업기능인 양성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개선과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 시행

o 현장위주의 체험식 임업전문 교육훈련 실시
-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구성을 차별화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이론교육보다 숲을 보는 기술, 기계 활용 및 수리·정비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현장 교육 강화

o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원에 대한 기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작업의 질 향상 및 교육이수자 이탈 등에 수시로 대비
- 기능인영림단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존 영림단원 이외에 일반인에게도 교육이수 기회 확대

o 교육훈련은 사업이 없는 시기(1~2월, 12월)에 집중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o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자 기술교육에 차질 없도록 비상체계 가동(임업훈련원)
- 교육과정 : 숲가꾸기 기술교육,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기술교육 등

o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교육의 최우선 목표를 안전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실시
- 교육의 대부분을 안전한 산림사업 실행요령으로 대폭 개편하여 교육 실시

### 다) 산림경영자 양성

o 교육인원 : 100명(3회 교육실시)

o 교육기간 : 12주

o 교육기관 : 임업기계훈련원(강릉)

o 전문임업인력 양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교육대상, 기간, 내용, 교육이수자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o 교육이수자 취업알선을 위한 대책 강구
- 취업알선 홍보 등을 통해 현장 관리자로 채용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 방안 강구

o 교육 참석자에 대한 교육훈련 보조비 480천원 지급

### 라) 산림토목기능인 양성

o 교육인원 : 60명(2회 교육실시)

o 교육기간 : 3주

o 교육기관 : 임업기술훈련원(양산)

o 교육내용 : 산림토목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기능인력 양성
- 임업기능인에 대하여 산림토목사업의 시공능력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산림토목 분야 기술인력을 확보

## 3) 영림단 조직 · 운영

### 가) '12년 영림단 조직

o 민유림 영림단은 신규 조직 및 이탈인원에 대한 보강 : 10개단, 120명

o 국유림영림단은 기존 영림단의 이탈인원에 대하여 보강하되, 사업량 확대 등 필요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조직 확대

### 나) 민유림 영림단 운영

o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법인 소속 영림단의 임업기술능력 향상 및 영림단 구성요건 확보를 위해 임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인원(전체 구성인원의 60% 이상)이 반드시 교육 이수토록 조치
- 영림단 구성 요건 미달시는 사업수주 불가

o 민유림 영림단에 대한 산림사업 장비 지원(85백만원)
- '12년에 신규 조직된 기능인영림단에게 산림사업 장비 지원
※ 산림사업 장비 : 안전장구(안전복, 안전화, 안전모 등), 기계톱, 예불기 등

o 산림조합중앙회는 영림단 구성요건 점검을 위한 영림단원 교육 실태조사 실시

### 다) 국유림 영림단 운영

o 국유림 영림단원의 안정적인 소득지원 방안 적극 추진
- 국유림내 산림사업은 소속 기능인영림단을 적극 활용하되, 기계화영림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기계화 촉진을 유도
- 소득이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사업물량 책정

o 산림사업 계약시 참여하는 영림단의 구성요건을 확인하고, 구성요건에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에서 배제
-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소속 영림단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산림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

### 4)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개최

o 개최시기 : 2012년 하반기

o 개최방법

- 임업기능인의 기술발전 및 사기진작, 임업기계화 촉진 등을 위해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및 임업기계장비 실연회와 연계하여 추진
- 산지에서 임목생산 장비 등을 활용한 기능경연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경진 종목은 보급된 장비의 수량, 기술의 축적 정도 등 지자체 및 지방청의 의견을 수렴 후 결정
-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6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

## 라. 추진일정

o 임업훈련원 운영실태 점검 : 상반기

o 신규조직 기능인영림단 및 국고보조 지원장비 운영실태 점검 : 상반기

o 임업기능인 기능경진대회 개최 : 하반기

o 임업기능인양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간담회)추진 : 상・하반기

o '13년도 임업기능인훈련 교육훈련계획 보고 : 2012. 12. 31일

o 임업훈련원 교육실적 보고(반기보) : 다음달 5일까지

o '11년도 영림단(국・민유림) 운영실적 보고(연보) : 2012. 12. 31일

# 21.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 목 표 >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확대에 대비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산림사업의 재해자 및 재해율을 최소화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목표관리 : 재해율 2.6%이하 달성

## 가. 정책여건

o 산림사업은 지형이 험한 산지에서 부피가 크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므로 다른 업종의 작업보다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광업, 건설업, 임업을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함

o '10년 산림사업 재해율 분석결과 전체 업종 산업재해율 평균(0.69%)보다 4.6배, 건설업 등에 비하여 4배 더 높은 추세임

- 광업 8.64% > 임업 2.80% > 제조업 1.07% > 건설업 0.70%

o 산림사업 재해율 증가에 따라 산재보험요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산림사업 추진 시 산재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11년 최초 감소)

- ('08) 5.4% → ('09) 6.2% → ('10) 6.6% → ('11) 6.5%

## 나. 기본방향

o 산림사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협력체계 강화

- 산업안전전문기관과의 실질적 공동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 협의회 활성화
- 산림사업 기관·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사업 실행

o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및 현장에서의 안전 예방활동 강화

- 안전사고 다발기관에 대한 산업안전문기관과의 합동 특별 점검으로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
- 사업착수와 동시에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 현장 확인 지도·감독 강화
- 산림사업 시 농약 등 화학약품 취급시 안전수칙 등 준수토록 지도·감독 강화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대책 추진

-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평가시 안전사고 재해율을 평가부문에 반영하여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 산림사업 사업시행 기관별로 산림사업 재해율 목표치를 설정하여 안전사고 예방목표의식을 높이고 산림사업 재해율 저감

※ '11년도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목표관리 재해율 2.7% 이하 설정

o 산림사업 재해 통계자료 구축 및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보급

- 기관별 재해발생현황 매월 분석 및 취약사업장 집중 관리
-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보급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협력체계 강화

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 협약사항에 대한 실질적 공동사업 추진

- 산림사업분야 안전사고 예방 제도개선 및 안전교육 공동 실행
- 산림분야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합동 점검 등 공동 실시
- 안전한 산림사업 실행을 위한 교육·홍보자료의 보급 확대

※ 산림사업 재해예방 업무협약 기간연장 : '11. 7. 7 ~ '13. 7. 6 (2년간)

o 기 구성된『산림사업 안전관리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

- 개최시기는 반기별로 하고, 참여기관·단체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본부 역할을 수행
-「산림사업 안전사고 반으로 줄이기」공동 캠페인 전개
-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재해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제출

###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강화

#### 가) 산림사업 착수와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o 숲가꾸기 등 작업착수일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임업훈련원 교관 등을 초빙하여 현장중심의 예방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 착수

o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일 경우에는 발대식 날 안전사고 예방 결의대회 및 참여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 한 후 작업착수

- 작업 착수 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한 산림작업요령 등 보수교육 실시
-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한 기계사용법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실시
-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 등 상황별 처치방법의 실습교육 강화

### 나) 임업훈련원(기술, 기계, 기능인)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o 기능인영림단 기본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목을 재편하고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
-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방법으로 내용을 개편
- 응급처치 위주의 교재내용을 산림사업별 안전작업 요령으로 재편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11.5.19 변경 시행)

o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교육 강화
-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위탁교육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중점실시
- 필요시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 다) 사업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는 사업 착수 전 현장에 부합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후 작업 착수
- 관리책임자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 포함

o 사업시행자가 안전관리에 관해 조치할 사항
- 작업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 기계톱 등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등

## 3) 산림사업 현장에서의 안전 예방활동 강화

### 가) 산림사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o 사업시행자는 위험한 산림사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하고 착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 보호구 의무착용 규정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4조

o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자는 참여제한 조치 등 행정적 제재 조치
- 연속 3회 이상 적발된 근로자는 산림사업 퇴출 조치 시행

### 나) 작업장 5대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수칙 낭독

| |
|---|
| ①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br>②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는다.<br>③ 안전작업 요령을 숙지한다.<br>④ 산림작업 시 작업에만 집중한다.<br>⑤ 작업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o 기계톱 등 위험장비 사용시 안전한 사용법 반복 교육 실시

o 작업현장에 안전수칙, 안전교육일지 등을 비치 및 기록 관리

### 다)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 강화 및 사고발생시 신속 보고

o 작업 착수 전 작업반장은 반원의 안전장구 착용 및 건강유무 확인

o 감독공무원 및 감리자는 작업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점검일지에 기록·관리

o 안전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고, 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등에 연락 및 환자 이송

o 자치단체 및 지방청 등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중상자 발생 시 산림청 목재생산과(FAX : 042-471-1446)로 신속 보고

## 4) 농약 등 화학약품 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강화

### 가) 화학약품 약제 처리방법 이행 철저

o 덩굴류 제거, 병해충 방제 등의 산림사업을 위해 화학약품 사용시 작업자, 지하수, 야생동물 등을 오염시키므로 각별 주의

o 화학약품 처리방법을 준수하고 작업반장은 약제처리 관리 감독을 강화

### 나) 화학약품 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및 지도 감독 강화

o 산림사업 시 취급되는 약품은 고독성 농약 등이므로 안전관리 수칙 준수

o 화학약품 작업일은 수시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우천 등에 대비

## 5) 산림재해 통계자료 구축 및 취약 사업장 집중관리

### 가) 기관별·월별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분석

o 기관별 재해발생 통계자료 구축·활용(본청)
- 기관별 재해발생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매월 재해원인 및 재해 발생형태를 분석(지자체 등)

### 나) 산림사업 재해발생 취약 사업장의 집중관리

o 안전사고 취약 사업장은 지방노동청과 합동으로 현장 지도·점검
- 재해다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조사 분석
- 중대재해 발생지 등에 대하여는 지방노동청 관계자와 합동으로 안전예방 관리 실태를 지도·점검 후 행정조치

o 자치단체, 지방청 등에서는 현장 출장 시 안전사고 예방 점검표를 지참하고, 연접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병행 점검

## 6)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대책 추진

### 가) 산림사업 평가시 안전사고 재해율 반영

o 숲가꾸기 등 개별 산림사업 평가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평가

o 안전사고 부문 등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관련사업 예산 및 사업량 배정시 인센티브 부여

### 나) 산림사업 안전관리 예방 목표관리제 설정

o 기관별 산림사업 재해율 목표치를 설정함으로 안전사고 예방관리 목표 의식을 높이고 산림사업 재해율을 낮추는 계기 마련

o 산림사업 재해율 목표 설정
- 목표치 : 산림분야 녹색일자리사업 상시인원 대비 재해자 2.6% 미만
- 기관별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지표 제시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목표를 달성한 우수기관의 포상
- 무재해·안전사고 재해율 목표달성 기관 등
  · 훈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1점), 산림청장(3점)
  · 시기 : 연말 재해현황 분석 후 유공기관 포상

### 다) 기관장·부서장의 적극적 안전대책 실시

o 자치단체·지방산림청의 경각심 강화를 위한 안전사고 발생율 공표
- 매월 말 기관별 안전사고 발생결과를 분석하여 공문서로 통보

o 자치단체장·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격려·점검

## 7) 산림사업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보급

### 가) 산림사업 재해예방 교육·홍보 자료 개발·보급

o 산림사업 참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자료 개발
- 휴대용 수첩, 리플렛, 교육용 PPT 자료, 동영상 등

### 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림작업 매뉴얼 제작

o 안전사고 예방에서 사후조치까지 처리요령이 담긴 매뉴얼 제작
- 사업종별 작업안전 및 기계장비 안전작업 요령, 응급처치 등 수록

o 매뉴얼 제작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

## 라. 추진일정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결의대회 : 사업 발대식 시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교육
  - 현장 예방교육 : 매일
  - 정기 안전교육 : 매월 1회 이상

o 산림사업 안전관리 협의회 운영실적 보고(반기보) : 다음 달 5일까지

o 산림사업 안전사고 발생현황(월보) : 다음 달 5일까지

o 기관별 산림사업 재해 통계자료 구축 : 2012. 3. 31까지

o 안전사고 다발기관 및 재해발생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 상・하반기

# 22.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목 표

◇ 임도의 적극적 확충으로 산림 경영·관리 기반시설의 조기 확보와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 강화로 임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o 사업량 : 임도신설(664km), 구조개량(700km), 보수(3,495km)

o 사업비 : 154,716백만원(국비 119,792, 지방비 23,283, 자부담 11,641)

## 가. 정책여건

o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등 산림사업에 임도 필요성 증가

o 태풍·집중호우의 대형화·빈발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시설 요구

o 임도를 이용한 여가·휴양·레포츠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

## 나. 기본방향

o 임도를 임업용산지 중심으로 시설하여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의 효용성이 증진

o 간선임도와 작업임도의 병행 시설로 기계화촉진 등 임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o 임도설계·시설기준 강화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임도로 시설

o 과거 낮은 단비로 시설하여 활용도가 낮은 임도의 구조개량은 '14년까지 완료

o 휴양·여가·산악레포츠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임도로 시설

## 다. 세부추진계획

### 1) 임도신설

(단위 : km, 백만원)

| 구 분 | 합 계 | | 간선임도 | | 작업임도 | |
|---|---|---|---|---|---|---|
|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 합 계 | 664 | 97,182 | 350 | 70,058 | 314 | 27,124 |
| 민유임도 | 454 | 70,292 | 275 | 54,831 | 179 | 15,461 |
| 국유임도 | 210 | 26,890 | 75 | 15,227 | 135 | 11,663 |

### 가) 노선선정

o 간선임도는 제3차 간선임도 설치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노선으로서 타당성 평가 결과 적합한 개소에 한하여 설치

- 지역(산)별로 국·사유림간 및 자치단체간의 연계성과 기존도로(임도로 활용 가능한 산림내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활용가치가 높게 선정
- 노선완결 원칙으로 선정하고, 소규모 분산 설치 지양(국회지적 사항)

o 작업임도는 집단조림지, 경제림육성단지(독림가 산림 포함) 등 일련의 산림사업(벌채·조림·숲가꾸기·간벌)이 집중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

- 하나의 노선은 반출계통을 같이하는 유역단위로 선정(가급적 3km 이내)
- 기계화 등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일괄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지역
- 노선은 등고선 방향으로 산복임도로 선정하고, 계곡·능선임도는 지양
- 대면적 숲가꾸기 대상지로 국유림 또는 공·사유림 사이에 개재되어 있는 사업 실행주체를 달리하는 산림도 포함하여 실행함으로써 활용도 제고 (지자체 ↔ 지방산림청간 협조 → 사업 비중이 큰 기관주도로 추진)
- 기존의 임도, 또는 기타 도로에 연결하여 시범림·특수림 등 산림관리, 재해예방, 테마임도 조성 등을 위한 순환임도 조성이 필요한 지역
- 운재로, 진입로 등 폐기된 산림내 도로를 이용하여 임도시설이 가능한 노선 (임도시설 후 활용도, 시설비 등을 검토하여 반영)

* 과다한 산림훼손이 예상되는 지역, 집중호우시 민간피해 우려지역, 지형적 여건으로 구조물 시공이 과다하게 요구되는 지역은 임도신설 대상에서 제외

### 나) 사업추진

o 월동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4월말까지 설계완료 및 5월말까지 시공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개소별 월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임도사업 설계의 질" 향상을 위해 임도신설 실시설계 비용 산출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 3항"을 적용(1.3배)하여 실행(임도설계 실명제 준수)

* 임도신설시 기계화 작업을 위한 작업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시공

o 임도신설 사업비를 구조개량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없도록 목적별 계획대로 집행하되, 임도신설 잔액을 이용하여 작업임도 설치가능

o 민유임도 사업의 경우 산주 부담금(사업비의 10%)은 예산부족에 따른 부실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방비를 확보·지원토록 검토

o 임도사업비는 예산물량·단비에 구애됨이 없이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현지여건에 부합되게 필요한 공종을 반영하여 설계·시공

o '13년에 시설할 신설예정 임도의 타당성 평가는 '12. 10월말까지 완료하고, 산림소유자 동의는 '12. 12월말까지 완료

## 2) 구조개량

(단위 : km, 백만원)

| 구 분 | 합 계 | 민유임도 | 국유임도 |
|---|---|---|---|
| 사업량 | 700 | 600 | 100 |
| 사업비 | 46,382 | 39,756 | 6,626 |

o 기존임도의 구조개량은 '1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역완결 원칙으로 시공하되, 집중호우시 재해발생 우려지역을 우선 실행
- 임도 피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지, 일반주민 이용율이 높은 임도 등
- 기존 구조개량을 실시하였거나, 최근 시설한 임도(하자보수기간 도래)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시 추가 실시(필요성 및 사업실행 근거 명문화)

o 산림 내 타용도 도로를 임도로 전환한 노선 중 산림사업이 시급한 지역, 재해발행 위험이 높은 지역,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지역 등
- 사설임도도 국·공설임도로 필요한 지역은 소유자동의를 얻어 편입하여 추진

o 각종 구조물 시공은 필요성·시급성을 고려하여 시공하되, 시공편의 중심으로 필요성이 낮은 공종 및 과다시공 지양(노면포장, 절토사면 옹벽 등)

o 휴양림주변, 도시근교, 특히 경치가 좋은 노선 등 일반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임도는 기능 다양화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 만족도 제고
- 테마임도는 임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하되,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
- 특정 단체가 주도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 유도

o 구조개량 단비인상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
- 설계자의「현장조사 실명제」도입과 부실설계에 대한「삼진아웃제」실시
- 성토면에 구조물을 30%이상 배분하는「구조개량 가이드라인제」적용

o 산림소유자에게 사업계획의 사전통보 및 임도주변의 산원주민 의견 반영 등 민원 발생이 없도록 사전조치 필요

## 3) 보 수

(단위 : km, 백만원)

| 구 분 | 계 | 민유임도 | 국유임도 |
|---|---|---|---|
| 사업량 | 3,495 | 1,295 | 2,200<br>(2,200) |
| 사업비 | 10,691 | 8,557 | 2,134<br>(1,649) |

※ 국유임도의 ( )내는 민간위탁 유지·관리로 합계에 포함

o 보수 대상지는 신설 및 구조개량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임도를 대상으로, 해빙과 동시에 사업 착수하여 1차 보수는 6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

- 특정지역 또는 특정 목적에 많이 활용되는 임도는 이용자 자율보수 유도

o 해빙 후·우기 전에 임도관리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상시관리 체계 강화

- 임도관리원은 해빙기 후부터 바로 임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1월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기 중에 집중적으로 활용
- 임도관리원의 배치기준 및 단가는 지역별 특성과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실행
- 국유임도의 경우, 민간위탁 사업대상 지역을 포함하여 배치·활용

o 국유임도의 일부구간(2,200km)은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되, 기타 노선은 자체장비 및 관리원을 활용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

- '12. 3월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우기 전에 사업 완료
- 민간위탁 : 1회 보수 6월 중순까지 완료, 2차 보수는 9월말까지 완료

## 4) 기타 사항

o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산림토목사업 실행체계 제도개선」지침(치산복원과-55, 2008.4.8.) 중 임도사업의 공개경쟁 비율 확대

- 각 시·도 및 지방청별 임도사업을 총괄 적용하여 15%이상 공개경쟁 실시

o「환경영향평가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 타 법률에 규정한 평가 사항을 준수하여 임도가 재해유발 원인이 되는 사회적 책임성에 적극 대비

o '11년도「임도시설 시범단지」계획을 수립한 기관은 "기본설계"를 실시 후 사업을 추진하고, 각 도 및 미 수립 지방청은 시범단지 계획을 수립

- 각 도별 계획수립이 가능한 지자체만 수립하되, 계획이 수립된 지자체는 '13년도 예산 배정시 시범단지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 사업량 배정

## 라. 추진일정

o 임도담당자 정책·기술 교육 실시 : 2012. 2~3월
  - 지자체 담당자 인사이동 후 각 권역별(4개) 현지교육 실시

o 「임도시설 시범단지」 계획수립 및 추진
  - '11년도 계획수립지의 기본설계 실시 : 2012. 2월
  - '12년도 임도시설 시범단지 조성계획 수립 : 2012. 5월

o 임도(간선·작업)신설사업
  - 설계완료 및 공사착공 : 2012. 3월
  - 시공완료(준공 및 보완) : 2012. 11월
  - 익년도 신설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 : 2012. 10월
  - 익년도 신설예정지에 대한 산주동의 완료 : 2012. 12월

o 구조개량사업
  - 설계완료 및 공사착공 : 2012. 3월
  - 시공완료(준공 및 보완) : 2012. 10월

o 보수사업
  - 설계완료 및 공사착공 : 2012. 3월
  - 시공완료(준공 및 보완) : 2012. 6월

o 집중호우 안전대책
  - 임도하단부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지 조사 : 2012. 6월
  - 임도시설 일제점검 및 재해위험 예방조치 : 2012. 5~6월

o 임도사업 성과평가
  - 행안부 합동 및 지자체 자체평가(민유임도) : 2012. 3월, 11월
  - 지방청 국유임도 평가 : 2012. 11월

o 임도시설 우수사례 및 연찬회 개최 : 2012. 10월

# 23.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추진

목 표

◇ 아시아 산림녹화를 주도하는 녹색강국 구현의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을 추진

o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발효 및 사무국 국내 설치 완료

o 회원국 확대를 위한 제3국가 협력 및 협상 추진

## 가. 정책여건

o 개도국 산림전용방지(REDD+), 사막화 방지, 기후변화 대응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이슈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한 아시아 지역내 산림협력기구 필요

o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09. 6, 제주)시 AFoCO 설립 제안하여 제1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11.11.18, 인니)시 ASEAN과 국가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AFoCO 설립기반이 마련됨

※ AFoCO 설립은 국정과제, 녹색성장 5개년 계획('09~'13), 국가브랜드제고 과제 등에 포함된 국가 아젠다

## 나. 기본방향

o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한 국·내외 협상 추진

o 사무국 개소 및 제1차 총회 준비 철저로 조약의 이행기반 마련

o 부처간 협력을 통해 기타 아시아 국가와 기구확대를 위한 주요 협상 추진

※ 몽골(동북아), 키르키즈스탄(중앙아), 네팔, 부탄, 스리랑카(남아시아), 이란, 터키(서남아) 등 핵심국가 위주로 추진

o 회원국인 ASEAN 국가와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제3국가와의 신규사업을 확대

- 회원국의 니즈에 따른 사업개발·추진으로 상호 윈-윈하는 전략추진

o AFoCO 설립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대내외 설립 추진 효과 제고

## 다. 세부추진계획

### 1) AFoCO 사무국 구성 및 운영

o 사무국은 이사회를 보좌하는 실행기구로서 이사회에서 승인된 모든 프로그램, 계획 및 활동에 관한 조정, 모니터링, 보고의 역할을 담당

o 정식 기구 출범시까지 ASEAN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임시채용 및 한국측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제1차 창립총회시)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

- 초기에는 사무국 구성인원을 최소로 하여 추진하되, 협력사업 및 협상 진전에 따라 인원을 보강

o 사무국은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기구 역할과 협상의 진전을 위하여 예산 및 인사 관련 사항을 우리나라에서 주도

o 사무국 구성(안)

- 인력채용(8명) : 정규직 4인(사무총장, 사무차장, 팀장급 2), 민간계약직 4인
- 채용방식 : 산림청이 고용계약을 체결
- 사무국 소재지 : 서울(산림비전센터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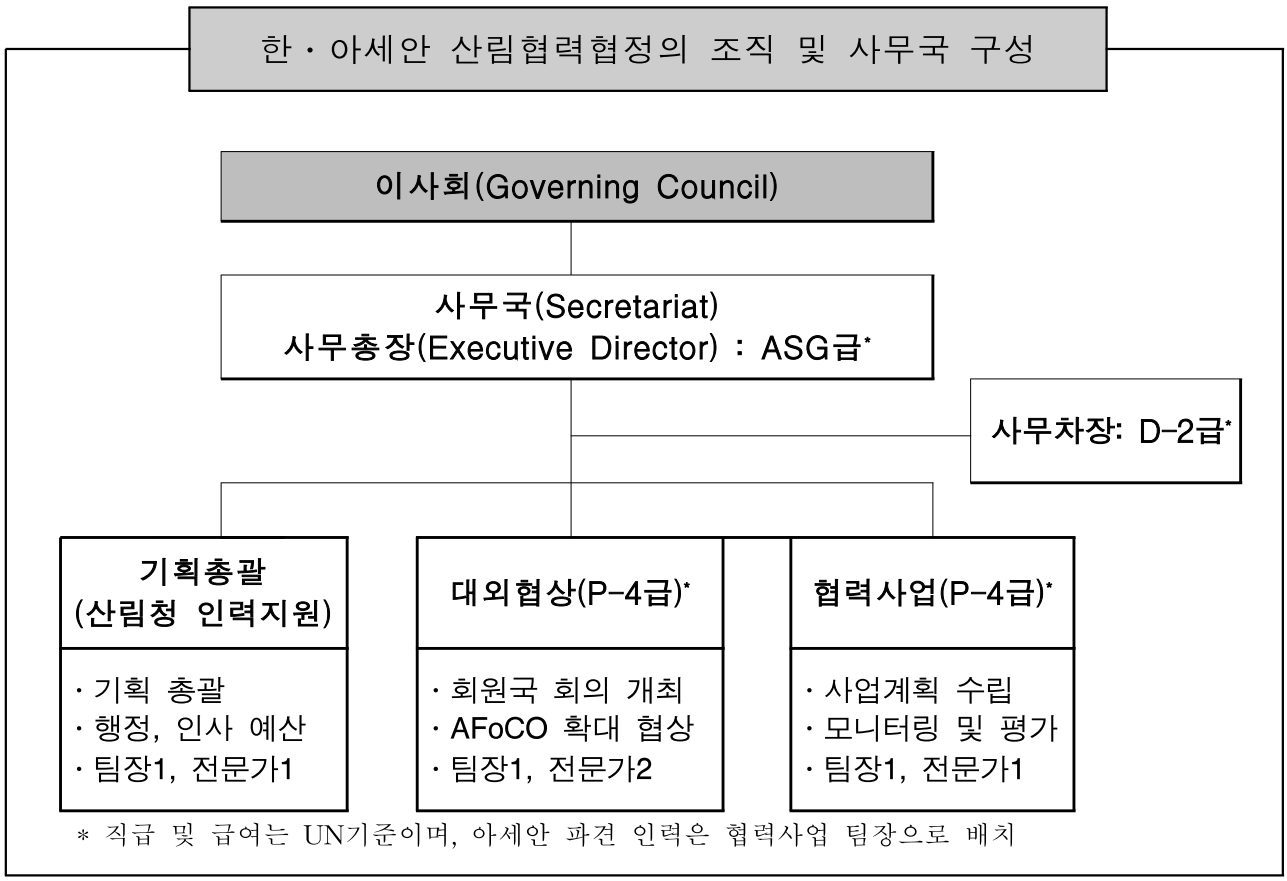

## 2) AFoCO 설립 협정(안) 국·내외 비준·발효절차 추진

o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 이후 협정에 대한 국·내외 비준 및 발효절차 진행

- 아세안의 국내절차 지연시 개별국가 비공식 협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발효 추진

o 주요 추진 내용

- [국내] 서명 이후 협정문 법제처 심사 → 협정 비준에 대한 외교통상부 안건상정 →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 [국외] 아세안 사무국에 국내절차 완료 통보(외교채널)

※ 한국 및 아세안 6개국의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 협정 발효

- 한·아세안간 이사회 구성 및 사무국 개소 등 사전준비를 병행 추진

## 3) 이사회 구성 및 제1차 총회 추진

o 이사회는 조약의 의사결정 및 조정기구로서 한국 및 아세안(10개국) 산림분야 고위급 공무원, 아세안사무국 대표(1인, 자문역)로 구성됨

o 협정 발효 즉시 이사회를 구성하고 제1차 총회를 추진하되, 2년간 이행하는 협정임을 감안하여 사전에 사무국 운영, 기구운영 로드맵 등 총회시 의제(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

※ 총회는 아세안 산림장관을 초청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o 제1차 총회 의제(안)

- 사무총장(ED) 추천 및 직원채용 등 사무국 운영방안
- 사무국 운영경비에 대한 각국 분담 규모 및 방안
- 회의개최, 홍보, 협력사업 등 연간 사업계획
- 기타 국가 및 단체와의 협력방안
- 조약 이행 평가 절차 및 기본운영원칙
- 위 사항을 포함하는 조직운영관련 제규정 등

## 4) AFoCO 회원국 및 협력사업 확대 추진

o 회원국 확대를 위한 협상과 협력사업의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

o 1차 총회 기구 확대와 평가를 위한 작업그룹, 절차, 일정 등을 의결토록 추진하며 한-아세안 산림분야 장관회의 개최와 장관 성명서를 채택하여 기구 확대와 산림협력에 대한 추진을 가속화('12년 하반기)

- 장관 성명서에 메콩 유역에 대한 협력사업 및 기술 지원 등을 선언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최빈국(CLMV)에 대한 지원 강화

o 주요 추진내용

- 기존의 한-아세안 협력사업은 시범사업('11년)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본 사업('12년)에 대한 사업 예산을 차등 지원
- 아세안과의 협력은 기후변화 대응(REDD+) 역량 강화 및 회원국내 탄소배출권 확보 및 거래를 위한 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 메콩 유역국가에 대한 협력사업을 통해 최빈국(CLMV)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제3국과의 협력은 협력국가의 니즈에 따라 추진하되 산림복원에 중점

※ 핵심대상국가(안) : 몽골(동북아), 키르기즈스탄(중앙아), 네팔, 부탄, 스리랑카(남아시아), 이란, 터키, 레바논(서남아 및 중동)

## 5) 산림관련 국제기구와 협력기반 구축

o AFoCO를 산림분야에서 아시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기구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 수립

- 회원국 및 NGO · 국제기구 · 아세안 산림기관 · 산림투자기업(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등의 자발적 기여금, 선진국의 ODA 자금 활용 방안 모색 등

o 산림관련 국제기구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AFoCO사업개발 및 확대

- 관련 국제기구 및 NGO : UNCCD, FAO, CIFOR, ITTO, UNFF, IUFRO, IUCN 등

o 선진국의 ODA 기금, 국제기구 산림관련 재원을 AFoCO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o 주요 추진 내용

- 기존 산림관련 국제기구와 네트워킹 구성 및 공동사업 제안 추진
-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REDD 및 사막화방지 사업 발굴 등
- 기구 출범 이후 MOU 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 추진

※ 국제기구 초청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가 기회를 적극 활용

### 6) AFoCO 홍보 추진

o 한・아세안 산림장관 회의 (8월)
- AFoCO 설립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무국 개소식 및 제1차 창립총회와 연계 실시

o 주한 외국공관대사 초청세미나 (상・하반기)
- AFoCO에 대한 아세안 국가 한국주재 외교관의 이해도 증진 및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연례행사(상반기)
- 향후 가입국(몽골, 키르키즈스탄, 네팔 등)에 따라 확대 실시(하반기)

o 아세안 기자단 초청 워크숍 (하반기)

o AFoCO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주요도시지하철・KTX・TV 광고 추진, 홍보기념품 제작 등 (분기별 추진)

o AFoCO 사무국의 국・영문 홈페이지 구축

## 라. 추진일정

o 협정 발효 및 제1차 이사회(창립총회) 추진 : 2011. 12월~
-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외 절차 추진 : 2011. 12 ~ '12. 3월
- 총회준비를 위한 아세안사무국 협의 : 2012. 1~3월
- 비준서 기탁 완료 및 협정 발효 : 2012. 4월(잠정)
- 이사회 구성 및 총회준비 : : 2012. 5~7월
- 창립총회 개최 및 한  아세안 산림장관회의: 2012. 8월

※ AFoCO 설립 협정 발효시기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o AFoCO 사무국 구성 및 운영 : 2012. 2월~
- 추진계획 수립 및 국・내외 협상 : 2012. 2~3월
- 사무실 내부공사 및 인력채용 : 2012. 3월
- AFoCO 사무국 개소식 개최 : 2012. 4월

o AFoCO 회원국 확대를 위한 협상추진 : 2012. 1월~
- 핵심국가 Focal Point 선정 및 양자협상 추진 : 2012. 1~4월
- 회원국 확대를 위한 제3국 초청 워크숍 : 2012. 5월
- 확대논의를 위한 작업그룹 구성 : 2012. 하반기

o 회원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 사업 추진

- 협력 분야별 수요 조사 : 2012. 2월
- 협력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2012. 3월
- 회원국 사업별 제안서 접수 및 검토 : 2012. 3~4월
- 승인 및 사업착수 : 2012. 4월
- 협력사업 추진 및 평가 : 2012. 5~12월

※ 협력사업 평가단 및 인력양성 사업 2차년도 운영(2012. 8월~)

o AFoCO 홍보 추진

- TV 또는 신문 홍보 : 연중
- 주한 아세안대사 초청설명회 : 2012. 6월, 10월
- 아세안 기자단 초청 워크숍 : 2012. 10월

# 24. REDD+ 탄소배출권 확보기반 및 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

목 표

◇ 기후변화 협상의 주요 이슈인 REDD+(개도국 산림전용 방지 및 산림경영)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에 기여

##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 협상에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 열대림 파괴 방지(REDD+)가 핵심쟁점으로 부각

o 국제적으로 REDD+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개도국과의 REDD+ 이행 기반 구축을 통한 우리나라의 지분 확보가 필요

※ 기후변화대응 산림관련 인니 지원 규모 : 노르웨이(5억불), 일본(2억불), 호주(3천만불) 등

o Post-2012 이후 $CO_2$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필요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202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키로 결정('09.11.17) → 2.4억CO2톤을 감축할 필요

## 나. 기본방향

o 안정적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o 기술 이전을 통해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REDD+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상호간 윈-윈 전략 추구

o 국내기업의 탄소배출권과 연계한 산림바이오매스 해외조림 선도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다. 세부추진계획

### 1)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o 국가 및 국제기구, 산림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정례화하여 안정적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 (예산 : 245백만원)

o 고위급 정책협의회, 전문가라운드테이블, 실무그룹회의 등 목적별 협의 채널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기존의 AFoCO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과를 제고

-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REDD+ 핵심개도국인 아세안국가 대상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사업 세부내용

| 구 분 | 정책협의회 | 라운드테이블 | 산림기관협의체 |
|---|---|---|---|
| 목적 및 성격 | REDD+ 관련 정책 등 의사 결정기구 | 정책 및 사업수행을 위한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 | REDD+ 사업수행을 위한 실무협의 작업그룹 |
| 구성 | 한국, 아세안 등 각국 산림분야 고위급(SOM) 정부 대표 | 학계, 기업, 연구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 산림관련 국제기구(FAO, CIFOR, IUCN), 아세안사무국 |
| 운영 방식 | 연 1회 | 연 1회 | 연 2회 |

## 2) 산림탄소 인증(MRV) 체계구축 사업

o 우리나라 정부 또는 기업이 확보한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국제사회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림탄소 인증(MRV)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MRV : 모니터링(Monitoring),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o 산림탄소 인증에 대한 기술 워크숍을 통해 정보교환 및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형 MRV 체계 개발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예산 : 155백만원)

o 주요 추진내용

- MRV 체계 구축 및 현장 적용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기술 워크숍을 추진
- 한-아세안 및 기타국가, 국제기구의 REDD+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REDD+ 현안 토의 및 정보교류위주의 공개 심포지엄
- AFoCO 회원국가 및 기타 중점 협력국가 등 국내외 REDD+ 역량 강화에 기여
- 워크숍 및 심포지엄 결과물의 출판 사업을 통한 지식교류 강화

### 3) GIS/RS 연구개발 및 체계구축 사업

o 개도국 자원조사의 정확성 향상 위한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자료분석 환경의 개선 및 분석 체계를 일원화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예산 : 300백만원)

※ GIS/R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지리정보시스템), Remote Sensing (원격탐사)

o 주요 추진내용

- 규제시장(regulatory market) 및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market)의 거래기반 구축을 위한 분석장비의 도입 및 교육 훈련
-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열대림에 대한 GIS/RS분석 방법론 개발
- 인도네시아 산림부 연구개발청(FRODA)과의 이탄지역 공동연구 추진
- 개도국(미얀마, 라오스 등)의 GIS/RS 분석능력 배양과 우리의 기술전수

### 4) 산림탄소배출권 제도 구축 연구 및 현장시범사업

o 한국 기업이 산림탄소배출권 확보시 필요한 제도를 공식적인 거래 이전에 준비하기 위한 연구 및 현장시범사업 추진(예산 : 300백만원)

o 인도네시아를 우선 배출권 거래제도 국가로 선정하여 양자간 배출권 거래 제도를 설립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방법론을 개발

o 주요 추진내용

- 시장성이 있고 거래가 가능한 탄소배출권 창출에 의한 탄소배출권의 상업화 및 상품제도·REDD 전문 배출권 개발 및 설립
- 2013년 이후에 구매 가능한 탄소배출권 선물을 개발하고 한국 기업에 시범적으로 판매하는 제도 개발
- 한국정부에서 2013년 이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 및 방법론 개발
- 소규모 지역내에서 REDD 산림탄소 발생 관련한 정책, 메커니즘, 관리, 마케팅 등의 실연 사업

### 5) 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추진

o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증진 역량강화 및 해외탄소 배출권 확보 기반 구축('12년 예산 : 500백만원)

o 바이오매스 조림 및 산림바이오매스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민간 참여방안 개발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의('09.3)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양국 간 협력증진 및 산림자원의 안정적 공급원 조성

o 주요 추진내용

- 1만~2만ha 규모의 양묘→조림・육림→벌채→가공 등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일관시스템 운영 시범조림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마련

  ※ 사업실행방안 구축 환경조사, 열대유용식물자원 조사 및 민관 컨소시엄 구성 지원

- 녹색사업단을 주관으로 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추진
- 한-인니 공동 추진으로 투자리스크를 최소화

## 라. 추진일정

o REDD+ 국외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1. 12월

o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상추진 : 2012. 2~3월

o GIS/RS 연구개발 사업 추진 : 2012. 4월~

o 산림탄소배출권 제도 구축 연구사업 추진 : 2012. 4월~

o 인도네시아 시범조림(2만ha) 기본계획 수립 : 2012. 6월

o REDD+ MRV 국제워크숍 : 2012. 10월~

# 25. 양자간 산림외교 다변화 및 협력강화

목 표

◇ 양자협력 확대로 글로벌 산림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
◇ 개발도상국 산림협력 강화 및 지원체계 정비

## 가. 정책여건

o 사막화방지 유엔총회(UNCCD COP10) 계기 산림녹화 및 사막화 방지에 대한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양자 산림협력 확대 예상

o 산림경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사막화 및 황폐산림 비중이 높은 국가와의 산림녹화 및 산림환경 복원에 대한 지원요청이 증가할 전망

## 나. 기본방향

o 산업조림, 산림 바이오매스 조림, REDD+ 등 해외산림자원 확보, 산림녹화경험·기술의 해외 수출 등 협력분야 다변화 추진

o 양자 간 정례 산림협력회의 개최, 협력사업별 산림협력 협의 등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산림협력의 세계화 추진

o 해외 산림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탄력적 조직 운영, 사업예산 확대, 인력 보강 등 추진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림분야 양자협력 확대 및 협력회의 내실화

o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산림협력 국가를 미주, 아프리카 국가 등으로 확장
- 중남미 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와 신규 산림협력 MOU 체결 추진
- 일본, 캐나다와 양자 간 산림협력 관계 구축 추진
- UNCCD 성과와 연계하여 아프리카 국가와 신규 협력관계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등 추진

* 양자협력국가 : ('11) 12개국 → ('12) 20개국

o 베트남, 파라과이,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등 정기 산림협력회의 운영
- 개최(4개국) :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 방문(1개국) : 파라과이

o 주요 의제
- 산림개발투자 및 산림분야 기후변화 이슈 협력방안
- 사막화 및 산림황폐지 복구 조림, 산림전문가 인력양성, 교육 훈련 협력 등

o 산림협력 과제 발굴 및 상시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국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회의의 내실화 도모

## 2) 중점 추진 시책

o 정부간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과 제고
- 인도네시아 이탄림(peatland) REDD+ 시범사업(14천ha) 시행
- 인도네시아 함발랑 녹색협력단지(630ha) 마스터플랜 수립 등 추진
- 몽골 그린벨트 사업단,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등 해외 사업단에 실무급 전문가 파견 지속 추진

o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KIFC) 운영 활성화
- 산림협력센터를 인도네시아 산림협력의 핵심 조직으로 육성
  ・함발랑 녹색협력단지(630ha) 조성, REDD+ 연구, 능력배양 사업 등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투자기업의 산림컨설팅, 기업애로 해소 등 인니 정부에 대한 메신저 기능

o 몽골 그린벨트 사업단 후반기 운영 방향 정립
- 몽골 그린벨트 후반기 5년(2012~2016)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3,000ha) 달성
- 몽골 그린벨트 사업단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제3대 사업단장 파견
- 몽골 사막화 방지 조림기술의 특허권 확보 추진

o 개발도상국과 산림협력 강화 및 산림협력 지원체계 정비
- 개발도상국과의 인적교류 강화 및 연수교육 기관을 인력개발원으로 일원화
- 산림분야 국제협력사업 운영 전문가(PM)의 장・단기 해외파견
- 러시아, 남미 등에 산림분야 주재관 파견 및 산림협력센터 설치 추진

## 라. 추진일정

o 한-몽골 그린벨트 사업단 2012년 운영계획 수립 : 2011. 12월

o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 사업계획 수립 : 2011. 12월

o 한-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후반기 사업계획 수립 : 2012. 1월

o UNCCD 총회 계기 논의한 산림협력 후속조치 : 2012. 연중

o 중남미(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산림협력 제안 및 협의 : 2012. 1월

o 일본, 캐나다 산림협력 제안 및 협의 : 2012. 1월

o 제2차 한・파라과이 산림협력회의(파라과이) : 2012. 4월

o 제7차 한・베트남 산림협력회의(한국) : 2012. 5월

o 제7차 한・몽골 산림협력회의(몽골) : 2012. 6월

o 제6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포럼(한국) : 2012. 7월

o 제2차 한・캄보디아 산림협력회의(캄보디아) : 2012. 8월

o 제7차 한・미얀마 산림협력회의(미얀마) : 2012. 8월

# 26. 다자간 산림협력 확대

목 표

◇ 산림분야 국제협상의 주도적 대응
◇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산림분야 국제협력 강화

## 가. 정책여건

o UN 3대 환경 협약인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 의장국으로서 국제협상 주도 및 다자간 산림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o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 정상회의) 개최로 지속가능한 발전 맥락 하에서의 '녹색경제'와 제도적 체제가 국제사회 주요 이슈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통한 산림의 가치 제고 및 지역민의 생계 개선 등 다양한 편익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SFM을 위한 정책적 기반 및 협력에 대한 요구 증대

o Rio+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UN 3대 환경 협약 간 협력 및 공조 체제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3대 협약 간 시너지 효과 창출에 산림분야의 중요성 증가

o 교토의정서하 1차 온실가스 의무감축기간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POST-2012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결과를 반영한 국가차원의 대응계획 수립 필요성 증대

## 나. 기본방향

o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UN 3대 환경협약 등 산림분야 국제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응체계 마련
- 협상 담당 전문가를 지정하고,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제협상에 체계적으로 대응
- 청내외 대책회의, 전문가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논의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협상안 수립을 주도

o FAO, UNFF, ITTO 등 산림분야 국제기구 협상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다자간 협력 확대
-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을 위한 기술협력, 능력배양, 시범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

## 다. 세부추진계획

### 1) 지속가능발전 유엔회의 및 유엔 3대 환경협약 적극 대응

o Rio+20 회의 적극 대응을 통한 녹색경제에서 산림의 역할 증대에 기여
-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과 성공적인 산림녹화 경험을 바탕으로 녹색경제 하에서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에 대한 논의 참여

o Post 2012 기후변화체제를 위한 기후변화협상 대응
-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의 협상 결과에 따라 차기 협상에 대응
- 개도국 산림전용 및 악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산림탄소 축적 증진(REDD+) 파트너십 활동 및 방법론 개발 논의에 적극 참여
- 기후변화협상 주도 국가 및 협상그룹과의 연계 대응으로 우리나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개진

o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후속조치 및 산림분야 이행지원
-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협상 대응
-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정, 관련 정책 수립 등 이행 기반 마련 지원
- 산림 및 산악지생물다양성, 보호구역, 지구식물보전전략 등 산림 관련 의제 및 협상 대응

### 2) 산림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회의 참석

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림위원회 및 아태지역 산림위원회 등 회의에 대응하고, FAO의 세계산림자원평가 지원

o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정책수립 참여 및 회의 대응
- 국제열대목재협정(ITTA, 2006)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국제협상 참여 및 국내 정책 수립

o 국제기구 통계·보고서 작성,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등 산림분야 주요이슈에 대한 국제동향 등 정보수집 및 자료 발간

### 3) 국제기구 등과의 산림협력사업 추진

o FAO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사업('11～'13)
-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개도국의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및 REDD 능력 배양(산림자원과 협조)

o 한-몽 사막화방지 관련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시범사업
  - A/R CDM 사업계획서(PDD)의 UNFCCC CDM 집행위원회(EB) 등록 및 민간 투자자 모색

o 민간부문의 사막화방지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막화방지 활동 지원 사업 추진 절차 개선 및 효과 제고를 위한 평가 추진
  - 사업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녹색사업단을 통해 관리

## 라. 추진일정

o 민간 사막화방지 조림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2. 1～2월

o 제2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 : 2012. 4월

o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부속회의(미정) : 2012. 5월

o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 정상회의) : 2012. 6월

o 제25차 FAO 아태산림위원회 : 2012. 5월

o 제21차 FAO 산림위원회 : 2012. 10월

o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CBD) 총회 : 2012. 10월

o 제48차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이사회 : 2012. 11월

o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 : 2012. 12월

# 27. UNCCD COP10 의장국 역할 수행

목 표

◇ UNCCD 당사국 총회 개최 이후 2년간의 성공적인 의장국 역할 수행을 통해 COP10 결정사항 이행 및 사막화방지 국제논의 주도

##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과 함께 사막화와 토지황폐화 문제가 인류를 위협하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부각

o UNCCD COP10에서 총 41개 결정문과 함께 협약 프로세스의 전환점이 될 "창원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으며, 194개 당사국을 가진 UNCCD 의장국으로서 성실한 역할수행 의무가 부여됨

o 2012년 6월, Rio+20 총회가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의 맥락에서 '녹색경제'를 주제로 열릴 예정

## 나. 기본방향

o 차기 총회 개최 시까지 의장국으로서 협약 결정사항 이행 및 사막화방지 국제 논의 주도

o Rio+20 등에서 사막화, 토지황폐화 및 가뭄(DLDD)의 심각성 역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DLDD 인식 제고 및 UNCCD 인지도 상승에 기여

※ DLDD :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

## 다. 세부추진계획

### 1) UNCCD COP 의장단 회의 개최 및 주재

o 의장단 회의 매년 2회 개최(1회 국내 개최, 1회 사무국 개최)

o 주요 내용

- Rio+20 총회에 UNCCD 의견 전달내용 검토
- UNCCD 사무국, GM 및 부속기구 등 작업 계획 조정
- CRIC, CST 활동 상황 점검

- 10개년 전략계획 중기평가 후속 조치
- 창원이니셔티브 진행상황 점검
- 예산, GM의 거버넌스와 조직정비 후속조치

### 2)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 참가

o 일시 및 장소 : 2012. 6. 20~22.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o 주요 활동
- 194개 당사국을 대표하여 UNCCD 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DLDD 문제의 심각성 역설
- UNCCD 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UN 협약 간 협력방안

o 국제사회에서 DLDD 문제의 심각성 제고 및 UNCCD 인지도 상승의 기회로 활용

### 3) UNCCD 부속기구회의 참석 및 대응

o 제3차 과학기술위원회 특별회의(CST-S3) 참석 및 대응

o 제2차 과학대회 참석 및 대응

o 제11차 협약이행검토위원회(CRIC 11) 참석 및 대응

### 4) 제10차 총회 결정문 이행 및 당사국 이행 지원

o 국제농업발전기금(IFAD)에 협약 재정 기구(GM) 정비 관련 사항 통보

o 제5차 국가보고서 작성 제출

o 당사국 결정문 이행 지원 등

## 라. 추진일정

o 제1차 의장단 회의 개최 : 2012. 2월

o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 참가 : 2012. 6월

o 제5차 국가보고서 작성 제출 : 2012. 6월

o 제2차 의장단 회의 참석 : 2012년도(독일 본, 세부일정 미정)

o 제2차 과학대회 및 제3차 CST 특별회의(CST-S3) 참석 : 2012년도(세부일정 미정)

o 제11차 협약이행검토위원회(CRIC 11) 참석 : 2012년도(세부일정 미정)

# 28. 창원이니셔티브 후속사업 추진

목 표

◇ UNCCD COP10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된 창원이니셔티브의 후속사업 추진을 통해 전 세계 사막화와 토지황폐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및 리더십 강화

## 가. 정책여건

o UNCCD는 재원 부족, DLDD 관련 과학 기반 조성 미흡 등의 이유로 협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협약 차원에서 창원이니셔티브가 UNCCD 10개년 전략계획 이행과 장기 목표 설정에 대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함

o UNCCD COP10에서 많은 당사국이 창원이니셔티브 채택에 대한 지지와 환영을 보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성실한 이행에 큰 기대를 표명함

## 나. 기본방향

o 장기적으로 창원이니셔티브가 UNCCD 협약이행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창원이니셔티브 관련 후속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o 가용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효과적인 후속사업 추진에 따른 창원이니셔티브 홍보 효과 극대화로 창원이니셔티브를 국가브랜드로 자리매김

o 창원이니셔티브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국가,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다. 세부추진계획

### 1) 건조지 녹화 파트너십 운영

o 체계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 산림청, UNCCD, UNEP로 운영위원회 구성(UNCCD 제10차 총회 기간 중 3자 MOU 체결)
-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신규 사업 논의, 예비분석 실행, 사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o 건조지의 토지황폐화 식생 복원 사업 추진
- 황폐산림 복원을 통한 산림생태계서비스 증진 기반 마련
- 한국의 산림녹화 기술 및 친환경 녹색성장 경험 전수 등 능력배양
- 우선적으로 가나, 모로코, 튀니지 등 아프리카에서 시범사업 운영 및 다른 지역으로 확대

## 2) 동북아 DLDD 네트워크 및 황사방지 프로그램 운영

o 동북아 DLDD 네트워크 운영
- 한-중-몽 3자 간 DLDD 방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구성
- SRAP 이행 평가, 시범사업 개발 및 이행
- AFP 등 지역협의체 및 ADB 등 재정기구와 공동협력 추진
-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및 지원
- 매년 1회 이상 동북아 DLDD 네트워크 회의 개최
- 동북아 DLDD 네트워크 포럼 개최

※ AFP(아시아 산림 협력, Asia Forest Partnership), ADB(아시아 개발 은행, Asia Development Bank)

o 동북아 DLDD 방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피해 당사국과 협의하여 DLDD 방지 프로그램 지원 계획 수립
- 중국-몽골 국경지역 황사 발생 방지 프로젝트 지원
- 동북아 지역 가뭄 위험 저감 프로젝트 지원

## 3) UNCCD 협약이행 강화를 위한 과학기반 구축

o 목표 :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DLDD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목표 설정 및 실천 지원

o 영향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 과학 전문가 그룹 운영 지원

o 토지황폐화 경제성 평가(E-LD; Economics of Land Degradatino) 연구사업 지원

o UNCCD 목표설정 관련 TF / 파트너십 운영

o UNCCD 과학자문기구 설립 관련 특별 작업그룹 운영

## 4) Land for Life Award 운영 지원

o Land for Life Award 상금 및 운영비 지원

o Land for Life Award 운영위원회의 참가 : 운영절차 및 심사 규정 마련

o SLM 우수 사례 심사

## 라. 추진일정

o 창원이니셔티브 후속사업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2012. 2월

o Land for Life Award 운영위원회 구성 : 2012. 상반기

o 건조지 녹색성장 파트너십 운영위원회 구성 : 2012. 상반기

o 동북아 DLDD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구성 : 2012. 상반기

o 과학 기반 구축 관련 세부사업 추진 계획 수립 : 2012. 상반기

o 제1회 Land for Life Award 시상 : 2012. 하반기(CRIC11 기간 중)

# 29. 임산물 통상협상 대응 철저

목 표

◇ 중국, 일본, 한중일 등과의 FTA 협상에 대비하여 품목별 민감성 반영, 해외조림 등 투자 활성화 및 안정성 확보, 임업협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통상협상 추진

## 가. 정책여건

o 2012. 1월 현재, EU, 미국(예정) 등 46개국과 FTA가 발효되어 관세철폐 및 시장개방 가속화

※ 발효(46개국) : 칠레, 싱가포르, EFTA(4), 아세안(10), EU(27), 인도, 페루, 미국(예정)
타결(4)(예정) :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개시(11)(예정) : 중국, 일본, 한중일, 인도네시아, 베트남, GCC 등

o 중국, 일본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협상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임산업 피해가 예상

## 나. 기본방향

o FTA 추진 확대에 따른 대상국별 교역규모, 피해액 등을 사전 분석하여 협상안 준비

- 임산물 협상 T/F Team 구성을 통해 전략적 통상협상 추진
- 통상협상 기초자료 구축, 피해액 등 대응전략 마련, 임업분야 의견 수렴

o 진행중인 협상에 대하여는 다양한 관세방어 전략 대응과 수출확대 추진

- 주요 임산물의 양허제외, TRQ, 장기철폐 등 다양한 관세방어 전략 마련
- 수출확대를 위한 상대국 관세철폐 요구 및 비관세 장벽 제거
- 원목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산림투자 확대, 임업협력 방안 모색

o 타결·발효된 FTA 개선 필요사항 모니터링과 이행 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피해대책 마련 등을 해당 품목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공동 대응

## 다. 세부추진계획

### 1) 국내 파급효과가 큰 중국, 일본, 한중일 등과의 FTA에 적극 대응

o 대부분의 교역량이 집중된 중국, 일본과의 FTA에 준비 단계부터 파급효과 산정 등 대응 철저

- 국내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중국, 일본과의 FTA를 대비하여 통상협상 기초자료(DB) 구축 및 업데이트
- 중국, 일본 등이 기타결한 FTA 협정문 및 양허안을 분석하여 전략적 협상안 마련

o 특히, 한-중 FTA에 대응한 임업분야 협상전략 마련 및 의견수렴

- 임업대학, 연구기관, 관련단체 등 전문가와 생산자, 임업인 등이 포함된 임산물 통상협상 TF Team(15명 내외) 운영
- 통상협상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협상동향 전파 및 협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

o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FTA 확대에 대비하여 개도국의 관심분야인 농림수산물에 대한 양허안 사전 분석과 원목 수급 확보 등 자원협력 방안 강구

### 2) 진행중인 FTA 협상에 다양한 관세방어 전략 대응

o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등 '12년도 타결 예정 FTA 협상에서 국내 주요 임산물 민감성 반영을 위해 다양한 관세감축 공식 도입

- 밤, 잣, 대추 등 주요 임산물의 양허제외, 장기철폐 등 민감성 반영에 협상력 집중
- 합판, 섬유판 등 가공 목재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관세감축 방안 제시

o 수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

- 수출 유망품목의 협상 대상국 관세 조기철폐 요구와 수출규제, 원목 수출세 부과 등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o 수입방어와 수출확대를 위한 원산지 규정 반영

- 제3국산 상품의 우회수입 차단을 위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 적용
- 원자재를 수입한 후 가공수출 품목(섬유판, PB 등)에 대하여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제시

o 해외조림 등 임산업 해외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의 안정성 확보방안 모색

o 원목, 목재칩 등 원자재 수급의 원활화, 기후변화협상에 대응한 A/R CDM, REDD 등 임업협력 문안 반영

### 3) 기타결된 FTA 모니터링 및 추가 협상 대응

o 기타결 FTA 이행과 관련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모니터링
- 한-칠레, 한-ASEAN(상품) 등 기 발효한 FTA 추가 협상 대응
- 업계 관심사항 발굴, 원산지증명 간소화 등 개선 필요사항 모니터링

### 4) WTO/DDA, GSTP, APTA 등 다자간 통상협상 대응

o WTO 신규 가입, GSTP, APTA 협상 등 다자 임산물 협상 대응
- WTO 가입신청 국가 및 GSTP, APTA 협상관련 품목별 양허안 검토

o DDA 협상 동향 파악과 임산물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별 입장파악과 영향분석 등 대비
- 농업협상과 비농산물(NAMA) 협상별 민감품목 선정, 영향분석 등 대응
  ※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 44개 회원국
  ※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 회원국

## 라. 추진일정

o 임산물 통상협상 종합대책 마련 : 2012. 1~2월

o 임산물 통상협상대응 연구용역 수행 및 본 협상 대응 : 연중

o 중국, 일본, 한중일 등 인접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대비한 품목별 DB 업데이트 및 협상전략 마련 : 2012. 1~12월

o 통상협상간담회를 통한 임업계 의견수렴
- FTA 협상 간담회, TF팀, 대책회의 : 사안발생시 수시
- DDA 협상 간담회 : 반기별(쟁점발생시 수시)

o 임산물 통상협상 참가(연중)

# 30. 임산물 수출확대

목 표

◇ 수출 주도세력 육성 및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등 지원정책 내실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o 임산물 장기 수출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추진

## 가. 정책여건

o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확대로 관세철폐와 국내 시장개방 가속화

o 남유럽 등 국지적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급락 등 금융의 불확실성 증가

o 원유, 목재 등 원자재 가격상승과 자원확보 경쟁 격화

## 나. 기본방향

o 수출협의회, 수출선도 조직을 중심으로 수출 주도 세력 육성

o 지방자치단체 및 수출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o 수출국 다변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내실화, 해외인지도 향상

o 수출장애 해소와 수출 확대에 유리한 수출여건 조성

## 다. 세부추진계획

### 1) 수출협의회 등 임산물 수출의 핵심세력 적극 육성

o 품목별 수출협의회(4개) 활동 지원을 통해 수출주도세력으로 육성

- 품목별 품질기준 운용, 수출질서 유지, 정보교류, 정책건의, 해외마케팅 효율화 방안 등 수출확대를 위한 발전방안 협의 및 공동사업 지원
- 협의회의 박람회 참가 및 공동판촉·마케팅 등(300백만원)
- 시장질서 교란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저가수출 신고제 운영

o 한국임산수출사업단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으로 밤 마케팅보드로 육성

- 시장조사단 파견 참여, 유럽지역 공동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적정 가격 수출로 수출경쟁력 확보

※ 한국임산수출사업단 : 밤 수출업체 10개사 출자, 2010.11월 결성

o 수출선도조직의 운영활성화 및 농가와의 결속력 확대
- '11년 수출실적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사업 개선
- 참여농가 확대, 농가·수출업체간 결속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마련
- 마케팅, 사업관리비, 선도조직 장비지원 등(2조직, 369백만원)

o 수출전문 인력 육성으로 수출역량 배양
- 수출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생산자, 수출업체 대상 교육(20백만원)
- 지역별 수출컨설팅을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사항 해소(50백만원)

## 2) 지방자치단체 및 수출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o 지방자치단체 수출·유통 담당자와의 토론회 등을 통해 협조채널 구축
- 지역별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임산물 수출 예산 지원
- 지자체와 연계하여 수출단지 조성 등 여건 조성

o 농수산물유통공사, 산림조합, 생산자간 상시적인 공조시스템 운영
- 산림조합의 수출참여, 농수산물유통공사 콜센타 운영 등

o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 농식품부 한식세계화사업과 연계하여 산채비빔밥 개발 및 홍보
- 수입국 검역 조건 완화를 위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정책 협조
  · 호주, 뉴질랜드 등 밤 검역 협상 지원, 분재 수출 조건 완화 등
  · 검역협상 완료시 시장조사단 파견 및 마켓테스트를 우선적으로 추진
- 수출국에서의 통관 애로사항 등 해결을 위해 외교통상부와 협조

## 3) 수출국 다변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내실화

o 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시장조사단, 해외판촉전 지원(344백만원)
- 신시장 개척과 관련된 주요 국제박람회의 임산물 홍보관 운영(2회)으로 임산물 인지도 확대
- 시장조사단 파견으로 수출품목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지원
-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판촉전 지원

o 신시장 개척 또는 신규 품목의 수출유망품목 지원(6품목, 140백만원)

o 해외시장 마켓테스트 및 정보조사 지원(375백만원)
- 임산물 수출과 관련된 주요 국가의 시장정보를 분석, 제공(매월)
- 마켓테스트 등을 통해 신규 품목의 시장 진출 지원

o 공동브랜드 홍보 등 한국산 임산물의 고급화 추진(130백만원)
- 해외판촉전 연계 홍보, 언론매체 광고 등 전략적인 홍보 추진
- 박람회, 판촉전에 활용할 임산물 홍보 영상물 제작

### 4) 수출장애 해소와 수출확대에 유리한 여건 조성

o 물류비 경감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판매촉진비 지원(1,937백만원)
- 수출다변화, 신시장 개척, 수출시책 인센티브 부여

o 유망 육성 품목 및 가공기계를 중심으로 기계장비 지원(120백만원)
- 감, 표고 등 수출을 위한 예냉시설, 가공장비(탈삽 등) 우선 지원

o 수입국의 식품 안전성 강화에 대응하여 현지검역비, 밤 수출이력제 관리비용 지원(500백만원)
- 밤 잔류농약 검사 및 생산이력제 등 밤 수출 안전성 확보 지속 노력

o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어용 카달로그, 포장재 개발 지원(56백만원)

o 목재류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 목제품 수출용 원자재 구입비 융자(이차보전, 20억원)
- 합판보드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 지원을 위한 할당관세 운영

o 수출업체, 생산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
- 수출현장간담회, 부진 품목에 대한 수출확대회의 등 개최
- 수출애로사항 의견수렴과 개선 추진

## 라. 추진일정

o 임산물 수출촉진 사업
- 세부 추진계획(지침) 시달 : 2012. 1월
- 세부사업별 신청서 접수 및 사업자 선정 : 수시
- 판매촉진비 : 매월
- 수출선도조직 평가 : 2012. 2~3월
- 시장조사단 파견 : 상반기
- 수출·수입업체 간담회(한국, 일본) : 2012. 7~8월
- 기계장비 지원 : 하반기
- 임산물 해외 수출홍보 : 하반기

o 임산물 수출촉진 대책회의 : 2012. 2월

o 수출확대간담회 : 수시

# 31. 해외 산림자원개발사업 지원 강화

목 표

◇ 해외산림투자 지원체계 정비로 사업 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 o 정책지원 국고 융자·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 심의회 운영
- o 해외산림투자 지원 확대로 '12년 해외조림 25천ha 추진

◇ 해외산림투자 다양화 및 지역 다변화를 위한 기반조성
- o 한-인도네시아 산림바이오매스 조림시범사업 추진
- o 녹색사업단의 직접조림을 통한 신규사업 수익모델 개발

##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연료로서 해외 산림자원의 가치 부각

o 참여기업의 다양화, 투자유형의 다변화로 사업추진체계의 정비 필요성 증가

o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요구와 효율성 요구 증대

o 해외 산림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녹색사업단의 고유사업 개발 필요

## 나. 기본방향

o 산림바이오매스 조림 등 사업 다양화를 통한 해외 산림자원개발 확대

o 해외 산림투자 지원체계 정비로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

o 녹색사업단을 활용한 신규 투자지역 개척과 수익모델 개발·보급 확대

## 다. 세부추진계획

### 1) 해외산림투자 국고 보조·융자사업 심의회 운영으로 지원체계 확립

o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정책지원 사업의 안정화 및 투명화 도모
- 참여기업의 다양화, 투자유형의 다변화로 사업추진체계 정비 필요성 증가

o 정책자금 지원 공고를 통한 사업자 모집·일괄 심의 후 지원
- 가칭 '해외산림투자 정책자금 지원 심의회' 운영(전문가 포함 심의위원 구성)

| 사업자 모집 공고<br>(분기별 : 산림청) | ⇨ | 심의회 개최/지원결정<br>(검토 : 녹색사업단) | ⇨ | 정책자금 지원<br>(사후관리 : 산림청, 산조중앙회) |
|---|---|---|---|---|

* 해외조림 투자환경조사(국고보조), 해외산림투자지원(국고융자)

## 2) 산림바이오매스 조림 등 사업 다양화를 통한 해외조림 25천ha 실시

o 한-인도네시아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시범조림사업(20천ha) 추진
- 양묘→조림·육림→벌채→가공 등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일관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수익모델 개발 지원
- 녹색사업단을 주관으로 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추진
- 한-인니 공동 추진으로 투자리스크를 최소화('12년 예산 : 500백만원)

o 국가간 산림협력으로 확보한 조림대상지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강화
- 인니정부에 조림허가 신청(16만ha)된 바이오조림 허가취득 협력 확대
- 캄보디아 산업조림 대상지(15만ha)에 대한 투자기업 선정 및 허가취득 지원

o 투자 기업간, 목재자원 수요자를 연계한 산림자원개발의 다양화 추진
- 조림기업과 목재가공기업, RPS 적용 발전사 등과 연계한 해외조림 실시

o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A/R CDM 및 REDD+ 시범사업 추진
- 인니 롬복 A/R CDM 조림 완료(300ha), REDD+ 사업계획(10천ha) 작성

## 3) 녹색사업단을 통한 신규 진출지역 개척과 투자 수익모델 개발·보급

o 산림자원 선점을 위한 조사사업 실시로 해외산림개발 전문기관 역량 확보
- 미 진출지역 산림투자 환경조사 실시를 통한 투자정보 축적 및 제공
- 국가간 산림환경 증진사업을 통한 해외 산림투자 네트워크 구축

o 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조림 추진과 투자 수익모델 개발
- 파라과이 산업조림 대상지 확보 및 조림실시(2,000ha)

o 투자기업간 협력을 통한 투자 리스크 최소화 및 신규사업 모델 개발
- 인니 조림 및 우드펠릿 가공사업 실시로 수익모델 창출(200ha)

### 4) 정책지원 투명성 확보와 전문가 양성을 통한 사업 활성화

o 다양화, 규모화된 해외산림투자 융자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 업체 및 지원액 결정을 위한 심의회 운영으로 정책사업의 투명성 확보
- 사업비 집행상황 점검 강화 및 사업실적과 연계한 지원 확대

o 투자기업 지원과 산림분야 학생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인턴 운영
- 산림전공 학생의 글로벌 직장체험 및 열대림개발 예비 전문가 양성
- 투자기업, 국제기구 및 산림협력사업 지원 해외인턴 파견(20명)

o ODA 사업과 연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산림개발 대상지 확보
- 사업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으로 진출국의 산림개발 조력자 확보
- 협력사업의 발굴과 지원을 통한 국가간 산림개발 대상지 확보

## 라. 추진일정

o 해외산림투자 조사 및 융자사업 지원계획 공고 : 2012. 1월

o 2011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 보고 : 2012. 1월

o 해외산림투자지원 해외인턴 발대식 : 2012. 1월

o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기업 간담회 : 2012. 2월

o 한-인니 산림바이오매스 조림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12. 6월

o 해외산림투자 정책자금 집행실적 및 현장 점검 : 2012. 6월, 10월

o 제6회 한-인도네시아 산림포럼 개최(서울) : 2012. 6월

o 해외인턴 운영 효과분석 및 향후 계획 수립 : 2012. 12월

# 32. 국제산림협력 확대

목 표

◇ 해외 산림자원 확보와 연계한 협력사업 다변화 및 다양화
◇ 산림녹화 기술 및 성공모델 공유로 국제협력사업 참여 확대

## 가. 정책여건

o 우리나라의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11.10) 및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11.11)의 개최 국가로서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가

o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외교통상부, 2011~2015)에 따른 분야별 국제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

## 나. 기본방향

o 국제산림협력사업 실시와 연계하여 해외 산림자원 선점 기반조성

o 한국국제협력단 무상원조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참여

o UNCCD COP10 "창원 이니셔티브" 이행과 연계한 사업 추진

o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기후변화 및 사막화 방지 산림녹화사업 추진

o 녹색사업단의 국제협력사업 참여 유도 및 지원

o 추진 중인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성과 시너지 창출

## 다. 세부추진계획

### 1) 기후변화 대응 산림협력사업 추진으로 탄소배출권 확보

o 한-인도네시아 A/R CDM 공동 협력사업

o 인도네시아 사업승인 취득 및 UNFCCC 등록
 * 우리나라 공공기관 최초의 해외 A/R CDM 사업 등록 추진
 - 300ha A/R CDM 시범조림 완료 및 모니터링 실시

o 한-인도네시아 REDD 공동 협력사업
 - 적용 방법론 및 사회·경제 협력 모델 개발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인도네시아 정부 등록 및 모니터링

### 2) 종료된 산림협력사업의 모니터링 실시로 사업성과 제고

o 인니 열대 임목종자 개발 관리사업('05-'10년, 수형목 선정, 양묘) 모니터링 실시
- 선발된 우량 수형목 및 이를 활용한 조림목 생육상태 확인
- 인도네시아 진출 조림기업의 권장 식재 수종 리스트 확보 및 제공
- 한·인니 산림협력센터를 통한 사업 추진 및 지원 확대

o 미얀마 중부건조지역 녹화사업 후속사업 참여 추진
- 미얀마 중부건조지역 산림녹화사업('98-'10년)의 후속사업 지원
- 사업실시 PM 등 전문가 DB 구축으로 사업 연계성 확보
  * 한국 국제협력단 후속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 완료('11년)

### 3) 신규 국제협력사업 발굴 및 참여

o 캄보디아 씨엠립 산림 황폐지 복구사업 추진
- 한-캄보디아 산림협력회의 시('10년) 요청사업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 산림연구센터 건립(2,000㎡), 황폐지 복구(49ha), 세계문화유산 주변 산림관리(100ha)
- 녹색사업단의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사업 능력 배양 및 산림투자 기반조성

o 산림녹화 기술지원 등 협력사업 다변화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 산림자원 선점과 연계한 아프리카, 중남미 등 거점지역 선정
- 전문가 DB 구축을 통한 산림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분야 발굴
- 무상원조 중점협력국가 및 산림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대상으로 지역별 협력사업 개발·추진으로 산림투자 진출 진출기반 마련

o 산림투자기업 참여 패키지형 유무상 연계사업 발굴로 개발자원 선점 유도
- 현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확보를 통한 투자 협력 방안 모색
- 투자기업의 지역사회 및 주민 참여 사업 확대 유도로 사업 활성화 도모

## 라. 추진일정

o 한-인니 기후변화 협력사업 추진
- CDM 조림사업 UNFCCC 등록 : 2012. 3월
- 기후변화 국제 워크숍 개최 : 2012. 하반기

o 캄보디아 씨엠립 산림 황폐지 조림사업 추진
- 1차년도 사업 추진 : 연중
- 1차년도 사업 평가 : 2012. 12월

# 산림이용국 소관

# 1. 미래지향적 산지관리제도 마련

목 표

◇ 합리적 산지보전·이용을 위한 계획적 산지관리체계 기반 구축
◇ 새로운 산지관리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 가. 정책여건

o 그 동안 수동적으로 관리되던 산지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지개발·관리를 위한 산지관리기본계획 제도 도입

o 기후변화 대응 등 산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지관리체계 구축 필요

## 나. 기본방향

o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에 대한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보다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

o 생명·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따른 산림복지(산림휴양·치유 등) 수요의 증가로 종합적 공간적 산지관리체계 기반 구축이 필요

o 산림육성과 산지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11년 연구된 "산지전용권 거래제도"의 개념·도입 방안을 바탕으로 거래방법·절차 등 세부추진방안 마련

## 다. 세부추진계획

### 1) 계획적 산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

o 계획기간 : 2013년~2017년(5년)

o 계획의 위상
- 산지지역계획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환경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수립

o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사항

- ’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인 산지이용실태조사(’09~’12년, 640만ha)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
-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계획수립시 반영

※ (’10년)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모델 연구

※ (’11년)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지표 설정 연구

o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 산지관리 관련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계획 수립에 반영

o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 및 지방산림청 관할구역의 산지 지역조사 실시(810백만원)

- (’12년 말까지) 산지지역조사 완료 → (’13년 말까지) 지역계획 수립 완료

## 2) 산림복지와 연계한 산지공간계획 구축

o 산지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 용도지구 지정 후 사업계획 수립, 타 법률 인·허가 의제 등 산림복지 ‘계획입지’체계 구축

o 산림복지와 연계한 산지공간계획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운영

- 산림·도시계획·경제·보건·법제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2개월마다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반영

## 3)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도입 기반 마련

o 산지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산지전용권 거래제도”의 산지관리 시스템 기반 마련

- 연구용역 결과(’11년)를 바탕으로 거래방법·절차 등 시범사업 실시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를 통한 산지관리제도 개선 방안 모색

o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운영

- 산림·환경·경제·금융·법제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2개월 마다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반영

### 4) 산지이용실태조사 용역사업 추진

o 현재의 산지구분 정보와 더불어 기존의 산지전용지 등 산지이용실태와 생태·환경적 요소 및 입지 특성을 DB화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도면에 표시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

- ('09) 73만ha(22개 시·군·구) → ('10) 203만ha(106개 시·군·구) → ('11) 200만ha(126개 시·군·구) → ('12) 167만ha

o 2013년 이후 산지이용실태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 운영 관리

### 5) 산지관리정보체계 안정화 추진

o 보전산지 지정·변경·해제 등의 행정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산지정보시스템 Help Desk Center 운영

o 산지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o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법정림의 신규지정, 해제, 변경내역 등을 산지이용정보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제공

## 라. 추진일정

o 산지관리기본계획 초안 및 의견수렴 : 2012. 상반기

o 산지관리기본계획 본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2012. 하반기

o 산지관리기본계획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및 확정·고시 : 2012. 하반기

o 전국 산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완료 : 2012. 하반기

o 산림복지와 연계한 산지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012. 상반기

o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연구용역 추진 : 2012. 상반기

o 산지정보시스템 운영교육 실시 : 2012. 3월, 8월, 11월

o 산지정보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 관리 : 연중

< 참 고 >

# 산 지 구 분 현 황

## □ 연도별 산지구분 현황

(단위 : 천ha, %)

| 연도별 | 계 | 보전산지 | | | 준보전산지 | 비고 |
|---|---|---|---|---|---|---|
| | | 소계 | 임업용 | 공익용 | | |
| 1981년 | 6,514<br>(100) | 4,931<br>(76) | - | - | 1,583<br>(24) | 최초 지정 |
| 1991년 | 6,493<br>(100) | 4,901<br>(75) | - | - | 1,592<br>(25) | 일제 정비 |
| 1997년 | 6,452<br>(100) | 4,977<br>(77) | 3,548<br>(55) | 1,429<br>(22) | 1,475<br>(23) | 체계 개편 |
| 2008년 | 6,441<br>(100) | 4,961<br>(77) | 3,258<br>(51) | 1,703<br>(26) | 1,480<br>(23) | 일제 정비 |
| 2009년 | 6,431<br>(100) | 4,957<br>(77) | 3,257<br>(51) | 1,700<br>(26) | 1,474<br>(23) | |
| 2010년 | 6,433<br>(100) | 4,947<br>(77) | 3,276<br>(51) | 1,671<br>(26) | 1,486<br>(23) | |

## □ 시 · 도별 산지구분 현황(2010. 12월말)

(단위 : 천ha, %)

| 구분 | 계 | 보전산지 | | | 준보전산지 | 비고 |
|---|---|---|---|---|---|---|
| | | 소계 | 임업용 | 공익용 | | |
| **합계** | **6,433** | **4,947** | **3,276** | **1,671** | **1,486** | |
| 서울 | 15 | 12 | - | 12 | 3 | |
| 부산 | 36 | 21 | 1 | 20 | 15 | |
| 대구 | 48 | 42 | 3 | 39 | 6 | |
| 인천 | 41 | 18 | 10 | 8 | 23 | |
| 광주 | 19 | 16 | - | 16 | 3 | |
| 대전 | 28 | 24 | 3 | 21 | 4 | |
| 울산 | 68 | 56 | 23 | 33 | 12 | |
| 경기 | 551 | 390 | 239 | 151 | 161 | |
| 강원 | 1361 | 1186 | 738 | 448 | 175 | |
| 충북 | 501 | 392 | 262 | 130 | 109 | |
| 충남 | 444 | 263 | 207 | 56 | 181 | |
| 전북 | 454 | 337 | 207 | 130 | 117 | |
| 전남 | 704 | 512 | 369 | 143 | 192 | |
| 경북 | 1370 | 1,103 | 832 | 271 | 267 | |
| 경남 | 704 | 544 | 370 | 174 | 160 | |
| 제주 | 88 | 30 | 11 | 19 | 58 | |

※ 연속지적도상 구적 면적임

# 2.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목 표

◇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에 관한 계획적, 생태적 보전 관리
◇ 생태적 산지개발 모델화 및 전국 확산 기반 구축

## 가. 정책여건

o 민북지역은 지난 50년간 민간인의 접근이 금지 또는 제한됨에 따라 독특한 산지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산림생태계의 보고
-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필요

o 문화관광부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DMZ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어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의 자연친화적·생태적인 개발 유도 필요
- 평화·생명지대(PLZ)광역 관광개발(문화관광부), DMZ 세계적 생태·평화벨트 조성(행정안전부), DMZ 생태녹색관광 조성(파주시 등)

o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관한 산지관리 특별법」 제정(법률 제10535호, 2011.4.4)에 따른 하위 법령 제정 추진 필요

## 나. 기본방향

o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 및 세부사항 마련
- 생태적 산지전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원형 존치율 70%이상, 복원제도 도입, 경관·재해심의제도 도입 등

o 민북지역 특별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추진
- 민북지역이 분포하는 3개도(인천·경기·강원) 15개 시·군 순회교육실시
- 지방산림청(북부·동부) 교육 및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o 민북지역 특별법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추진
- 법령의 현실 적용성에 대한 의견수렴과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제도개선 추진

## 다. 세부추진계획

### 1) 민북지역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운영('12.4.5 시행)

o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기준, 허가기준 마련

o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법제처 심사 등 : '12. 1월중

o 민북지역 특별법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 '12. 4월중

o 민북지역 특별법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12. 9월, 12월(2회)

### 2) 민통선이북지역 산지관리 실태조사 추진

o 조사근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제4조 및 제8조

o 조사대상 : 민북지역 산지 266천ha(지목이 임야 168천ha)에 대한 조사

- 지목이 "임야"인 토지 및 지목여부와 관계없이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을 포함하여 조사

o 조사방법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사업 추진('12년 예산 : 2억원)

### 3)「민북지역산지관리 종합계획」수립

o 추진근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제7조

o 계획기간 : 제1차 종합계획 2012. 12. 31까지 수립(계획기간 2013~2017)

※ 산지관리법에 의한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과 연계 수립 추진

o 추진방침

- 민북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산지관리의 정책목표・이용방향을 정하여 향후 생태적 산지전용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수립

### 4) '민북지역산지관리단' 구성 추진

o「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제26조에 따라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이용, 산지생태에 관한 조사・점검・교육 전담

o '민북지역 산지관리단'의 구성 방안

- 관계전문가, 지자체 등 의견수렴 : '12. 8월~10월

※ '한국산지보전협회'와 연계방안 마련 및 역할정립

## 라. 추진일정

o 민통선이북지역 산지관리 실태조사 실시 : 2012. 상반기

o 민북지역산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초안 마련 : 2012. 12월말

o 민북지역산지관리단 구성 추진 : 2012. 하반기

# 3. 산지관리제도 개선 및 조기정착

목 표

◇ 평균경사도 등 입지제한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강화
◇ 비탈면 안전기준 강화 등 복구설계 시 승인 기준 보완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이행사항 점검 및 문제점 보완

## 가. 정책여건

o '11년 7월 집중호우로 서울, 경기, 춘천 등 도시생활권을 중심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초래

o 관계부처 합동 국무회의('11.8.2.)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결정

o 30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산지전용지에 대하여 최초로 시행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정착 마련

o 시대여건에 맞는 작은 정부 지향 및 지방분권화의 가속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이양 및 권한위임 추진

## 나. 기본방향

o 평균경사도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 강화
- 산지전용 신청 시 입지제한과 관련하여 평균경사도 기준을 강화

o 비탈면 복구설계 시 승인기준 보완
- 산지전용 후 복구설계와 관련하여 비탈면 등의 안전기준 강화

o 최초로 시행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및 문제점 보완

o 산지관리권한의 지방이양 및 권한위임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산지관리제도 실시

## 다. 세부추진계획

### 1) 재해위험지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강화

o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18~25도) 및 현장 사례분석, 전문가 검토 후 평균 경사도 기준 강화 추진

o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면적 중 급경사 지역(例 : 25도 이상)을 전체 면적 중 적정 비율(例 : 40%) 이내로 제한
- 산지전용 대상 사업, 지역·지형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규정

o 산지전용허가지의 배후지 급경사로 인한 문제발생 사례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우 산지전용 허가지 배후의 일정거리까지를 평균 경사도 25도 이내로 제한

### 2) 재해예방을 위한 복구설계 승인기준 보완

o 현재 개별사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탈면 높이·소단·기울기, 산마루 측구 등 재해방지시설 관련 규정을 차별화·구체화관련 타법령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현재 일률적으로 15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비탈면 수직높이 규정, 매 5미터당 1미터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소단 규정 개선
-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발생한 지역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지만, '재해방지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문제점 개선 추진

o 옹벽설치 관련 문제발생사례 현장 점검 및 개선안 마련
- 무면허업자의 대형 옹벽설치로 인한 거주지역 안전사고 위험 제거
- 옹벽 설치 시에는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

### 3) 송전탑 설치시 산림경관 보호 기준 강화

o 산림경관 보호가 필요한 산지에서 송전탑 설치시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등 산림경관 기준 강화 추진

- 송전탑시공 전에 경관영향 시뮬레이션분석 등 전체적인 경관을 평가하는「산림경관영향평가제도」시행

※ 경관 심의대상 지역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o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청,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기관에 제도도입 취지 및 경관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 발송 및 설명회 개최

### 4)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이행사항 점검 및 문제점 보완

o 그간 추진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이행사항 점검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자문그룹 토의과정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o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실시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로 민원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신청인 대상 설문조사 실시로 민원불편사항 청취

### 5) 지방이양 및 권한위임사무에 따른 업무추진 강화

o 지방이양사무 등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도출될 경우 사후 보완 철저

-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 등

## 라. 추진일정

o 평균경사도 관련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사례 분석 : 2012. 상반기

o 산지전용 허가지의 배후지 급경사로 인한 문제발생 사례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2012. 상반기

o 재해방지시설의 구체화 관련 타법령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2012. 상반기

o 옹벽설치 관련 문제발생사례 현장 점검 및 개선안 마련 : 2012. 상반기

o 평균경사도 및 비탈면 복구설계 개선방안 관련 지자체·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 2012. 6월

o 송전탑 설치시 산림경관 보호 기준 강화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설명회 개최 : 2012. 상반기

o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이행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 2012. 상반기

o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전문가 자문그룹 검토회의 및 개선방안 마련 : 2012. 하반기

o 지방이양 및 권한위임 사무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2012. 하반기

o「산지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규정 개정 : 2012. 하반기

# 4.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및 산지복구 강화

목 표

◇ 광업용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제도개선을 통한 자연친화적 토석채취제도 구축
◇ 채석단지 지정·운영 활성화 및 산지훼손지 사후관리 강화

## 가. 정책여건

o 광업용 목적의 광산개발지에 대한 복구미흡으로 경관 훼손 및 산사태 우려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o 자연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석채취허가 기준 등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실정

o 산지전용 후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하여 토사유출 및 인근 지역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후 관리가 필요

## 나. 추진방향

o 광산개발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복구명령 및 복구비 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 일부지역의 폐광산에 대한 복구비 관리 부실로 복구가 미 이행되고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 민원 발생

o 자연친화적 채석제도 정착 및 토석채취허가기준 등 제도개선 발굴
  - 장기간 토석채취로 인하여 토사유출 및 경관훼손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o 산지훼손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지도점검을 통해 적기 복구 추진

o 지속적인 복구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산지관리 도모

## 다. 세부추진계획

### 1) 광산개발지 실태점검 및 미 복구지 대책 마련

o 허가권자별로 광산개발지 유형을 분류하여 상반기중 실태조사 및 결과 보고(2012. 6)
- 가행광산 : 허가기준 준수 및 중간복구 명령
- 휴지광산 : 사업의 지속성 여부 확인 및 복구비 관리 검토
- 폐 광 산 : 복구이행 여부 및 복구미흡 사례 실태 파악

o 산림청, 지방청, 광역자치단체 합동으로 실태조사 적정성 여부 확인(2012. 7~8월)

o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워크샵을 개최하여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2012. 9)

※ 실태조사 결과 추가 복구 대상지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협의(2012.10)

### 2) 채석단지 및 토석채취지 실태점검

o 채석단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 개　　소 : 2011년말 채석단지 지정된 15개소
- 조사시기 : 2012. 3~6월
- 조사방법 : 시・도 지자체, 교차 합동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사업계획서 및 심의조건 이행 여부 및 운영실태 조사

o 전국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실태 점검
- 도별 자체 조사 및 합동 조사 실시(6~10월)

o 토석채취허가지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마련

### 3) 자연친화적 토석채취 허가기준 조기 정착 및 중간복구 확대

o 자연친화적 토석채취허가기준 마련 추진 및 허가기준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실시

o 토석채취가 완료된 지역은 허가기간 만료될 때까지 방치하고 있어 경관훼손 및 토사유출 등으로 피해가 있어 중간복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 토사유출 및 경관훼손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에 연차별 채취 및 중간복구계획 도입 추진

### 4)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o 산지전용·채광지·토석채취지에 대한 복구이행 실태 점검
- 허가기간이 종료된 사업지에 대한 복구이행 상황 점검
  · 도별 자체 조사 및 공동조사(도별 1개소 이상) 실시
  · 시기 : 2012년 상반기
- 복구비 예치 및 복구비 이행증권 유효기간 관리 중점 점검
  · 상반기 : 4개 도 2개 시·군 점검(경기, 강원, 충북, 충남)
  · 하반기 : 4개 도 2개 시·군 점검(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조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o 불법전용지 관리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을 통해 2차년도 위탁조사 실시
- 조사주체 : 한국산지보전협회(산지관리법 제44조의2)
- 조사시기 : 2012년 연중
- ('11) 강원 양구, 경기 화성·가평, 충북 청주·청원
  → ('12) 경기, 충남, 경북
- 해당 자치단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사법처리 및 복구명령 실시

## 라. 추진일정

o 불법전용지 실태조사 : 연중

o 광산개발지에 대한 실태조사 : 2012. 3~6월

o 채석단지에 대한 실태점검 : 2012. 3~6월

o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실태점검 : 2012. 6~10월

o 광산 미복구지 실태점검에 따른 업무협의 : 2012. 10월

o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복구이행 상황 점검 : 2012. 상반기

o 복구비 관리 실태 점검 : 연중

o 채석 및 복구관련 제도개선(산지관리법 개정) : 2012년 중

# 5. 국유림 총괄 조정기능 강화 및 경영계획 수립

목 표

◇ 국유림 정책방향 설정 및 총괄 조정기능 강화

◇ 국유림을 활용한 지자체 협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 다양한 산림기능을 고려한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마련

o 산림조사 197천ha · 경영계획작성 130천ha (사업비 1,727백만원)

## 가. 정책여건

o 국유림 정책방향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 미흡으로 현장과의 일관성 결여

o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강조

o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지속적인 국유림 경영관리 필요

o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기반이 조성

o 산림경영대행 대상범위 확대 및 비용부담 등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o 공동산림사업지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o 지자체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국유림의 역할 증대

## 나. 기본방향

o 산림청의 각종 정책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장 업무 추진시 일관성 유지

o 국유림의 생태적 · 경제적 · 사회적 수요 충족과 현장여건에 부합한 경영계획 수립

o 국유림 경영정보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국유림 경영사업의 효율적 추진

o 국방부 등 타부처와 협력을 통해 경영대행 사업지를 적극 발굴하여 산림경영대행 활성화

o 공동산림사업 실행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강구

o 경영관리자문위원회 및 각종 토론회 등에 지자체 관계관 참여유도로 지자체 의견 적극 반영

## 다. 세부추진계획

### 1) 국유림정책 방향 설정 및 총괄 조정

o 지방산림청의 국유림경영 관련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제시

o 당해년도 지방청 주요업무계획에 산림정책 추진방향과 같게 반영하도록 하여 정책의 일관성 확보

o 지방청별 특색사업 발굴 및 지원

o 국유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o 민유림 사업의 선도기능 역할 강화

### 2) 국유림정책 발전을 위한 지방청장, 관리소장 토론회 개최

o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국유림경영방향 공감대 형성

o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방안 강구

o 지방청별로 각종 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성공사례 발표 및 문제점 제시와 지방청 현안사항에 대한 효율적 해결방안 강구 등

### 3)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추진

o '12년도 차기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계획

| 구 분 | 계 | 북 부 | 동 부 | 남 부 | 중 부 | 서 부 | 제 주 |
|---|---|---|---|---|---|---|---|
| 산림조사 (계획구) | 12개소 | 3개소 (성산,매화산, 신남) | 2개소 (강릉,평창) | 3개소 (영양,김천, 양산) | 1개소 (단양) | 2개소 (진안,남해) | 1개소 (제주) |
| 경영계획 작 성 (계획구) | 7개소 | 1개소 (원통) | 2개소 (임계,도계) | 2개소 (울릉,영해) | - | 1개소 (무주) | 1개소 (제주) |

o 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조사,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연간·중간·최종평가 등 국유림경영계획 업무가 연간 사업인 점을 고려, 시기별 업무추진계획표를 작성하고 일정에 맞추어 추진

o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및 산림조사 요령을 현실여건에 맞게 정비

o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개정(2010.7.26)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

- 불요존국유림, 특별시·광역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국유림,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10ha미만 분산된 요존국유림에 대해서도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o 산림조사는 직영 산림조사, 용역 산림조사로 구분 추진하고 용역사업은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추진요령에 따라 추진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사회·경제적 여건 및 산림기능평가도 등을 고려하여 6개 기능으로 구분하고 그 기능에 맞도록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운영

o 제1차 국유림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운영

o 국립공원지역이 포함되는 경영계획구의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사전 협의

o 경영계획 수립시 지적도와 임소반도가 부합되도록 정비

o 「지속가능한 국유림경영을 위한 경영단위 구획 및 관리체계」 연구 추진(과학원)

## 가)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산림조사

o 사업량

(단위 : ha)

| 구 분 | 계 | % | 북 부 | 동 부 | 남 부 | 중 부 | 서 부 | 제주 |
|---|---|---|---|---|---|---|---|---|
| 계 | 196,255 | 100% | 42,803 | 40,929 | 43,482 | 28,532 | 25,159 | 15,350 |
| 직 영 | 102,197 | 52% | 23,597 | 23,059 | 26,400 | 15,262 | 13,879 | - |
| 위탁(용역) | 94,058 | 48% | 19,206 | 17,870 | 17,082 | 13,270 | 11,280 | 15,350 |

o 산림조사 일반

- 직영조사 및 위탁(용역)조사 방법을 활용하고 조사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조기 착수로 동절기 이전에 조사 완료

- 「국유림 산림조사 요령」에 따라 실시

- 산림조사시 산림기능평가도, 산림입지도, 적지적수도, 항공사진, 산림토양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밀한 조사가 되도록 추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사회·경제적 여건 및 산림기능평가도 등을 고려하여 각 소반별로 기능 구분(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주기능과 부기능으로 구분)

- 임황조사시 재적 산출은 경영계획상 임목생산(간벌, 주벌 등)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기존 축적에 연평균 생장률을 고려하여 산출(현지조사 생략 가능)
- 임황조사시 재적 산출은 임업통계연보상 ha당 재적을 참고하여 실시
- 지방산림청의 조사인원이 부족한 경우 국유림관리소와 공동으로 조사 실시

o 직영 산림조사

- 지방산림청에서 조사반을 편성·운영하되, 조사반은 산림조사에 경험이 있는 직원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하고, 필요시 해당 관리소의 담당자를 차출하여 운영
- 조사반별 월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따라 조사 추진
- 기 도입된 PDA&GPS 등 IT 장비를 활용하여 산림조사 실시
- 가급적 비녹음기에 산림조사를 실시하고 녹음기에는 전산입력 등 내업 실시

o 용역 산림조사

- 세부 용역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월~2월초 산림조사 계약을 체결하여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
- 정밀한 조사를 위하여 항공사진, 적지적수도, 산림기능평가도, 산림토양도, 산림입지조사자료, 재산목록, 임야도, 국유림종합계획서 등 지원
- 용역수행기간 중 매수 및 매각, 관리전환, 사용허가 등 재산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 GPS 측량도면 등 자료 제공·반영
-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입찰실시로 용역입찰의 공정성 도모
- 월단위로 조사자료에 대한 검토 실시(계획대비 실적, 소반별 조사내용, 소반별 사업계획 등), 수치지도(임·소반도) 작성시 속성정보 입력 확인 등 용역산림조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용역산림조사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자가 수시로 조사에 참여하는 등 지도·감독 철저, 최종성과물에 대한 검수·평가 강화

o 보수 산림조사

- ’12년 이전 경영계획작성 대상 경영계획구에 대한 재산변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수조사를 실시하여 반영
- 신규취득 재산 등에 대한 산림조사를 실시하여 임·소반을 편성하고 경영계획부 작성(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

  ※ 소규모 취득 국유림의 보수 산림조사 시 지방청별 여건에 따라 차기 경영계획 수립 전까지 조사항목을 축소하여 경영계획 수립 운영
- 지번 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임·소반 번호를 부여하고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 등

o 2013년도 산림조사 사업량 조사·보고

- 계획기간 만료 경영계획구, 신규매수지, 사권설정지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13년도 산림조사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 ’13년도 산림조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계획구별 조사계획량을 ’12. 3월말까지 산림청(국유림관리과)에 보고

## 나)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o 사업량

(단위 : ha)

| 구 분 | 계 | 북 부 | 동 부 | 남 부 | 중 부 | 서 부 | 제 주 |
|---|---|---|---|---|---|---|---|
| 면 적 | 132,706 | 46,532 | 27,631 | 22,740 | - | 20,453 | 15,350 |
| 계획구수 | 7 | 1 | 2 | 2 | - | 1 | 1 |

o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일반

-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다양한 산림기능이 최적 발휘되도록 계획 작성
- 「국유림경영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전차기 경영계획의 성과분석 결과가 계획에 반영·연계되도록 작성
- 일반조사, 목표임상, 산림조사, 경영계획, 사업실적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계획부”는 소반별로 작성하고, 과거 임반연혁부의 관리는 소반연혁 개념으로 관리(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활용)

- 산림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지와 부합되도록 지역산림계획 및 국유림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경영계획서 작성
- 사유림 매수 등으로 면적 변동이 있는 경우 산림조사를 추가로 실시한 후 경영계획에 반영
- 지번 단위로 작성된 경영계획부에 대해서는 임·소반으로 재편성하고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
-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시 관계기관 및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유림경영계획이 되도록 작성

o 경영계획서의 작성 및 공유

- 경영계획서는 책자 발간 및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일선담당자 및 관리자 등간 상호 정보 공유
  ※ 경영계획서 유인물은 완료보고 시 산림청(국유림관리과)에 1부 제출

o 연간 사업계획 수립

- 국유림경영계획상 10년간의 사업계획을 연간 1할 내외로 배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계획 수립
- 경영, 자원, 임도 등 부서별로 확보된 '12년도 예산을 파악하여 1년간 실행할 계획을 확정하고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

o 사업계획 우선순위 결정

- 기본적으로 경영목표와 기능을 고려 임분 여건상 시급을 요하는 개소를 최우선하고, 임도주변 및 국도 가시권 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결정
- 세부 사업별로는 보식,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 가지치기, 천연림보육, 수확벌채 등 순으로 하되,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조정

o 기능별 산림구분 보완

- 국유림의 6개 산림기능구분 결과에 대한 보완 실시
- 각 임·소반에 대한 중복기능이 필요한 경우 중복기능 부여
- 보완한 결과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부득이 임·소반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보고

### 다) 시기별 추진계획 작성

o 지방산림청(경영계획계)에서는 국유림경영계획(산림조사・경영계획 작성) 업무가 연간사업임을 감안하여 시기별 업무추진 계획표를 작성하고 일정에 맞춰 추진

## 4) 국유림경영계획 평가 실시

o '12년도 평가대상 경영계획구

(단위 : 개소)

| 구 분 | 계 | 북 부 | 동 부 | 남 부 | 중 부 | 서 부 |
|---|---|---|---|---|---|---|
| 연간평가 | 96개소 | 25개소 | 16개소 | 20개소 | 17개소 | 18개소 |
| 중간평가 | 15개소 | 4개소 (양구,인제, 안성,광주) | 1개소 (현북) | 3개소 (포항,평해, 밀양) | 3개소 (영동,천안, 아주) | 4개소 (군산,영암, 곡성,거제) |
| 최종평가 | 6개소 | 1개소 (원통) | 2개소 (임계,도계) | 2개소 (울릉,영해) | - | 1개소 (무주) |

o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평가(연간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는 경영계획구별로 실시

- 연간평가는 웹상에서 운영되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 중간평가는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실시
- 최종평가는 다음 차기 경영계획 수립 전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

o 각 지방산림청에서 실시한 경영계획구의 운영상황 및 성과분석 결과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유

### 가) 일반사항

o 계획기간 동안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경영성과・재정성과, 산림자산의 변동상황, 자연보호 및 경관보호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경영목표의 실현정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여부를 종합평가하고 차기계획에 반영

o「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제12조)」에 따라 평가 실시

o 평가 시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의 효율성 제고

### 나) 평가 종류 및 방법

o **연간평가(1년 평가)** : 전체 96개 경영계획구

- 1년간의 국유림경영계획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재정계획, 인력수급계획, 임업기계화 계획 등의 평가 및 반영
- 평가자 : 국유림관리소장(지방산림청 제출)
- 12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1월말까지 결과 반영

o **중간평가(5년 평가)** : 경영계획 운영 5년이 되는 경영계획구

- 10년간의 장기 국유림경영계획에 대하여 시대적 요구사항이나 정책변경 사항 등을 수렴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재조정
- 평가자 : 지방산림청장(산림청 제출)
- 12월 중순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12월말까지 결과 반영

※ 중간평가시 지방산림청장은 지역주민, 환경단체, 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와 합동으로 모니터링 실시(모니터링 결과는 9월말까지 산림청 보고)

o **최종평가(10년 평가)** : 경영계획이 종료되는 경영계획구

- 국유림경영계획의 마지막 평가로 경영계획이 종료되는 연도에 성과 분석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경영계획 수립에 반영
- 평가자 : 지방산림청장(산림청 제출)
- 11월 중순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12월말까지 결과 반영

### 다) 평가결과 활용

o 평가 및 분석결과는 다음연도 또는 차기계획에 반영

- 미래지향적인 경영계획 운영 및 방향 제시, 각종 사업계획 등 변경

o 각 지방산림청에서 실시한 경영계획구의 운영상황 및 성과 분석 결과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유

## 5)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o '12년도 국유림 경영계획 작성 등 경영계획운영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

- 산림사업 실적을 해당 지방청·관리소에서 실시간으로 경영계획부에 입력하고, 입력사항 분석·검색을 통하여 국유림 경영정보 공유
- 경영계획 작성현황 등 경영계획 관련 보고 자료는 시스템으로 실시

o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등 현안분석 후 개선방안 강구
-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하여 고도화 준비 추진(정보통계담당관실 협조)
- 지방청·관리소 등 현장 시스템 운영자 의견 적극 수렴

## 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

o e-푸른샘(산림청지식포탈시스템)의 "행정정보시스템-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

o 각 지방산림청 및 관리소별로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책임관리제 운영
- 시스템에 자료 입력·변경 권한은 해당 기관의 신청(시스템 활용)을 받아 산림청에서 부여
- 권한이 부여된 직원만 자료 입력·변경 가능, 그 외 직원은 자료 조회만 가능

o 국유림경영계획은 시스템의 결재기능을 사용하여 승인권자(지방산림청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이 가능함
※ 승인날짜가 시스템 상에 표시되므로 '12년 내 수립 후 승인완료

o 입력자료 일괄삭제, 임·소반 공간정보 다운·업로드 등의 운영은 산림청 시스템 관리자 권한 사항임

o 문자정보 및 공간정보의 수정사항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수정한 날짜·사람·내용 등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됨

o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계획 담당자뿐만 아니라 각 사업담당자도 시스템을 적극 사용하도록 운영

## 나) 지방청·관리소 등의 관리자가 해야 할 사항

o 계획수립 및 운영중인 경영계획구의 경영계획부 자료 입력
- 용역사업으로 입력한 DB자료(산림조사부, 경영계획서, 갱신대장, 조림 및 사후관리대장, 임·소반 수치도면 등)에 대한 수정·보완
- '10년도 산림조사결과 및 '11년도 경영계획 작성 자료 입력
- 임·소반 생성·소멸, 사업계획 등 경영계획의 변경사항 입력
- 당년도의 사업계획 및 실적 입력
※ 사업실적 입력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입력(사업량, 사업비, 노동력 등)

- 산림의 기능구분, 산림기능평가도(과학원 제공)를 참고하여 각 소반에 대한 기능 구분결과 입력
  ※ 단일 기능인 경우 주기능만 입력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주기능과 부기능으로 구분하여 입력

o 전차기 임·소반과 현차기 임·소반의 연계작업은 반드시 실시(임·소반 연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임)

o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작성 진도보고(분기보), 국유림경영계획작성현황보고(연보), 국유림경영계획 실행실적 분석(총괄) 보고(연보) 등은 시스템을 활용 온라인으로 보고

o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유림경영계획 연간, 중간, 최종평가 실시

o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의 지방청 자체 사용자 교육 실시로 시스템 활성화 도모

## 6) 산림경영대행제도 활성화

o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적극 협의

o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적극 추진
- 산림사업 기정예산 최대한 활용추진
  ※ 2011년 경영대행 사업(숲가꾸기 등) 수요조사 결과 : 2,602ha(국방부)

o 타부처 소관 국유림 사업 지원시 경영대행 계약을 통해서 추진

o 소속기관(지방청) 평가시 경영대행 실적 반영

## 7) 공동산림사업 활성화

o 공동산림사업지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
- 산림청·지방청·관리소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 강구

o 공동산림사업 협약체결 현황('11년 11월 현재) : 33건, 782ha
- 산림생태복원(2건, 52ha), 산림소득개발(10건, 460ha), 산림휴양(13건, 109ha), 도시림(3건, 35ha), 생태숲(2건, 73ha), 산림기반연구(3건, 53ha)

### 8)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운영

o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방산림청별로 반드시 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으로 지자체 관계관 참여 유도

-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지급

o 위원회 소집, 서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요 국유림사업 등의 자문

o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자료로 적극 활용

o 예산배정 현황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 합 계 | 지방산림청 | | | | | 비 고 |
|---|---|---|---|---|---|---|---|
| | | 북부 | 동부 | 남부 | 중부 | 서부 | |
| 산림경영계획작성<br>1739-302-210-01 | 40,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자문위원회 운영 |

## 라. 추진일정

o 지방청장, 관리소장 토론회 개최 : 2012. 상반기

o 국유림경영계획서 시기별 업무추진 계획표 작성(지방청) : 2012. 1월

o 산림조사 추진 및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 용역계약(2012. 1월), 연중(2012. 11월까지)

o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현안분석 후 개선방안 마련 : 2012. 12월

o 국유림경영계획 연간평가(국유림관리소), 중간・최종평가(지방청) 실행 및 반영 : 2012. 4/4 분기

o 타부처 소관 국유림 경영대행 사업 가능임지 파악 : 2012. 상반기

o 타부처 소관 국유림 경영대행 사업 추진 : 연중

o 공동산림사업지 정밀 실태조사 실시 : 상반기

o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개최 : 분기별 1회 이상

o 자문위원회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실시(국유림관리과, 지방청) : 2012. 12월

<지방청 보고사항>

o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작성 진도 보고(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 매 분기 익월 10일

o 국유림경영계획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보고(지방청) : 2012. 9월

o 국유림경영계획수립 설명회 개최 및 결과보고(지방청) : 2012. 11월

o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작성 완료보고(붙임3 서식) : 2012. 12월

o 국유림경영계획 작성현황 보고(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 2013. 1월

o 국유림경영계획 실행실적 분석(총괄) 보고(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 2013. 1월

o 국유림경영계획 연간・중기・최종평가 보고 : 2013. 1월

<붙임 1>

# '12년도 산림경영계획 사업량 및 사업비 내역

(단위 : ha, 천원)

| 구 분 | 합 계 | 소 계 | 지방산림청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북부 | 동부 | 남부 | 중부 | 서부 | 제주 |
| ≪사업량≫ | 328,961 | 298,261 | 89,335 | 68,560 | 66,222 | 28,532 | 45,612 | 30,700 |
| o 산림조사 | 196,255 | 180,905 | 42,803 | 40,929 | 43,482 | 28,532 | 25,159 | 15,350 |
| - 직 영 | 102,197 | 102,197 | 23,597 | 23,059 | 26,400 | 15,262 | 13,879 | - |
| - 위 탁 | 94,058 | 78,708 | 19,206 | 17,870 | 17,082 | 13,270 | 11,280 | 15,350 |
| o 경영계획작성 | 132,706 | 117,356 | 46,532 | 27,631 | 22,740 | - | 20,453 | 15,350 |
| ≪사업비≫ | 1,695,198 | 1,491,748 | 358,281 | 330,283 | 332,868 | 246,795 | 223,521 | 203,450 |
| o 110(인건비)-03 | 188,458 | 188,458 | 44,833 | 39,118 | 44,223 | 30,994 | 29,290 | |
| o 210(운영비) | 1,302,307 | 1,101,857 | 266,185 | 249,485 | 241,977 | 182,059 | 162,151 | 200,450 |
| - 01(일반수용비) | 85,865 | 81,895 | 17,848 | 18,249 | 20,828 | 9,703 | 15,267 | 3,970 |
| - 03(피복비) | 12,500 | 1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
| - 15(위탁사업비) | 1,203,942 | 1,007,462 | 245,837 | 228,736 | 218,649 | 169,856 | 144,384 | 196,480 |
| o 220(여비)-01 | 184,433 | 181,433 | 43,263 | 37,680 | 42,668 | 29,742 | 28,080 | 3,000 |
| o 430(자산취득비)-01 | 20,000 | 20,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

※ 1. 일반회계 1700-1739-302

2. '11년 예산내역서상 사업비이며, 각 지방청별 예산범위 내에서 보완산림조사 별도 추진

<붙임 1-1>

# '12년도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 작성 계획

## □ 산림조사

| 구분 | 관리소 | 경영계획구 | 조사면적(ha) | | | 비고 |
|---|---|---|---|---|---|---|
| | | | 계 | 직영 | 위탁 | |
| 계 | | 12 | 196,255 | 102,197 | 94,058 | 보수산림조사 포함 |
| 지방청 계 | | 11 | 180,905 | 102,197 | 78,708 | |
| 북부 | 소계 | 3 | 42,803 | 23,597 | 19,206 | |
| | 홍천 | 성산 | 24,915 | 5,709 | 19,206 | |
| | 홍천 | 매화산 | 6,953 | 6,953 | | |
| | 인제 | 신남 | 10,753 | 10,753 | | |
| | 기타 | 보수조사 | 182 | 182 | | |
| 동부 | 소계 | 2 | 40,929 | 23,059 | 17,870 | |
| | 강릉 | 강릉 | 29,909 | 12,039 | 17,870 | |
| | 평창 | 평창 | 10,670 | 10,670 | | |
| | 기타 | 보수조사 | 350 | 350 | | |
| 남부 | 소계 | 3 | 43,482 | 26,400 | 17,082 | |
| | 영덕 | 영양 | 24,200 | 24,200 | | |
| | 구미 | 김천 | 9,520 | | 9,520 | |
| | 양산 | 양산 | 7,562 | | 7,562 | |
| | 기타 | 보수조사 | 2,200 | 2,200 | | |
| 중부 | 소계 | 1 | 28,532 | 15,262 | 13,270 | |
| | 단양 | 단양 | 25,714 | 12,444 | 13,270 | |
| | 기타 | 보수조사 | 2,818 | 2,818 | | |
| 서부 | 소계 | 2 | 25,159 | 13,879 | 11,280 | |
| | 무주 | 진안 | 19,376 | 11,741 | 7,635 | |
| | 함양 | 남해 | 3,645 | | 3,645 | |
| | 기타 | 보수조사 | 2,138 | 2,138 | | |
| 제주 계 | | 1 | 15,350 | - | 15,350 | |
| | 제주 | 제주 | 15,350 | - | 15,350 | |

## □ 산림경영계획작성

| 지방청 | 관리소 | 경영계획구 | 작성면적(ha) | 비 고 |
|---|---|---|---|---|
| 합 계 | | 6개 경영구 | 132,706 | |
| 북부청 | 인제 | 원통 | 46,532 | 8차기('13～'22) |
| 동부청 | 계 | 2개 경영구 | 27,631 | |
| | 정선 | 임계 | 14,435 | 8차기('13～'22) |
| | 삼척 | 도계 | 13,196 | 8차기('13～'22) |
| 남부청 | 계 | 2개 경영구 | 22,740 | |
| | 남부 | 울릉 | 2,537 | 2차기('13～'22) |
| | 영덕 | 영해 | 20,203 | 8차기('13～'22) |
| 중부청 | - | - | - | - |
| 서부청 | 무주 | 무주 | 20,453 | 8차기('13～'22) |
| 제주도 | | 제주 | 15,350 | 7차기('13～'22) |

<붙임 2>

#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추진요령

## 1. 목 적

산림조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현장업무로서 지방청 및 관리소의 인력감축에 따라 자체인력으로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에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 일선의 업무량 경감과 조사업무의 전문화를 도모코자 함

## 2. 추진방침

o 전체 산림조사 물량 중 48%를 외부용역으로 추진
  - 총 조사 : 196,053ha(위탁 94,058ha, 직영 101,995ha)

o 산림조사 외부위탁에 따른 산림조사 지도·감독 철저
  - 지방산림청에서는 조사에 참여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 지방산림청에서는 용역추진상황을 수시 현장 확인

o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 구축

o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은 전년도 산림조사 외부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산림청에서 작성

## 3. 용역범위

o “국유림경영계획작성및운영요령”상의 산림조사 업무 전반

o 성과품내역
  - 산림조사 관련 야장 일체
  -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조사·입력할 경영 Excel 자료
  - 국유림경영계획과 관련된 도면 일체
  - 수치도면 자료(디스켓 또는 CD) 및 출력물
  - 사업대상지 명세(조림, 숲가꾸기, 벌채, 시설, 병해충방제, 소득사업 등 각종 사업대상 물량)
  - 산림소생물권 조사내용(산림조사 시 확인할 수 있는 산림소생물권)

## 4. 용역사업 자격기준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법인

o 「기술사법」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o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산림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 및 학술단체 등

## 5. 기타사항

o 용역 수행업체로부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조사계획서를 수립 제출토록 조치

- 녹음기 산림조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 1월~2월초에 계약 체결하여 조기 사업 착수(선금지급 등으로 조기 재정집행 추진)

o 정밀한 조사를 위하여 항공사진, 산림토양도, 산림입지조사자료, 재산목록, 임야도 등 지원

※ 산림조사와 관련된 기초자료 제공

o 성과품의 오류나 보완사항 발생시 수정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첨 부>

o 붙임 2-1 : '12년도 산림조사용역 단비표 1부

<붙임 2-1>

# ’12년도 산림조사용역 단비표(ha당)

(단위 : 원)

| 구 분 | 공 정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합 계 | | | 14,315 | |
| 1. 직접인건비 | | | 9,969 | |
| o 산림조사 | | | 8,469 | |
| -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 20ha/1일 | 95,366 | 4,768 | 대한건설협회 공표 특별인부임(’11.9.1) 적용 |
| - 보 조 원 | 20ha/1일 | 74,008 | 3,700 | 대한건설협회 공표 보통인부임(’11.9.1) 적용 |
| 2. 직접경비 | | | 1,500 | |
| o 식 비 | 20ha/1일 | 20,000 | 1,000 | |
| o 교통비 | 20ha/1일 | 10,000 | 500 | |
| 3. 제경비 | 직접인건비 × 5% | | 498 | |
| 4. 수수료 및 이윤 | (직접인건비＋제경비) × 10% | | 1,047 | |
| 5. 부가가치세 | (1+2+3+4) × 10% | | 1,301 | |

※ 2012년 산림조사 용역시 직접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 공표(’12.1.1) 인부임을 적용하여 용역 단비표 조정 실행

<붙임 3>

# ○○년도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작성 완료보고

## □ 산림조사

(단위 : ha)

| 지방청 | 관리소 | 계획구 | 계획량 | 실행량 | 증(△)감 | 경영계획 수립대상 면적 | 증・감 사유 |
|---|---|---|---|---|---|---|---|
| | | | (　　) | | | | |

※ 1. 계획량에는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을 작성
2. (　　)내에는 전차기 면적을 작성

## □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 1. 경영계획 작성 면적

(단위 : ha)

| 관할면적 | 작성면적 | 미작성 면적 | 비　고 |
|---|---|---|---|
| | | | |

※ "비고"에는 미작성 사유 등을 작성

### 2. 전차기 대비 경영계획 작성 면적

(단위 : ha)

| 전차기 | 현차기 | 증 (△)감 | 비　고 |
|---|---|---|---|
| | | | |

※ "비고"에는 증・감 사유 등을 작성

### 3. 임・소반 면적 현황

(단위 : ha)

| 경영계획 면적 | 임　반 | | | | 소　반 | | | |
|---|---|---|---|---|---|---|---|---|
| | 임반수 (개) | 면　적 | | | 소반수 (개) | 면　적 | | |
| | | 최대 | 최소 | 평균 | | 최대 | 최소 | 평균 |
| | | | | | | | | |

### 4. 임상별 면적・축적

(단위 : ha, ㎥)

| 면　　적 | | | | | 축　　적 | | | | 비고 |
|---|---|---|---|---|---|---|---|---|---|
| 계 | 침엽수 | 활엽수 | 혼효림 | 무입목지 | 계 | 침엽수 | 활엽수 | 혼효림 | |
| | | | | | | | | | |

※ "비고"에는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지역의 축적 등 작성

## 5. 사업종별 사업계획

| 구분 | 세부사업별 | | 단위 | 사업 계획량 | 기능별 사업 계획량 | | | | | |
|---|---|---|---|---|---|---|---|---|---|---|
| | | | | | 생활환경 보 전 림 | 자연환경 보 전 림 | 수자원 함양림 | 산지재해 방 지 림 | 산 림 휴양림 | 목 재 생산림 |
| 조림예정지정리 | | | ha | | | | | | | |
| 조림 | 계 | | ha | | | | | | | |
| | 인공갱신 | | ha | | | | | | | |
| | 천연갱신 | | ha | | | | | | | |
| 숲가꾸기 | 계 | | ha | | | | | | | |
| | 보식 | | ha | | | | | | | |
| | 풀베기 | | ha | | | | | | | |
| | 비료주기 | | ha | | | | | | | |
| | 어린나무가꾸기 | | ha | | | | | | | |
| | 덩굴류제거 | | ha | | | | | | | |
| | 무육간벌 | | ha | | | | | | | |
| | 가지치기 | | ha | | | | | | | |
| | 천연림개량 | | ha | | | | | | | |
| | 움싹갱신지 보육 | | ha | | | | | | | |
| | 천연림보육 | | ha | | | | | | | |
| 임목생산 | 계 | | $m^3$ | | | | | | | |
| | 주벌 | 개벌 | $m^3$ | | | | | | | |
| | | 산벌 | $m^3$ | | | | | | | |
| | | 택벌 | $m^3$ | | | | | | | |
| | | 모수 | $m^3$ | | | | | | | |
| | | 왜림 | $m^3$ | | | | | | | |
| | | 도태간벌 | $m^3$ | | | | | | | |
| | | 정량간벌 | $m^3$ | | | | | | | |
| | 수익간벌 | 개벌 | $m^3$ | | | | | | | |
| | | 산벌 | $m^3$ | | | | | | | |
| | | 택벌 | $m^3$ | | | | | | | |
| | | 모수 | $m^3$ | | | | | | | |
| | | 왜림 | $m^3$ | | | | | | | |
| | | 도태간벌 | $m^3$ | | | | | | | |
| | | 정량간벌 | $m^3$ | | | | | | | |
| 시설 | 임도 | 임도신설 | km | | | | | | | |
| | | 임도개량 | km | | | | | | | |
| | | 임도보수 | km | | | | | | | |
| | 사방 | 산지사방 | ha | | | | | | | |
| | | 예방사방 | ha | | | | | | | |
| | | 사방지추비 | ha | | | | | | | |
| | | 사방댐 | 개소 | | | | | | | |
| | | 사방댐준설 | 개소 | | | | | | | |
| 소득사업 | 약초재배 | | ha | | | | | | | |
| | 수목굴취 | | 본 | | | | | | | |
| | 수액채취 | | ℓ | | | | | | | |
| | 산나물채취 | | kg | | | | | | | |
| | 종자채취 | | kg | | | | | | | |
| | 버섯채취 | | kg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추가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세부사업을 추가하여 작성

<참 고>

# 국유림경영계획구 현황

(단위 : ha)

| 구분 | 관리소 | 경 영 계획구 | 면 적 | 임반수 | 소반수 | 현 차 기 | 계획 기간 | '12년수립 (6개구) | '12년조사 (12개구) | '13년조사 (11개구) | 중간평가 (15개구) | 백두대간 포함지 (30개구) |
|---|---|---|---|---|---|---|---|---|---|---|---|---|
| 합계 | 27 | 97 | 1,263,465 | 5,844 | 53,067 | | 10년 | 132,706 | 188,244 | 143,224 | 168,444 | 579,734 |
| 북부 | 계 | 25 | 388,168 | 1,512 | 14,745 | | | 46,532 | 42,621 | 15,987 | 84,095 | 100,664 |
| | 춘천 | 4 | 81,811 | 298 | 2,938 | | | 0 | 0 | 8,246 | 0 | 0 |
| | | 춘 천 | 27,418 | 112 | 1,139 | 8 | '10～'19 | - | - | - | - | - |
| | | 화 천 | 34,086 | 114 | 1,042 | 8 | '06～'15 | - | - | - | - | - |
| | | 청 평 | 8,246 | 35 | 351 | 8 | '05～'14 | - | - | 8,246 | - | - |
| | | 철 원 | 12,061 | 37 | 406 | 7 | '12～'21 | - | - | - | - | - |
| | 양구 | 1 | 26,938 | 89 | 1,232 | | | 0 | 0 | 0 | 26,938 | 0 |
| | | 양 구 | 26,938 | 89 | 1,232 | 8 | '08～'17 | - | - | - | 26,938 | - |
| | 인제 | 5 | 113,884 | 406 | 2,639 | | | 46,532 | 10,753 | 0 | 44,868 | 66,931 |
| | | 인 제 | 24,469 | 100 | 668 | 8 | '08～'17 | - | - | - | 24,469 | - |
| | | 원 통 | 46,532 | 146 | 814 | 7 | '03～'12 | 46,532 | | - | - | 46,532 |
| | | 기 린 | 20,399 | 73 | 393 | 8 | '07～'16 | - | - | - | 20,399 | 20,399 |
| | | 상 남 | 11,731 | 42 | 301 | 8 | '11～'20 | - | - | - | - | - |
| | | 신 남 | 10,753 | 45 | 463 | 8 | '04～'13 | - | 10,753 | | - | - |
| | 홍천 | 6 | 116,452 | 516 | 4,840 | | | 0 | 31,868 | 7,741 | 0 | 33,733 |
| | | 성 산 | 24,915 | 89 | 1,470 | 8 | '04～'13 | - | 24,915 | | - | - |
| | | 횡 성 | 27,282 | 98 | 961 | 8 | '11～'20 | - | - | - | - | - |
| | | 원 주 | 7,741 | 29 | 373 | 8 | '05～'14 | - | - | 7,741 | - | - |
| | | 창 촌 | 33,733 | 222 | 743 | 8 | '09～'18 | - | - | - | - | 33,733 |
| | | 서 석 | 15,828 | 54 | 732 | 7 | '06～'15 | - | - | - | - | - |
| | | 매화산 | 6,953 | 24 | 561 | 1 | '11～13 | - | 6,953 | - | - | - |
| | 수원 | 5 | 28,936 | 134 | 2,035 | | | 0 | 0 | 0 | 2,728 | 0 |
| | | 양 평 | 24,046 | 86 | 1,537 | 8 | '10～'19 | - | - | - | - | - |
| | | 여 주 | 1,237 | 18 | 141 | 2 | '09～'18 | - | - | - | - | - |
| | | 화 성 | 925 | 14 | 153 | 2 | '06～'15 | - | - | - | - | - |
| | | 안 성 | 822 | 7 | 73 | 2 | '08～'17 | - | - | - | 822 | - |
| | | 광 주 | 1,906 | 9 | 131 | 2 | '08～'17 | - | - | - | 1,906 | - |
| | 서울 | 4 | 20,147 | 69 | 1,061 | | | 0 | 0 | 0 | 9,561 | 0 |
| | | 서 울 | 3,592 | 16 | 150 | 2 | '09～'18 | - | - | - | - | - |
| | | 인 천 | 2,562 | 13 | 246 | 1 | '12～'21 | | - | - | - | - |
| | | 연 천 | 9,561 | 28 | 457 | 8 | '07～'16 | - | - | - | 9,561 | - |
| | | 고 양 | 4,432 | 12 | 208 | 2 | '09～'18 | - | | - | - | - |

| 구분 | 관리소 | 경 영 계획구 | 면 적 | 임반수 | 소반수 | 현 차 기 | 계획 기간 | '12년수립 (6개구) | '12년조사 (12개구) | '13년조사 (11개구) | 중간평가 (15개구) | 백두대간 포함지 (30개구) |
|---|---|---|---|---|---|---|---|---|---|---|---|---|
| 동부 | 계 | 16 | 357,501 | 2,336 | 14,210 | | | 27,631 | 40,579 | 67,674 | 20,440 | 257,984 |
| | 강릉 | 2 | 44,424 | 386 | 1,725 | | | 0 | 29,909 | 0 | 0 | 44,424 |
| | | 강 릉 | 29,909 | 256 | 1,313 | 8 | '04～'13 | - | 29,909 | | - | 29,909 |
| | | 주문진 | 14,515 | 130 | 412 | 8 | '06～'15 | - | - | - | - | 14,515 |
| | 양양 | 2 | 49,460 | 395 | 1,252 | | | 0 | 0 | 0 | 8,446 | 49,460 |
| | | 양 양 | 41,014 | 304 | 886 | 8 | '11～'20 | - | - | - | - | 41,014 |
| | | 현 북 | 8,446 | 91 | 366 | 8 | '08～'17 | - | - | - | 8,446 | 8,446 |
| | 평창 | 3 | 65,972 | 427 | 3,017 | | | 0 | 10,670 | 31,514 | 0 | 31,514 |
| | | 평 창 | 10,670 | 70 | 667 | 8 | '04～'13 | - | 10,670 | | - | - |
| | | 대 화 | 23,788 | 195 | 1,220 | 8 | '10～'19 | - | - | - | - | - |
| | | 진 부 | 31,514 | 162 | 1,130 | 8 | '05～'14 | - | - | 31,514 | - | 31,514 |
| | 영월 | 2 | 54,515 | 236 | 1,945 | | | 0 | 0 | 0 | 11,994 | 42,521 |
| | | 영 월 | 42,521 | 177 | 1,364 | 8 | '11～'20 | - | - | - | - | 42,521 |
| | | 주 천 | 11,994 | 59 | 581 | 8 | '07～'16 | - | - | - | 11,994 | - |
| | 정선 | 3 | 61,424 | 335 | 3,058 | | | 14,435 | 0 | 15,338 | 0 | 29,757 |
| | | 정 선 | 31,667 | 148 | 1,362 | 8 | '09～'18 | - | - | - | - | - |
| | | 임 계 | 14,419 | 127 | 971 | 7 | '03～'12 | 14,435 | | - | - | 14,419 |
| | | 사 북 | 15,338 | 60 | 725 | 8 | '05～'14 | - | - | 15,338 | - | 15,338 |
| | 삼척 | 3 | 55,372 | 394 | 2,107 | | | 13,196 | 0 | 20,822 | 0 | 33,974 |
| | | 교 가 | 20,822 | 152 | 814 | 8 | '05～'14 | - | - | 20,822 | - | 20,822 |
| | | 도 계 | 13,152 | 73 | 570 | 7 | '03～'12 | 13,196 | | - | - | 13,152 |
| | | 호 산 | 21,398 | 169 | 723 | 8 | '10～'19 | - | - | - | - | - |
| | 태백 | 1 | 26,334 | 163 | 1,106 | | | 0 | 0 | 0 | 0 | 26,334 |
| | | 장 성 | 26,334 | 163 | 1,106 | 7 | '02～'11 | | - | | - | 26,334 |
| 남부 | 계 | 20 | 231,637 | 962 | 8,721 | | | 22,740 | 41,282 | 23,428 | 27,607 | 92,433 |
| | 영주 | 5 | 85,266 | 414 | 2,672 | | | 0 | 0 | 23,428 | 0 | 78,078 |
| | | 풍 기 | 15,390 | 68 | 394 | 8 | '11～'20 | - | - | - | - | 15,390 |
| | | 안 동 | 7,188 | 39 | 514 | 2 | '07～'16 | - | - | - | - | - |
| | | 문 경 | 12,335 | 67 | 360 | 2 | '09～'18 | - | - | - | - | 12,335 |
| | | 춘 양 | 23,428 | 108 | 701 | 8 | '05～'14 | - | - | 23,428 | - | 23,428 |
| | | 현 동 | 26,925 | 132 | 703 | 8 | '09～'18 | - | - | - | - | 26,925 |
| | 영덕 | 4 | 59,412 | 195 | 2,954 | | | 20,203 | 24,200 | 0 | 9,327 | 0 |
| | | 영 양 | 23,843 | 71 | 1,332 | 8 | '04～'13 | - | 24,200 | | - | - |
| | | 영 해 | 18,678 | 58 | 691 | 7 | '03～'12 | 20,203 | | - | - | - |
| | | 포 항 | 9,327 | 31 | 494 | 2 | '08～'17 | - | - | - | 9,327 | - |
| | | 청 송 | 7,564 | 35 | 437 | 2 | '06～'15 | - | - | - | - | - |
| | 구미 | 3 | 20,370 | 74 | 915 | | | 0 | 9,520 | 0 | 0 | 14,355 |
| | | 상 주 | 6,766 | 28 | 302 | 2 | '07～'16 | - | - | - | - | 6,766 |
| | | 김 천 | 7,589 | 23 | 272 | 2 | '04～'13 | - | 9,520 | | - | 7,589 |
| | | 칠 곡 | 6,015 | 23 | 341 | 2 | '06～'15 | - | - | - | - | - |
| | 울진 | 3 | 51,194 | 216 | 1,374 | | | 2,537 | 0 | 0 | 15,344 | 0 |
| | | 울 진 | 33,396 | 133 | 851 | 8 | '10～'19 | - | - | - | - | - |
| | | 평 해 | 15,344 | 75 | 432 | 8 | '08～'17 | - | - | - | 15,344 | - |
| | 남부 | 울 릉 | 2,454 | 8 | 91 | 1 | '03～'12 | 2,537 | | - | - | - |
| | 양산 | 5 | 15,395 | 63 | 806 | | | 0 | 7,562 | 0 | 2,936 | 0 |
| | | 울 산 | 4,338 | 16 | 259 | 2 | '09～'18 | - | - | - | - | - |
| | | 김 해 | 3,238 | 10 | 119 | 2 | '07～'16 | - | - | - | - | - |
| | | 양 산 | 3,896 | 14 | 111 | 2 | '04～'13 | - | 7,562 | | - | - |
| | | 밀 양 | 2,936 | 11 | 192 | 2 | '08～'17 | - | - | - | 2,936 | - |
| | | 창 원 | 987 | 12 | 125 | 2 | '06～'15 | - | - | - | - | - |

| 구분 | 관리소 | 경영계획구 | 면적 | 임반수 | 소반수 | 현차기 | 계획기간 | '12년수립(6개구) | '12년조사(12개구) | '13년조사(11개구) | 중간평가(15개구) | 백두대간 포함지(30개구) |
|---|---|---|---|---|---|---|---|---|---|---|---|---|
| 중부 | 계 | 17 | 100,997 | 295 | 5,559 | | | 0 | 25,671 | 16,761 | 12,515 | 56,968 |
| | 충주 | 3 | 18,690 | 58 | 1,149 | | | 0 | 0 | 2,404 | 0 | 9,288 |
| | | 충 주 | 6,998 | 28 | 469 | 8 | '07～'16 | - | - | - | | - |
| | | 음 성 | 2,404 | 9 | 228 | 8 | '05～'14 | - | - | 2,404 | - | - |
| | | 괴 산 | 9,288 | 21 | 452 | 8 | '06～'15 | - | - | - | - | 9,288 |
| | 보은 | 4 | 22,926 | 50 | 1,377 | | | 0 | 0 | 4,058 | 7,552 | 11,710 |
| | | 청 원 | 3,664 | 10 | 295 | 8 | '06～'15 | - | - | - | - | - |
| | | 보 은 | 7,652 | 18 | 303 | 8 | '07～'16 | - | - | - | | 7,652 |
| | | 옥 천 | 4,058 | 10 | 293 | 8 | '05～'14 | - | - | 4,058 | - | 4,058 |
| | | 영 동 | 7,552 | 12 | 486 | 8 | '08～'17 | | - | - | 7,552 | - |
| | 단양 | 2 | 35,970 | 123 | 1,490 | | | 0 | 25,671 | 10,299 | 0 | 35,970 |
| | | 단 양 | 25,671 | 80 | 1,100 | 8 | '04～'13 | - | 25,671 | | - | 25,671 |
| | | 제 천 | 10,299 | 43 | 390 | 8 | '05～'14 | - | - | 10,299 | - | 10,299 |
| | 부여 | 8 | 23,411 | 64 | 1,543 | | | 0 | 0 | 0 | 4,963 | 0 |
| | | 서 산 | 1,542 | 10 | 64 | 8 | '06～'15 | - | - | - | - | - |
| | | 보 령 | 2,022 | 7 | 136 | 8 | '07～'16 | - | - | - | | - |
| | | 천 안 | 2,050 | 4 | 207 | 8 | '08～'17 | - | - | - | 2,050 | - |
| | | 아 산 | 2,913 | 4 | 180 | 8 | '08～'17 | - | - | - | 2,913 | - |
| | | 공 주 | 5,853 | 14 | 346 | 8 | '09～'18 | - | - | - | - | - |
| | | 논 산 | 5,460 | 15 | 244 | 8 | '09～'18 | - | - | - | - | - |
| | | 부 여 | 1,587 | 4 | 198 | 8 | '10～'19 | - | - | - | - | - |
| | | 대 전 | 1,984 | 6 | 168 | 8 | '10～'19 | - | - | | - | - |
| 서부 | 계 | 18 | 169,812 | 709 | 9,413 | | | 20,453 | 22,741 | 19,374 | 23,787 | 71,685 |
| | 정읍 | 5 | 27,620 | 92 | 1,678 | | | 0 | 0 | 6,610 | 781 | 0 |
| | | 정 읍 | 5,196 | 20 | 443 | 8 | '07～'16 | - | - | - | | - |
| | | 군 산 | 781 | 3 | 63 | 8 | '08～'17 | - | - | - | 781 | - |
| | | 순 창 | 3,799 | 17 | 289 | 8 | '06～'15 | - | - | - | - | - |
| | | 부 안 | 6,610 | 14 | 351 | 8 | '05～'14 | - | - | 6,610 | - | - |
| | | 완 주 | 11,234 | 38 | 532 | 8 | '06～'15 | - | - | - | - | - |
| | 무주 | 3 | 51,768 | 192 | 2,173 | | | 20,453 | 19,296 | 12,764 | 0 | 32,472 |
| | | 무 주 | 19,708 | 85 | 700 | 7 | '03～'12 | 20,453 | | - | - | 19,708 |
| | | 남 원 | 12,764 | 42 | 461 | 8 | '05～'14 | - | - | 12,764 | - | 12,764 |
| | | 진 안 | 19,296 | 65 | 1,012 | 8 | '04～'13 | - | 19,296 | | - | - |
| | 영암 | 3 | 26,934 | 137 | 2,002 | | | 0 | 0 | 0 | 11,302 | 0 |
| | | 영 암 | 11,302 | 42 | 696 | 8 | '08～'17 | - | - | - | 11,302 | - |
| | | 나 주 | 5,167 | 42 | 625 | 8 | '07～'16 | - | - | - | | - |
| | | 해 남 | 10,465 | 53 | 681 | 8 | '06～'15 | - | - | - | - | - |
| | 순천 | 3 | 25,688 | 118 | 2,361 | | | 0 | 0 | 0 | 8,273 | 8,287 |
| | | 보 성 | 9,128 | 26 | 663 | 8 | '07～'16 | - | - | - | | - |
| | | 곡 성 | 8,273 | 35 | 610 | 8 | '08～'17 | - | - | - | 8,273 | - |
| | | 순 천 | 8,287 | 57 | 1,088 | 8 | '06～'15 | - | - | - | - | 8,287 |
| | 함양 | 4 | 37,802 | 170 | 1,199 | | | 0 | 3,445 | 0 | 3,431 | 30,926 |
| | | 함 양 | 19,308 | 80 | 532 | 7 | '02～'11 | | - | - | - | 19,308 |
| | | 하 동 | 11,618 | 54 | 367 | 8 | '10～'19 | - | - | - | - | 11,618 |
| | | 남 해 | 3,445 | 20 | 126 | 8 | '04～'13 | - | 3,445 | | - | - |
| | | 거 제 | 3,431 | 16 | 174 | 8 | '08～'17 | - | - | - | 3,431 | - |
| 제주 | 계 | 제 주 | 15,350 | 30 | 419 | 6 | '03～'12 | 15,350 | 15,350 | - | - | - |

# 6. 효율적인 국유림(재산) 관리

목 표

◇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안정적 확충을 위해 '30년까지 국유림률을 32%까지 높이기 위해 사유림 매수 적극 추진
  o '12년 사유림 매수 11,470ha(사업비 76,085백만원)

◇ 국유림 분포률이 낮은 지역의 산림경영임지를 권역별로 집중 매수하여 지역별 균형적인 분포율 유지

◇ 산업용지 편입 등으로 처분이 불가피한 국유림을 공·사유림과의 교환으로 처분하여 국유림 감소를 최소화

##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등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국유림 확대」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

o 지속적인 사유림 매수를 통해 국가의 산림경영임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인 산림경영 및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

o 국민 소득증대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산림문화·휴양·치유 등 수요가 증가되어 산림생태계 보전 등 산림서비스 강화가 필요

o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계 법령에 의한 법정 제한림 등의 매수를 통한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가 동시에 필요

o 산림복원이 어려운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와 농지 등 무단점유지 정리를 통한 국민 애로사항 해소 등 서민 정책 추진

## 나. 기본방향

o 국유림 분포률이 높은 지역의 사유림 매수는 최소화 하고 분포률이 낮은 지역에서 산림경영에 적합한 사유림을 집중 매수하되, 지역별로 국유림이 균형적으로 분포되도록 추진

o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은 가급적 교환으로 처분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제고

o 다른 법률과 공공목적에 따라 처분이 불가피한 국유림도 매각보다는 사유림과 교환하여 국유림 감소를 최소화

o 지역발전 및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고 공공기능과 활용가치가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유재산을 관리

-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유림은 매각보다는 국유림 감소를 위하여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추진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사유림 매수

#### 가) 사업량 및 예산

(단위 : ha, 백만원)

| 기관별 | 계 | | 산림경영임지 | | 대나무생태보전숲 및 곶자왈보전림 | | 소양강 탁수저감 | | 백두대간 | |
|---|---|---|---|---|---|---|---|---|---|---|
| | 면적 | 예산 | 면적 | 예산 | 면적 | 예산 | 면적 | 예산 | 면적 | 예산 |
| 계 | 11,470 | 76,085 | 11,400 | 68,585 | 50 | 5,500 | 15 | 1,500 | 5 | 500 |
| 북부청 | 215 | 3,320 | 200 | 1,820 | - | - | 15 | 1,500 | - | - |
| 동부청 | 303 | 1,830 | 300 | 1,530 | - | - | - | - | 3 | 300 |
| 남부청 | 2,500 | 12,750 | 2,500 | 12,750 | - | - | - | - | - | - |
| 중부청 | 2,801 | 23,340 | 2,800 | 23,240 | - | - | - | - | 1 | 100 |
| 서부청 | 5,621 | 31,345 | 5,600 | 29,245 | 20 | 2,000 | - | - | 1 | 100 |
| 제 주 | 30 | 3,500 | - | - | 30 | 3,500 | - | - | - | - |

※ 산림경영임지 매수는 실거래 단가를 고려하여 지역별 사업량을 조정하여 추진
- (계획) 15,597ha, 5백만원/ha ⇒ (조정) 12,946ha, 6백만원/ha

※ 대나무생태보전숲은 서부청(20ha), 곶자왈보전림은 제주특별자치도(30ha) 사업량

#### 나) 추진요령

① 공통사항

o 국유림 분포률이 높은 지역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지전용 제한지역 등 국가 관리가 꼭 필요하고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지구·

지정된 산림을 위주로 매수하고, 국유림 분포률이 낮은 지역은 산림경영에 유리한 사유림을 위주로 매수

o 매수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국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
- 연초에는 당해 연도의 목표 물량, 하반기에는 다음 해의 목표 물량 확보
- 매도 승낙한 사유림에 대한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매수 추진

o 홈페이지(지자체 포함),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현수막, 전단지, 반상회지, 스티커, 광고 전광판 등 모든 홍보수단과 방법으로 연중 활용(특히 지역 CATV, 교차로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추진

o 추진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수 절차와 감정평가 자료 제공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행위를 공개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임야는 취득 제한 등 엄격 심사
- 감정평가법인에 자료제공 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신뢰수준으로 공개

o 매수대상지내 입목조사는 생략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목가격이 가격결정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목조사 실시
- 매수대상지가 30ha 이상인 경우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16조제3항에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

② 산림경영임지 및 보전림

o 기관별 국유림 분포률과 신청된 물량 및 지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량을 배정하되, ha당 단가는 집행기관별 차등하여 추진
- 기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가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매수 계획량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o 국가 경영임지는 국유림 안 또는 연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집약적으로 경영・관리가 가능한 임지를 우선 매수(확대권역・거점지역 위주매수)

o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 위주로 매수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 해소
- 「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사유림 우선 매수

o 산림경영임지에 개재·연접된 토지(전·답 등)는 현실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토지인 상태로는 매수를 엄격히 금지함. 다만 지목을 “임야”로 변경한 후 매도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ha당 매수 단가를 고려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매수 가능

③ 제주 곶자왈림보전림

o 희귀 산림생태 보전을 위한 생태등급 1~2급지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를 대상으로 단지화가 되도록 매수 추진

- 조천(선흘)·한경곶자왈 지역 위주 대상지를 선정하여 매수 추진
- 공유지분의 산림(토지 포함)은 면적 과반수 이상의 지분 소유자가 매도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제2항제2호)

④ 대나무생태보전숲

o 대규모 면적에 생육하는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한 대나무 숲의 사유림 매수

- 대나무 숲 주변의 체계적인 시업을 통해 추가 조성이 가능한 임지 등

⑤ 소양강댐 탁수저감 토지

o 강원도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소양강 상류인 양구군(해안지구), 홍천군(자운지구), 인제군(가아지구) 지역의 산림과 인접한 고랭지 밭 등을 매수

o 대상지 선정시에는 실제 토사유출방지 효과가 큰 곳을 위주로 매수하여 예산투자의 실효성을 높임

⑥ 백두대간 지역 등의 산림(토지 포함)

o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청구한 사유 토지 등을 우선 매수

o 기타 일반 산림은 산림경영임지 및 보전림 예산으로 매수

⑦ 사유림매수 사업 민간위탁

o 사유림 매수 사업량 일부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추진(토지매입비 110억원)

- 지방산림청 실정에 맞게 관리소 단위로 지역을 지정하여 지방산림청의 직접 매수 사업과 중복을 피하고 산림소유자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

- 수탁자가 매수할 대상지역의 범위를 시·군 단위 또는 관리소 단위로 지정하거나 지역 산림조합원의 소유 산림을 위주로 추진하되, 계획물량의 목표달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사업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o 산림조합중앙회장과 지방산림청장이 매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 산림조합중앙회장이 매도승낙서 접수, 현지조사, 매수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매수업무 일체의 대리권을 행사
- 위탁수수료는 매수 실적에 따라 정산하고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성과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건의사항 포함) 제출

o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행위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

## 2) 교환 제도를 활용한 국유림 확대

o 다른 법률과 공공목적에 따라 처분이 불가피한 국유림도 매각보다는 교환을 통해 국유림 감소를 최소화(비예산 국유림확대)

- 인허가 등 협의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을 조건으로 협의

o 대부 목적달성으로 인한 연고매각 대상 국유림의 처분은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추진

- 면적이 시 지역은 1ha 이상, 시 외의 지역은 2ha 이상인 경우에는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

o 국유림 교환시 입목조사 원칙. 다만, 공유림 등의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입목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입목조사는 사유림 매수 시 입목조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
- 감정평가 수수료 및 입목조사 비용은 소유자가 각각 부담

## 3)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집행

o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연간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목적으로 하므로 취득하거나 처분(매각·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을 파악하여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계상

- 각 지방청은 ’13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을 5월말까지 제출
-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에는 취득·처분, 행정재산 사용승인, 개발 및 사용허가·대부, 유가증권 등 국유재산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반영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토보상 등도 협의단계에서 사전 파악하여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 후 집행

- 예산집행 전 디지털예산시스템에 일선관서 승인 또는 자체승인 형태로 입력
  (사례) 행복도시 수목원부지(65ha), 원주 북부지방산림청 부지(2ha) 등

o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었더라도 환경부가 요청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저촉되거나, 당해 년도「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 불가

- 엄격한 실질심사 후「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관리·처분지침」에 적합한 경우에 집행

## 4) 국유재산 일반관리

o 「국유재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2월 31까지 제출하되, 청사, 관사, 양묘장, 임도(운재로 시설용 토지 포함), 휴양림, 시험포지, 산림경영임야 등 실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또는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예) 마을 숲 조성계획, 저목장 또는 운재로 시설계획 등

o 국유림의 종류가 현실 이용현황 및 장래 활용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는 국유림 구분 기준에 따라 재구분 조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라 대부되지 아니한 불요존국유림이 대부된 국유림과 서로 연접되어 그 합산 면적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

· 특별시·광역시 : 2만제곱미터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동 지역만 해당)와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 : 5만제곱미터 이상

· 그 밖의 지역 : 10만제곱미터 이상

o 분할·합병 등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은 수시로 국유재산대장(카드대장, 전산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즉시 정리한 후 관리

### 5) 타부처 미활용 국유림 사용승인

o 기획재정부·국방부 등 타 부처 소관 국유림을 파악(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일반회계)하여 산림경영관리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무육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총괄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o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사용 중인 국유림은 해당 관리청 소관의 다른 국유림과 교환 형식으로 상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제출

o 조달청 유휴 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이관 대상으로 분류된 유휴 행정재산 중 우리 청에서 활용하고자 인계하지 않은 재산은 국유림 경영계획 및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활용

### 6)「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

o「국유림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안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본청 및 지방청 관계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T/F팀 구성
- 개정령안 입안에 필요한 자료 수집 후 토론회를 정례화

## 라. 추진일정

o 국유림 확대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운영 : 2012. 1. 1부터

o 국·공유림 등 교환제도 운영지침 수립·시달 : 2012. 1월

o 사유림매수
-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 : 2011. 12월
-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 연중(상반기 : 주간보고, 하반기 : 월간·주간보고)
- 사유림매수 실적보고 : 2012. 12월

o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등
-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 수립 : 2012. 1월
  * 기획재정부(총괄청)에 제출 : 2012. 1월
- 2013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제출(기획재정부) : 2012. 6월
  * 각 지방청은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을 6월 1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o 국유재산 매각실적 결과보고 : 2012. 12월

o 2011년 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 제출 : 2012. 2월

o 2011년 유휴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 2012. 1월

o 국유림의 종류 재구분 및 사용승인은 중앙관서에 신청 : 연중

# 7.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및 사후관리

목 표

◇ 국유림을 활용한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토이용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및 무단점유지의 합리적인 관리
◇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가. 정책여건

o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을 엄격히 심사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지도·점검 강화

o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 특화사업 및 농산촌 주민소득사업 요구 증가 추세

o 도시 주변지역 중심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을 방지하고, 신규로 발견된 무단점유지는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의 의법 조치와 아울러 원상복구 조치

o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림으로 환원이 어려운 장기 대부·사용허가지 및 무단점유지 정리를 통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 및 국민 애로사항 해소 등 서민정책 추진

## 나. 기본방향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용지에 대한 대부·사용허가를 적정 규모로 허용하여 신규 공공토지 수요를 충족

o 지역특화사업 및 농산촌 주민 소득사업용 대부·사용허가를 적절히 허용하여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유림의 과도한 타용도 전용을 억제

o 산림 외의 용도로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산림으로 환원이 어려운 장기 무단점유지의 합리적 정리

o 산림으로 환원이 어려운 지자체의 대부·사용허가지 및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체납액 정리

o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으로 부실대부지 발생을 방지

## 다. 세부추진계획

### 1) 대부·사용허가 제도 운영

o 「국유림법」을 일부 개정하여 적법한 국유림 사용허가·대부를 받아 일정기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산림으로 환원이 어려운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음(개정법령 시행일로부터 적용)

-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림의 교환
  - ·사용허가지 :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
  - ·대 부 지 :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
-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대상사업 추가
  -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산림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기회 확대
- 청문의 대상 범위 확대
  - ·국유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시설물의 제거 등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 처분시도 미리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o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를 받게 되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 처리됨으로 국유림의 대부등 요건 검토시 산지전용 요건을 아울러 검토

o 도로, 철탑부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 시설 용지에 대하여는 대부 등을 허용하되 산지전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피해를 최소화

o 국유림 비율이 높은 지자체 등에서 국유림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사업이나 주민소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유림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잔여 재산의 효용도와 기대이익 등에 대한 균형 있는 검토를 거친 후 대부 및 사용허가를 결정

o 대부신청지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을 엄격히 심사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부실대부지 발생을 방지

## 2) 무단점유 국유지 관리

o 「국유림법」에 (부칙)을 신설하여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 정리

- 적용대상 : 적법한 절차 없이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또는 농지로서 일정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개정법령 시행일로부터 적용)

(1) 주거용 시설부지

·특·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 및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 제외) : 5백제곱미터 이내의 면적

·그 외의 지역 : 1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

(2) 종교용 시설부지 :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

(3) 농지

·특·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 및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지역 제외)지역 : 5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

·그 외의 지역 : 1만제곱미터

- 정리방법 :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 신고하면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국유림으로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신고 수리 및 전용허가 처분 후 공유림 등과 5년이내 교환할 수 있도록 함

o 도시 주변지역 중심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을 방지하고, 무단점유지 감시를 위한 무단점유 감시원을 운영

o 신규로 발견된 무단점유지는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의 의법 조치와 아울러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추진

## 3) 전국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추진

o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사용허가 또는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장기간 사용과 영구시설물 시설로 산림으로 환원이 불가능하고 처분(교환)하여도 국유림 경영에 지장이 없는 재산을 정리 대상으로 선정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호점유 해소 추진

* 국가와 지자체간 상호점유 재산 일관 교환 추진

- 추진근거 :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상호교환을 통해 상호점유 해소추진 (국유재산법 제54조)

- 추진주체 : 중앙관서의 점유재산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지자체와 상호 점유 해소추진

- 해소대상

・전국 시・도(시・군・구 포함), 서울시 제외('11년 상호점유 해소)
단, 서울시 기초자치단체(구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은 포함

- 해소방법

・기획재정부가 재산관리기관인 산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와 협의 추진
・산림청 상호점유 해소대상 재산은 총괄청(기획재정부) 이관(변상금 포함)

## 라. 추진일정

o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계획 시달 : 2012. 2월

o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대상 현지확인 : 2012. 2월

o 장기무단점유지 정리추진 : 연중

o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및 후속조치 : 2012. 3~11월

o 국유림 대부지 지도・점검 실시 : 2012. 9~10월

o 국・공유재산 상호점유재산 교환 등 해소 시행 : 2012. 하반기

# 8. 조림대부·분수림의 입목 매수

목 표

◇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활성화하고 국가직영임지 확대

o '12년 입목매수 2,000ha, 260천㎥ (사업비 4,160백만원)

## 가. 정책여건

o '92년부터 추진 중인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사업은 '11년말 전체 조림대부지·분수림의 80%를 사들여 20%(24천ha)에 해당하는 잔여임지를 남겨놓고 있음

o 조림대부·분수림은 수대부자 등이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숲가꾸기, 간벌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아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o '05년도를 정점으로 이후 매수량과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계속적으로 적정규모의 매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o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림에 대하여 매수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매수 추진

## 나. 기본방향

o 장기적인 매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체·산림조합중앙회 등이 관리하는 대규모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 매도신청을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o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 매수 대상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 완료

o 입목가격 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입목수량 조사를 철저히 하고 수대부자 등에 대하여도 감정평가법인 선택권을 부여

o 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산림계 조림대부·분수림은 기간연장보다는 입목매수 적극 유도

- '12년 기간 만료지 : 19건 737ha(조림대부 7건 500ha, 분수림 12건 237ha)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사업량 : 2,000ha, 260천㎥(4,160백만원)

o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산림청별 조림대부·분수림 입목매수 신청 물량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배정

(단위 : ha, 천㎥, 백만원)

| 구 분 | 총계 | 북부청 | 동부청 | 남부청 | 중부청 | 서부청 | 제주도 |
|---|---|---|---|---|---|---|---|
| 면 적 | 2,000 | 300 | - | 300 | 400 | 400 | 600 |
| 수 량 | 260 | 24 | - | 29 | 50 | 37 | 120 |
| 예 산 | 4,160 | 400 | - | 390 | 800 | 570 | 2,000 |

### 2) 조림대부·분수림 입목 매수사업의 절차

o 매수안내

-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계획을 '12. 1월에 산림청·지방산림청·제주특별자치도·산림조합중앙회 등 관련단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언론에 홍보하여 조기에 매수완료
- '12년 1월말까지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계획을 관내 조림용 대부지의 수대부자 및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이하 "수대부자등"이라 한다)전원에게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으로 매도 권유

o 매수대상지 선정

- 매도승낙서가 제출된 임지는 입목수량·추정금액, 매수 우선기준 등을 현지 조사하여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예정지 현지조사서를 작성
- 연중 추가적인 매도승낙을 받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입목수량 조사

- 건당 면적이 30ha 미만인 임지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한 입목수량을 2개 감정평가법인에 제시하여 가격감정을 의뢰
- 건당 면적이 30ha 이상인 임지는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6조 제3항제1호 각목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한 입목수량을 2개 감정평가법인에 제시하여 가격감정을 의뢰
- 입목조사시 고사목·산불 및 병해충 피해목·기타 용재 가치가 없는 입목과 국가소유의 입목은 제외하고 평가실시

o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된 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
- 관리소장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입목수량 및 가격산출근거와 설명서를 제출받아 검수
- 조림대부·분수림의 수대부자 등이 자부담으로 설치한 기반시설(임도)에 투자비용 보전을 위하여 현존가치를 감정 평가하여 가격결정에 반영

o 대부지(분수림) 소멸통지 및 국유림 종류 재구분

- 입목대금 지급과 동시에 수대부자 등에게 서면으로 대부계약(분수림 설정)이 소멸되었음을 통지하고, 요존국유림(행정재산)으로 국유림 종류 재구분

## 라. 추진일정

o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사업계획 공고 : 2012. 1월

o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추진 및 결과보고 : 연중

# 9. 국가소송 및 국유재산 권리보전

목 표

◇ 국가소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유재산권 보전
◇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이행 철저로 소유권 확보
◇ DMZ일원 지적복구토지 산림청소관 국유화로 국유림확대

## 가. 정책여건

o 정보공개 등 사회여건 변화로 국가소송은 감소되고 있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국유화된 무주부동산 및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소송이 증가

o 일선 소속기관 국가소송 수행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대응능력 미흡

o DMZ일원 지적복구 임야에 대하여 산림청소관 국유림으로 취득관리 필요

## 나. 기본방향

o 전문성이 부족한 국가소송 수행자의 실무능력 배양

o 지방청 소송수행에 대한 본청의 지원·감독·평가기능 강화

o DMZ일원 지적복구 임야에 대한 산림청소관 국유화 추진

o 소유권 확보 조치 미정리된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 마무리 완결

## 다. 세부추진계획

### 1) 국가소송 수행자의 소송대응 능력 배양

o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소송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o 관할 검찰청의 국가소송 실무교육 이수

o 기 발간 배부한 국가소송관련 업무편람을 적극 활용 실무능력 향상
- 국가소송업무편람, 국가소송백서, 국유재산등기 실무편람

### 2) 국가소송 승소율 제고

o 소송가액이 높거나 규모가 큰 재산은 본청과 지방청이 공동수행
- 소송가액 10억원 이상, 면적 100ha 이상

o 산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송이나 복잡한 유형의 고액소송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
- 골프장 대부료 관련 소송, 헌법소원 청구사건 등

o 지방청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은 본청과 연계 공동대응

o 수시로 정부법무공단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 제고

### 3) 국가소송수행 지휘체계 확립

o 국가소송의 소제기, 응소·판결 등 진행상황 보고 철저로 공동대응 강화

o 국가소송 수행자의 불변기간도과 등 소송해태사례 방지 철저

o 국가소송 사건 처리부 및 소송기록부 작성 비치
- 산림청 훈령 제966호 서식

### 4) DMZ일원 지적복구 임야 산림청소관 국유화 취득 추진

o 지적등록대상 지역 중 지적복구가 진행중인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지역 임야의 산림청소관 중앙관서 지정

o 지적등록대상 : 5개군 807필지 25,954ha
- 연천 2,863, 고성 7,569, 철원 9,083, 양구 4,146, 인제 2,293
  ※ 연천군, 고성군 지역은 '11년도에 완료되어 중앙관서 지정 신청

o 철원·양구·인제군 지역 지적복구 완료 후 산림청소관 중앙관서 지정
- 지적소관청과 협의 무주부동산공고 지방청 직접 추진

### 5)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o 권리보전조치 점검결과 후속조치 대상재산의 소유권확보조치 마무리

o 권리보전조치 유형별 미 정리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여 정리

o 토지(임야)대장·국유재산대장·등기부·지적도등 지적공부 확인철저

## 라. 추진일정

o 국가소송 수행자 전문교육 이수 : 연중 수시

o 국가소송수행 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5일

o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후속조치 완결 : 2012. 6월말

o DMZ일원 지적복구 임야 산림청소관 국유화
- 소유자 등록을 위한 무주부동산 공고 : 2012. 2월
- 중앙관서지정 신청(조달청) : 2012. 10월

# 10. 지방산림청 업무효율성 제고

목 표

◇ 국유림행정 일선 기관의 원활한 운영지원으로 지방청·관리소의 업무효율성 제고

## 가. 정책여건

o 국유림행정 업무특성상 근무여건이 열악

o 현장중심의 업무로 자율과 창의적 활동이 요구

o 새로운 임업기술이나 선진화된 임업경영기법 등 각종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접촉할 기회가 부족

## 나. 기본방향

o 현장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장비 확보·지원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o 인센티브제 운영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o 내실 있는 해외연수로 국제적 안목배양 및 사기진작 도모

o 수련관의 안전관리 철저 및 쾌적한 편의제공 도모

## 다. 세부추진계획

### 1) 지방청 운영지원

o 국유림경영·관리분야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20백만원

- 본 청 : 국유림경영·관리분야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
- 지방청 : 우수경영팀 선발 포상

o 지방청 공무원 해외 정보교류 정책연수 실시

- 방문 국가에 대하여 현장 체험 등 정보교류를 통한 국제적 안목 배양
- 연수생들이 보람을 느끼고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계획 연수 추진

o 차량・프린터 등 행정장비 및 연구개발비 지원 : 489백만원
- 차량 구입 6대(화물 1, 승합 5) : 187백만원
・북부청 1, 동부청 1, 남부청 1, 중부청 2, 서부청 1
- 행정비품 교체(사무용비품, 프린터, 냉・난방기, 복사기 등) : 152백만원
- 산림사업 관학연구(북부, 동부, 남부) : 150백만원

### 2) 산림수련관 운영・관리

o 수련관 이용고객에게 최대한 편의 제공 도모

o 수련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
- 건물 등 시설물의 안전, 기능저하 등 하자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조치
- 건물 등 시설물 주변 또는 진입로 주변의 위험요소 사전 제거

o 수련관의 노후시설분야는 연차적으로 보수공사 추진
- 노후시설은 지방청별 대수선비 우선 반영 보수

o 수련관 운영관리
- 확보된 예산 활용 효율적 운영 → 예산낭비요인 수시확인 개선
- '12년도 운영예산 : 206,172천원

| 기관별 | 북부청 | 동부청 | 남부청 | 중부청 | 서부청 |
|---|---|---|---|---|---|
| 금액(천원) | 23,210 | 38,880 | 23,822 | 62,212 | 58,048 |

## 라. 추진일정

o 지방청공무원 해외 정보교류 연수 추진 : 2012. 상반기

o 신규 차량 구입(지방청) : 2012. 상반기

o 우수 경영팀 선발 지침시달 및 예산배정 : 2012. 11월

o 국유림경영관리분야 우수공무원 선발・포상 : 2012. 12월

o 수련관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점검(지방청) : 연간 2회

o 산림사업 관학연구 추진상황 및 결과 보고(지방청) : 상・하반기

# 11.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체계 정비

목 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종합계획』수립 및 생애 각 단계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가. 정책여건

o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림의 휴양·문화·교육 등 다양한 기능 발휘가 요구

o 종전의 경제·생태적 자원관리 관점에서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에 기반한 다양한 산림기능의 최적 발휘가 요구

## 나. 기본방향

o 산림복지 개념 정립 및 부문별 산림복지 방향 제시

o 출생기부터 노년기까지 산림을 통한 휴양·문화·보건·체험·교육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

## 다. 세부추진계획

### 1)「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종합계획」수립

o 산림의 휴양적 가치 활용과 건강·문화·교육 등 복지적 가치 확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종합계획」수립

- ‘산림복지 개념 정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용역’('11.12월 완료)을 바탕으로 산림복지 개념 정립 및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산림복지 방향 제시

o 종합계획을 토대로 산림복지 관련 정책 개선, 예산사업 발굴 및 지자체 산림부서에 전파 및 홍보강화

## 2) 생애 각 단계별로 휴양·문화·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출생기 | ⇨ | 유아기 | ⇨ | 아동·청소년기 | ⇨ | 청년기 | ⇨ | 중·장년기 | ⇨ | 노년기 | ⇨ | 회년기 |
|---|---|---|---|---|---|---|---|---|---|---|---|---|
|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 | 유아숲 체험원 운영 | | 산림교육 프로그램 확대 | | 산악레포츠 시설 운영 | | 자연휴양림, 산림치유공간, 조성·운영 | | 산림요양 서비스 및 자원봉사 | | 수목장림 확충 |

### 가) (출생기) 숲태교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탄생목 심기

o 산모 및 태아의 건강·감성 증진을 위한「숲태교 프로그램」운영
- 임신 24~36주 부부를 대상으로 명상·요가·숲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o 출생아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별로「탄생목 심기」추진

### 나) (유아기) 유아숲체험원 운영 확대 및 정비

o 도시인근, 접근성 및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아숲체험원 운영
- '12년에 국유림지역에 유아숲체험원 조성 시범사업(안전, 편의시설 위주)
- 공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유아숲체험원 신규 조성

o 유아숲체험원 등록 제도 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시행('12.7.26)
- 양성기관 지정 및 전문교육과정 기준, 유아숲 지도사 배치기준 마련

### 다) (아동·청소년기) 산림체험·교육 확대

o 주 5일 수업제에 대비한 학교내 산림교육 강화
- 초·중·고등 산림교육 교과서 개발·보급
- 지자체, 대학, 관련단체 등과 연계하여 토요 녹색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산림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산림청 '숲에 on' 및 교과부 'CRM(창의체험자원지도)'에 등재
- 학교 교장·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원산림체험과정 확대 운영

o 숲체원·어성전 산림교육장 등 청소년 교육시설 운영 활성화
- 녹색자금 및 정부예산 지원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및 소외계층에게 녹색체험 교육 기회제공
-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한 수련활동 등과 연계하여 운영 활성화 도모

o 숲사랑소년단을 체계적으로 육성
- 푸른숲선도원을 '숲사랑소년단'으로 개편하고 조직·운영, 사업범위, 보조지원, 조세감면 등의 구체적인 지원마련
- 소년단원 CI 등 심볼을 제정하고 산림학교, 그린캠프 및 해외 연수프로그램 등 소년단원 및 지도교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 라) (청년기) 등산·레저·문화 활동 지원 활성화

o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악레포츠 시설 조성
- 자연휴양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과 연계하여 산악레포츠단지 조성
- 임도 및 '국민의 숲'을 활용한 산악레포츠 유형별 코스 지정제 추진
- 관련단체를 통해 지역 및 전국단위 산악레포츠 대회 지속 추진

o 자연생태·문화 등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트레킹 숲길' 조성
- 숲길 조성을 확대하고 옛길·임도 등과 연계한 숲길 네트워크화

### 마) (중·장년기) 산림휴양·치유서비스 지원

o 지역별로 특색있고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 조성 확대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o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해 치유의 숲 확대 조성 및 운영
- 국립 3개소(산음, 장성, 숲체원) 및 공립 4개소(장흥, 화순, 순창, 영동) 조성

### 바) (노년·회년기) 산림 요양·장묘서비스 지원

o 장기체류형 휴양시설 조성·운영을 통한 산림요양 서비스 확충
- 산촌생태마을과 연계한 산림요양기능을 갖춘「산림요양마을」조성

o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확대
- 국유 수목장림(하늘숲추모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 공설 수목장림 조성 지원 및 수목장 실천운동 지속적으로 전개

## 라. 추진일정

o 치유의 숲 운영계획 수립 : 2012. 2월

o 탄생목 심기행사 추진 : 2012. 4월

o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종합계획 수립 : 2012. 7월

o 숲태교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연중

o 유아숲체험원 운영 확대 및 정비 사업 : 연중

# 12. 산림휴양서비스 제고

목 표

◇ 다양하고 차별화된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을 확대·조성하여 산림휴양기반 확충 및 서비스 수준 제고

## 가. 정책여건

o 여가시간 및 보건휴양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림휴양 수요는 계속 증가

o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에 대한 공익적 산림휴양 서비스 요구 증대

o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다양한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요구 증가

## 나. 기본방향

o 자연휴양림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발휘

o 휴양 수요 급증에 따른 산림휴양 및 야영 시설 지속 확충

o 노후화된 시설물의 보완 및 이용객 중심의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림휴양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산림휴양시설 조성

o 자연휴양림 : ('11년) 20개소, 117억 ⇒ ('12) 21개소, 188억
- 국립(2개소) : 경기(1), 전북(1)
- 지자체(19개소) : 경기(1), 충북(2), 충남(2), 전남(3), 전북(1), 경북(6), 경남(4)

o 산림욕장 : ('11년) 9개소, 18억 ⇒ ('12) 4개소, 9억
- 지자체(4개소) : 강원(4)

o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11년) 5개소, 55억 ⇒ ('12) 7개소, 106억
- 지자체(7개소) : 강원(1), 경기(1), 충북(1), 충남(1), 전북(1), 전남(1), 경북(1)

## 가)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 <자연휴양림의 지정 신청 및 고시>

o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에 제출
-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치도, 구역도,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각1부
- 자연휴양림 지정 타당성 평가서 1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에 따른 환경부 협의 서류 9부

o 자연휴양림 지정(변경) 신청 시 공고 및 열람, 주민의견 청취 등 지형도면 고시절차를 이행 후 신청
-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곳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신문게재와 동시에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내용을 게시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

※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2호)」 참조

### <조기착공 및 선금·기성금 등 조기집행>

o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동참하여 시설공사 기성금 등 조기집행
-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신규조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는 1월내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2월내로 완료하여 3월안에는 반드시 전 개소가 착공

o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성수기(7월) 이전에 제반사업 완료

o 공사완공 즉시 준공 검사하여 자금의 조기집행 촉진
- '11년도 불용 및 이월, '12년도 상반기 집행실적(60%이하) 부진개소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13년도 예산 신청 시 삭감 등 강력 조치

### <자연휴양림 설계·조성 및 보완사업의 체계적 추진>

o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사업비의 충분한 확보
- 사전환경(경관)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이행을 위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최초 조성(설계)시부터 체계성을 갖춰 부실화되지 않도록 추진

o 자연휴양림 설계 및 조성은 자연친화적이고 특성화·다양화되게 추진
- 숲속의 집 등 휴양시설은 이용요구에 따라 기와집, 초가집, 너와집 등의 전통가옥을 도입하여 특성화 및 다양화 추구
  ※ 특성화를 이유로 이용객의 선호도가 낮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시설 도입은 지양
- 시설물은 자연지형을 이용하는 등 산지전용 등이 최소화되도록 배치

o 자연휴양림 내 신·개축 및 보완 공사 시 목재 등 친환경자재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국산목재 등 목조시설 개발기술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제고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 개발한 목조시설용 프리컷 방식의 목조건축 기술 및 주차장용 목재 카스토프(Car-stoppr) 등 활용
- 친환경자재 사용 및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해 내·외단열공법을 적용하고 에너지 효과가 높은 LED 전등기구 등 자재 적극 활용

o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휴식년제 실시
- 보호나 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곳은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 자연휴양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고시 전에 산림청에 통보
- 인터넷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여 이용객의 혼선을 사전에 해소

o 자연휴양림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자연휴양림 조성 협의회」운용
- 협의회는 산림휴양·환경·건축·토목 등에 관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등 기관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
- 협의회의 임무는 개소별 자연휴양림의 설계와 조성에 대한 자문

<자연휴양림 조성 : 21개소>

o 산림휴양시설 조성 전에 지역기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성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할 것

o 기반시설은 목표 시설규모에 맞추어 초기에 조성(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하고 숙박시설은 기반시설 정비 후 연차적으로 시설 반영

o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부합여부 검토

o 공·사유 자연휴양림은「산지관리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이행
- 건축, 하천점용, 오수정화시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등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 추진

o 공·사유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권자 : 시·도지사(국립은 산림청장)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즉시 산림청에 결과 보고

o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설계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설계내역대로 공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철저
- 통나무 자재로 숲속의 집 등을 조성하는 경우 자재에 대한 검수 철저
- 시·도(시·군)에서는 사유자연휴양림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산림소유자로부터 준공계를 제출받아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 실시

o 안내표지판, 해설판, 수목표찰 등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치 장소와 이미지가 맞게 자연휴양림 C·I 모델을 이용하여 설치

<자연휴양림 보완 : 25개소>

o 시설확충은 가동률이 높고 이용자수 증가가 예상되는 자연휴양림에 시설별 투자수익성 및 잠재 수요에 따라 선택과 집중(자연휴양림별 완결원칙)

o 자연휴양림별로 이용자 불만족도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보완 추진

o 제반 보완사업은 연초에 착수하여 성수기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o 숙박, 위생시설, 고객안전, 유니버셜디자인 등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보완

<사유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관리>

o 자연휴양림 기초시설 조성·보완, 인터넷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재정지원
- '12 사유자연휴양림지원 : 10개소 1,000백만원(국비 500, 자부담 500)
- 대상사업 : 사유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기초시설 조성 및 보완
- 보조방법 : 자연휴양림 운영 상태에 따라 조정 지원(국비 50%, 자부담 50%)
- 신청대상 :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 중인 자
- 신청서 제출 : 사단법인 자연휴양림협회
※ 자연휴양림협회장은 국비보조금 신청내용을 취합하여 산림청에 제출
- 사업 관리 주체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사)자연휴양림협회

o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배치

o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유도를 위한 사유자연휴양림 평가(연중)
- 평가기관 : 산림청, 사단법인 자연휴양림협회, 외부전문가 등
- 평가지표 : 시설의 관리실태, 가동률, 투자대비 이용자 증가율, 고객 관리실태, 프로그램 운용실태, 전화친절도, 이용만족도,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및 기여도, 자체홍보 노력 등 운영 전반
- '11년 평가결과로 자연휴양림별 '12년 기초시설지원 예산 대상 선정

o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산림조합과 사단법인 자연휴양림협회에서는 보조 및 융자사업 계획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감독 강화
- 휴양림 조성주체간 정보교류 및 조성·운영관련 기술발전을 위하여 「휴양림 협의회」분기별 개최 : 산림청, 국립휴양림관리소, 지자체자연휴양림 및 관계자 참여

## 나) 산림욕장 조성 및 운영

<대상지 선정>

o 1단지의 면적은 5ha이상

o 도심에서 가까운 산림으로 지역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

<조성 및 관리·운영 : 조성 4개소, 보완 3개소>

o 공·사유림의 소유자 등이 산림욕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산림욕장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성

o 시·도지사가 산림욕장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

o 야생화 등 자생식물 식재, 야생화 등 다양한 숲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방과 후 숲속교실로 적극 활용

o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 및 야생화 등을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

o 간이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때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유의
- 특히, 목재로 시설하는 경우 방부·방충 처리 적정여부 등 충분히 검토

o 각종 안내판 및 해설판 등은 반드시 설계에 반영, 자연휴양림 이미지 형성사업(C.I) 추진요령에 의거 제작 설치

o 성수기에는 가급적 관리 및 안전 인원을 배치하여 시설물의 점검, 오물청소 및 산불 감시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이용실적을 파악하여 연간 이용현황 작성

<산림욕장 조성 및 운영관리의 체계화>

o 신규조성 및 보완사업은 조기 착공, 성수기 이전에 완료

o 도시 근교형 산림욕장은 주변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숲체험·산림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추진
- 어린이, 장애우,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우선도입
※ 산림욕장 운영실태를 파악하여「산림욕장 활성화 계획」수립

### 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추진>

o 산림생태・휴양・문화・교육 등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휴양단지로 조성
  - 2013년까지 도별 1개소씩 조성하고, 2020년까지 1개소씩 추가 조성

o 기 조성중인 개소(영덕・보성)는 현행대로 일반회계로 추진하고, '10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개소부터는 광특회계로 추진

<대상지 선정>

o 사업대상자 : 시・도, 시・군

o 사업규모 : 개소당 1단지의 면적이 100ha이상

<2012 사업 계획 : 설계 1개소, 조성 7개소>

o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승인 전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

o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시행 주체가 변경 후 시・도지사에게 통보

< 행정사항 및 사후관리 >

o 특성화 및 설계부터 준공까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성 협의회' 운영
  - 협의회는 산림휴양・환경(생태)・건축・토목 등에 관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등 기관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
  - 협의회의 임무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o 시・도지사는 반기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점검
  - 지도・점검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o 사업시행 주체는 매년 사업추진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보고

## 2) 산림휴양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개선

o 성수기와 비수기 및 주말과 주중의 '이용요금 차등제'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

o 지역여건, 주변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자연휴양림별 비즈니스모델' 개발

o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등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o 노약자, 장애우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 운용 등

o 방문자안내센터를 통한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 및 지역관광·축제와 연계한 홍보활동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o 한국관광공사, 교육청 등 관련기관(단체)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연수, 워크숍, 체험학습 등 단체고객 유치

## 라. 추진일정

o 자연휴양림 계속 및 보완사업 실시설계 완료 및 발주 : 2012. 2월

o 산림욕장 조성(보완)계획 수립 승인 및 공사 발주 : 2012. 2월

o 사유자연휴양림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12. 2월

o 사유자연휴양림보조금 집행점검 : 2012. 10월

o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사업추진상황 보고 : 2013. 1월

o 산림휴양시설의 지속적 확충 : 연중

o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정비 완료 : 연중

o 산림욕장 조성·보완 완료 : 연중

<참 고>

# 2012년도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보완 현황

## 가. 자연휴양림

| 구 분 | 사업량 | 사 업 비 (백만원) | 개 소 별 |
|---|---|---|---|
| 합계 | 83 | 42,582 | |
| 조 성 | 21 | 18,841 | |
| <1년차> | 4 | 4,111 | 경기(양주 1,500), 충남(공주 1,411), 전남(목포 500), 경남(하동 700) |
| <2년차> | 7 | 8,178 | 경기(의왕 300), 충북(진천 1,000, 괴산 1,340), 전북(변산 2,500)<br>전남(구례 500), 경북(칠곡 1,790, 영양 748) |
| <3년차> | 10 | 6,552 | 충남(논산 1,257), 전북(진안 500), 전남(여수 500),<br>경북(포항 500, 고령 800, 성주 680, 김천 500)<br>경남(창녕 900, 산청 715, 함양 200) |
| 보 완 | 62 | 23,741 | 국유(유명산 등 36개소 14,670)<br>대전(서구 400, 동구100), 경기(용인 14), 충북(괴산 80)<br>충남(공주 200, 안면도 200, 금산 150, 부여30)<br>강원(춘천 450, 강릉 100, 양구 150), 전남(신안 1,200)<br>전북(완주 300, 장수 1,500)<br>경북(구미 200, 영천 500, 군위 180, 의성 200, 칠곡 400)<br>경남(도청 1,000, 합천 150)<br>제주(교래 300, 절물 300), 서귀포(붉은오름 467, 서귀포 500) |

## 나. 산림욕장

| 구 분 | 사업량 | 사 업 비 (백만원) | 개 소 별 |
|---|---|---|---|
| 산림욕장 | 7 | 1,820 | |
| <조성> | 4 | 900 | 강원(동해 200, 정선 200, 평창 200, 고성 300) |
| <보완> | 3 | 920 | 강원(영월 100), 전북(진안 500), 전남(해남 320) |

## 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 구 분 | 사업량 | 사 업 비 (백만원) | 개 소 별 |
|---|---|---|---|
| 합 계 | 8 | 10,645 | |
| 설 계 | 1 | 550 | 경남(의령 550) |
| 조 성 | 7 | 10,095 | |
| <1년차> | 2 | 3,850 | 경기(가평 1,300), 전북(무주 2,550) |
| <2년차> | 3 | 3,245 | 강원(백두대간 1,200), 충북(증평 500), 충남(금산 1,545) |
| <3년차> | 1 | 1,500 | 전남(보성 1,500), |
| <4년차> | 1 | 1,500 | 경북(영덕 1,500) |

# 13. 국립자연휴양림 경영 개선

목 표

◇ 효율적인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와 주중 가동률 제고로 자연휴양림 경영을 개선하여 기관 자립도 향상

## 가. 정책여건

o 매년 누적되는 적자해소를 위해 경영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 필요

o 건강과 가족 중심의 여가지향 등으로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 요구 증가

o 이용수요의 증가와 함께 산림휴양시설 운영의 합리화 및 서비스 개선 요구 증가

## 나. 기본방향

o 맞춤형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주중 가동률 제고

o 특성화된 자연휴양림 조성·운영으로 자연휴양림 이용률 향상

o 합리적인 예약정책 운영 및 정보이용 편의 개선으로 만족도 증진

## 다. 세부추진계획

### 1) 다양한 홍보와 맞춤형 마케팅 추진으로 주중 이용 활성화

o 고객관리 전략체계 수립 및 전략을 바탕으로 한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주중 이용률 제고

- 고객유형별 맞춤형 홍보·마케팅 전략 추진으로 이용률 증진
- CRM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효율적인 고객관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 기업연수, 수학여행 등 학교, 기업의 단체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

o 지역 축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 실시 및 홍보 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효과 극대화

-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각종 행사·축제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언론매체 및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VR파노라마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On, Off-line 홍보활동 강화

## 2) 합리적인 예약정책 운영으로 예약 만족도 증진

o 예약 편의성 증진을 위한 예약제도 변경 및 예약시스템 기능 개선

- 일반객실과 야영장의 이원화된 예약방식 일원화
  - ·객실의 매월 1일, 3일 권역별 선착순 예약과 야영장의 1개월전 매일 예약제도의 일원화로 정보예약시스템 안정화 및 이용객 편의 도모
  - ·6주간을 기준으로 화요일 휴무제를 이용한 매주 주간단위의 예약제 실시
- 야영장 인터넷 예약과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 기능 개선
  - ·야영장 예약 시 데크, 입장료, 주차료를 합산한 결제방식 도입
  - ·예약 미 이행 고객에 대한 위약금 부과로 선진 예약문화 정착 및 민원해소

o 자연휴양림 체류기간의 다변화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이용자의 수요 충족

- 현재 3박 4일까지로 제한된 이용기간을 1개월까지 체류(1회 연장 가능) 할 수 있는 객실 운영 방안 마련(권역별 1개소)

o 자연휴양림의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 시설물 관리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가격 산정 및 시설사용료 인상

-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사용료 인상 추진(평균 7.5%)
  - ·숲속의 집 10%, 산림문화휴양관 5.6%

## 3) 다양한 산림휴양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휴양복지 서비스 제공

o 지역별 분산된 자연휴양림별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 산림문화축제인 '휴 페스티벌' 정례화 추진

- 권역별 순회 개최로 산림휴양문화 확산과 국립자연휴양림 이미지 제고

o 체험형 문화수요에 부응하고자 지리 · 환경적 특성을 이용한 각 자연휴양림별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산림문화 프로그램의 정착화 · 활성화

- 지리산 '한지체험', 산음 '치유의 숲', 삼봉 '건강약수여행', 대관령 '숯가마 체험'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o 산림을 통한 휴양 · 문화 · 보건 · 체험 · 교육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

- 숲을 통해 감성과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숲 유치원' 운영
- 교육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자연휴양림을 찾아올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반영한 주제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운영

o 방문자 안내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고객 편의 및 만족도 제고 도모
-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도서 비치, 음수대, 인터넷 검색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산림의 중요성과 올바른 산림이용에 대한 교육 및 숲해설, 목공예 체험 등 자연휴양림 관련 각종 정보 제공
- 지역특산물 직거래 장터, 자연휴양림 운영정보 및 주변 관광지 소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3개소)

### 4) 휴양수요를 감안한 휴양시설 조성 및 에너지 절약형 기술 도입

o '상당산성 자연휴양림' 개장으로 중부권 산림휴양수요 충족
- 내부도로포장, 화장실 등 위생시설 조성을 통해 성수기 전 개장 추진

o 숲과 바다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해안생태형 자연휴양림 조성(전북 변산)
- ('11) 토목공사(15억) → ('12) 건축공사(25억) → ('13) 건축・조경공사(10억) → ('14년) 개장
- 입지적 여건을 적극 활용한 해수풀장, 갯벌체험장 등 특화시설물 조성

o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의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아세안 국가와의 상호우호 증진을 위한 '아세안 산림휴양단지' 조성(경기 양주)
- ('11) 실시설계(2억) → ('12) 토목・건축공사(15억) → ('13) 건축공사(40억) → ('14년) 개장

o 장애인・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숲체험 기회 확대
- 장애인・산모 숲체험 환경개선사업 : ('11) - → ('12) 20억(1개소)
- 학계, 관련단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상지 선정 및 추진방법 결정

o 에너지절약 기술을 접목한 저탄소・고효율의 청정 산림휴양시설의 조성
- 2011년에 조성한 에너지절약형 숲속의 집(운문산)의 운영 효율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확대여부 판단
- 고효율 단열재, 단열창호, 상시 전원차단장치 등 에너지 절약 기자재 설치
- 바이오매스 연료인 목재펠릿 보일러 등의 활용으로 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부응

## 라. 추진일정

o 주중 이용 활성화방안 마련 : 2012. 3월

o 아세안 산림휴양단지 착공 : 2012. 4월

o 시설사용료 협의 및 책정 : 2012. 5월

o 자연휴양림 시설 조성・운영 : 연중

o 자연휴양림 다양화・ 특성화 추진 : 연중

# 14. 산림교육 활성화

목 표

◇ 국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산림교육 활성화

## 가. 정책여건

o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 증대

o 특히, 유아숲생태 교육의 필요성과 청소년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체험 활동 위주로 교육정책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산림을 통한 교육수요가 증가

## 나. 기본방향

o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종합계획 수립

o 산림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숲사랑소년단의 체계적 육성

o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체험 위주의 녹색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시행('12.7.26)

o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절차 및 유아숲지도사 배치기준 마련
- 입지조건(접근성 등), 숲다양성, 안전성, 조성규모 및 시설종류 등 규정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유아숲지도사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
- 유아숲체험원 참여 유아의 수를 감안하여 유아숲지도사를 차등 배치

o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및 산림교육전문가 자격기준 및 절차 마련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의 지역별 편중 및 과다 양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성기관의 시·도단위 지정계획 수립
- 산림교육 전문 교육과정, 교육시설, 전문인력 및 평가수단 구성 등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 마련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시간 및 활동내역 증명 등 절차 마련

o 산림교육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 산림소유여부, 강의실·실습장·도서실 등 기본시설 및 휴게실·기숙사 등의 지원시설 유무,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 2)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구성·운영

o 제정 법률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산림교육정책 마련
- UNDESD(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연계한 산림교육 종합계획 수립
※ 한·일·독 숲교육 공동프로젝트 및 기획과제 추진('12~'14)

o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산림청 차장)을 포함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
- 기재부, 교과부, 행안부, 문광부, 여가부, 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공무원과 산림교육 업무관련 소속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 산림교육종합계획,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교육프로그램 인증, 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지정, 산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 3) 숲사랑소년단을 체계적으로 육성

o 산림교육법에 따라 푸른숲선도원을 숲사랑소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특수 법인화하고, 정부 지원체계 마련 및 민간후원 유도
- 자생력을 갖도록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
- 산림관련 청소년 공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유치

o 숲사랑소년단 지역단위 조직 확충 및 수련활동 등 프로그램 활성화
-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로 지역회를 확대하고 지역간 정보 교류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

o 지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운영

o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일체감, 자긍심 조성을 위한 CI 등 심볼 제정

## 4)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

o 도시인근 등에 접근성 및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아숲체험원 신규조성
- 조성계획 : ('12) 5개소, 5.3억원

o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접근성이 용이한 국유림내 공간 정비사업
- 우선적으로 대피소, 화장실, 안전시설 등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정비
- 숲해설가를 확대 배치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o 유아숲체험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유아숲체험원 OL그룹 대상으로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유아숲체험원 참여 “그린 스티커” 확산 및 유아용 교육용 컨텐츠 개발·보급
※ 숲유치원 :「산림교육법」제정·시행 이전에 사용된 용어, 운영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
※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1.7.25.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성·운영하는 시설을 말함

## 5)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학교내 산림교육 강화

o 초·중학교 산림교과서 인정 및 고등학교 산림교과서 개발·보급
- ’10~’11년도 개발된 초·중학교 산림교과서를 지역교육청에서 인정받아 학교숲 시범학교, 청소년단체 등에 보급
- ’12년도에는 초·중학교 산림교과서와 연계될 수 있는 고등학교 2학년용 산림교과서 개발 추진

o 연속성·지속성 있는 산림생태 전문 프로그램 확대
- 지자체, 대학 등과 연계하여 산림자원, 산림생태, 산림문화 등 토요 녹색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경북환경연수원 “녹색사관학교” 등 우수사례 전파 및 대학의 “유소년 에코가이드 양성과정” 운영 예산 지원
※ 문광부, 보건복지부 “바우처”제도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방안 모색
- 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기관이 지역의 학교와 MOU 등을 체결하고 주기적인 산림교육·체험활동 전문 프로그램 제공
※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수목원, 생태숲 등 자연학습 장소 지원

o 창의적체험활동 및 교과 프로그램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산림체험·교육 프로그램 집대성하여 온라인 등으로 보급
- 산림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계층별, 유형별, 계절별 및 자율·동아리·봉사·진도활동 등으로 정리 또는 개발하여 ″숲에On″ 또는 교과부 “CRM”에 등재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과제 부여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용역사업으로 추진
- 집대성한 프로그램은 일선학교 및 소속기관, 청소년단체 등에 보급

o 학교교장·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원산림체험과정 확대 방안 마련
- 지역의 국·공립수목원, 산림환경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학교 교장·교원 등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 6) 숲체원, 어성전 산림교육장 등 청소년 교육시설 운영 활성화

o 녹색자금 및 정부예산 지원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녹색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모험, 야영, 치유 등 활동 프로그램 구성
- 산림학교, 녹색교실, 백두대간 생태탐방, 산림치유 캠프, 숲속음악회 등

o 초·중·고교생의 현장 학습프로그램 및 각급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한 수련활동과 연계하여 운영

o 숲체원 수탁자인 한국녹색문화재단을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수 법인화하여 재정적 지원기반 마련
- 황영철 의원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11.10.21)

### 7)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다양한 체험·학습 교재 개발·보급

o 민간부문의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지원을 통해 문제·참여형 프로그램 개발하고 학교 등에 보급
- 대학 등과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에 맞는 활동 교구 및 교자재 개발

o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 공모를 통해 숲해설·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
- 우수 프로그램은 숲에On 사이트에 등재하고 책자로 제작하여 보급

o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12년까지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산림체험 프로그램 개발
- 개발 프로그램은 산림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하여 보급

※ 계층별 산림체험 프로그램 개발
·'08년(초등), '09년(중), '10년(유치원), '11년(특수학교), '12년(고등)

## 라. 추진일정

o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 2012. 1~7월

o '12년 유아숲체험원 조성(정비)·운영계획 수립 : 2012. 2월

o '12년 유아숲체험원 조성(정비) 대상지 선정 : 2012. 2월

o 청소년 녹색체험교육 위탁사업 추진 : 2012. 2월

o 학교교원 산림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방안 수립 : 2012. 3월

o 고등 2학년용 산림교과서 개발 추진 : 2012. 4월

o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계획 수립 : 2012. 7월

o 숲사랑소년단 조직 및 육성 방안 마련 : 2012. 8월

o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구성 : 2012. 8월

o 유아숲체험원 국제 세미나 및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 개최 : 2012. 하반기

o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 연중

o 산림교육 종합계획 수립 : 연중

# 15. 자연친화적인 녹색문화 확산

목 표

◇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 서비스를 확충하고 다양한 산림문화 컨텐츠를 개발·보급

##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인 녹색문화의 확산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o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

## 나. 기본방향

o 숲해설가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로 숲체험 만족도 제고

o 국민의 숲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을 녹색문화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

o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조사·발굴 및 보존·관리 추진

## 다. 세부추진계획

### 1) 숲해설가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

o 숲해설 수요에 맞춰 지역별, 계절별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

- 숲해설가를 탐방객, 시설 규모,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o 숲해설가 양성기관과 연계하여 숲해설가 소양교육 개설·운영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신규 및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
- 강의형태의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자 참여방식의 다양한 소주제 워크숍 및 체험교육 등을 상반기에 개최

※ 하반기에는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를 통해 숲해설가의 전문성 강화 및 자질 향상

o 숲해설 교재, 보조자료 등 보급 확대 및 정보교류 활성화
- 숲해설 관련 책자, 숲해설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 개최 및 온라인 카페 등 개설 운영

## 2) 숲에On을 통한 산림문화 서비스 확대

o 온라인을 통한 주제별 숲해설 동영상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

o 주요 명산에 대한 기본정보 및 등산로, 레포츠 정보를 웹 GIS로 제공 확대

## 3) 숲사랑체험관 운영 활성화 및 국민의 숲 정비

o 지역 유치원 및 학교 등의 협조 및 홍보 등을 통해 숲사랑체험관 운영 활성화
- 목공예 참여 및 작품 전시 등 이용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각종 전시물을 수시로 교체하여 이용객의 관심도 및 이용율 제고
- 어린이 등 주요 이용객의 수준에 맞는 해설 및 체험 서비스 제공

o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숲을 체계적으로 정비
- 체험의 숲, 레포츠의 숲, 단체의 숲 등 부문별로 특색화된 지역 집중 정비

## 4)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조사·발굴 및 보존

o 지역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국유림내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추진
- 지역의 전문단체 등과 협력하여 전국의 봉수 및 산성실태조사 추진
- '08~'11년까지의 실태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DB화하고 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제도 운영
  ※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유무형 산림문화자산 지정 추진
-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위치정보(GPS), 재원, 보존상태, 입지여건 등

o 보존·관리가 필요한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시설 설치

## 5) 다양한 산림문화행사 등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o 효과적인 중앙 및 지방 산림문화축제 개최·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계절별·유형별·대상별·주체별 산림문화행사 개최·지원계획 마련
- 생애주기별 산림문화행사 추진계획 마련
  ※ 마사회 특별 적립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o 산모 및 태아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숲태교 프로그램 및 탄생목심기 행사 추진
  - 관련 단체 및 대학과 연계하여 전국 국·공립자연휴양림에서 임신 2436주 부부를 대상으로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 조림예정지 및 도시숲 등에서 출생아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탄생목 심기」추진

o 산악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전국단위의 산악레포츠 대회 개최
  - 임도 및 레저스포츠길에서 산림청장배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대회 등 개최

## 라. 추진일정

o 산림문화행사 추진 기본계획 수립 : 2012. 2월

o 제11회 산의 날 행사 등 산림문화행사 : 2011. 3~12월

o 숲해설가 소양 교육(신규, 심화과정) : 2012. 4월

o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추진 : 2012. 4~11월

o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정 : 2012. 하반기

o 숲사랑체험관 운영 및 국민의 숲 정비 : 연중

o 숲에On 콘텐츠 확충사업 추진 : 연중

# 16. 산림치유 활성화

목 표

◇ 산림자원의 보건의학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산림치유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녹화에 성공한 산림자원을 국민건강 자산으로 활용

## 가. 정책여건

o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증가로 치유의 목적으로 숲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는 추세

o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o 최근 산림치유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면서 산림치유 효과규명을 위한 연구 필요성 증가

o 산림치유 활성화 정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 등 제도정비 필요

## 나. 기본방향

o 국·공유 치유의 숲 확대 조성

o 치유의 숲 운영·관리체계 정립을 통한 운영 활성화

o 산림치유 효과규명 등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및 국민인식 확산

o 산림치유 제도정비 등을 통한 산림치유 정책추진 기반마련

## 다. 세부추진계획

### 1) 국·공유 치유의 숲 확대 조성

o 산림치유 환경이 우수한 생활권 주변 산림을 대상으로 지자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적극 지원

- ('11) 4개소, 3,800백만원 → ('12) 7개소, 3,375백만원(계속 4, 신규 3)

※ 4개소(충북 영동, 전북 순창, 전남 화순·장흥) → 7개소(전남 광양, 경남 합천, 제주 추가)

o 산림치유 수요와 입지를 고려하여 권역별 치유의 숲 조성계획 수립

- 접근성, 치유환경 등을 고려하여 단기방문형・장기체류형・산림테라피 단지 조성목표 설정

※ 7개권역 : 경기・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부경권, 호남권, 제주권

o 강릉「저탄소 녹색도시」내 국유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11～'13)

- ('11) 기본조사설계・토지매입 → ('12) 실시설계・토지매입

## 2) 치유의 숲 운영・관리체계 정립을 통한 운영 활성화

o 치유의 숲 특성별 산림치유 프로그램 마련 등 국유 치유의 숲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운영 활성화

- 생태・물리적 환경 및 이용 대상을 고려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 국유치유의 숲 : 산음 치유의 숲, 장성 치유의 숲, 숲체원 치유의 숲

o「치유의 숲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치유의 숲에 대한 운영 내실화를 통한 이용 만족도 제고

- 치유의 숲 세부운영 방법 및 치유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 규정

## 3) 산림치유 효과규명 등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및 국민인식 확산

o「산림치유 연구사업단」을 구성하여 산림치유 효과규명 등 다학제적 연구의 지속화 및 체계화 추진

- 통합의학・임학・보건학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추진

- 연구기관・대학・민간단체 등을 총망라한 산림치유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자문 청취

o 산림치유 효과를 계량화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추진

o 기획과제 등 연구결과는 연 1회 이상 세미나・심포지엄 등을 통해 발표하도록 의무화하여 산림치유에 대한 과학적 인식 확산

o 주요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산림치유 체험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민참여 제고

### 4) 산림치유 제도정비 등을 통한 산림치유 정책추진 기반 마련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도입된 산림치유지도사 제도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 양성기관 지정계획 및 양성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 하반기에 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 : 산림 및 보건·의료 전공자 중심으로 자격검증을 통해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검증을 위한 구체적 평가방법(과목, 합격기준 등) 마련

-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영역 확대(숲길, 보건소 등) 등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o 산림치유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산림치유 정책 협의회」 운영

- 정부(산림청·보건복지부), 임학·의학·한의학·보건학 등 관련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o 산림치유사업에 대한 민간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 활성화 유도

- 사유림 소유자가 치유의 숲 조성할 경우 예산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o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제도' 개선을 통하여 치유의 숲이 적지에 적합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선 및 체계 구축

- 치유의 숲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등

## 라. 추진일정

o 국유 치유의 숲 운영계획 수립 : 2012. 2월

o 산림치유지도사 제도 관련 후속 규정 마련 : 2012. 3월

o 산림치유 연구사업단 구성 : 2012. 3월

o 산림치유협의회 구성·운영 : 2012. 5월

o 산림치유 관련 법령 정비안 마련 : 2012. 6월

o 치유의 숲 조성 확대계획 수립 : 2012. 10월

o 산림치유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2012. 6월, 11월

# 17. 자연친화적인 수목장제도 확산

목 표

◇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친화적 수목장림 보급·확대를 통한 산림훼손 방지

## 가. 정책여건

o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과 국토 잠식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o 수목장 등 자연장 제도 도입에 따라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

o 수목장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사설수목장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증가

## 나. 기본방향

o 국유 수목장림(하늘숲 추모원)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o 공설수목장림 조성 지원 및 수목장 실천운동 전개

o 불법 사설수목장림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 다. 세부추진계획

### 1) 국유 수목장림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o '하늘숲 추모원' 위탁운영('09~'14) 연간 결과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마련

- 운영수지, 성과 및 미비점 등을 분석한 후 위탁운영 기간종료 이후 운영·관리 방안 마련

o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 모델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상황 등 연중 홍보활동 추진

### 2) 공설 수목장림 조성 지원 및 수목장 실천운동 전개

o 부지가 확보되고 민원이 해결된 지역의 경우 국고 50% 지원(광특회계)

o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한 경험과 기술 적극 지원

o (사)수목장실천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수목장 실천운동 지속 전개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실천사항 등을 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

### 3) 불법 사설 수목장림에 대한 단속강화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o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수목장림 조성과 관련된 산림 내·외 불법 산지전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산림부서와 장사업무 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전·사후 불법행위 적극 적발 및 사법처리
- 인터넷, 전단지 등을 모니터링하여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o 건전한 수목장림 제도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련업무(산지전용 및 장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목장림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하늘숲추모원 견학, 수목장림 취지 설명 등 현장간담회 개최

o 건전한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발굴
- 수목장림 조성기준 명확화, 조성에 장애가 되는 제도 발굴 및 관련법령 개정 협의 추진

## 라. 추진일정

o 하늘숲추모원 운영실태 분석 : 2012. 3월

o 하늘숲추모원 운영·관리 방안 마련 : 2012. 7월

o 수목장림 제도 이해를 위한 지자체 업무담당자 현장 간담회 개최 : 2012. 10월

o 불법 사설 수목장림 단속 및 수목장 실천운동 전개 : 연중

o 수목장림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협의 : 연중

# 18.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시범사업

목 표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산촌형 모델의 성공사례 창출

o '12년 1개소 완공, '13년 1개소 완공

## 가. 정책여건

o '09.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에 따라 '10년부터 4개 부처에서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추진

- 산림청(산촌형), 농식품부(농촌형), 행안부(도농통합형), 환경부(도시형)

o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 등으로 우리청을 제외한 3개 부처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청의 성공사례 창출이 매우 긴요한 상황

## 나. 기본방향

o 저탄소 녹색마을의 성공사례를 조기에 가시화

o 이를 통해 녹색성장을 산림분야가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o 산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 비용 절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모델 창출

## 다. 세부추진계획

### 1) 시범사업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완료

o 1차 시범사업(경북 봉화)은 2012. 10월말까지 마무리

- 사업기간('10～'12), 총사업비(53억원, 국고50%, 지방비30%, 자부담20%)

o 2차 시범사업(강원 화천)은 2013. 10월말까지 마무리

- 사업기간('11～'13), 총사업비(53억원, 국고50%, 지방비30%, 자부담20%)

### 2)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매뉴얼 발간

o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과제로 사업 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o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미비점 보완·개선대책을 반영한 사업매뉴얼을 '14년 상반기까지 마련

### 3) 산림탄소순환마을 확대 보급방안 강구

o 민·관 합동으로 시범사업의 성과 및 미비점 등을 정밀 분석
- 외부전문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 등과 협력하여 사업전반을 심층분석
-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여 개선발전 방향 도출

o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14. 하반기까지 확대 보급방안 수립
- 태양광 등 타분야 신재생에너지의 산림탄소순환마을 적용, 목조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대상지 선정의 기준 등 마련

## 라. 추진일정

o 2차 시범사업(강원 화천) 공사 착공 : 2012. 3월말까지

o 1차 시범사업(경북 봉화) 완공 : 2012. 10월말

o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현지지도·점검 : 연중

o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 연중

# 19.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목 표

◇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의 운영·관리 활성화를 통해 산촌의 새로운 활력 제고

## 가. 정책여건

o '95년~'10년까지 전국적으로 240개의 산촌생태마을 조성
- 강원 50, 경기 22, 충북 23, 충남 29, 전북 38, 전남 24, 경북 34, 경남 20

o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10년부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예산 편성체계 개편
-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시·군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

o 지금까지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의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 국무총리실 주관 특정과제 평가시 미흡마을 퇴출방안 등이 필요함을 지적

## 나. 기본방향

o 기조성된 산촌생태마을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실태를 진단
- 농어촌체험마을 사후관리 공통 적용지침(농식품부 등 5개 부처 합동)에 따라 2012년부터 2년 주기로 마을평가 실시

o 평가결과를 토대로 마을별 수준을 유형 구분(성공마을, 발전마을, 미흡마을)하여 차등 지원 및 관리 기준 마련

o 성공마을·발전마을은 집중육성하고 미흡마을은 퇴출하는 등 산촌생태마을 발전방향 모색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실태조사 실시

o 농어촌 체험마을 사후관리 공통 적용 지침(관계부처 합동)을 반영하여 실태조사 지침 마련

- 운영의 체계성, 시설 수준의 적합성, 서비스 수준의 적합성, 이용자 만족도, 산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적 등

o 도 주관 하에 시·군과 합동으로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평가항목에 따라 '12. 5월 중 전수조사

### 2)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활성화 방안 수립

o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공마을, 발전마을, 미흡마을로 유형화

- 평가결과 80점 이상은 성공마을, 79~60점은 발전마을, 59점 이하는 미흡마을로 분류

o 유형구분에 따라 마을별 특성에 맞는 발전방향 정립

- 성공마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홍보지원 등을 통해 집중 관리
- 발전마을에 대해서는 교육, 컨설팅,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등 지원을 통해 성공마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미흡마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추진의지에 따라 1년후 재평가 또는 퇴출할 것인지를 진단하여 조치

### 3) 운영·관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

o 성공마을·발전마을 위주로 체험 프로그램 보급, 컨설팅, 숲가꾸기 및 산림소득사업, 운영매니저 배치,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 지원

-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집 발간 배포, 언론사 기획홍보 등 적극 추진

o 퇴출마을은 홍보, 교육, 운영매니저 등 지원을 중단하고 간판철거·각종 홍보매체 문구사용 제한 등의 조치 강구

- 산촌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등에서 제외하도록 관계부처·기관에 통보
- 산림청,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게시물 삭제 등

### 4) 산촌생태마을 사후관리 강화

o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비치

o 당초 사업 목적대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시·군 담당자가 분기별 1회 이상 사후관리 상황을 확인·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각종 시설물·장비를 사적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

## 라. 추진일정

o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실태 조사 지침 시달 : 2012. 3월말까지

o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실태 전수조사 : 2012. 5. 1~5. 30

o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활성화 방안 수립 : 2012. 6월말까지

o 미흡마을에 대한 퇴출조치 등 시행 : 2012. 7~9월

o 성공마을에 대한 사례집 발간 배부 : 2012. 8월

o 성공마을, 발전마을에 대한 기획홍보 : 연중

# 20.「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조성사업 추진

목 표

◇ 산림치유의 연구, 교육, 체험, 체류 기능을 연계한 백두대간 테라피단지를 조성하여 산림치유 확산의 기틀 마련

## 가. 정책여건

o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과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 증가

o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이 치유효과의 한계를 보이면서 자연치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

o 백두대간 등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치유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수립해야 할 시점

o 산림치유의 연구, 교육, 체험, 체류 기능을 연계하는 세계 최초의 산림치유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 나. 기본방향

o 자연환경을 산림치유와 연계하면서 지형훼손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이고 친인간적인 테라피단지를 조성

o 연구시설, 치유시설, 지원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산림치유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산림치유 효과를 극대화

o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백두대간 낙후지역의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모델을 제시

## 다. 세부추진계획

### 1)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사업 개요

| |
|---|
| o 위　　치 : 경북 영주시 봉현면, 예천군 상리면 옥녀봉 일원<br>o 면　　적 : 2,889ha(중심시설지구 152ha)<br>o 총사업비 : 1,598억원(토지매입274, 시설공사1,084, 기타240)<br>o 사업기간 : 2010～2014년(5년간)<br>o 주요시설 : 테라피연구센터, 건강증진센터, 치유수련원, 치유마을 등 |

### 2)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구축

o 토지보상 및 이주단지 조성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 구　성 : 5개 기관 실무자로 구성
  · 산림청, 남부지방청(영주관리소), 경상북도, 영주시, 예천군
- 운영시기 : '12. 1월～12월
- 처리할 사항
  · 테라피단지 중심시설지구 토지매입 및 이전등기, 불법행위 예방·단속 등
  · 이주단지 세부조성계획 수립,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 지원방안 마련
  · 오폐수 처리를 위한 영주시 하수처리장 연결방안 세부계획 수립
  · 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 등 주민요구사항 처리방안 마련
  · 테라피단지내 공동산림사업, 사방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방안 협의 등

### 3) 사유토지 보상 및 타부처 소관 국유지 관리전환

o 토지보상 및 수용절차 이행으로 '12년 말까지 보상업무 완료
- 매입 대상 : 654필지, 135ha(국유지 17ha 제외)
- 토지소유자 : 228명
- 토지보상 위탁기관(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자체와의 공조체계 유지
-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협의보상을 추진하되, 협의보상이 불가능할 경우에 수용절차 이행
  ※ 총매입비(274억원) : ('10) 6억원 → ('11) 116억원 → ('12) 152억원
- 추진 일정
  · 보상협의회 운영 및 협의 보상 추진('12. 1～6월)
  · 재결신청 및 재결보상비 지급('12. 7～11월)

o 타부처 소관 국유지의 관리전환 추진
- 남부지방청(영주관리소)에서 타부처 재산관리 부서와 관리전환 협의 추진
- 협의대상 토지 : 212필지, 316,177㎡(중심시설지구내 55필지, 101,815㎡)

· 국토해양부 : 134필지, 154,244㎡(중심시설지구내 42필지, 63,533㎡)
· 농림수산식품부 : 72필지, 150,813㎡(중심시설지구내 11필지, 32,765㎡)
· 기획재정부 : 6필지, 11,120㎡(중심시설지구내 2필지, 5,517㎡)

### 4) 사전 기초조사 및 기반공사 추진

o 문화재 발굴조사
- 조사기간 : '12. 5월~7월
· 시설물 대상지에 대한 토지를 우선 협의매수한 후 조사 추진(4억원)

o 지하수 영향조사 및 기반공사 추진
- '12년 공사비 : 79억원(지하수 영향조사 및 부지조성 기초공사)
※ 총공사비(1,084억원) : ('12) 79억원 → ('13) 502억원 → ('14) 503억원
- 지하수 영향조사 및 기반공사 추진일정
· 입찰 공고 : '12. 5~6월
· 입찰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12. 7~8월
· 지하수 영향조사 및 기반공사 착공 : '12. 9월~12월

### 5) 테라피단지 운영계획 수립

o 테라피단지 시설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운영방안 마련(3억원)
- 시설 및 인력 운영프로그램, 해당주민 고용대책, 지역사회 연계방안 등

### 6)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o 이주단지 조성으로 주민불안 해소 및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
- 조성계획 : 단지면적 31,256㎡(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 입주대상 : 이주희망자 12가구(이주대상 20가구)

o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개발
- 국유림을 활용한 산약초 재배 등의 소득사업 지원방안 마련
- 지자체(영주시 · 예천군)와 연계한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개발

## 라. 추진일정

o 중심시설지구 예정지 토지보상 : 2012. 1~12월

o 문화재 발굴조사 : 2012. 5~7월

o 테라피단지 기초조사 및 기반공사 : 2012. 9~12월

o 테라피단지 시설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운영방안 마련 : 연중

o 주민지원사업 개발 : 연중

# 21.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

목 표

◇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전문 임업인 선발 및 지원확대
o ('11까지) 4,576명 → ('12) 350명 선발

◇ 산주 및 은퇴자들의 경영참여 유도를 위한 자금지원 및 컨설팅 활성화
o ('11 지원) 100억원 → ('12) 150억원

## 가. 정책여건

o (대외여건) 탄소흡수원, 치유, 레저, 여가활용 등으로 산림의 중요성 증가
o (대내여건) 임가 인구의 고령화, 산주 중 전문 임업인이 극소수로 경쟁력 약화

## 나. 기본방향

o 산주 중 전문 임업인을 지속적으로 선발하여 사유림경영 주체로 육성
o 산림경영 참여 유도를 위한 산림경영컨설팅 추진
o 전문 임업인들과 지속적인 대화 및 경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육성

o 산주,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임업인을 선발·육성
- 전문임업인 : ('11까지) 4,576명 → ('12까지) 4,926명

o 사유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임업단체에 전문분야별 맞춤형 교육 실시(105백만원, 자부담 30%)
- 산학협력을 통해 소득 품목별 교육 및 정보교류 활성화(3개소 2억원)

o 전문임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표창 및 각종 행사 지원
- 독림가 하계연찬회 및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지원(56백만원)
- 식목일·산의날 등 각종 행사시 전문임업인에 대한 표창 실시
- 선진 임업국의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지원(16백만원)

## 2) 전문 임업인의 경영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 확대

o 전문임업인을 위한 맞춤형경영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자격요건 : 15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

  ※ 지원자격 완화 : 임야 소유 면적 20ha 이상 → 15ha 이상

- 지원내용 : 산림경영 현장 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및 경영장비 지원, 임도·작업로 시설장비 등 개인별 1억원 이내

  ※ 지원대상 확대 : 굴삭기 등 8종 → 기계톱 지원 확대

- 지원액 : ('11) 16억원 → ('12) 16억원

- 지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굴삭기의 경우 임야 소유면적이 50ha 이상인 전문임업인에게 지원토록 규정('11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o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임업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규제완화 추진

- 정책자금 지원 확대 : ('11) 100억원 → ('12) 150억원
- 정책자금 융자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집행지침상의 기준 완화
-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임업인을 위한 면세 확대 추진

## 3) 사유림에 대한 경영컨설팅 활성화 추진

o 산주의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컨설팅과 일반컨설팅으로 구분 실시

- 전문컨설팅 : 본청에 4개 권역별로 컨설팅위원회 구성(교수, 기술사, 지자체 등)
- 일반컨설팅 : 지방청과 관리소에 컨설팅팀 구성(지자체, 경영지도원 등)

o 산림조합중앙회 조직과 시스템을 활용한 사유림 경영컨설팅 활성화 유도

- cyber 산림경영시스템을 이용한 컨설팅 및 경영정보 제공 확대
- 산주와의 만남 행사 지원을 통한 사유림 경영컨설팅 추진(95백만원)
- 산림경영지도원(특화품목)을 활용한 사유림 경영지도사업 활성화 유도

o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사유림 경영컨설팅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컨설팅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예산 확보 등 운영기반 마련

o 임업인 및 품목별 생산자 단체들과 소통을 위해 현장토론회 등 개최

- 워크숍, 간담회 현장토론회 등을 반기별 1회 개최

## 라. 추진일정

o 산림경영모델학교(독림가, 임업후계자) 운영 : 2012. 3~11월

o 소통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반기별 1회

o 산림사업 유공자 포상 : 2012. 4월(식목일 전후)

o 산주와의 만남(컨설팅) 행사 개최 : 2012. 9월

o 독림가·임업후계자 선발 및 지원 : 연중
 - 시·도별 선발 실적 제출(2012. 12월말, 시·도 → 산림청)

o 사유림 경영컨설팅 활성화 방안 마련 : 2012. 12월말까지

# 22. 사유림 경영 기반 구축

목 표

◇ 공·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o ('11년까지) 1,897천ha → ('12) 90천ha

◇ 임업정책자금의 적기 공급을 위한 자금의 효율적 운영
o 실대출액 : ('11) 800억원 → ('12) 906억원(증 106억원)

## 가. 정책여건

o (대외여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필요

o (대내여건) 소유규모가 작고(3ha미만 84%) 투자의 장기성으로 신규 경영참여 난관

## 나. 기본방향

o 사유림경영 참여 유도를 위한 계획제도 내실화 및 자금지원 확대

o 건전한 산림사업 법인체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o 산림기술자의 적정 수급 및 능력 함양으로 사업 품질 향상 도모

## 다. 세부추진계획

### 1) 지속가능한 사유림 경영을 위한 민유림경영계획 내실화

o 전문임업인 및 일정규모 이상 산주들의 산림경영계획 작성 참여 유도
-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용 우선지원 : 90천ha
- 필지별 10ha 이상 산주에게 집중 권유 : 71천명, 1,975천ha

o 산주 및 산림조합 직원의 산림경영계획 작성 능력 배양
- 산림인력개발원, 임업훈련원 및 산림경영모델학교 등을 통한 훈련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요령 보급

o 산주의 관심제고를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혜택사항 홍보 강화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상속세 감면 및 산림사업 실행에 대한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 대상지 분류 등 홍보
- 산림경영계획의 중요성 및 인가·신청절차 등에 대한 홍보

## 2)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임업인의 소요자금 적기 공급

o 15년 이하 국고융자 대상사업을 이차보전 전환에 따른 혼선 예방
- 이차보전 전환 내역사업 명시 및 한도금액 등 명확히 규정
- 지원대상자 결정 후에도 지도·관리 강화를 통한 불용액 최소화
※ 융자 지원액 : ('11) 800억원 → ('12) 906억원(증 106억원)

o 정책자금의 관리 강화를 위한 운용실태 점검(농업정책자금관리단과 합동)
- 사업자선정, 대출금집행, 대출금 사후관리 등 점검(상·하반기 실시)
- 기타 우수사례 발굴 전파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o 임업인의 불만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 임야매입시 보전산지 비율 축소 및 이에 따른 영향 분석
- 보속생산을 위한 산림경영 적정면적 정립 및 제도개선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부터 임산물 구입한도 조정
-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자(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등) 기준 완화

## 3)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o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관리
- 산림사업법인 등록사항 및 산림기술자 자격 등록사항을 지자체, 국유림관리소 및 산림사업법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상시 지도·감독체계로 운영

o 산림사업 법인의 효율적 관리 및 지도 감독을 위한 제도 보완
- 산림사업법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수사나 조사를 개시한 경우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자진하여 취소할 수 없도록 개정 추진

o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상·하반기 실시)

o 산림정책 활용을 위한 산림사업별 수주실적 등 자료 조사 : 6분야 929개 법인
※ 산림경영계획분야 6개, 숲가꾸기분야 486개, 나무병원 130개, 산림토목 102개, 자연휴양림 11개, 도시림등 조성 194개

### 4) 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산림기술자 능력 함양 및 지도 강화

o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실태점검 및 산림기술자 이력 관리 : 4분야 20,751명

※ 산림경영기술자 15,128명, 산림공학기술자 5,105명, 목구조기술자 259명, 수목보호기술자 259명

o 기술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

o 지자체・국유림관리소 및 법인과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한 법인 상시 지도・감독체제 운영

## 라. 추진일정

o '11년 산림경영계획 작성 추진 상황 제출(시·도→산림청) : 2012.1.20일까지

o 2012년도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서 발간・배부 : 2012. 1월

o 산림사업종합자금 담당자 교육 실시 : 2012. 1월

o 산림사업 실행 주체별 산림사업 추진실적 보고 : 2012. 2. 20.

o 산림조합 자체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전 지급 : 2개월 단위

o 국고융자금 세부사업별 자금수요 파악 및 융자액 배정 : 매월 15일

o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실태조사(시・도) : 2012. 4~6월

o 산림기술자 교육 실시(지자체) : 2012. 5월

o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 추진 점검·지도 실시(산림청) : 상·하반기

o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실태 점검 실시 : 2회(상・하반기)

o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및 산림기술자 운영실태 점검 : 연1회

# 23. 산림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강화

목 표

◇ 산림조합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산주조합원 가입확대
o ('11까지) 290천명(59%) → ('12) 20천명 확대
◇ 산림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o ('11까지) 19개조합 → ('12) 5개조합, 25억원

## 가. 정책여건

o (대외여건) 산림사업법인 증가, 공개경쟁 확대로 사업수주 경쟁 치열

o (대내여건) 부재산주 증가, 산주조합원이 적어 산림조합의 정체성 모호

## 나. 기본방향

o 산림조합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산주 중심의 산림조합 역할 강화

o 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조합별 특화사업 개발 추진

o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대리경영사업 추진 및 산림경영지도 체계 개선

o 부실조합의 구조개선 사업 마무리 및 평가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주 조합원 확대를 통한 산주 중심의 산림조합으로 정착

o 산림조합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산주 조합원 가입확대 추진
- 조합별로 관내 산주 리스트를 작성하여 3ha이상 산주를 조합원 가입 독려
- 2013년까지 산주조합원 비율을 60%까지 확대
※ ('11까지) 290천명(59%) → ('12까지) 310천명(59%) → ('13까지) 330천명(60%)

o 산주조합원 가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및 홍보 활동 강화
- 조합원 가입 산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
- 우수조합 지도원에 대한 해외연수 등 포상기회 부여
- 산주의 조합원 가입 홍보물 제작·배부 및 신문 등 대중매체 홍보
- '산주와의 만남 행사' 등을 통해 자발적인 조합원 가입 유도

## 2) 산림조합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1조합 1특화사업 개발

o 건전한 산림조합 육성과 자립기반 조기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 지속 추진
- 산림사업이 공개경쟁체제로 전환되는 '15년까지 62개 조합을 우선 지원하고 2020년까지 전체조합으로 확대
  ※ ('11까지) 19조합 → ('12까지) 24조합 → ('15까지) 62조합(증 43조합)

o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합별 경쟁을 유도, 효과 거양을 위해 사업 내실화
- 본청 공모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전환
- 전반적인 특화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미비점 보완·개선

## 3) 사유림경영활성화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대리경영사업 추진

o 대리경영 계약면적 확대 및 계약임지 우선 사업실행 추진
- 계약면적 : ('11까지) 501천ha → ('12까지) 531천ha(증 30천ha) → ('30까지) 1,071천ha
- 사업실행 : ('11까지) 22천ha → ('12까지) 42천ha(증 20천ha) → ('30까지) 300천ha

o 대리경영사업의 지원절차 등 대리경영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 대리경영사업 실행지침 마련('11.7월 대리경영사업 보조금 정산요령 통보)
- 대리경영사업 별도 예산확보 및 조림, 벌채, 산림토목 등 사업범위 확대
- 산주부담 폐지 및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국고부담율 상향조정

o 임업인(산주), 산림조합, 지자체, 산림사업 법인 등에게 대리경영 참여 유도
-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참여 유도
- 숲가꾸기 산물 수집확대 및 단기소득임산물 식재 등 소득원 제공

## 4) 산림경영지도원 역량강화 및 운영체계 개선

o 친환경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요 증가에 따라 품목별 맞춤형 기술지도를 위해 일반지도원을 특화품목전문지도원으로 전환 확대 배치
- 일반지도원 전환 : ('07) 840명 → ('12) 820명 → ('13) 790명
- 특화지도원 확대 : ('07) 40명 → ('12) 60명 → ('13) 90명

o 임업인의 현장애로 기술 및 품목별 경영방법 등 지도원 역량강화 추진
- 교육이수 의무제 도입 및 특화품목별 기술보급서 발간·보급
- 국립산림과학원과 연계하여 신기술의 현장 전파 및 현장애로사항 합동 연구
- 관내 주요 임산물 생산 및 가격 동향 등 임업관측정보 획득
- 사유림의 대리경영제도 홍보 및 산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o 산림경영지도원의 사기 앙양 및 경영지도 품질향상 추진
- 산림경영지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확대
- 성과계약제 및 목표관리제 운영 등 종합계획 수립
- 산림경영지도 사업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정기평가 실시
- 산림경영지도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및 우수자 포상 등 활성화 도모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도원 배치 조정 및 인센티브 차등 지원(1,650백만원)
- 우수지도원 선진임업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확대

## 5) 부실(우려)산림조합의 구조개선사업 마무리 및 평가

o 경영상태가 부실(순자본 비율 2%미만 ~ -15%이상)한 5개 조합에 대한 경영개선 이행약정 체결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5년차)
- '12년도 경영개선자금 : 997백만원(국고 698, 중앙회 100, 조합 199백만원)

o 경영개선자금 지원조합의 MOU이행사항 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이행사항 점검과 부실우려조합 등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MOU약정관리비 지원)

o 자금이 지원되는 조합은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경영체제 확립

o 부실예방을 위한 경영상태 모니터링과 경영진단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
-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가 필요할 경우 외부감사 요청

## 6)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 및 책임경영 체제 확립

o 산림조합 간 인사교류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건·사고의 사전예방 및 조합 경영의 투명성 확보
- 인사교류 시스템을 설치하여 중앙회와 조합 간 인사교류 시행
- 클린센터 운영, 내부공익 신고제, 삼진아웃제 등 확대시행

o 상시감시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으로 부패·비리행위 사전차단

o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부실경영 예방
- 조합이 일정기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차기임원 출마제한
- 전 임직원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및 청렴도 평가 실시

## 라. 추진일정

o 산주 조합원 가입확대를 위한 3ha이상 산주 명부 작성 : 연중

o 2013년도 산림조합특화사업 선정 : 2012. 9～10월

o 대리경영사업의 지원절차 등 대리경영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 2012. 상반기

o 2013년도 대리경영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 2012. 9～10월

o 산림경영지도원 및 임직원 교육(기본, 전문) : 연중

o 산림경영지도원별 정원조정 고시 : 2012. 1월

o 산림경영지도 우수지도원 해외연수 : 2012. 10～11월

o 산림경영지도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2012. 10～12월

o 산림경영지도 우수사례 발표회 및 우수지도원 포상 : 2012. 11～12월

o '11년말 기준 산림조합 경영평가를 위한 약정관리 계약 체결 : 2012. 1월

o 부실(우려)조합 지정 및 적기 시정조치 등 경영개선 조치 : 2012. 4～5월

# 24. 단기임산물 산업화 기반구축

목 표

◇ 임산물 주산단지를 고려한 산지종합유통시설 지원
o ('11까지) 64개소 → ('12) 8개소, 30억원

◇ 임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 명품 개발 및 지원
o ('11까지) 39품목 → ('12) 12품목, 19억원

## 가. 정책여건

o (대외여건) FTA 시장개방, 대형유통계 성장 등으로 임산물유통여건 난관

o (대내여건) 생산규모 영세, 생산지역 분산, 단순가공품 유통 등으로 경쟁력 미흡

## 나. 기본방향

o 임산물의 안정성 강화 및 적정 가격유지를 위한 저장 및 유통시설 지원

o 임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등 가공분야 지원 확대

o 임산물 전자직거래 및 전략적 홍보 등 임산물 소비촉진 활동 강화

o 임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임산물 생산·유통, 수출입 등 다양한 정보제공

## 다. 세부추진계획

### 1) 임산물 주산단지를 고려한 수집·저장·가공·유통시설 지원

o 임산물 생산액이 많은 시·군위주로 수집·저장시설을 규모화 하여 지원
- 임산물 청정성 확보 및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시설지원 : 72개소, 862백만원

o 소비자에게 청정임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센터 등 지원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11까지) 64개소 → ('12까지) 72개소
  ※ (신규) 8개소, 3,000백만원, (보완) 5개소, 250백만원

o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박피기 등 기계화 가공 지원 : 300대, 300백만원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곶감, 밤 등 임산물을 대상으로 박피기 등 임산물가공 기계장비지원

o 임산물 유통차량지원 : 냉동탑차 28대, 168백만원, 화물차 21대 82백만원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생표고버섯, 복분자 등)의 신속한 운반을 위한 차량 등을 지원하여 유통능률 향상 및 효율제고

## 2) 임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상품개발 및 브랜드화

o 임산물 포장디자인개선 등 상품화 지원
- 일반임산물 153개소 733백만원, 특별관리임산물 8개소 500백만원

o 지리적표시 등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지원 : 12개소, 720백만원
- 지리적표시등록품목 및 친환경임산물 인증품목 등 차별화된 상품에 지원
- 명품브랜드화 디자인개발 및 저장 포장라인 시설보완

o 지역 특산 임산물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등록 추진
- 지리적특성을 가진 우수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임산물브랜드화 및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 등록완료 : 39품목(양양송이, 장흥표고, 산청곶감, 정안밤, 울릉도삼나물·미역취·참고비·부지깽이, 경산대추, 봉화송이, 청양구기자, 상주곶감, 창선고사리, 영덕송이, 구례산수유, 광양백운산 고로쇠수액, 영암대봉감, 천안호두, 문경오미자, 무주머루, 울진송이, 횡성더덕, 악양대봉감, 영동곶감, 가평잣, 홍천잣, 보은대추, 청도반시, 정선곤드레, 거제맹종죽, 태백곰취, 인제곰취, 덕유산 고로쇠수액, 진도구기자, 홍성참숯, 담양죽순, 무주 머루와인, 충주밤, 함양곶감)

- 심의 중 : 7품목(울릉도 우산고로쇠수액, 화순작약, 화순목단, 강릉개두릅, 철원두릅 등)

o 임산물 지리적표시등록제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지리적인 특성, 지역과의 연계성, 자체품질관리 등 안전성 심사강화
- 지지적표시등록품목에 대한 표준출하 등 예산지원 및 사후관리강화
- 지리적표시 편법운영근절을 위한 등록단체 운영실태 수시 지도·관리
- 지리적표시품 등록 전·후에 대한 생산과정(생산·가공·출하실태·가격차) 파악

### 3) 소규모 임가의 소득 증진을 위한 소비촉진 활동 추진

o 「e숲으로」 임산물 쇼핑몰인 임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49백만원
- 임산물 소비촉진으로 작물생산 확대 등 임업인 소득증대 유도

o 임산물 상품판매를 위한 홍보채널 구축, 유지보수, 교육훈련 등 지원 : 150백만원
- 식품박람회 등 규모 있는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o 부정임산물에 대한 단속강화
- 원산지 표시 및 불량임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지역별 합동지도단속 실시(산림청+농관원+지자체)
- 생산자협회 등을 중심으로 부정임산물에 대한 자율적인 모니터링 강화

### 4) 임업경영에 유익한 임산물 가격 등 유통정보 제공

o 주요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 유통 정보 제공을 위해 『임업관측』 추진
- 6품목(밤, 표고, 떫은감, 대추, 관상수, 산채류), 600백만원
- 생산·유통·가격 및 수출입 등 다양한 임산물정보제공으로 경영능력 향상

o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한 임산물 종합정보 제공(산림조합중앙회) : 352백만원
- 임산물 공판실적·수출입정보·가격정보 등 서비스 제공

o 우수하고 안전한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임산물표준재배지침 마련
- ('11까지) 39품목 → ('12) 6품목(하수오, 느릅나무, 산사나무, 기린초 등)

### 5) 임산물 품목별 규격 등 각종 제도개선 및 보완

o 밤, 떫은 감 등 주요 임산물의 표준출하규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 재배기술 발달 및 국제적 유통규격을 고려하여 개정('07.11월 최종개정)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운영상황에 대한 경영지도 및 경영분석 실시

o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적정수요 예측 및 규모화 연구실시
- 연구를 통해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및 운영방안 모색

o 「산림소득 운영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효율적 산림사업 관리
- 산림소득사업 D/B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 라. 추진일정

o 산림소득사업 담당자 교육실시 : 2012. 2월

o 임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 및 홍보 : 연중

o 임업관측 사업 및 생산자 등에 정보제공 : 연중

o 임산물지리적표시등록 추진 : 연중

o 산림소득사업 운영시스템 운영・관리 : 연중

o 임산물 지리적표시등록제도 관리실태 점검 : 2012. 3/4분기

o 임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 2012. 4/4분기

o 임산물표준출하규격개정 : 2012. 4/4분기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경영분석 : 2012. 1/4분기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적정수요예측 연구 : 2012. 4/4분기까지

< 붙 임 >

# 2012년 임산물유통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1예산안 | | 2012예산안 | | 형태 | 지원율 (국:지:융:자) |
|---|---|---|---|---|---|---|
| | 사업량 | 예산액 | 사업량 | 예산액 | | |
| 계 | | 11,402 | | 7,881 | | |
| o 임산물유통지원 【농특】 | | 11,174 | | 7,766 | | |
| - 임업관측 | 6품목 | 600 | 6품목 | 600 | 보조 | 100 |
| - 임산물유통DB운영 | 1식 | 352 | 1식 | 352 | 보조 | 100 |
| -「e숲으로」 임산물직거래장터 운영 | 1식 | 49 | 1식 | 49 | 보조 | 100 |
| - 임산물소득소비촉진 | 1식 | 150 | 1식 | 150 | 보조 | 100 |
|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12개소 | 6,000 | (신규)8개소<br>(보완)5개소 | 3,000<br>250 | 보조 | 50:20:-:30 |
| - 임산물HACCP적용지원 | 5개소 | 150 | - | - | 보조 | 50:20:-:30 |
| - 임산물유통기반지원(유통차량) | 35대<br>(냉동 20)<br>(일반 15) | 178<br>(120)<br>(58) | 49대<br>(냉동 28)<br>(일반 21) | 250<br>(168)<br>(82) | 보조 | 30:20:-:50 |
| - 임산물 상품화지원<br>('11년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 208개소<br>(일반200)<br>(특별 8) | 1,460<br>(960)<br>(500) | 161개소<br>(일반153)<br>(특별 8) | 1,233<br>(733)<br>(500) | 보조+융자 | 20:20:20:40 |
| - 임산물명품브랜드화 | 14개소 | 840 | 12개소 | 720 | 보조 | 40:20:-:40 |
|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100개소 | 1,200 | 72개소 | 862 | 보조+융자 | 20:20:20:40 |
| - 임산물 가공지원 | 195대 | 195 | 300대 | 300 | 보조+융자 | 20:20:20:40 |
| o 임산물유통지원 【광특-제주계정】 | | 228 | | 115 | | |
| - 임산물가공・유통시설 | - | - | - | - | 보조+융자 | 20:20:20:40 |
| - 임산물표준출하지원 | 13개소 | 95 | 8개소 | 82 | 보조+융자 | 20:20:20:40 |
| - 임산물저장건조시설지원 | 7개소 | 116 | 4개소 | 9 | 보조+융자 | 20:20:20:40 |
| - 임산물유통기반조성(차량) | - | - | 6개소 | 24 | 보조+융자 | 20:20:20:40 |
| - 임산물 HACCP 적용지원 | 1개소 | 17 | - | - | 보조 | 50:20:-:30 |

# 25.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목 표

◇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제도 조기 정착 추진

o 교육·홍보, 지도·계도, 시행상 미비점 도출하여 제도 개선

◇ 임산물의 품목별 단지화·규모화 지원

o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 ('11까지) 29개소 → ('12) 9개소

o 산림작물생산단지 : ('11까지) 81개소 → ('12) 12개소

## 가. 정책여건

o (대외여건) FTA 시장개방, 청정임산물 수요증가, 식품안전성 관심고조

o (대내여건) 생산지역 분산, 생산규모 영세, 시설 낙후 등으로 경영여건 열악

## 나. 기본방향

o 규모화·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o 임업인 개별지원에서 생산자 조직 또는 법인 경영체 중심으로 지원

o 안전하고 고품질의 임산물 생산을 위하여 품질관리 및 친환경 생산 지원 강화

## 다. 세부추진계획

### 1)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 조기정착 및 관련제도 정비

o 산양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생산과정확인제도」지원(6개소, 300백만원)

- 경위도 좌표를 측정하고 측정지점별로 샘플로 채취하여 농약검사
- 검사결과는 이력관리카드에 기록(분기별로 지자체에서 확인)
- 현장위주의 생산자기술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

o 산양삼의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포장자재비 지원(105개소, 504백만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o 산양삼 산업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HSK코드 신설('12.1.1 시행)

o 한국임업진흥원과 연계하여 품질검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 실시

o 가격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규격·등급기준·성분분석 기준 등 마련

o 연찬회 및 전시회 등을 통한 산양삼 바로 알리기 운동 전개

o 제도시행 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등 정비
  - 시료채취·품질표시방법, 생산신고 범위의 명확화 및 용어정의(산삼)

## 2)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

o 숲가꾸기사업지·조림예정지에 산나물·약초 또는 약용수종을 재배하여 숲을 가꾸면서 소득을 높이는 대단위산림복합경영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산림소득원 창출(9개소, 4,500백만원)

o 사업대상지
  - 조림예정지 : 벌채 전 또는 벌채 후에 산채·약용작물 파종
  - 숲가꾸기
    · 빛이 많이 투과되는 강도간벌지에는 양지성 산채·약용수종 파종
    · 빛이 적게 투과되는 약도간벌지에는 반음지성 산채·약용수종 파종

o 생산기반 시설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천연림개량, 임내정리) 등 숲가꾸기
  - 특용수, 약용류, 산채, 버섯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관리사 등
  - 산림복합경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창고(10평정도) 등 부대시설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

o 사업규모(1개소)
  - (지자체)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30ha이상
  - (임업인)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이상

o 사업실행방법
  - 총사업비 중 30%이상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나머지는 산림소득사업 창출을 위한 사업추진
    · 총사업비 중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60%이상), 종자·묘목구입(10%이내), 기타운영비(15%이내) 범위내에서 추진
  - 숲가꾸기의 경우「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시행지침」에 준하여 설계·감리

- 품종선택은 작물 및 입지특성을 고려하되, 사업계획 수립시 품목별 해당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선정

o 대단위 산림복합경영의 적정한 모델유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3) 임산물의 품목별 단지화·집단화·규모화 등 지원

o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 등의 사업은 규모화·집단화유도(12개소, 12,000백만원)

o 사업지원 대상

-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관리사 등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시설 및 건축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을 제외

-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수·자동화 시설 및 표고톱밥재배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 관상산림작물류 : 조직배양 및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o 사업면적기준

-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버섯류 : 3,300㎡(1,000평)/개소 이상
- 관상산림식물류 : 1,650㎡(500평)/개소 이상

o 사업실행방법

- 총사업비 중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60%이상), 종자·묘목구입(10%이내), 기타운영비(15%이내) 범위내에서 추진

### 4) 고소득 전략품목의 집중육성 지원

o 밤·감·대추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 고품질 밤 생산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밤나무 재배지 집약관리
  - ·수령이 많고 울폐된 밤나무 재배지의 전지전정, 간벌 등의 노령목 관리 지원(917ha, 237백만원)
  - ·계속된 연작으로 지력약화 및 산성화 된 토양의 개량을 위한 토양 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유기질비료 등) 지원(5,000ha, 987백만원)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지원(586ha, 1,172백만원)
- 수실류 재배·관리의 기계화를 위한 작업로시설 지원(344km, 344백만원)

- 임산물 생산장비 및 방제장비 지원(305백만원)
  · 관수시설, 굴삭기,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잔디깍기, 잔디수확기, 밤 수집기, 밤 수확망 등 생산장비 및 병해충 방제용 지상 방제장비 지원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고소득 대체 작목을 조성 사업비 지원(650ha, 1,820백만원)
- 감의 표준화된 규격생산 지원을 위한 선별기 지원(100대, 100백만원)
- 대추 생산기반조성 지원(24개소, 194백만원)
  · 대추생산기반조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가림 시설,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토양개량비료 등 지원

o 표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배시설 및 종균생산 지원
- 하우스시설 (53개소, 864백만원), 톱밥배지생산시설 지원(3개소 361백만원)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내실화 추진
  · UPOV 시행에 대비하고, 연중 표고생산을 위한 저온·고온성 우량종균 개발 추진
  · 종균개발 활성화를 위한 산림버섯연구소 발전방안 수립
  · 우수종균 보급 확대 및 종균사고 예방을 위한 종균생산 실명제 실시
- 이상기후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재배기술 강화
- 다양한 교육 수요충족 위해 현장맞춤형 기술 교육 및 사이버 교육 실시
- 표고 전업농 육성을 위한 6개월 과정「표고재배반」운영

## 5) 청정임산물 지원품목 확대 및 산림소득사업 사후평가 실시

o 청정임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확대
- 웰빙임산물의 수요 증가에 따라 임산물 지원 품목 확대(복령, 어수리, 마(산약), 마가목, 화살나무, 조릿대 등 6개품목

  ※ 소득지원대상 품목('11.12.31) : 수실류·버섯류·산채류 등 85품목

o 산림소득지원사업의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사업 실효성 확보
- 소득사업의 전반에 대한 진단·평가실시 후 개선방안 마련(1억원)
- 사업추진 방식을 본청 공모방식에서 지자체 공모 등으로 변경 검토

### 6) 조경수·분재·야생화 등 관상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

o 계속된 연작으로 지력이 약화된 관상수(조경수·분재 등) 재배포지 토양의 물리성 및 화학성 개량지원(310ha, 1,030백만원)
- 토양개량제인 목탄을 사용하여 토양물리성 및 화학성 개량
- 입상석회를 사용하여 산성토양의 토양산도 조절
- 토양개량제 살포요령 준수로 토양개량 효과 극대화

o 조경수 용수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지원(40대, 320백만원)
- 지원대상자 : 관정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조경수 생산자 중 대면적 자가 포지를 소유하고 조경수 묘목·이식수목을 많이 생산하는 자
- 지원사업 범위 : 관정개발비(대형), 전기시설비, 배관시설, 관정보호시설 등 관정시설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일체 사업비를 기준(개소당 20,000천원)
- 시설규모(대형관정) 기준 : 1일 양수량 30T이상, 굴착심도 100m내외, 수중모터 3HP이상, 굴착구경 150mm이상

o 조경수 규격화·표준화를 위한 컨테이너 재배지원(10개소, 120백만원)
- 지원대상자
  · 조경수 생산자 중에서 약액재배로 컨테이너 대묘 생산이 가능한 자
  · 컨테이너 생산이력관리가 가능하고 컨테이너 재배 생산통계를 관리할 수 있는 자
- 지원사업 범위 : 비닐하우스, 전기시설, 관수·시비시설,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받침대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일체 사업비를 기준
- 시설규모 기준 : 비닐하우스(폭8.0m*높이3.6m*길이97m), 용기(4~6ℓ)

o 잔디생산 토양개량 및 장비지원(194백만원)

o 경영체 조직화, 생산단지의 규모화, 유통시설 등 육성 방안 마련
- '10년 생산액 : 조경수(7,590억원), 분재(362억원), 야생화(251억원), 잔디(457억원)

o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 추진

o 조경수·분재 등 관상수 전문기술자 육성·지원방안 마련

### 7) 임업인·생산자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지원과 홍보강화

o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의 다양화 및 지원 강화
  - 식품박람회 등 규모 있는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o 관상자원 수요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전시회 개최 등 행사지원
  - 한국분재대전, 대한민국난대전, 잔디세미나 등

o 산약초 생산관리를 위한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가입 추진

## 라. 추진일정

o 일선 시·군 공무원의 소득분야 지원업무 교육 : 2012. 2월중

o 표고재배기술 교육 : 연중

o 산림소득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 : 연중

o 산양삼 품질검사 등 계도·단속 실시 : 연중

o 산양삼 품질규격·등급기준·성분분석 등 마련 : 2012. 4/3분기

o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추진 : 2012. 4/4분기

o 산양삼 전시회 및 연찬회 개최 지원 : 2012. 11월

o 한국새우란대전 및 대한민국난대전 개최 지원 : 2012. 1/4분기

o 한국분재대전 개최 지원 : 2012. 4/4분기

< 붙 임 >

# 2012년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 '11예산 | | '12예산 | | 형 태 | 지원율 (국:지:융:자) |
|---|---|---|---|---|---|---|
| | 사업량 | 예산액 | 사업량 | 예산액 | | |
| 계 | | 37,844 | | 34,047 | | |
|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농특】 | | 36,003 | | 30,731 | | |
| -표고종균생산연구지원 | 1식 | 1,100 | 1식 | 1,100 | 보조 | 100:-:-:- |
| -임산물 생산기반정비 | 10종 | 4,400 | 10종 | 4,400 | 보조+융자 | 20:20:20:40 |
| -친환경토양개량 사업지원 | 5,400ha | 2,017 | 5,400ha | 2,017 | 보조 | 70:20:-:10 |
| -밤나무대체작목조성 | 900ha | 2,520 | 650ha | 1,820 | 보조 | 40:20:-:40 |
| -산림작물생산단지 | 9개소 | 9,000 | 12개소 | 12,000 | 보조 | 40:20:-:40 |
| -임산물 생산장비(관정 등) | 2종 | 440 | 2종 | 440 | 보조+융자 | 30:20:20:30 |
|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 26개시군 | 4,946 | 22개시군 | 4,154 | 보조 | 70:30:-:- |
| -산양삼 생산이력제 | 6개소 | 300 | 6개소 | 300 | 보조 | 50:50:-:- |
|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 9개소 | 4,500 | 9개소 | 4,500 | 보조 | 50:50:-:-<br>50:30:-:20 |
| -산약초 타운조성 | 3개소 | 3,000 | - | - | 보조 | 40:20:-:40 |
| o 산림재해복구지원【농특】 | - | 1,700 | - | 3,150 | 보조+융자 | |
|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광특】 | | 141 | | 166 | | (제주계정) |
| -표고재배시설 | 16개소 | 141 | 11개소 | 100 | 보조+융자 | 20:20:20:40 |
| -산지약용특화단지 | - | - | 1개소 | 48 | 보조 | 40:20:-:40 |
| - 조경수생산시설 | - | - | 1개소 | 12 | 보조+융자 | 30:20:20:30 |
| - 친환경토양개량 | - | - | 1개소 | 6 | 보조 | 70:20:-:10 |

# 26. 임가 소득 안전망 구축

목 표

◇ 자연재해 피해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및 보험 도입 기반 마련
  o ('11까지) 17품목 → ('12) 3품목 추가

◇ 한·중 FTA 체결대비 소득보전 대책 마련

## 가. 정책여건

o (대외여건)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증가, FTA 시장개방 등으로 임가 소득 불안정

o (대내여건) 생산품목 다양, 소유규모 영세, 타 산업과 경쟁력 미흡

## 나. 기본방향

o 자연재해 피해시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임가의 생활안정 도모

o 임산물재해보험을 확대하여 재해 등으로 인한 소득피해 보전

o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소득보전 및 임업경쟁력 강화 추진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사유시설(임산물 및 시설) 재해 피해 복구지원

o 신속한 재해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지원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 임업인 재해복구 : ('11) 1,700백만원 → ('12) 3,150백만원
  - 임업인 재해복구 융자금을 이차보전으로 전환(예결위 지적)

o 일반 수실류 위주에서 산양삼 등 약초 재배품목으로 지원범위 확대 추진
  - ('11까지) 18개 품목 → ('12) 21개 품목(약초류, 산양삼 등)

o 사유시설 재해피해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2011년 인상되지 않은 7개 품목 대상으로 인상 추진
    * 제외품목 : 표고자목, 밤, 야생화, 약용류, 복분자, 머루, 다래 등

### 2) 산림경영 안정화를 위한 임목의 재해보험 도입 준비 등

o 임목 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지역별·임령별·수종별 임목표준금액 산출 등 보험 도입 시 대두되는 선결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 기획연구과제 추진예정('12~'13년 추진, 400백만원)

o 임산물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지원
- 산림조합중앙회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비 지원 반영('13지원, 1,000백만원)

o 단기소득임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연차 확대 추진
- ('11년까지) 4개 품목(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 ('12) 2개 품목(표고버섯, 호두)

### 3) 한·중 FTA에 대비하여 임업인 소득 보전방안 강구

o FTA 기금 활용을 통한 직접적 피해보상 지원체계 구축
-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품목 발생 시 피해보전 직불금 등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o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생산기반정비,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통한 임업인의 소득안정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생산액 감소 등 피해예상 단기소득 품목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 발굴

## 라. 추진일정

o 임업인 재해복구 지원체계 정비(융자금→이차보전 전환) : 중기재정

o 임업인 재해복구 지원단가 조정 및 품목확대 : 2012. 3/4분기

o 재해보험 도입 연구용역 : 연중

o 단기소득임산물 재해보험 지원확대 : 연중

o 한·중 FTA 대비 신규사업 발굴 : 연중

o 임업인 대상 FTA 직접 피해보전 홍보 및 교육 : 연중

# 27. 국가숲길 지정 추진

목 표

◇ 전국 숲길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지역숲길을 연결하는 산림생태·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국가 숲길"을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관리 추진

* 숲길의 유형 : 국가 숲길과 지역 숲길로 구분

## 가. 정책여건

o 주 5일제 근무, 웰빙문화 등의 확산으로 등산, 트레킹이 가장 대중적인 산림휴양활동으로 인정받으면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대안활동으로 대두

o 여가활용·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산림환경의 중요성 인식제고에 따른 산행 인프라 확충 요구와 산림생태계 보호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증가

o 숲길 관련「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한 필요성 제기

## 나. 기본방향

o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에 따라 한반도 숲길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고, 산림생태·역사·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숲길을 "국가 숲길"로 지정 추진

o "국가 숲길" 지정을 통해 전국 숲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 틀을 확립

o 다양한 산행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무분별한 산행으로부터 중요산림지역의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o 숲길관리청이 체계적이고 연차별로 조성 및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등 지원

o "국가 숲길"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할 목적으로 조성되었거나 조성하는 숲길은 "지역 숲길"로 지정·추진

## 다. 세부추진계획

### 1) 국가등산로 지정·관리

o 국가등산로는 백두대간·정맥 산줄기 등산로 및 접근 등산로, 100대 명산(자연공원 제외한 60개산), 국유림지역 주요 등산로를 단계적으로 지정·관리

- 숲길관리청별로 지정·고시한 등산로를 바탕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등산 수요가 많은 등산로를 중심으로 우선 지정 추진

o「백두대간 국가숲길 조성계획(2007)」을 바탕으로 노선거리·이동시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백두대간은 7개 권역으로, 정맥은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추진

- 백두대간 권역 : 설악산권, 오대산권, 태백산권, 소백산권, 속리산권, 덕유산권, 지리산권

- 정맥 권역 : 한북·한남·한남금북·금북·금남·금남호남·호남·낙동·낙남정맥

※ 백두대간은 정부(산림청, 환경부), 산악단체, 환경단체로 구성된 T/F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도모 및 갈등 해소

o 100대 명산(자연공원 제외)의 경우 개별 산 명칭으로 분류하여 관리

### 2) 국가트레킹길 지정·관리

o 국가트레킹길은 5대 트레일 및 5개 명산 둘레길과, 산림생태적·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트레킹길을 국가트레킹길로 지정·관리

o 향후 추가로 지정코자 하는 국가트레킹길은 타 걷는 길과 노선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여부 검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숲길 우선 검토】
① 2개 이상 특별시·광역시 및 시·도에 걸치는 숲길
② 3개 이상 시·군·구에 걸치는 숲길
③ 산림생태·문화·휴양 및 치유의 가치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숲길
④ 역사·문화유적지와 연계되거나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숲길

o 국가트레킹길

(단위 : km)

| 구 간 | 광역 지자체 | 거리 |
|---|---|---|
| < 5대 트레일 > | | 4,940 |
| 백두대간트레일 | 강원, 충북, 경북, 전북, 전남, 경남 | 1,840 |
| DMZ트레일 | 경기, 강원 | 600 |
| 낙동정맥트레일 | 강원, 경북, 경남, 부산 | 600 |
| 서부종단트레일 | 수도권, 충남, 전북, 전남 | 1,200 |
| 님부횡단트레일 | 전남, 경남, 부산 | 700 |
| < 5개 명산 둘레길> | | 1,180 |
| 지리산 | 전북, 전남, 경남 | 300 |
| 한라산 | 제주 | 80 |
| 설악산 | 강원 | 350 |
| 속리산 | 충북, 경북 | 250 |
| 덕유산 | 전북, 경남 | 200 |

* 출처 : 대통령 보고자료(2011.3.2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구 간 | 광역 지자체 | 지정 이유 |
|---|---|---|
| < 추가 지정 계획 > | | |
| 치악산 | 강원 | 5대 트레일 노선내에 포함되지 않는 국립공원 |
| 계룡산 | 충남, 대전 | |
| 월출산 | 전남 | |
| 내장산 | 전북, 전남 | |
| 계방산 | 강원 | 5대 트레일 노선내에 포함되지 않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 가리왕산 | 강원 | |
|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 전남 | 백두대간의 종점부터 땅끝마을까지 연결 |
| 올림픽트레일 | 강원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주최지를 연계하는 트레일 |
| 광릉둘레길 | 경기 | 광릉숲 생물권보존지역 |

* 출처 :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 산림청)

< 국가숲길 지정(안) >

< 국가트레킹길 >

< 국가등산로 >

## 라. 추진일정

o 숲길 실태조사 : 연중(숲길관리청)

o 숲길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12. 상반기

o 숲길 실태조사 결과 제출 : 2012. 9. 30(숲길관리청→산림청)

o 숲길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 연중

# 28.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목 표

◇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2012~2021)」에 따라 체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트레킹길 조성 및 훼손 등산로 정비 등 추진

o 트레킹길 조성 : 332.3km, 7,593백만원

o 훼손 등산로 정비 : 811km, 13,518백만원

o 등산로 연결사업 : 2개소, 600백만원

## 가. 정책여건

o 여가문화의 전 계층 확산과 더불어 체험관광, 헬스 투어리즘 등으로 관광 트렌드가 전환됨에 따라 숲길 등 산림웰빙 인프라 수요가 증대됨

* 등산인구 추이(연1회 이상) : ('91) 16 → ('01) 27 → ('10) 30백만명

* 10명중 4명 월 1회 이상 등산, 그 중 45%가 트레킹 선호('10, 한국갤럽)

o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산림생태·문화·역사를 연계할 수 있는 숲길의 조성·관리 필요

o 소비중심의 여가 활동을 대체하고, 산림생태체험 등 녹색생활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산림생태관광의 새로운 모델제시 요구

## 나. 기본방향

o '11.9.10. 개정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조성·관리 추진

o 백두대간과 정맥 등산로,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이 심한 등산로 우선 정비

- 동일 노선에서는 훼손이 심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 추진
- 등산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

o 트레킹길 노선선정 원칙을 준수하고, 향후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칙에 입각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및 운영·관리 추진

o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하여 산림생태계 복원과 아울러 등산객 편의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림훼손 최소화, 다양한 산행수요에 부응하는 국가 숲길 확충

o 백두대간 및 정맥 등 훼손된 **국가등산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 및 산림생태계 보호

- 훼손된 국가등산로 정비 계획 : 63km(백두대간 41, 정맥 22), 1,400백만원
  * 백두대간 : 산림청 29km, 지자체 12km(전남 구례 7, 경남 하동 5)
  * 정맥 : 산림청 14km, 지자체 8km(경기 포천)
- 추진방향
  · 산림생태계 및 경관 보전과 등산객의 안전·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등산로 정비매뉴얼'에 부합하게 정비
  ·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시(설계, 시공) 현장심의회 구성·운영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에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이행
  · 샛길 분포현황 및 훼손·이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추진
  · 등산객 조난발생에 대비, 위치·신고처 등을 표기한 위치표지판 설치
  · 기 개발된 등산로안내시스템 공공디자인을 적용하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응용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시각적 이미지가 있는 안전시설·종합안내판·해설표시판 등을 목재 등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설치

o 백두대간·낙동정맥 트레일 및 주요 명산 둘레길 등 **국가트레킹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존 트레킹길간 연결을 증진하고 주요 등산로의 이용압력 분산

- 국가 트레킹길 조성 계획 : 144km, 2,484백만원
  (국가 직접 : 35km, 863백만원, 지자체 보조 109km, 1,621백만원)
- 추진방향
  · 2011.9.10. 개정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명칭 확정, 노선 지정·고시 등의 절차 이행

| 숲길관리청 (지방청 및 지자체) | : | 숲길 조성 계획 수립 | ⇒ |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 ⇒ | 숲길 명칭 부여 | ⇒ | 노선의 지정·고시 | ⇒ | 조성 |
|---|---|---|---|---|---|---|---|---|---|---|

· 숲길의 이용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선거리 20km 이상 숲길에 안내센터 설치 · 운영(「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하되 거점마을과 산림휴양시설 등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대중교통이 연계될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추진
· 산림생태계 및 경관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① 백두대간트레일 : 30km, 740백만원(국고 100%, 북부지방산림청 실행)

- 신규로 조성되는 백두대간트레일 시범구간은 DMZ과 백두대간 트레일이 연결되는 구간을 우선 선정(양구와 인제 연결)하고, 산림문화자산, 문화재 및 주변 농산촌 자원과 연계하여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
- 백두대간트레일 전체구간의 시초가 되는 시범조성임을 감안하여 주노선 위주로 조성하고 지선 추가 조성 지양
-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두대간트레일 조성 자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현장심의회 ·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노선 선정 · 조성 추진
-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6개도에 설치(예정 포함)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 문화공원 등을 방문자 안내센터로 공동 활용방안 마련 추진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 괴산 · 상주 · 양양 · 구례 · 함양, 문화공원 : 남원
  * 트레일의 이용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선거리 20km 이상 숲길에 안내센터 설치 · 운영(「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3)
-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2010.10.1, 치산복원과)」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안전시설 · 종합안내판 · 해설표시판 등은 백두대간 CI를 적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하여 설치

The Baekdudaegan Mountains

② 한라산둘레길 : 5km, 123백만원(국고 100%, 제주도 위탁 실행)

- 한라산둘레길 조성계획(2010~2014)에 따라 연차적으로 조성 추진
  * 총 사업량 : 80km(병참로 54, 표고재배장 진입로 6, 임도 20)
- 한라산 등산객 분산으로 산림훼손 최소화 및 '제주 올레길'과의 조화와 차별화를 통한 체험관광을 상품화하는 등 홍보방안 추진

③ 낙동정맥트레일 : 109km, 1,621백만원(50% 보조, 경상북도 실행)

- 2011.9.15. 확정된 낙동정맥트레일 조사보고서(경북)에 따라 추진
  * 총 노선 : 8개 시 · 군, 339.6km(봉화 34.2, 울진 28.7, 영양 45.2, 영덕 60.0, 청송 55.8, 포항 37.8, 영천 30.4, 경주 47.5)

- 2012년도 시·군별 사업계획 확정전 산림청과 우선 협의하여 추진
  * 2012년 사업량 : 트레일 109km, 방문자 안내센터 1개소, 편익시설 1개소
  * 장거리 트레일인 점을 감안하여 일정 거리마다 방문자 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안 포함
- 낙동정맥트레일을 시범개통·운영할 수 있도록 1개 시·군(이와 연접한 시·군 포함)을 우선 지원하여 숲길 및 방문자 안내센터 조성 추진
  * 해당 지자체장의 관심도와 낙동정맥트레일을 대표할 수 있는 구간 선정
- 분산 국유림 및 사유림 구간은 각 시·군에서 설계·시공하되 토지소유자인 남부지방산림청과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집단 국유림 구간은 남부지방산림청이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예산 편성할 계획
- 국민에게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작된 낙동정맥트레일 CI를 적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자연친화적 소재로 안전시설·종합안내·해설표시판 등 설치 및 홍보 추진
- 낙동정맥트레일 전체 노선 명칭은 통일하되, 각 구간별 명칭은 자율적으로 결정(예 : 낙동정맥트레일 청송구간, 낙동정맥트레일 승부역 구간 등)
- 토지소유자의 부동의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노선을 변경할 경우 실시설계시 2011년도 조성 노선과 연결되는 대체노선 발굴

## 2) 도시인근 생활권 숲길을 중심으로 지역 숲길 조성·관리 추진

o 단일 지자체(시·군·구) 내에 위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상시 이용가능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숲길을 조성·관리**

- 추진계획 : 생활권 훼손등산로 정비(748km, 12,118백만원)
  등산로 연결사업(2개소, 600백만원)
  지역트레킹길 조성(188.3km, 5,109백만원)
- 추진방향
  · 산림생태계 및 경관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 숲길의 이용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선거리 20km 이상 숲길에 안내센터 설치·운영(「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3)하되 거점마을과 산림휴양시설 등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대중교통이 연계될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추진

① 생활권 훼손등산로 정비 계획 : 748km, 12,118백만원

- 국가 직접(100%) : 27km, 859백만원

  * 동부(가리왕산자연휴양림 등) 5, 남부(대야산자연휴양림 등) 4, 중부 11, 서부(남해편백·방장산·낙안민속자연휴양림) 7

- 지자체 보조(50%) : 721km, 11,259백만원

(단위 : km, 백만원)

| 지자체 | 부산 | 대구 | 인천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
| 사업량 | 31 | 91 | 42 | 54 | 41.8 | 110 | 64.2 | 18 | 12 | 76 | 83 | 52 | 46 |
| 사업비 | 500 | 1,450 | 668 | 865 | 490 | 1,753 | 1,022 | 270 | 212 | 1,192 | 1,282 | 830 | 725 |

- 추진방향

  · 등산객의 안전·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등산로 정비매뉴얼'에 부합하게 정비
  ·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시(설계, 시공) 현장심의회 구성·운영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전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이행
  · 샛길 분포현황 및 훼손·이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추진
  ·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테마를 발굴하고 체험을 강화한 등산로 정비
  · 등산객 조난발생에 대비, 위치·신고처 등을 표기한 위치표지판 설치

② 지역트레킹길 조성 계획 : 188.3km, 5,109백만원

(단위 : km, 백만원)

| 지자체 | 서울<br>둘레길 | 부산<br>(명칭 미정) | 경기<br>(명칭 미정) | 충남<br>내포문화숲길 | 전남<br>(장성) | 경북<br>(울릉) |
|---|---|---|---|---|---|---|
| 사업량 | 42.3 | 40, 2식 | 24 | 82 | 기본계획 | 기본계획 |
| 사업비 | 2,459 | 500 | 300 | 1,500 | 200 | 150 |

- 추진방향

  · 트레킹길 노선선정 원칙<붙임>에 따라 노선을 선정하고, 전년도 조성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트레킹길 조성 및 운영·관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장심의회·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노선 선정 후 조성 추진
  · 2011.9.10. 개정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명칭 확정, 노선 지정·고시 등의 절차 이행

| 숲길관리청 (지방청 및 지자체) | : | 숲길 조성 계획 수립 | ⇒ |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 ⇒ | 숲길 명칭 부여 | ⇒ | 노선의 지정・고시 | ⇒ | 조성 |
|---|---|---|---|---|---|---|---|---|---|---|

* 등산로 정비 등 조성이 아닌 운영·관리부문은 연차별 사업계획만 수립

・기 개발된 등산로안내시스템 공공디자인을 적용하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응용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시각적 이미지가 있는 안전시설・종합안내판・해설표시판 등을 목재 등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설치

o 도로 건설 등으로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하여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

- 등산로 연결사업 추진 계획 : 2개소(전남 화순・함평), 600백만원
- 추진방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디자인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 선행 조치

・사업형태(보행가교형, 녹지공간형 등) 및 추진계획은 산림청과 사전 협의 후 추진

## 라. 추진일정

o 2012년도 숲길(등산로, 트레킹길) 추진계획 제출 : 2011.12월중(숲길관리청)

o 숲길 사업계획 수립・배부 : 2011.12.30

o 숲길조성계획 수립 : 2011. 3월(숲길관리청)

o 숲길 실시설계 : 2011. 5월(숲길관리청)

o 숲길 조성・관리 모니터링 : 2012. 상반기

o 2011년 조성 트레킹길 개통 : 2012. 5월

o 숲길 실태조사 : 연중(숲길관리청)

o 숲길 조성・관리 모니터링 : 2012. 3/4분기

o 숲길 완료 : 2012. 12월

o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 수립・제출 : 2012.12.31(숲길관리청)

< 붙 임 >

# 트레킹길 노선선정 원칙

1. 마루금 등산로와 중첩되는 노선은 제외하고 각 지자체간 상호 연결성(넘나드는 길 등)이 최적으로 호환되도록 한다.

2. 국・공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통과하는 노선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3. 숲길의 종류별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여야 하고 산줄기를 향하는 경사지는 배제하며 산자락을 따라 수평적으로 조성한다.

4. 산림생태와 역사・전통문화 등 다양하고 우수한 자연자원들이 최대한 포함되도록 한다.

5. 농로, 임도, 옛길 등 기존의 길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생태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6. 마을과 마을이 소통될 수 있도록 연결된 길(옛길, 생활길 등)을 찾아 원활한 동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7. 장거리트레일은 지역의 숲길과 연계하여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거리트레일(지선)은 장거리트레일(주선)의 지선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8. 차도 등 포장된 길과 횡단하는 위험한 길을 가급적 피하고, 주변의 경관을 즐기며 안전하고 쾌적한 노선이 되도록 한다.

9. 전체 구간 중 나무그늘이 있는 숲속을 통과하는 노선 거리의 비율이 가능한 한 50%이상 되도록 한다.

10. 주요 거점에서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사회취약계층(노약자, 장애우 등)이 접근하기 쉽도록 고려한다.

11. 산촌생태마을, 자연휴양림 등 산림기반시설 등을 이용하고, 주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볼 거리와 이야기 거리를 최대한 발굴한다.

# 29.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목 표

◇ 다양한 산행활동 서비스 제공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o 트레킹길 관리, 등산·트레킹지원센터 운영 1,345백만원

◇ 올바른 산행문화 보급을 통한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o 산행문화개선, 산악구조 장비 확충, 숲길조사관리원·숲길안내인 6,064백만원

◇ 세계 산악강국으로서 위상제고를 위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o 건축공사, 전시물 제작・설치 설계 등 3,000백만원

## 가. 정책여건

o 주 5일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와 함께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체제형・체험형 중심의 다양한 산행수요 발생

o 산행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산행객들의 산악사고 지속증가
- 산악사고 구조건수 : ('07) 5,096 → ('09) 7,105 → ('10) 7,718건

o 올바른 산행문화의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참여 기회 부족

o 등산역사・문화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전시・홍보를 위한 공간 부재

## 나. 기본방향

o 트레킹길 시범 운영·관리를 통한 표준 관리체계 마련・보급

o 숲길훼손 및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의식수준 제고

o 지속적인 숲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 DB 구축

o 올바른 산행 유도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등산관련 정보 및 양질의 산행안내서비스 제공

o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등산관련 교육・체험・정보전달 등 복합문화시설 기능수행은 물론, 우리나라 산악메카로 육성하여 등산거점으로서의 입지 구축

## 다. 세부추진계획

### 1) 시범개통된 트레킹길의 운영·관리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o 사업비 : 643백만원

o 기 개통된 국가트레킹길(지리산둘레길, 금강소나무숲길, 펀치볼둘레길)에 대한 이용자의 산림생태 체험과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운영·관리 추진

- 노선의 유지·보수 및 관리, 이용자 안내 및 정보제공
- 지역 고유의 역사·전통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o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트레킹길별 운영·관리 방안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비를 재배정

- 트레킹길별 2012년도 운영·관리 위탁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 검토회의를 거쳐 예산의 효율적 집행가능성 등 협의·재배정

o 안정적인 운영·관리 도모를 위해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 추진

- '트레킹길 운영·관리 위탁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관리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숲길 관련 법인을 지역숲길센터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실시

o 숲길안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 건전한 이용문화 홍보, 산림생태 체험과 프로그램 개발, 이용정보 제공 등
- 숲길조사관리원·숲길안내인 등을 배치하여 이용자 안내 및 노선 모니터링
- 안내센터는 지역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로 추진
- 숲길안내센터가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역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임시 운영 추진

o 트레킹길 운영·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트레킹길 표준 운영·관리 체계' 마련

o 위탁사업 종료 전 이용자 만족도 조사, 홍보 등 성과평가를 산림청 주관으로 별도 실시하여 익년도 사업비 배정 등에 반영

## 2) 등산·트레킹 학교 운영

o 교육기간 : 2012. 3월 ~ 11월(9개월)

o 교육인원 : 2,500여명

*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강사료, 보험료 등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인원 조정

o 교육과정 : 청소년과정, 일반인과정, 백두대간·DMZ 생태탐방과정

o 사 업 비 : 400백만원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숲길 종류별 교육과정을 시범 개설

- 트레킹, 레저스포츠 및 청소년을 위한 DMZ 생태탐방 과정 신설

* 레저스포츠과정은 국민의 숲(산악레포츠 숲), DMZ 산림생태탐방과정은 펀치볼 둘레길에서 시범 운영 추진

o 일반인 과정을 축소하고 청소년 및 소외계층과정 지속 확대

-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정
  : ('10) 290명 → ('11년) 520명 → ('12년) 600명
- 일반인과정 : ('10) 935명 → ('11년) 785명 → ('12년) 700명

o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하나되기 과정 확대

- 탈북청소년, 재외동포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장애우 등 대상
  : ('11년) 5회 → ('12년) 7회
- 여러 계층의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우리 산의 아름다움을 앎과 동시에 자연 속에서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o 수도권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지방 교육과정 운영 지속 확대

- 호남권, 충청권 등 상대적으로 교육 혜택이 적은 지역을 중점 실시

* 등산·트레킹 교육의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국립산악박물관이 건립되는 설악산 지역과 신축되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본부에 정기교육 과정을 편성(전체 과정 중 30%내외, 격주 편성)

o 교육의 성과제고,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위해 위탁사업 종료 전 교육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를 별도 실시

- (당초) 수탁기관에서 교육만족도 조사 → (변경) 산림청에서 실시

### 3)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운영

o 센터 운영 및 사업비 : 702백만원

o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

- 조직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센터 비전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진행시 산림청·참여 의무화

o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숲길정책지원 시너지 효과 제고

- 2010회계년도 결산 시 국회 지적에 따라 용역사업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한해 추진

  * 지적사항 : 한국등산지원센터의 연구용역비 집행 문제 개선

- 자체사업은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나 다수의 국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영역을 중심으로 집중 추진

- 신축 예정인 센터 본부 주변 산림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지역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센터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국고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은 분기별로 나누어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점검 후 교부

-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은 되도록 지양하고 센터만의 고유사업을 발굴 추진

- 2011년도 성과를 분석한 후 실적이 저조하거나 타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기

o 단순 보조사업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공익성강화 및 사업성과 제고 등을 위한 성과시스템(성과목표 및 지표설정 등)을 도입

o 산악·환경단체 등 관련단체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채널역할 지속 수행

### 4)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o 사업비 : 3,000백만원(건축공사 2,715, 전시물 제작・설치 209, 기타 76)

o 건축부문 중간・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추진(상반기, 210일 예정)

- 기 진행된 계획설계(안)을 검토 후 수정·보완하여 발전된 과업성과 도출
-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 등 각 분야별 세부 설계 추진

o 건축공사 착공(하반기)

- 건축공사발주('12. 8~9월 예정), 공사 착공 및 기공식('12. 10월 예정)
- 부지조성공사 추진('12. 10 ~ 12월)

o 전시물 제작·설치 설계 추진

- 산악박물관만이 가진 독창적인 컨셉으로 구상하고 주제를 설정
  · 이용자, 산악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 전시부문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학예인력 선발 (하반기, 1명)
-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자 선정('12. 1 ~ 2월)

  * 건축부문과 전시부문 설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시 컨셉과 주제에 맞는 전시공간 구성 및 건축물 구현

o 전시자료 확보 추진

- 기증운동 등을 통한 국·내외 전시자료 및 다양한 콘텐츠 확보 추진
- 주요 산악단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자료확보 기반 마련
  · 대상 : 한국산악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산악구조협회, 한국등산연합회 등

o 건립부지 확보 추진

- 건립부지 분묘이장이 완료된 후 교환을 통해 시설예정면적(건축물, 주차장, 조경공간, 야외전시공간, 추후 확충예정면적 등) 확보
  * 강원도, 속초시, 국유림관리과, 동부지방산림청 협조를 통해 진행
-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 공사착공 등을 위해 상반기까지 추진

o 토지교환, 전시자료 수립, 각종 인·허가, 공사 등 현안사항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지속추진 및 기관별 역할분담 확립

- 협의회 구성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강원도, 속초시 등 4개 기관

o 국립산악박물관 운영기반 구축

- 박물관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 관계기관 협의
- 박물관 등록, 운영방식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중간설계 완료 후)

o 국립산악박물관 발전방안 마련

- 국내 최초의 산악박물관에 걸맞는 우리나라 산악메카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명확한 역할 정립 및 기능강화를 위한 전략수립
- 박물관 기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및 연차별 이행과제 도출
- 국립산악박물관 연계사업 발굴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강화 전략 도출
  · 주변지역 자원·여건(인문, 자연, 문화 등) 분석 및 활용계획
  · 주변부지 활용 등 타 사업과의 연계개발계획 마련

* 이용자·지역주민·산악단체 의견수렴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

## 5) 산악구조대 운영

o 사업비 : 1,979백만원(HEMS 장비 확충 1,750, 민간산악구조대 지원 : 229)

o 산악사고에 대응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산행안전지원대 편성·운영,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 산악사고 예방활동 전개 등 사고예방과 구조 활동 전개에 대한 계획 수립

* 산림항공구조대(공중)는 산림항공본부, 산행안전지원대(지상)는 숲길관리청에 편성·운영

o 헬기 위치추적 시스템 운영 및 HEMS 장비 확충을 통한 산악구조임무 고도화

- 단순구조 및 후송수준에서 탈피, 종합적인 산악사고 구급구조임무 수행(재원 : 응급의료기금)
- 전국 9개 권역에 운영하는 산림청의 산악구조 대형헬기(KA-32T)에 HEMS 장비를 장착('13년까지 연차별 확충)
  · '12년은 5개 항공관리소(함양, 강릉, 원주, 양산, 진천)에 우선 장착

o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지속 추진

-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대한산악구조협회와의 협조체계 강화 및 정책방향 공유, 산악구조 통계 체계 확립 등을 위해 협의회 지속 추진
- (사)대한산악구조협회 1본부 16개 시·도 연맹에 응급구조출동차량 지원을 완료함으로써 기동성을 확보하여 사고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
-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사고발생 시 신속 대처

### 6) 숲길조사관리원 및 숲길안내인 운영

o 사업비 : 3,505백만원(지방산림청 880, 지방자치단체 2,625)

o 인 원

- 숲길조사관리원 : 247명(지방산림청 35, 지방자치단체 212)
- 숲길안내인 : 129명(지방산림청 28, 지방자치단체 101)

  * 2011.7.25. 제정된「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2.7.26. 부터 숲길안내인의 명칭이 숲길체험지도사로 변경됨

o 숲길조사관리원은 자료가 미비한 산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백두대간·정맥·100대 명산·생활권 등산로 순으로 조사)하고, 기 조성된 트레킹길에 대한 신규 조사 및 운영·관리 지원 추가

- 국가숲길 지정 등을 위해 백두대간에 대한 등산로 현황분석 추진
- 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지속적인 숲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긴급정비를 요하는 숲길에 대한 조기 정비로 훼손 확대를 방지
- 기 조성된 트레킹길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숲길관리청별로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숲길조사관리원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배치

o 올바른 산행문화 홍보 및 안내서비스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00대 명산과 기 개통된 트레킹길 안내센터에 숲길안내인 집중 배치

- 국유림 지역은 선발인원(28명) 중 20명을 트레킹길에 집중 배치
- 민유림 지역은 선발인원을 100대 명산과 트레킹길에 집중 배치

## 라. 추진일정

o 숲길 운영·관리 : 연중

o 등산·트레킹 학교 운영 : 2012. 3~11월

o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사업 추진 : 연중

o 산악구조대 운영 : 연중

o 숲길조사관리원 및 숲길안내인 활동 : 연중

o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 건축설계(중간·실시) 추진 : 2011. 12월~ 2012. 7월

- 전시설계 추진 : 2012. 1월～12월
- 박물관 학예인력 선발 : 2012. 7월
- 산악단체 MOU 추진 : 2012. 상반기
- 전시자료 수집 : 연중
- 건립부지 교환 등 추진 : 상반기
- 건축공사 착공 : 2012. 10월～12월
- 관계부처 협의 및 발전방안 마련 : 연중

# 산림보호국 소관

#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

목 표

◇ 산림생태계의 체계적 보호·관리로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 o 「제2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13~'17) 수립
- o 주요 산림생물종 서식지 및 소생물권(Biotope) 관리강화
- o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 : 9억원(국·공립수목원 9개소)

## 가. 정책여건

o 지구온난화 및 산림재해 등 자연환경적·인위적 요인에 의한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는 전 세계적인 환경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및 이행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

o 생물다양성협약(CBD-COP10)의 "나고야의정서" 채택으로 생물자원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어 국가생물자원 확보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20년까지 육상 보호구역을 전체 면적의 17% 이상으로 확대, 멸종위협식물의 75%를 현지내 보전 의무화 등 국가차원의 이행 요구

o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인 산림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나 산림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빈발·대형화 추세
- 온·한대 식물의 서식환경 축소 및 고산식물, 내한성 수종의 급격한 감소

o 산림생물자원을 BT·ET 분야 활용을 통한 산업화 및 잠재적 가치 등 산림생물자원의 다양한 활용가치 부각

o 우리나라 산림의 생물다양성의 변화에 대한 분석·평가와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 수립 및 체계적인 보전·관리 필요

## 나. 기본방향

o 국가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제2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체계 강화

o 산림내 주요 산림생물종 및 소생물권(Biotope)의 서식지(분포지)관리를 통한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o 기후변화 대응 산림생태계의 변화과정을 조사하고 향후 추이를 예측하는 등 산림생태계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정립

o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이용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제2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2013~2017)」수립

- 대・내외 여건변화, 관계부처・기관 동향, CBD-COP10・11 결정사항 및 '11년 국립수목원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 추진

o 생물다양성 협약(CBD) 제11차 당사국회의('12.10.8~19, 인도)의 산림분야 산림생물자원 주권 확보 대응

o「산림보호법」개정('12.1.15 시행)으로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을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관리하기 위한 제도 마련

- 산림사업 추진 시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이를 증식・이용 등 자원화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

### 2) 산림 소생물권(Biotope) 및 주요 산림생물종 서식지관리

o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습원의 소생물권 관리를 위해 '12년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추진(5억원, 국립수목원 주관)

※ 연차별 계획 : ('06~'08 국유림 조사완료) → ('10)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제주 → ('11) 전남, 전북, 광주 → **('12) 경북** → ('13) 충남, 충북, 대전→ ('14)서울, 경기, 강원

- 조사방법은 'FGIS를 이용한 산림습원 탐색기법'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 추진
- 산림습원으로 예측되는 지점을 FGIS 자료를 이용하여 추출, 현장검증을 통해 식생위주로 산림습원 분포를 확인・조사

o 산림습원조사지의 보전가치 평가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습원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11년 조사지 포함)하여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 및 생물다양성 손실 최소화

- (국립수목원) 산림습원 조사 주관 및 보전가치 평가(식물다양성, 서식지 등)

- (관리소, 시·도 또는 시·군) 보전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
-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기준으로 지정
- 국유림관리소는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유림내 산림습원의 경우 가급적이면 연차별로 국가매수 우선 추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기준 >

① 산림습원 핵심구역 및 중요식생, 희귀식물, 수변(유역)지역 등을 감안하여 완충지역 면적을 포함

② 산림습원 핵심구역 주변에 늪, 소택지 등이 연접된 경우 이를 단지화

③ 주변에 산림습원이 2개 이상으로 분산된 경우, 이를 유역화하여 검토·지정

o 주요 산림생물종 서식지 환경개선을 위한 모델 시범사업 실시(3개소, 3억원)

※ 보호할 특정종이 선호하는 천이단계를 유도하되, 산림생태계 전체에 대해 고려

- 교수 등 전문가, 현장 공무원의 의견 수렴 실행 방법 모색
- 모델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추후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매뉴얼 제작・보급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보호 대상종의 서식지보호・관리사업 추진

o 사업추진 체계

- (산림청) 지침수립 → (북부・동부・남부지방산림청) 사업실행 : 3개소, 3억원

## 3)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 추진

### 가) 기후변화 영향 지표식물의 개화・개엽시기 모니터링 실시

o 예산액 및 시행주체 : 170백만원, 국립수목원

o 사업내용

- 기후변화 취약 주요 지표식물의 개화・개엽시기 모니터링
- 고산지역・풍혈지 등 특수지역의 취약 식물종 생육환경 조사・분석

### 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유용산림식물종 보전・적응사업 추진

o 예산액 및 시행주체 : 730백만원, 국립수목원 및 지방자치단체(공립수목원)

o 사업내용

-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성・생육한계성 산림식물의 조사・증식 및 보존
- 현지(서식지) 내 복원・적응 사업 실행

o 식생 등에 따라 권역별로 나누어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의 보존·적응사업 추진

- 국립수목원이 주관하고 권역별 공립수목원(9개소)에서 협력 추진

## 라. 추진일정

o 「기후변화 취약 식물종 적응사업」 추진계획 수립·시달 : 2012. 1월

o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관리 제도 시행 : 2012. 1월

o 생물다양성 협약(CBD) 제11차 당사국회의 대응 : 2012. 1～10월

o 산림습원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12. 2월

o 산림습원 현장 조사완료 : 2012. 10월

o 주요 산림생물종 서식지 관리사업 완료 : 2012. 11월

o 제2차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 수립 : 2012. 12월

o 산림습원조사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 2012. 12월

# 2.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체계 확립

목 표

◇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적극적 보호·관리

o 산림보호구역 : 413,481ha(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116,606ha)
-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 3개소, 500백만원
- 산림생태관리센터 신축 : 2개소(민북지역, 소광리) 4,056백만원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협약 : 4개소(경북, 전남), 200백만원

## 가. 정책여건

o 산림식물의 유전자·종 보존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필요성 증대

o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기준에 따른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기준의 국내이행 필요

o 국토의 이용 수요 확대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요구 증가

## 나. 추진방향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보호·관리 기반 확립

o 산림보호구역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효율적 운영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

o 산림습원 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지정 확대 추진
- ('09) 112천ha → ('10) 117천ha → ('11) 127천ha → ('12) 132천ha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 산림유전자원 조사·연구, 관리 목표 설정 등에 대한 기본 방향 정립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국제보호지역 관리기준 적용 추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2억원)
- 세계보호구역데이터베이스(WDPA) 등록 확대('10년 6개소→'12년 17개소)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매뉴얼 수립·시행
- 지정유형별 관리방법·작업요령·공정기준 등 마련

o 대규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 강화
- 산림보호원 고정 배치
- 산림유전자원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o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 제도 정비
- 산림보호구역 체계에 맞게 「산림보호구역 관리요령」 정비
  *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 규정을 「산림보호구역 관리요령」으로 통합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기준 개선

##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기능 증진 및 관리

### 가) 산림생태관리센터 신축·운영

#### (1) 2012년 신축

o 사업목적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생태탐방 등 조화로운 이용을 위한 거점기관 역할 수행

o 사업개요

| 구분 | 민북지역 산림생태관리센터 | 소광리 금강소나무생태관리센터 |
|---|---|---|
| 개소 | 2011년말 선정 |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29 |
| 규모 | 건축면적 520㎡ | 건축면적 1,395㎡, 시설부지 8,620㎡ |
| 사업비 | 1,112백만원<br>(설계 31, 시설 1,061, 감리·부대비 20) | 2,944백만원<br>(시설 2,900, 감리 44) |
| 사업기관 | 북부지방산림청 | 남부지방산림청 |

o 사업내용
- 시험·연구실, 회의·세미나실, 전시·체험관, 휴게실·안내센터 등 시설 설치
- 생태관리센터의 운영 매뉴얼 및 생태탐방프로그램 개발

#### (2) 점봉산 및 계방산생태관리센터 운영

o 관리기관별로 수립한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매뉴얼에 따라 관리

| 구분 | 점봉산생태관리센터 | 계방산생태관리센터 |
|---|---|---|
| 개소 |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218-1 | 홍천군 내면 자운리 12-16 |
| 규모 | 건축면적 973㎡ | 건축면적 973㎡ |
| 근무인원 | 9명(공무원, 숲해설가, 등산안내원 등) | 4명(청원직, 숲해설가, 감시원 등) |
| 관리기관 | 인제국유림관리소 | 홍천국유림관리소 |

## 나)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o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보전체계의 구축으로 산림의 생태적 균형 및 건강하고 안정적 상태로 유지·관리

o 사업대상 및 사업비 : 3개소(북부·남부·서부지방산림청), 500백만원

- 대상 : 대규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기능 유지·증진사업이 시급한 지역

  * ('09) 울릉도 → ('10) 점봉산 → ('11) 점봉산, 덕유산 → ('12) 점봉산, 소광리, 덕유산

o 사업내용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형별 특성의 유지·증진 사업 실행
  - ·종 보존과 증식을 위한 산림유전자원 생육환경개선사업
  - ·산림유전자원의 인위적 피해 예방 시설 설치
- 산림유전자원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북부·남부지방산림청)

## 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협약

o 사업목적

- 사유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여 산림유전자원 보존 목적 달성

o 사업대상지 : 사유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ha이상(산림유전자원 보전 가치가 높을 경우 1ha 이상도 가능)

o 2012 사업 추진 : 4개소(나주, 장흥, 문경, 울진), 200백만원

| 소 재 지 | 지정유형 | 지정면적 | 주요 분포식물 | 소유자 (관리자) |
|---|---|---|---|---|
| 합 계 | | 2,349ha | | |
| ① 전남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산210 외2 | 유용식물 | 30 | 비자나무 | 사찰림(불회사) |
| ②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산10-1 | 유용식물 | 3 | 비자나무 | 사찰림(보림사) |
| ③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1-1 외1 | 희귀식물 | 2,290 | 고란초 등 | 사찰림(봉암사) |
| ④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산30-1 | 원시림 | 261 | 소나무 | 사찰림(불영사) |

o 보호·관리협약 추진 절차

- 보호·관리협약지침 시달(산림청) → 보호·관리협약 대상지 선정(지자체) → 보호·관리협약 체결·실행(지자체) → 모니터링 및 평가(산림청·지자체) → 평가 결과 환류(산림청·지자체)

## 라. 추진일정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 협약지침 시행(산림청) : 2012. 1월

o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추진 : 2012. 1~12월

o 산림생태관리센터 신축 : 2012. 1~12월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매뉴얼 수립(산림청) : 2012. 3월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산림청) : 2012. 4월

o 산림보호구역 관리요령 정비(산림청) : 2012년 상반기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지방산림청) : 2012. 1~12월

# 3. 산림생물자원의 현지내·외 보전기반 구축

목 표

◇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수집·증식·연구 및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보전·관리기반 확충

o 국립수목원 확충(국립중앙수목원 사업착수) 및 기본계획 수립
o 지방수목원 조성 : 29개소(설계 1, 조성 16, 보완·확대 12), 210억원
o 산림박물관 건립 : 5개소(조성 2, 보완 3), 27억원
o 지역생태숲 조성 : 24개소(조성 21, 보완 3), 88억원
o 자생식물원 조성 : 8개소(설계 5, 조성3), 20억원

## 가. 정책여건

o 「생물다양성협약(CBD)」 체결이후 식물자원의 이용가치 증대로 국가간 식물자원 확보경쟁 및 식물분야의 국제협약 이행 노력 강화

o 지구온난화·사막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멸종위협에 놓인 고산 및 한계성 자생식물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국가수목원 확충의 필요성 대두

o 국민소득·휴양문화 향상으로 녹색생태 탐방·체험·교육수요 증대

## 나. 기본방향

o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증식 및 연구기반 확충
o 식물유전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체험 학습 등 국민서비스 강화
o 수목원·생태숲 조성 사업의 타당성 제고 및 단계별 관리 강화

## 다. 세부추진계획

### 1) 국가수목원 확충 기본계획 수립

o 사업목적
-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이 감소됨으로 인해 이를 보다 체계적·적극적 보존
- 한반도 기후의 아열대화에 대비한 선제적 식물유전자원 연구 및 기후변화 대응 산림생물다양성 변화 연구 기지 확보

- BT 등 미래 생물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국가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활용기반 구축

o 추진경과
- '08년～'13년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14년 개원)
- '09년～'13년 : 국립DMZ자생식물원 조성('14년 개원)
- '12년～'16년 : 국립중앙수목원 조성('17년 개원)
- '12년～ :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타당성 및 기본방향 구상
  * 새만금 녹지조성 기본계획 용역과 연계하여 마련

o 권역별 국립수목원의 기능 및 역할

| 명 칭 | 구 분 | 기능 및 역할 |
|---|---|---|
| 국립광릉수목원 | 현 국립수목원을 개편 (경기 포천) | • 산림생물관련 연구·교육중심<br>• 수목원 네트워크 관리·운영<br>• 광릉숲의 역사·생태적 보존 |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신설(경북 봉화) | • 북방계 고산식물의 장기보전<br>• 식물신가치 창출 및 Genebank 조성 |
| 국립DMZ자생식물원 | 신설(강원 양구) | • 산림생태계복원(DMZ식물) 연구<br>• 산림 소득화 연구 |
| 국립중앙수목원 | 신설(충남 세종) | • 한국전통정원의 연구 및 교육<br>•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형 국립수목원<br>• 온대수종의 장기보전 연구 |
| 국립새만금수목원 | 신설(전북 새만금단지) | • 중·남부 및 난대식물 보전 연구<br>• 간척지 녹화 및 방염·방풍 수종 연구<br>• 인공해안림 벨트 조성 연구 |

o 추진계획
- 권역별 수목원 확충에 따른 국립수목원 편제(編制) 정비
- 수목원 관리체계 정비 및 신규정책 개발을 통한 업무영역의 특성화 및 확대

## 2)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사업

o 사업목적
- 우리나라 중부 온대지역의 희귀·특산 및 멸종위기 식물 보전에 기여하고, 원예 및 조경가치가 높은 다양한 국내·외 식물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중앙녹지에 식재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수목원을 조성

o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연기군 행복도시 개발예정지 중앙녹지공간 내
- 사업규모 : 면적 65ha, 총사업비 1,374억원

- 사업기간 : ’12년～’16년(5년간 : 기본계획 및 설계 등 2년, 조성 3년)
- 주요내용 : 한국전통정원, 국가별전통정원, 교육・체험・치유정원, 테마전문정원, 국제산림기술교육훈련센터, 도시녹화식물연구센터

o 투자계획

| 총사업비 | 연차별 계획(년) | | | | |
|---|---|---|---|---|---|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1,374 | 15 | 120 | 511 | 483 | 245 |

o 추진계획(’12년～’13년)
- 구체적인 종합계획도 및 동선계획
  ・중앙공원과의 연계를 고려한 수목원 외부동선의 구체적 종합계획 수립
  ・수목원 내부 순환동선, 봉우리 둘레길 등 내부동선의 다양화
- 시설계획 및 식재 계획
  ・도시림을 위한 오픈공간의 기능을 담당할 주요 시설을 계획
  ・산림 및 습지 개념을 도입한 디자인
  ・전통수종 식재전시를 통한 고유의 경관을 형성

## 3) 지자체생태숲 및 자생식물원 육성 강화

### 가) 지자체생태숲 조성・관리

o 조성목적
- 산림식물의 현지 내 보존기능을 강화하여 자연환경훼손의 위협으로부터 산림생물자원을 보호 및 국민의 자연학습・휴양공간으로 제공

o 지정근거 :「산림보호법」제18조 생태숲 지정제도 및 생태숲 지정관리지침

o 사업대상지
-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다양성이 높아 자연상태로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숲으로 30ha 이상인 공유지
- 자연휴양림・도시숲 등과 연접하여 교육・탐방・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숲으로 20ha 이상인 공유지

o 지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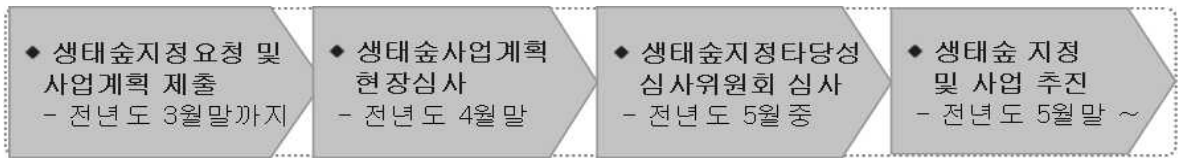

-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입지여건 등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심사
- 타당성 심사 전에 관계공무원이 대상지 현지조사・확인

o 생태숲 조성사업
- 규모 및 기간 : 30억원, 4년(설계 1년, 조성 3년)
- 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 세부내용 : 생태숲 또는 그 주변 토지에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한 산림생태원 시설 설치 및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
- '12년 사업추진 : 24개소(조성21, 보완3), 88억원

**나) 지자체 자생식물원 조성・관리**

o 사업목적
- 우리 고유의 향토・자생식물 등 초본류・관목류의 체계적인 보전・육성으로 식물종다양성・자원화 연구의 활성화 촉진

o 사업대상지 : 3ha이상의 공유지

o 사업기간 : 3년(설계 1년, 조성 2년)

o 사 업 비 : 개소당 총사업비 15억원 이내 또는 1ha당 2억원 이내

o 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o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o 사업내용
- 지방고유의 향토・특산식물을 보존・전시할 수 있는 자생식물 전시원 조성
- 자생식물의 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한 전시관・체험관・산림생태관찰원・탐방로 등 설치・조성
- '12년 사업추진 : 8개소(설계5, 조성3), 20억원

**다)「생태숲 지정・관리지침」개정 및「자생식물원 운영・관리지침」제정 추진**

o 목 적
-「산림보호법」및「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대적 개정에 따라 생태숲 및 자생식물원 조성・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부지침 마련

o 주요내용
- 생태숲 변경지정에 등에 대한 지침 개정
- 자생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조성범위 등이 포함된 지침 제정

## 4) 지방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특성화, 전문화 추진

o 사업목적

- 생물다양성협약(CBD, 02) 이후 기후변화·산림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의무가 강화되어 생물다양성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후대별 전문화된 수목원 필요

o 사업규모 및 기간

- 공립수목원 : 개소당 보완사업비 3억원/년
- 산림박물관 : 개소당 보완사업비 2억원/년

o 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o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o 사업내용

- 식물자원의 보전·증식·전시 및 연구시설(전시원, 온실, 관리·연구시설)

o 사업대상지 선정

- 사업 신청 : '12. 3월말(시·도지사 → 산림청장)
- 사업대상자 선정 :「타당성심사위원회」의 심사('12. 5월)
  - ▪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
  - ▪ 타당성 심사 전에 관계공무원이 사업대상지를 현지조사·확인
- 사업대상지 확정 및 예산신청 등
  - ▪ 타당성 심사 결과를 당해 시·도에 통보(산림청 → 시·도)
  - ▪ 타당성 "적합" 통보를 받은 시·도에서는 예산신청 등 필요한 조치
- '12년 사업추진 : 29개소(설계1, 조성16, 보완·확대 12), 210억원

## 5) 사립수목원 지원

o 사업목적

- 신규등록 사립수목원의 조기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시설·장비구입 등 자본보조와 사립수목원의 특성화·전문화를 위한 '특성사업' 지원

o 사업개요

- 신규 등록 사립수목원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설·장비구입비 '일반사업' 지원
  - · 지원대상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등록수목원
  - · 지원분야 : 식물유전자원 구입비 등 자본보조
  - · 지원규모 : 개소당 국고 5천만원(국고 50%), 5년간 지원하여 일몰제 적용
    ※ '12년 지원대상 수목원 : 1억원, 2개소

- 사립수목원의 특성화・전문화를 위한 '특성사업' 지원
  ・지원대상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수목원
  ・지원분야 : 전시원 조성, 교육・체험 등 특성화된 시설의 설치・조성
  ・지원규모 : 개소당 국고 1억원(국고 50%), 3년 동안 지원
    ※ '12년 국고지원액 : 2억원, 2개소(3년차 2)

o 추진계획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에서 '농수산생명유전자원 관리기관'에 사립수목원을 등록을 통한 지원

## 6) 수목원・생태숲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o 추진목적
- 수목원・생태숲 보유식물의 체계적 관리
- 각 기관간 정보교류 촉진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o 사업내용('08~ )
- 「네트워크관리시스템」 구축
  ▪ 산림청(국립수목원) - 시・도 - 수목원・생태숲간의 정보교류 촉진,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의 이용 활성화
- 국가표준식물종관리프로그램 개발・보급
  ▪ 수목원・생태숲의 보유식물종 관리를 위한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
- 전시원 식재 전산도면 구축
  ▪ 전시원의 식재정보를 전산도면으로 제작, 관리・운영
    ※ '08~'11년까지 국・공・사립수목원 42개소 적용

o 2012년 사업 추진계획
- 예　　산 : 500백만원
- 대상기관 : 4개소
- 내　　용 :「국가표준식물종관리프로그램」적용 및 전시원식재전산도면 구축
- 연차별 투자현황

(단위:억원)

| 연　도 | 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사업비 | 27.5 | 6 | 6 | 6 | 4.5 | 5 |

## 7)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o 사업목적

- 선진국의 정원문화 도입 및 한국전통정원·수목원문화의 발전계기를 마련하고 조경 등의 수목 산업발전에 기여

o 수행주체 : 전라남도·순천시(주무부처 : 산림청)

o 사업기간 : '10~'12년(박람회 개최 : 2013년 5월~11월)

o 사 업 비 : 총 966억원(국비 149억, 도비 90억, 시비 727억)

- 부지 547억, 기반조성 120억, 건축·전시 179, 연출 35, 경비 85

※ 국비지원 : 110억원(기반조성 60, 건축·전시 50)

o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o 연차별 지원현황

(단위:억원)

| 구분 | 계(확보)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계 | 966 | 18 | 525 | 65 | 253 | 105 |
| 국 비 | 149(110) | - | 20 | 20 | 109(70) | - |
| 지방비 | 856 | 18 | 505 | 45 | 183 | 105 |

## 8)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비

<추진배경 및 목적>

o 2001년 법이 제정된 이후 정원·가드너·자생식물·국립수목원 분원 등 새롭게 추진이 필요한 산림분야정책을 발굴하는 등 시대의 업무흐름에 맞게 체계적인 전문개정이 필요

o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으로 수목원·식물원에 대한 정부지원강화 등 제도정비 및 효율적 운영 관리 도모

o 훈령·예규 등으로 자체 운영되고 있는 일부 규정을 법령으로 법제화

<세부추진계획>

o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수요 조사

- 국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 및 사립수목원을 중심으로 개정 수요 파악

o 공·사립수목원 건의사항 및 사립수목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된 과제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적극 반영

o (예규)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조항을 법령에 반영하여 법제화

## 라. 추진일정

o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사업 추진단 구성 : 2012. 1월

o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개정 : 2012. 1월

o 자생식물원 운영관리지침 제정 : 2012. 1월

o 사립수목원 지원 방안 마련 : 2012. 2월

o 수목원법 개정안 마련 : 2012. 3월말까지

o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사업 추진단 운영 : 2012. 2~12월

o 국립중앙수목원 기본계획 수립 : 2012. 2~12월

o 국립중앙수목원부지 토지개량 및 성토 등 기반조성을 위한 협의(건설청, LH) : 2012. 2~12월

o 생태숲, 자생식물원 등 신규 및 특성사업지 타당성심사 : 2012. 5월

o 권역별 수목원 확충에 따른 국립수목원 편제 정비방안 마련 : 2012. 6월

o 수목원법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 수행 : 2012. 9월말까지

o 수목원법 개정안 국회제출 : 2012. 10월말까지

# 4. 불법 산림피해방지 대책 추진

목 표

◇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계도활동 강화로 인위적 산림피해 최소화
- o 특별사법경찰관 : 1,467명, 청원산림보호직원 : 381(국가 214명, 지자체 167명)
- o 숲사랑 지역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확대

## 가. 정책여건

o 산행인구 및 산지개발수요 급증으로 산림오염과 산림훼손 우려 증대

o 지속적인 산림불법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
- ('07) 2,492건 → ('08) 2,430건 → ('09) 2,445건 → ('10) 2,493건

o 우리나라 산림면적 대비 산림 현장 보호·단속 인력은 부족한 실정
- 전국 산림면적 637만ha, 단속인력 1,467명(평균 4,341ha/명)

## 나. 추진방향

o 불법산림피해의 유형·시기를 고려한 현장 맞춤형 대책 시행

o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효율적 운영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림보호 단속강화

o 산림보호담당구역 책임 단속제 실시
- 개인별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
  * 월 2회 이상 산림보호 활동 실시
- 산림보호 책임담당구역에서 피해발생시 책임한계 규명
- 시·군·구별로 지역단위 민간감시단과 연대하여 감시 추진

o 불법산림피해의 신속 대응을 위한 산림사범 수사기동반 운영
- 지방자치단체·지방산림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분야별 전문성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

- 시·도 담당과장 및 지방청 운영과장을 반장으로 선임
- 산림훼손의 고소·고발, 진정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처리로 국민의 신뢰성 제고

o 산림청(지방청)-지자체간 공조체계 확립 및 산림피해 시기별·유형별로 정기 예방 단속 실시
-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 불법산지전용 등 위반행위 다발지역 집중관리
- 소나무 등 조경수 불법 굴·채취행위 및 밀반출 중점 단속

o 민통선지역 불법 산림훼손방지 유관 기관간 합동기동단속 실시
- 군부대와의 협약 체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감시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는 상시 단속 활동 추진
- 농경지 주변 등 산림훼손 우려 지역은 산림보호 감시원을 고정 배치

o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실무 능력 배양
- 산림보호담당자 수사실무 집합교육,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교육 실시

o 정보화지식기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 효과 제고
- FGIS, 온나라 지도 등을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시 활용

o 산림환경 오염 방지 대책 추진
- 산림정화보호구역, 유원지, 주요 등산로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산림보호원을 배치하여 계도 및 단속

o 홍보 및 계도
- 산림피해 유형별 단속 계획 등을 각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
  · 시·도 및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월별 중점 단속대상을 지정·홍보
  · 중대한 불법행위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국민 경각심 고취
-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홍보 실시

## 2) 청원산림보호직원 관리·운영 개선

o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책임 관리·운용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무에 부합하는 직무부여 및 지도·감독 강화
-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근무기강확립 교육 실시(분기별 1회 이상)

o 청원산림보호직원 관리·운영 지침 마련

o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워크숍 개최(연 1회)

o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운영권자를 소속 기관장으로 일원화

* (배치권자) 수목원장, 품종관리센터장, 휴양림관리소장 등을 추가

o '12 신규배치 : 8명(국립휴양림 6, 북부지방산림청 1, 남부지방산림청 1)

- 시기 및 방법 : '12. 1월 중 거주지 제한 공개경쟁 채용

* 국립휴양림관리소는 2011년 협의한 휴양림 연차별 배치기준 준수

o '12년 청원산림보호직원 운영 현황 조사

- 배치 및 부여임무 적정 여부 등 관리실태 조사

* 조사결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원조정 등 개선 조치

## 3) 「숲사랑 운동」 추진

o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숲사랑 운동 전개

- 숲사랑지도원(61천명)을 중심으로 구축된 5개권역 숲사랑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조직화된 숲사랑 운동 전개
- 숲사랑지도원의 숲사랑홈페이지(www.forestlove.or.kr) 가입 확대 및 숲사랑 활동 소개, 숲 관련 지식정보 상호공유 및 협력활동 추진 등

※ 숲사랑 뉴스레터 제작·배포(매월), 산불 등 산림재해 위험기간에 자발적 산림보호활동 독려 SMS 발송(수시) 등 추진

o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증가 추세로 숲사랑운동을 "(가칭)기업 숲사랑 CSR 운동" 으로 확대 추진

- 정부와 민간, 기업의 숲사랑 활동에 대한 각각의 역할과 실행방법 정립· 추진

o 「숲사랑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 및 지원

- 산림청은 총괄 관리·지원하고, 지방산림청 및 시·도는 지역 관리·지원
- 활동우수자는 각종 행사·이벤트 초청, 포상 등을 통한 참여의식 및 자부심 고취, 숲사랑운동 리플렛 홍보 등 제반활동 추진 지원

※ 숲사랑지역네트워크 우수사례 경진대회, 숲사랑지도원 결의대회 등 개최

o 숲사랑지도원증 위촉·신청절차 간소화 및 업무효율화를 위해 숲사랑 홈페이지를 통한 숲사랑지도원 신청 및 위촉업무 의무화

- (홈페이지) 개인 신청 → 산림관계공무원 추천 → 지방청별 위촉·심사 → (증발급) 지도원증 발급 → SMS 통보

## 라. 추진일정

o 청원산림보호직원 관리・운영 지침 수립 : 2012. 1월

o 「숲사랑 운동」 추진계획 수립・시행 : 2012. 2월

o 불법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통보(산림청) : 2012. 2월

o 유형별 중점 단속계획 수립(시・도, 지방청) : 2012. 2월

o ‘산림사범 수사기동반’ 편성 : 2012. 3월

o 숲사랑지도원 전국네트워크 추진 협의회 개최 : 2012. 5월

o 청원산림보호직원 워크숍 개최 : 2012. 6월

o 숲사랑지도원 권역별 워크숍 개최(지방청) : 2012. 6월～11월

o 청원산림보호직원 신규 채용자 교육 : 2012. 9월

o 「숲사랑 운동」 온라인・오프라인 활동 : 연중

<참 고>

# 산림피해 유형별 중점 단속계획

| 단속유형 | 단속 내용 | 단속지역 | 단속시기 |
|---|---|---|---|
| 불법산지전용 등 | o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 | 전국일원 | 연중<br>(분기별) |
| | o 수목장림 조성, 분묘 조성지 과다 훼손 | | |
| | o 건축물 증·개축 빙자 불법훼손 | | |
| | o 농지전용지 경계 침범 훼손 등 | | |
| 불법임산물 굴·채취 및 유통 | o 산나물·산약초, 약용수목 굴·채취 | 전국일원 | 연중 |
| | o 관상·조경수목 굴·채취, 유통 | | |
| | o 산림내 자연석 밀반출 | | |
| | o 멸종위기 식물의 채취 | | |
| | o 고로쇠 등 수액 무단채취 | | |
| 백두대간,<br>산림유전자원보호<br>구역 등에서의<br>불법행위 | o 희귀수목(주목)·약용수목 굴·채취 | 백두대간·<br>산림보호<br>구역 | 4~9월 |
| | o 불법 산지전용 | | |
| | o 무속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 | | |
| | o 국유림 불법점유 행위 등 | | |
| 산지오염 등<br>불법행위 | o 쓰레기 무단투기 | 휴양림<br>관광지<br>주변 | 6~9월 |
| | o 계곡 등 경관보전지역 훼손 | | |
| | o 안내·홍보시설물 파손 | | |
| 기타 사업지 등<br>불법행위 | o 입목 벌채지 잘못베기<br>- 수종갱신, 솎아베기 사업지<br>- 표고자목 생산 벌채지 | 사업지 | 연중 |
| | o 사용허가지 경계 침범 | | |
| | o 채광·채석장 경계 침범 등 | | |
| | o 도로개설지 과다훼손 등 | | |

# 5. 도시숲 조성·관리

목 표

◇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녹색공간 창출 및 도시숲법 제정을 통한 정책기반 확립

o 도시숲 조성 : 193개소(264ha), 37,417백만원

o 국유지 도시림조성관리 : 12개소, 600백만원(조성 500, 관리 100백만원)

o 도시녹지관리원 : 381명 2,791백만원(지자체 363명, 지방청 18명)

## 가. 정책여건

o 도시숲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정책 기반 마련

o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도시숲을 통한 체험·교육 활동기회 요구 증대

o 도시숲에 대한 기업참여 도시숲 등 투자재원의 다양성 확보 필요

## 나. 기본방향

o 도시숲을 연계하여 규모 있는 도시숲으로 육성하고 이를 문화 공간으로 활용

o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의 협력강화로 체계적인 조성·관리 방안 구축

o 국토해양부 등 유관부처 및 민·관 협력 강화로 도시숲 정책 개발과 정보·술의 공유 등 파트너십 구축

## 다. 세부추진계획

### 1) 녹색쌈지공원, 생활환경숲 조성

#### 가) 대상지 선정

<녹색쌈지공원>

o 시민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건물사이의 자투리땅 등에 조성·관리하는 숲

<생활환경숲>

o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 등을 위한 공단, 주요병원, 요양소 등의 건축물(옥상·벽면녹화) 및 주변, 폐기물 매립지, 하천·제방부지 등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숲

### 나) 조성방법

o 대상지의 규모, 인접 지역의 생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설계
- 동·읍 또는 시·군·구내의 기존 도시숲 배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녹색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규모 있는 도시숲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설계
- 시설물은 이용도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토록 반영
- 신청 및 설계 단계부터 산림사업으로 발주·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o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
- 공원형, 경관형 등은 생태환경과 주변경관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
- 주민 이용도와 숲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시설 도입
- 숲의 기능과 함께 지속적인 산림문화(이야기)공간을 조성

o 인위적 시설물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
- 조경공사 개념의 잔디밭 조성이나 관상수 식재 중심의 조성방식 지양
- 시설물 도입은 이용도를 고려하여 사업 목적에 맞도록 적의 반영

o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 추진
- 토양이 척박한 경우 토양개량 등 먼저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대책마련 후 조성 추진

o 교목 중심으로 숲을 조성하되 관목·초화류를 적절히 보완
- 주변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자생 초화류를 섞어 심어 심미적 경관 창출

o 준공검사 시 설계의 식재규격 점검 등 엄정한 기준 적용
- 식재목의 규격 외에도 건강성·수목 활력 등을 점검

o 독립적인 비오톱(Biotope)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
- 큰나무 위주의 제한된 수종보다는 면적, 위치 등을 감안 다양한 식생 도입

o 도시 녹색네트워크 구축상의 중간 거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성
- 인공지반녹화, 벽면녹화 등 다양한 그린네트워크 구축

## 2) 경관을 고려한 산림공원 조성

### 가) 대상지 선정

o 도시지역의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또는 도시 내 국·공유지의 산림
- 면지역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
- 타법에 의한 제약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이미 취한 지역

o 접근성이 양호하고 이용도가 높은 산림공원 확대 조성
- 산림서비스림(산림공원) 조성 기관은 국유림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 등 이행
- 이용도가 높은 도시주변은 매수 취지를 살려 조기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조치

o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소관 사업은 이용도가 높은 도심의 산림과 국유지 도시숲조성·관리 사업 예정지를 이용하여 추진하되 타법에 의한 제한 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 도시숲조성·관리의 국가정책의 실효성 및 장기적인 사업추진 기반 마련

### 나) 조성방법

o 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조성하되 경관적 요소를 감안
- 아파트 등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은 공원형 및 보건·휴양형 조성
- 도심 속에 고립된 지역인 경우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생태형으로 조성

o 사업은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산림공원 조성
-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이 필요한 곳은 조망점 중심으로 경관 숲가꾸기 실시
- 보완식재가 필요할 경우 경관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등

o 인공시설물의 도입은 이용도 및 사후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설치
-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는 입지여건과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설치
- 주변 숲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o 자연재해의 안전성을 고려한 수목식재 및 이용시설물 설치 등
- 최근 기상이변과 국지성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수목식재 및 입지여건에 부합한 시설물의 도입
- 과다한 이용으로 훼손된 산림공원은 복구사업 반영 등 재해안전성 확보

### 다) 지역주민·단체·기업 등과 함께 조성·관리하는 도시숲

o 시민단체·기업참여, 지역주민 등과 협조하여 조성
-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는 사업목적,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 형성
- 규모 큰 도시숲조성 사업은 수목의 생태환경 고려 등 전문가 자문·협력

o 단체·기업이 참여한 도시숲 조성
- 지역의 녹지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부지 및 예산지원 활용
- 향토기업 등 지역별 연고기업에 대한 도시숲 사업의 참여 방안 확대

o 도시숲은 조성 후 이용자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게 하여 애착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관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
- 그린오너제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주민의 수목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
- 시민이 참여한 도시숲은 다양한 행사 명칭을 부여하고, 성과관리 등을 통해 녹색우수사례로 제시

## 3) 도시숲 모델(시범)사업

### 가) 조성 대상지 선정

o '12년도 지자체 도시숲 모델(시범)사업 추진
- 지자체 도시숲 모델(시범)조성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연내 완료(2개소)
- 금년까지 조성한 모델사업에 대해 개소별 사업성과 분석 제시
※ 각 시도별 시범사업은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하여 모델 제공

### 나) 조성방법

o 지자체 도시숲 모델(시범)사업
- 2012년 사업계획 : 2개소, 1,000백만원(시공 2년차)

o 설계 단계부터 지역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모델을 도입
- 조성지의 규모, 입지 여건, 이용도 등을 종합하여 도시숲 모델 개발
- 숲의 생태환경 및 경관 가치를 고려한 거점 녹지공간으로 조성
-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특색 있는 유형의 모델조성

### 다) 시민참여 확대 및 전문가 자문 등 참여

o 모델(시범)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하여 설계 추진

o 도시숲 조성 유형에 알맞은 설계 및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 참여

o 현장설명회 등에 지역주민·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공감대 형성

## 4) 국유지 도시숲 조성

### 가) 국유지 도시숲조성·관리 성과평가 및 분석

o 국유지 도시숲 조성·관리 5개년 계획 수립
- 지난 5개년 계획의 성과평가 및 분석을 통해 신규 계획의 효율성 도모
- 수립방향, 계획기간, 주요계획 내용은 별도 지침에 의거 추진
※ 지방청별로 작성하되, 북부지방청은 남산도시숲조성·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토록 검토

o 도시림내 경관을 고려한 종합적인 산림공원 계획의 수립 유도
- 숲가꾸기, 숲길 등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업추진 이행

o 인천 소송 환수재산을 활용한 국가도시숲의 활용 방안 검토·추진(장기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등 검토)

### 나) 산림서비스림 매수지 관리

o 산림서비스림 매수재산의 사후관리 철저
- 산림서비스림 매수재산은 당초의 매수 목적과 관리계획의 목적에 부합토록 재산관리에 철저
- 해당 기관별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당초 목적대로 이용관리토록 조치
-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서비스림을 조성할 경우에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 또는 "국유림의 대부 등"

※『산림서비스림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당초 도시숲 조성을 목적으로 공모·매수한 임지의 경우는 사용목적에 부합토록 사후관리 철저

o 기존 산림서비스림 매수지 조성추진 활성화
- 산림서비스림은 매수 목적에 부합토록 관리하고, 국가가 직접 국유지 도시숲 조성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도시숲조성·관리 5개년 계획』에 반영·관리

## 5) 기업참여를 통한 도시숲조성·관리 사업의 다각화

### 가) 기업참여 도시숲조성·관리 활성화 추진

o 도시숲 조성·관리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제시 및 기업-정부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 창출
-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 추진 중 코레일과 '역사(驛舍)의 숲'조성 추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 사례 발굴

o 지역 연고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참여 활성화(국내·외 주요기업)
- 지역연고 기업의 도시숲조성·관리 참여 유도 및 MOU 등 추진기반 도모

o 기업후원 도시숲조성·관리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사업추진 내실화
- 도시숲·학교숲 새집달아주기, 나무이름푯말 설치 사업 추진(LG상록재단 협조)
- 지자체의 추진사례를 파악하고, 활성화토록 지원방안 모색

## 6) 지자체 녹색도시(Green City) 우수사례 선정・시상

### 가) 사업목적

o 도시숲조성 사업은 '05년부터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성도시의 사후관리 모니터링과 녹색도시 우수사례 전파

o 도시숲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 등이 우수한 지역을 공모 받아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합한 녹색도시를 선정・격려

### 나) 사업내용

o 사업기간 : 2012. 4. . ~ 10. 31

o 사업대상 : 각 지자체에서 도시숲 조성 우수사례를 발굴 제출
- 2005년도 이후 사업대상지를 위주로 도시숲·학교숲 및 가로수
- 규모 있는 도시숲 및 지역의 우수한 명품 가로수길 선정

o 제출기관 : 시·도, 시·군·구

o 시상내용 : 11개 지역(최우수 1, 우수 3, 장려 7)
※ 최우수상은 농림식품부장관상 수여 및 최우수지역 인증 추진

### 다) 시상행사 및 홍보

o 시상행사 : 2012.10월~11월 중(워크숍 행사와 공동 추진 예정)

o 녹색도시(Green City) 우수사례집 제작·배부 및 홍보

## 7) 제4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전 개최

### 가) 사업목적

o 기존 공원과는 차별화 된 녹색 도시숲을 표현하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공간 설계 및 계획기술 공모전을 통해 발전방안 유도
※ 산림청의 도시숲 정책방향에 맞추어 인위적 시설물 위주를 지양하고 자연(산림형)에 가까운 조성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

### 나) 사업내용

o 사업기간 : 2012. 3. . ~ 10. 30

o 참여대상 : 도시숲 설계에 관심 있는 국민
※ 학생 설계공모 여부는 별도 계획 단계서 협의・추진

o 사업추진 : 공모사업 위탁

o 설계대상 : 각 시도별 도시숲 사업 대상지 1개소 추천 제시

o 시상내용 : 19개 작품(대상 1, 최우수 1, 우수 2, 장려 5, 입선 10)
※ 대상, 최우수상은 농림식품부장관상 수여

다) 시상행사 및 홍보

o 시상행사 : 2012.10월 중

o 도시숲 설계 공모·선정 우수사례집 제작·배부 및 홍보

## 8) 도시숲조성 사업 사후관리

o 도시숲조성 사업 적기 추진
- 규모 있는 조성사업 대상지는 특별관리 현장책임관 지정·운영
- 사업추진 전년도부터 행정절차 이행조치 및 사전설계 등 추진

o 조성된 숲은 지자체, 기업 및 단체, 지역주민이 관리하는 체계구축
- 지자체 또는 기업·단체, 지역주민간의 공동 관리모델 발굴
  · 개인·단체 등과의 도시녹지 사후관리 위탁(협약) 및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 (예, [사]광양도심숲가꾸기위원회 구성·운영)
- 도시숲조성·관리 조례 제정 운영 및 민간참여 제도 등 마련

o 조성된 숲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관리 지원
-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보완
- 도시숲을 통해 산림자원을 만들고, 미래에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창출
  · 신규 조성 사업지의 경우 미래의 문화유산을 위한 스토리텔링 개발

o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신규 조성 시 민원반영
- 이용자만족도 조사는 시설·안정성·자연경관과 조화·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이를 차후 조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 9) 도시숲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o 도시숲·가로수 등 도시녹지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 도시녹지자원 조사, 가로수 실태조사, 병해충 방제 등 사업실행

o 2012년도 사업개요
- 사업규모 : 381명(지자체 363명 〔제주자치도 30명 포함〕, 지방청 18명)
- 사업예산 : 4,450백만원(국비 2,794백만원, 지방비 1,656백만원)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비 60%, 지방비 40%), 직접사업 100%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광특회계 예산이며 국비 70%임

o 도시녹지관리원 선발기준 및 자격 등(산림서비스증진사업 운영지침 참조)
-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 한 자 및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o 도시녹지관리원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실시
- 도시녹지 사후관리 등 녹지관련 정책업무의 소양교육 및 마인드제고
- 도시녹지 관리지식 및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10) 도시숲의 조성·관리 관련 제도 등

o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및 후속조치 이행
- 신규 제도 이행기반 마련 및 도시숲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검토

※ 국회 입법 추진이 완료되면 '12년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추진

o 지자체별 "도시림등조성·관리계획"의 수립
- "도시림등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 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함
-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계획 수립·공포

o 도시숲 포럼 창설 및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력강화
- 도시숲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포럼을 창설하고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력강화 체제 구축

o 「도시림 지속성 지수」 개발 보급
- '11년 '도시림 지속성 지수 개발' 연구를 통해 평가항목 등 설정
- '12년 개발지표에 대한 현장 검증 및 개발 지수의 보급 등 조치

## 라. 추진일정

o 사업계획 수립·통보 : 2012. 1월
o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통보 : 2011. 12월
o 도시숲정책 담당자 실무교육 : 2012. 2~3월
o 도시숲 설계 공모전 개최 : 2012. 3~10월
o 제2회 도시숲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 2012. 11월
o 지자체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추진 : 2012. 5~11월
o 도시숲 조성 현장 지도·점검 : 2012. 6월, 11월
o 도시숲 조성사업 실적 제출 : 2013. 1월
o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실적 제출 : 2012. 12월
o 국유지 도시숲 사업의 지난 성과평가 및 5개년 계획 수립 : 2012. 12월
o 도시숲법령 제정 추진 : 2012. 1~12월
o 도시숲 포럼 창설, 민·관협력 및 관계부처 협력강화 : 2012. 5~11월

# 6. 가로수 조성·관리

목 표

◇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통한 도시 생태계의 연결성 강화 및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 확보로 가치 있는 녹색도시 구현

o 지속적인 가로수 조성 : 242㎞, 8,917백만원

o 명품 가로숲길 조성 : 226㎞, 6,488백만원

## 가. 정책여건

o 가로수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가로수 정책 필요

o 단순한 도로 부속물에서 문화·예술·관광 요소를 연출하는 역할·기능 강조

o 도시 녹색 네트워크의 핵심이자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아이콘으로 부상

## 나. 기본방향

o 지역고유의 문화, 역사 및 전통을 아우르는 특색있는 명품 가로숲길 조성

o 차별화된 거리 문화 및 가로경관 연출을 위한 체계적인 수형관리

o 생명체인 가로수의 건강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o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강화를 통한 가로수 조성관리의 체계 확립

## 다. 세부 추진계획

### 1)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

o 지역별 환경 요소 및 생육 특성에 맞는 명품 가로숲길 조성·관리로 도시 경관창출 및 랜드마크화 유도

o 사업내용

- 가로숲길 신규 조성사업 : 역사·문화적 연관성, 향토수종, 주민요구 등을 고려한 합리적 수종을 대상으로 신규·보완식재
- 특색 있는 수형관리사업 : 수종별 생리, 특징을 살리는 수형모델을 개발하여 도시경관을 고려한 가지치기 및 수형관리로 특색 있는 가로경관 연출
- 생육환경 개선사업 : 토양오염, 답압, 지하구조물 등 지하부 생육조건을 고려하여 토양개량, 관수 등 가로수 생육기반을 개량
- 병해충 방제 등 건강한 가로수 관리 및 명품거리 및 거리축제 활성화사업

## 2) 신규 가로수 조성사업

o 지자체별 수립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고 '12년 편성된 예산(광특회계)은 조기집행

o 가로수 미조성 도로, 통행이 많은 도로 등에 우선적으로 가로수를 식재

o 도로폭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1열 식재 보다는 다열·복층구조의 식재를 유도하여 보다 풍요로운 가로공간을 형성하고 가로수목의 안정성 확보

o 대로변은 쾌적한 교통환경 및 녹음제공을 위한 큰나무 위주로 식재하고 상가 주변은 간판가림 등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목류 및 화단으로 조성

o 도로 확장·열악한 생육환경 등으로 기존 가로수를 교체할 경우 녹지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단, 관목 등으로 조성

o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할 경우 「소나무 가로수 식재 및 관리방안(도시숲경관과-1500호, 2010.5.28)」에 따라 조성

## 3) 가로수생육환경 개선사업

o 토양 양분부족, 협소한 생육공간 및 답압된 토양 등으로 정상 생장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유공관 설치, 투수층 확대 등 생육환경개선을 통하여 가로수의 정상적 생장을 유도

o 단목으로 조성된 가로수는 관목,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생태적 완충공간(띠녹지, Green Way)을 조성하여 투수량 확보, 생태적 건강성 증진

o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한 생육환경 특성별 개선사업 방법 및 공종을 체계화하고 일선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시달

## 4) 특색 있는 가로수 수형관리

o 도시의 역사·문화 등을 잘 나타내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거리로서 수형조절이 용이한 가로수를 대상으로 함
  -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 실행하여 명품거리로 육성

o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종전 일반회계 지원 사업에서 '11년부터 광특회계로 전환된 사업으로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편성 등에 대한 방안 강구

o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조성으로 도시경관 향상 및 상가간판 가림 등 민원 해소와 지역도시의 관광자원으로 육성

o 도시숲경관과-1077('10.4.12)호로 배부한 가로수 수형관리 매뉴얼에 따라 실행

### 5)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o 전국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가로수 기본계획」수립

o 전국 도로 및 환경 유형별 가로수 식재기준 및 관리모델 마련 추진(기획연구과제, '12년부터 2년간)

o 가로수 관리는 생육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하고 태풍 등 재해로부터의 피해예방을 위한 점검과 관리 철저

- 도시숲경관과-2367('11.7.28)호로 배부한 가로수 재해예방 및 복구 매뉴얼에 따라 실행

### 6) 가로수 조성관리의 내실화

o 가로수 관리 전문인 양성을 위한「가로수 기술자반」민간 위탁교육 지속 실시

- 년 3회, 250명(1, 2기 봄철, 3기 가을철), 산림인력개발원 활용

o 가로수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 가로수 조성·관리의 체계 확립을 위한 도로법 상의 가로수 관련 규정의 개정
- 가로수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 가로수 관련 정보제공 및 정책 이해도 향상을 위한 가로수 도감 발간

o 도심 야간경관을 위한 장식전구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

- 설치는 수목이 완전히 휴면상태가 되는 12월 이후부터 설치하고, 철거는 상록침엽수의 경우 최저기온이 영상이 되기 전인 2월말, 낙엽활엽수의 경우 3~4월 중 꽃이 피기 전 또는 잎이 나기 전에 철거함
- 철거할 때에는 전기줄이나 철사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수목의 생장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라. 추진일정

o 가로수 조성 및 관리실적('11년말) 보고 : 2012. 2월

o 가로수 기술자반 민간위탁교육 : 2012. 2월(2회), 11월(1회)

o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 2012. 4월

o '13년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지 검토 : 2012. 5월

o (가칭) 한국의 가로수 도감 제작 보급 : 2012. 6월

o 관련 부처간 가로수 업무 협의 및 법령·규정 개정 : 연중

o 가로수조성 및 관리실적 보고(시·도) : 2012. 12월

o 사업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시·도) : 상·하반기

# 7. 학교숲 조성·관리

목 표

◇ 학교숲 조성을 통한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제공 및 생활권의 부족한 녹색공간 확충

o 학교숲 조성(보조) : 145개교, 4,350백만원

## 가. 정책여건

o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환경의식 배양 등을 위한 학교숲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학교숲이 갖는 환경개선 효과 및 이를 활용한 자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적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

o 학교는 생활권 녹지확보를 위한 최적의 공간
- 학교는 생활권에 일정 위치마다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숲 조성을 통한 도시녹색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 역할이 가능

## 나. 기본방향

o 학교의 여건이나 주변환경을 반영한 유형별 학교숲 조성으로 녹지공간의 확보 및 지역주민의 녹색쉼터 제공

o 학교숲 설계 및 조성시 자연체험 또는 생태교육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하여 정서함양 도모

## 다. 세부추진계획

### 1) 학교숲 조성사업

o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체계 : 개교당 60백만원(국비 50%), 1년, 지자체 보조

o 학교숲 조성학교 선정기준
- 학교 교정과 주변 지역의 녹지량이 적어 숲 조성 효과가 높은 학교
- 학교숲을 활용한 산림문화·휴양 교육 및 자연환경학습 등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학교
- 교장, 교사, 학생 등 학교구성원의 학교숲 조성의지가 높은 학교

- 학교숲을 조성·관리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서함양·보건휴양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교
- 위 선정 기준의 부합여부가 비슷할 경우는 학교숲 조성면적이 0.05ha(500㎡) 이상이거나 행정구역상 읍이상 지역에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

※ 기존의 산림청 학교숲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던 학교는 제외

【학교숲 조성학교 선정 체계】

| 【단계】 | 【주요 사항】 | 【수행주체】 |
|---|---|---|
| 공고 및 접수 (9-10월) | • 각 시·도별 익년도 학교숲 조성 사업량 배정·통보<br>• 학교숲 조성학교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산림청<br>지방자치단체 |
| ⇩ | | |
| 1차심사 (9-10월) | •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학교숲 조성 대상학교를 광역자치단체에 통보 | 기초자치단체 |
| ⇩ | | |
| 최종선정 (10-11월) | • 익년도 학교숲조성 대상학교 최종 선정<br>- 지역적 균형, 학교구성원의 참여도를 고려<br>• 최종 선정 결과를 산림청에 통보<br>• 선정된 학교는 기초자치단체를 통하여 통보 | 광역자치단체 |
| ⇩ | | |
| 선정 결과의 홍보 (10-11월) | • 선정된 학교의 인터넷 및 언론매체에 공고 | 산림청 |
| ⇩ | | |
| 협약체결 (12월) | • 기초자치단체-학교숲 조성학교간 협약 체결 | 기초자치단체·학교 |

o 학교숲 조성 시 고려사항

- 자연성 확보
  - ·자연스러운 숲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학교공간을 최대한 활용
  - ·자연성을 떨어뜨리는 조형적이고,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 지양
  - ·개별 수목들의 자연스러운 수형을 유지한 상태로 조성
- 기능성 실현
  - ·학교숲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
  - ·소음방지, 기후조절, 정서함양, 시각차폐 등 숲이 갖는 기능을 강화
- 교육성 강화
  - ·학교숲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학교숲 설계 및 조성
  - ·학교숲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

o 학교숲 사후관리 강화 및 교육적 활용도 제고
- 학교숲 조성학교와 기초지자체간 조성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여 사후관리강화 방안 마련
- 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 실시를 통해 교육적 활용도 제고

o 학교숲 조성시 일률적인 예산지원(개교당 6천만원)보다는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시·도별로 특색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델 학교숲을 조성

o 학교숲 조성과 운영 부문 우수사례 발굴·보급을 위한 사례집 작성(산림청)

o 학교숲 조성사업(보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활용 촉진방안 마련
- '10년부터 추진한 학교숲 조성사업(보조, 145개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등 촉진방안 마련

## 2) 학교숲코디네이터

o 도입목적 및 운영방향
- 학교숲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식재·관리 계획수립, 수목관리 컨설팅, 현장지원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학교숲의 조성 및 사후관리 강화
- 산림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녹색일자리 제공

o 사업개요
- 사업규모 : 91명
- 사업예산 : 1,341백만원(국비 805백만원/지방비 537백만원)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비 60%, 지방비 40%)

o 주요업무
- 학교숲의 조성·관리를 위한 식재·사후 관리 및 관련 계획 수립 컨설팅
  · 학교숲 조성에 따른 수종 선정·배치 등 식재계획 수립 컨설팅
  · 주요 수종별 특성 및 식재·관리 요령 자문
  · 학교숲 조성에 따른 수목 식재·관리 등 현장 기술자문 및 지원
- 학교숲의 교육적 활용 지원 및 지역커뮤니티 형성 자문 등
  · 학교숲 활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모니터링
  · 학교구성원,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형성방법 안내
- 학교숲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업무(현장지원 포함)
  · 학교숲 설명 및 교육 지원
  · 학교숲 자원 조사 및 DB구축,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 기타 선발권자가 학교숲의 조성·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o 추진체계

- 산림청 : 총괄
  - · 학교숲코디네이터 추진지침수립, 예산확보, 행정지원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 지자체 : 사업추진
  - · 학교숲코디네이터 선발, 지역학교별 수요조사 및 배정, 근로감독 등
  - · 학교숲코디네이터는 학교숲 조성, 학교공원화,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예정인 학교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
- 근로자 :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 및 근무일지 기록

## 라. 추진일정

o 학교숲 조성

- '11년도 학교숲 조성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2012. 1월
- '12년도 학교숲 조성사업 현장 점검 : 2012. 5월, 10월
- 학교숲 조성사업(보조) 모니터링 추진 : 2012. 3월~6월
- 모델 학교숲 우수사례 선정 : 2012. 10월
- '13년도 학교숲 조성학교 공고 및 선정 : 2012. 9~11월

o 학교숲코디네이터

- 채용공고 및 선발 : 2011. 12월말까지
- 학교숲코디네이터 채용 결과보고 : 2012. 1. 30까지
- 교육훈련 : 2012. 2. 22~24
-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 2013. 1. 10까지

# 8. 전통 마을숲 복원

목 표

◇ 전통과 문화가 있는 마을숲을 발굴·복원하여 그 기능을 회복하고, 산림문화자산 및 아름다운 산림경관자원으로 육성

o 전통마을숲 복원 : 6개소, 300백만원

## 가. 정책여건

o 농산촌의 고령화, 건물·도로 등 개발수요 증가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전통 마을숲의 훼손·단절의 우려

o 전통 마을숲은 역사·풍수·사회문화적 이유로 주민들이 조성 또는 공동으로 보호하고 관리해 온 산림문화유산으로 보전·관리할 필요성이 증가

## 나. 기본방향

o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 마을숲을 복원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주변 산림과 연계한 산림경관자원으로 육성

o 토착신앙, 역사·전설·구전 등 마을숲의 문화자산을 계승하며, 마을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토속문화 공간으로 조성

## 다. 세부추진계획

### 1) 전통 마을숲 복원

o 복원방향

- 전통 마을숲의 유래, 역사·문화적 가치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마을의 특색 있는 산림문화자산으로 조성
- 전통 마을숲이 지닌 경관/풍수, 환경조절, 문화/종교, 휴양/관광, 자연/생태적 특성을 회복하여 특색 있는 마을숲으로 조성
- 마을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협력과 참여를 통하여 산림문화와 역사를 잇고 마을숲을 교육 및 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성화

**【전통 마을숲의 기능에 따른 조성방향】**

| | |
|---|---|
| 경관/풍수 | • 마을숲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마을숲의 조형미적 기능을 고려<br>• 풍수적인 비보(裨補)[5], 압승(壓勝)[6], 수구막이[7] 등 전통 마을숲 기능 제고 |
| 환경조절 | • 방풍, 방사, 온도·습도 조절, 그늘 제공 등 마을숲을 통한 미기후 개선·조절<br>• 수문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을 최소화하고 토양유실방지 기능을 향상 |
| 문화/종교 | • 전통놀이, 축제, 제례 등을 위한 공간으로 유도하고 원형 복원에 주의<br>• 마을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유도 |
| 휴양/관광 | • 휴양·휴식을 위한 공간과 마을숲이 보호되어야 할 공간을 분리하여 조성<br>• 생태관광, 체험, 교육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식재 및 공간구성 |

※ 마을숲은 기능이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조성방향을 설정

o 사업대상지 선정 체계

- 사업대상지는 서류·현장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대상지를 최종 선정(※기 사업지원 개소는 대상지에서 제외)
- 선정 방식 : 1차 서류평가 → 2차 현장평가 → 3차 최종선정

| 【단계】 | 【주요 사항】 | 【수행주체】 |
|---|---|---|
| 서류접수 (8~9월) | • 16개 시·도별 대상지 선정 제출 → 산림청 | 지자체 |
| ⇩ | | |
| 서류평가 (9월) | • 마을숲자문위원회 구성<br>• 서류평가<br>- 각 시·도별 신청 개소 중 선정기준을 통하여 평가 | 산림청 |
| ⇩ | | |
| 현장평가 (9월) | • 서류평가 결과 선정 지자체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산림청 |
| ⇩ | | |
| 최종선정·통보 (10월) | • 서류·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대상 선정·통보 | 산림청 |

o 전통 마을숲 주요 선정기준

- 마을숲의 역사·문화적, 경관·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 주민참여 의지가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마을숲 복원여건이 좋은 지역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높은 지역
- 마을숲의 복원 및 후계림 조성 등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계획된 지역

5) 비보(裨補) : 풍수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는 것
6) 압승(壓勝) : 풍수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눌러 제압하는 것
7) 수구막이 숲 : 마을의 앞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출구나 지형상 개방되어 있는 마을 앞부분을 은폐하기 위한 숲

o 2012년 전통 마을숲 복원사업 대상지

| 개 소 | 명 칭 | 면 적 (ha) | 사업비 (백만원) | 비 고 |
|---|---|---|---|---|
| 계 | 6개소 | 12.5 | 600 | |
| 대전 동구 이사동 산3 | 이사동 한옥마을숲 | 5.2 | 60 | |
| 강원 원주시 문막읍 취병2리 | 진밭마을숲 | 0.6 | 100 | |
| 충북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 개안마을숲 | 0.6 | 100 | |
| 전북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 | 삼산리마을숲 | 1.0 | 140 | |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 법성진숲쟁이 | 2.0 | 100 | |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상대리 | 상대마을숲 | 3.1 | 100 | |

o 전통 마을숲 추진시 고려사항

- 마을숲의 복원방향과 부합되게 복원하며, 마을숲이 자연스러운 경관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인공적 시설물 및 재료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
- 마을숲에서 이루어지던 당산제 등 문화축제는 외부인들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으로 발굴하여 그 내용을 다양화함으로써 마을숲의 특성을 살린 산림문화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복원

### 2)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o 전통마을숲의 제도 확대 및 개선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o 전국 전통마을숲의 유형별 분석과 장기적·체계적인 복원 대책 마련

o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된 복원사업지(53개소)에 대한 성과 분석 등

## 라. 추진일정

o 전통마을숲 기본계획 자문회의 개최 : 2012. 2월

o 사업계획 수립·통보 및 예산배정 : 2012. 1월

o 실시 설계 및 사업착수 : 2012. 2~3월

o 전국 전통마을숲 현황자료 추가 및 갱신 : 2012. 8월

o 2013년도 사업희망 대상지 조사 : 2012. 7~8월

o 전통마을숲 복원 추진상황 현장 점검 : 2012. 5월

o 2013년도 사업대상지 현장 심사 및 최종 선정 : 2012. 9~10월

o 2012년도 전통 마을숲 복원 완료보고 : 완료 즉시 보고

# 9. 산림경관 보전·관리

목 표

◇ 산림경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기반마련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o 국가산림경관벨트 기본계획 수립 : 500백만원

## 가. 정책여건

o 국토 경관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경관의 핵심요소인 산림경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경관법」제정('07.11),「산림경관 관리 기본계획」수립('09.12) 등

o 국토의 미적가치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녹색관광'의 전략적 육성으로 산림의 역할이 증가

- 친환경적인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등 새로운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림분야 인프라 중요성 대두

## 나. 기본방향

o 산림경관의 지역별 다양성과 특이성을 바탕으로 산림경관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관리방향 정립으로 경관·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으로 육성

o 산림경관자원을 발굴하여 시각의 질을 높이고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산림경관관리 모델제시

## 다. 세부추진계획

### 1) 국가산림경관벨트 기본계획 수립(500백만원)

o 국토의 큰 골격인 해안, 하천, 내륙별 산림경관벨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아름답고 품격 있는 산림경관관리 기반 마련

o 산림경관벨트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마련된 산림경관관리지역 100개소에 대하여 전국을 통합하여 벨트별 국가적 대표성·위상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o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
- 국토 품격 향상을 위한 산림경관벨트별 기본방향 및 목표
- 국가산림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산림경관의 특징,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산림경관관리지역에 대한 산림경관관리 기본방향의 제시
- 기타 산림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과 지자체 산림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

〈국가산림경관벨트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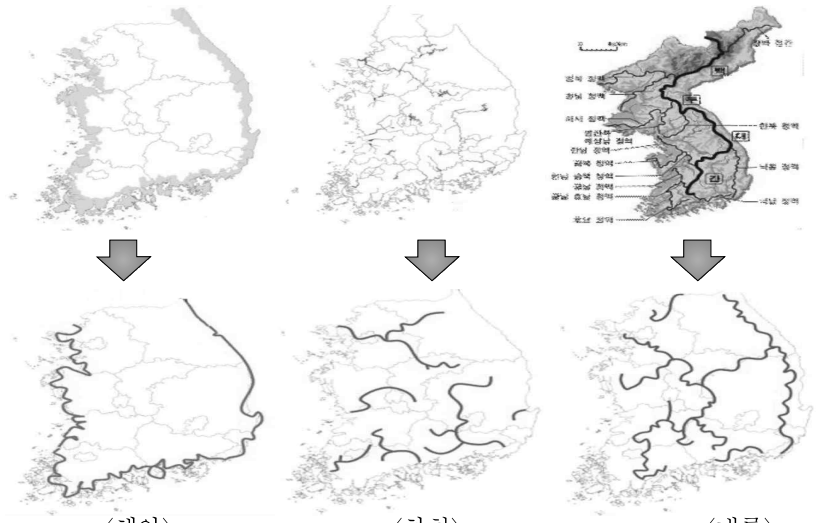

〈해안〉 〈하천〉 〈내륙〉

## 2) 산림현장 유형별 경관디자인 기술개발('09.3～'12.2)

o 산림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벤토리 구축, 등급체계 등의 기초연구

o 산·학·연 공동으로 종합적으로 산림경관의 특성에 따른 디자인 기법과 산림경관관리 시업기술 개발을 통한 모델 제시

o 산림현장 유형별 경관디자인 기술개발 연차별 계획
- 1년차 : 산림경관자원 개념 정립 및 인벤토리 구축기법 개발
- 2년차 : 산림경관 유형별 시범사업을 통한 현장 적용 매뉴얼 작성
- 3년차 : 산림경관 교육 교재 작성 및 산림시업에 의한 시범사업 실시

# 라. 추진일정

o 국가산림경관벨트 기본계획 수립 추진 : 2012. 2월～11월

o 국가산림경관벨트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12. 12월

o 산림현장 유형별 경관디자인 기술개발 추진 : 2012. 2월까지

# 10. 나라꽃 무궁화 보급·확대 사업

목 표

◇ 생활권 주변의 무궁화 보급 지속 확대 및 문화 운동의 내실화 추진으로 범국민적인 나라꽃 무궁화 위상 강화

o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 : 14개소, 600백만원

o 연중 무궁화 문화행사 추진 : 심포지엄(6월), 전국축제(8월) 등

## 가. 정책여건

o 최근 들어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국가상징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o 무궁화를 국가브랜드로 육성하여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상업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시장 친화적인 무궁화 확산 종합계획』수립

o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욕구, 지자체간 유치경쟁 등은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줌

## 나. 기본방향

o 무궁화로 특성화된 도시·동산·수목원 등을 조성하여 무궁화 명소 조성

o 무궁화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축제)행사, 전시공연의 확대 및 지원

o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무궁화 문화 확산

o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무궁화 상품개발 및 육종 연구 확대

## 다. 세부 추진계획

### 1) 특화된 무궁화 볼거리 명소 조성

o 무궁화 중심·거점도시 조성

- 무궁화로 특성화된 도시를 육성하여 국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무궁화 보급·확대를 위한 거점지역으로 활용
- 무궁화 중심 도시로 홍천군과 보령·완주군에 무궁화 수목원·박물관·테마공원 등 관련시설을 패키지로 조성하여 전국적인 명소로 육성

- 2013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 '09 | '10 | '11 | '12 | '13 |
|---|---|---|---|---|---|---|
| 계 | 32,700 | 900 | 3,340 | 3,000 | 10,160 | 15,300 |
| 홍천 | 17,900 | 900 | 1,000 | 700 | 5,000 | 10,300 |
| 보령 | 10,800 | - | 340 | 600 | 4,860 | 5,000 |
| 완주 | 4,000 | - | 2,000 | 1,700 | 300 | - |

※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합한 금액임

o 무궁화동산 신규 조성 및 조성지 관리

- 생활권내 소규모 자투리, 공한지 등을 활용하여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기존 무궁화 조성지 등을 집중 관리하여 국민들의 관심유도 및 이미지 개선
- 무궁화조성지 관리사업은 기존 조성된 무궁화거리·동산에 가지치기(수형조절), 시비, 제초,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해 집중 관리

※ 『무궁화 가로수 수형관리 지침』에 의거 특색있는 무궁화 조성 및 사후관리 철저

- 2012년 조성·관리사업 추진계획
  -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 14개소, 600백만원(국유지 1개소 신규추진)
  - ·무궁화조성지 관리사업 : 50개소, 100백만원

## 2) 저변확대를 위한 무궁화 문화(축제)전시 및 지원 확대

o 『제22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

- 목적 :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참여 확대
- 일시 : 2012년 8월 초·중순(광복절 기념)
- 장소 : 지자체 3~5개소(별도 공모를 통해 선정)

o 추진방침

- 민간단체·지자체가 주관하여 축제계획 및 집행, 산림청은 예산 등 행정사항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
- 체험행사 등 참여축제는 공모를 통한 개최도시를 선정

o 무궁화 전시회 개최 지원

- 삼일절, 개천절 등 연중 무궁화 작품전시회를 실시하여 지속적 관심유도
- 무궁화 관련 사진, 그림, 설치미술, 공연 등 개최와 지원

### 3)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무궁화 문화 확산

o 심고 가꾸기 정책과 국민적 애국심에 호소하는 무궁화 확산정책에서 나아가 생활 속에서 즐기는 무궁화문화 형성
- 국민참여와 민관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무궁화 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정책과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포럼 운영
- 민간의 무궁화 운동 지원과 협력으로 상승효과

o 민간단체, 기업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온라인 무궁화 게임 개발, UCC 제작・보급
- 단체 또는 협회를 활용한 무궁화 소재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개발 및 상용화

### 4) 내실있는 무궁화 정책 발굴 및 추진

o '08.10월 수립된 「시장 친화적인 무궁화 확산 종합계획」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과제 발굴 및 사업 수행

o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으로 「무궁화의 날」 제정 추진

### 5) '12년 무궁화 보급 및 선양유공자 포상계획

o 산림청 나라꽃 무궁화 선양 유공자 포상계획에 따라 별도 통보
- 국가상징 무궁화 선양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등 발굴 포상

o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상징 유공자 포상 중 무궁화 분야에 대한 조정협의

## 라. 추진일정

o 무궁화 관련 사업 공모 추진 : 2012. 2월

o 무궁화 상품개발 연구(기획과제) 완료 및 활용계획 마련 : 2012. 3월

o 무궁화 묘목 나눠주기 및 「나라꽃 무궁화 심포지엄」 추진 : 2012. 4월, 6월

o 제22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 2012. 8월

o 무궁화동산 조성 및 조성지 관리사업 지도・점검 : 상・하반기

o 무궁화 날 제정 추진 : 연중

o 무궁화 조성・관리사업 실적보고 : 2012. 12월

# 11. 새만금 그린네트워크 구축 사업

목 표

◇ 간척지인 새만금 특성을 고려한 수목식재 조성기술 개발 및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o 새만금MP 반영사업 : 새만금 수목원 및 해안방재림, 녹지축 조성

## 가. 정책여건

o '08년부터 새만금지역 개발방향이 농업용지 중심에서 산업·관광 등 다목적 개발용지로 전환(72% : 28% → 30 : 70)

o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의 개발을 위한「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발표('10.1월)

o 새만금위원회는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11.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확정

- 우리청은 새만금 수목원 등 산림사업을 반영하고 협조기관으로 명시됨

## 나. 기본방향

o 새만금 간척지에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o 기후변화, 녹색도시를 추구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녹지공간을 확보

o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이므로 사전에 녹지축을 규모 있게 설계하여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

o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주요시설을 배치하여 지역의 교육·관광 명소로 조성

## 다. 세부 추진계획

### 1)「새만금 녹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o 향후 새만금 국립수목원 및 녹지조성 등 산림사업의 기본방향, 필요성,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원조달 계획, 사업시행자, 기간과 총사업비 규모 등 확정

o 관련 연구용역('12년, 10억원)을 활용하여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으로 향후 새만금 산림사업 추진 기반 확립

### 2) 간척지 수목생육기반조성 기술개발 지속 추진

o '09년부터 일반토양 사용 없이 해저 준설토에 대해 잔디 종자 직파에 의한 지표고정 공법개발과 수목생육기반 조성기술, 방풍시설 설치 유형별로 방풍시설이 수목의 활착과 생장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 중임

o 기획연구과제('11～'13년, 7억원)의 지속 추진을 통해 새만금 지역에 대한 수목생육기반 기술개발 연구 강화 추진
- 국립산림과학원, 순천대, 전북대, 전북산림환경연구소 컨소시엄

### 3) 새만금 위원회 및 관계부처 업무협의 추진

o 새만금 국립수목원 부지(농업용지, 200ha)를 포함하여 새만금 내 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반영 및 부지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의 지속 추진
- 국무총리실, 국토부, 환경부 등 총괄부처 및 용지별 주관기관 등

o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용지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산림사업 반영 협의

### 4) 새만금 녹지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부지 확보

o 새만금 지역의 본격적인 산림사업 추진을 대비하여 시범적인 녹지조성을 위한 '13년 이후 예산반영 및 조성부지 확보 추진

※ 방수제 축조 등 식재사업시 『준설토 개량 및 종자뿜어붙이기 방법에 의한 지표고정 신공법』에 의한 사면안정공법 적용

o 선도사업 추진 중인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가능성 검토

## 라. 추진일정

o 새만금 녹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 2012. 1월

o 새만금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의 : 연중

o 수목생육기반 조성 기술 개발 지속 추진 : 연중

o 새만금 수목생육기반 연구 관련 세미나 개최 : 2012. 7월

o 새만금 녹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 2012. 12월

# 12. 산불원인 사전제거 및 감시 체계 구축

목 표

◇ 산불원인을 사전 제거하여 산불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효율적인 산불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발생 사전 억제

## 가. 정책여건

o 산불 감시인력 및 시설 확충으로 운영의 내실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

o 여전한 농산촌 소각행위의 근절 및 체계적인 관리로 산불발생 원인 사전 차단 필요

o 산불방지 장비와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 활용도 제고가 절실한 시점

o 산불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다양한 홍보 계획이 요구됨

## 나. 기본방향

o 감시사각지대 최소화로 산불 조기발견 및 조기신고로 초기대응력 강화

o 산불원인 사전제거로 소각산불 근원적 차단 및 입산객 관리 강화

o 산불재해 예방(경감)을 위한 산림조성·관리사업 지속적인 확충

o IT와 접목된 감시·예보시스템 고도화 및 신속한 상황전달체계 보강

o 시기별·원인별·타겟별 차별화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다. 세부추진계획

### 1) 현장밀착형 감시역량 극대화로 조기발견 및 초기대응

o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편성·근무시간 탄력적 조정 및 봄철 집중 고용 등으로 감시 효율성 제고

- 산불감시인력의 봄철 고용 확대(70→80%) 및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 근무시간 : (종전)08시～19시 → (조정)09시(10시)～20시(21시)
- 산불발생 원인별·시기별 감시인력 이동배치로 감시효과 제고

o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운영으로 산불 조기신고체계 구축
- 감시인력 사역과 동시에 산불신고 단말기(14천대) 지급 및 현행화
- 산불발생 정보 SMS 수신자(기관별 10명)는 부단체장을 포함하여 지정
- 정확한 산불 위치 및 진화여건의 신속한 파악 등을 위한 항공사진 개선
  · 기존 50㎝급 항공사진을 25㎝급으로 교체 운영
- 신고단말기는 업그레이드(영상전송기능 추가) 및 '13년 교체 추진

o '산불방지 패트롤' 확대 등 산불위험시기에는 가용인력 최대한 확보
- 산림병해충예찰단, 숲가꾸기 패트롤 등을 산불방지에 일시·선택적 집중

## 2) 소각산불의 근원적 차단 및 입산통제 관리 강화

o 전년도 가을철에 산불원인을 사전제거하고 미 제거된 개소는 마을별 공동 소각계획을 12월까지 수립, 산불위험시기 이전에 소각 등으로 제거 완료
- 기 조사한 산림인접 경작지(104천ha) DB를 토대로 공동소각계획 수립
-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산림재해모니터링 참가자를 조기 사역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낮은 오전시간대에는 인화물질제거 사업에 집중 투입

o 산불 위험시기 이전 「특별 소각기간」 지정·운영
- 시장·군수·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특별 소각기간」 운영
  · 소각금지 기간 이전에 운영, 소각 또는 위험지역 밖으로 반출
  ※ 소각은 전문진화대의 기계화진화장비를 통한 산불진화훈련 기회로 활용
- 「특별 소각기간」 지정 사항을 기간 착수 15일 이전에 산림청에 보고
-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인력·장비 지원 요청

o 특별 소각기간 이후 3월부터 「소각 금지기간」 운영
- 산림 내·산림연접지의 모든 소각행위 금지(불놓기 허가 원칙적 금지)
- 소각 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철저
-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시 담당지역 감시원 해고 등 불이익 처분

o 산림청, 지자체 홈페이지에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웹서비스
- 국민들이 알기 쉽게 위성영상·항공사진에 표시하여 웹서비스 제공
  · 소속기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링크 및 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안내서비스 추진
- 입산통제구역 안내지도('10년 제작, '11년 봄철 웹서비스) 수정·보완
- 등산로 개방·폐쇄 안내지도는 고시 내용과 일치되게 제작('11년 12월)
- 등산 희망지역·산 검색 기능 설치 등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 3) 산불재해 예방(저감)을 위한 '산림조성·관리사업' 확충

o '산불방지 숲가꾸기' 및 전통사찰 등 보호를 위한 '이격공간' 조성
- 산불방지 숲가꾸기는 대상지를 마을주변 등으로 확대 실행
- 기 실행한 이격공간 및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지 유지관리 강화
  · 이격공간 내 낙엽 및 관목류 제거, 상록관목류·꽃나무식재 지원
  ·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지내 수관층이 겹치지 않도록 솎아베기 등 관리

o 산불취약지에 '산불방지 급수시설' 설치 확대(10개소→25개소)
- 산불방지 특성에 맞는 표준시방서 작성('11년 12월), 표준시방서에 따라 산불방지 급수시설 설치
  ·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소화전 설치하는 사례 근절
- DMZ·원자력 발전소 주변 등 주요장소에 설치하여 홍보효과 거양

### 4) 고도화된 감시·예보시스템 활용 및 신속한 상황전달체계 보강

o 산불감시카메라 사전타당성 검토 후 시설, 영상공유 확대, 내구연한 경과한 감시카메라 교체(48개소) 및 이동통신 3사와 협약을 토대로 설치 확대
- 시설 및 교체(이동설치)는 사전타당성 검토 후 설치
- '11년까지 영상 미 공유 지자체는 영상공유 작업 추진토록 유도
- 내구연한(7년) 경과된 감시카메라 교체 확대(18개소→48개소)
  ※ 부품생산이 중단되고 수리가 곤란한 아날로그전송 카메라 우선 교체
- 이동통신사 중계탑을 활용하는 기관에 신규 설치예산 우선 배정

o 산불위험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제공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
- 산불감시인력은 고용 즉시 SMS 수신자 입력 등 리스트 현행화
- 산불위험정보 수신자 단위별 조치할 사항 구체화하여 SMS 발송

### 5) TV·신문·전광판 등 입체화된 홍보로 적극적 참여의식 함양

o 송출지역·시간대·타겟 등에 따른 차별화된 산불예방 홍보
-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 농산촌 주민 주 시청 시간대 광고 송출
- TV, 신문, 지하철, 고속도로 전광판 등 매체에 따른 차별화된 홍보 추진

o 기상예보(방송사·기상청), 집배원(우정사업본부)을 활용한 산불조심 홍보
- 언론사 기상캐스터 간담회 조기 개최, 집배원 홍보물(깃발) 제공

o 「산불위험정보 문자서비스(SMS)」 확대 실시
- 마을이장 등 기존의 69천명 DB 현행화로 운영 내실화
- 지역방송에 출연하는 기상대 예보관을 추가하는 등 제공 범위 확대

o 산불신고 단말기, 스마트폰 산불신고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홍보
- 산불감시인력의 예방·계도활동 주요내용 산불신고 단말기로 제공
- 산불신고 웹에 대국민 산불예방 및 신고 요령 등 제공

## 라. 추진일정

o 산불감시인력 조기 사역 및 배치 : 2011. 12 ~ 2012. 1월

o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단말기 개선·교체 : 2011. 12월

o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기능 개선 : 2012. 1월

o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웹서비스 : 2012. 2월

o 논·밭두렁 소각금지기간 운영 : 2012. 3~4월

o 산불방지 공익광고 추진 : 2012. 3~4월

o 산불방지 급수시설 표준시방서 제정 : 2011. 12 ~ 2012. 1월

o 산불감시카메라 신설·이설 사전타당성 검토 : 2011. 12 ~ 2012. 1월

# 13. 산불 진화역량 강화

목 표

◇ 지상진화 시스템 및 헬기 등 산불 진화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관리 제고를 통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 가. 정책여건

o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및 장비 표준화로 지상진화의 중요성 인식 및 체계화 정착 시도

o 증가하는 임차헬기의 효율적 활용 및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유관기관 진화헬기의 공중지휘체계 확립 필요

o 지역산불관리기관 및 유관기관 간 일사불란한 산불상황보고·전파체계가 미비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이 미흡

o 산불현장 영상 전송으로 현장상황 파악 및 체계적인 산불진화계획 수립과 산불상황 관리시스템을 연계한 입체적 여건분석 마련

o 헬기 및 인력자원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

## 나. 기본방향

o 기계화장비·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한 지상진화 시스템 정착 및 확대

o 통합지휘권자(지자체장 등)의 산불현장 직접 지휘 및 즉시 보고체계 확립

o IT 기반 영상전송시스템 신규도입 및 「산불종합상황실」 운영체계 고도화

o 공중진화 역량 극대화 및 산림헬기 안전관리 강화

## 다. 세부추진계획

### 1) 통합지휘권자(지자체장 등)의 산불현장 직접 지휘 및 즉시 보고체계 확립

o 산불발생 초기부터 통합지휘본부 설치,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산불발생 즉시 보고·상황전파 및 단체장의 산불현장 직접 지휘체계 정착
  ·산림과장 등의 지휘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부서장 행동 매뉴얼 마련

- 산불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임무·역할 부여로 유관기관의 산불진화에 적극적 참여유도(기관별 연락관 파견 및 대책회의 책임자 참여)
-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은 체계적인 산불진화 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진화유도(진화작전도 작성 등)

o 대형산불, 다수의 인명·주택피해 등 재난성 산불발생 시 언론대응 매뉴얼 마련
- 산불재난 표준/실무 매뉴얼에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총리실·문화관광부 작성)을 보완하여 언론 대응력 제고

o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임차, 군, 소방헬기의 공중지휘기 지휘통제 이행방안 마련 및 헬기 공조체제 구축
- 산불진화 헬기(산림청, 지자체) 조종사 항공안전 교육실시(1월)
- 지자체 임차헬기에「항공 안전운항 정보시스템」공동 활용 추진
- 공중지휘기 지휘·통제 지시 이행 강화와 안전성 확보 체계 구축
  · 임차헬기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임차계약서 개정 촉구 및「산림보호법」개정 등 법제화 추진
  · 산불현장 최초 도착 시 산불현장 초기상황을 보고기준에 따라 신속히 보고
  · 산불현장에 투입된 임차헬기는 공중지휘기로부터 진화구역 및 담수지 등을 지정받고 통제·지휘에 따른 산불진화 임무수행
  · 임차헬기 승무원은 산불현장 진입, 공중 진화 또는 항공기 급유·계류·정비 등으로 현장 이탈 시 공중지휘기에 반드시 보고

## 2) IT 기반 영상전송시스템 신규도입 및「산불종합상황실」운영 체계 고도화

o 영상전송 장비 헬기 장착에 따른 안전성 검증 및 시스템 운영방법을 검토한 후 2012년부터 2대 시범운영
- 대형산불, 야간산불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산불에 대하여 현장 영상전송

o 산불 확산방향, 규모 확인 등으로 산불진화 계획수립 자료로 활용

o 산불상황 관련정보를 공유하는「산불상황 통합전달체계」시범운영
- 산불상황 관리(신고부터 진화까지)와 관련된 정보를 관계기관(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본부)이 공유

### 3) 기계화장비・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한 지상진화시스템 정착 추진

o 시・군별, 관리소별 초동진화를 전담할 기계화진화대 1팀 구성・운영
- 상시 비상대기 하다가 산불상황 시 급수체계 구축을 전담
- 1개 팀은 6~14명으로 구성하며 산불 빈도가 높은 10:00~21:00 근무
- 장비차, 인력수송차로 편성하고, 13㎜ 호스 700m(표준호스 연결장치) 구비
- 주 2회이상 고도차 100m, 거리 600m이상에서 500ℓ이상 급수훈련 실시

o 광역적으로 지상진화를 지원하는 광역산불진화대(8개대) 운영
-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은 권역 외까지 지원, 평상시 관내 진화지원
  ・통합지휘본부장 및 산불현장지원단(국장급)의 보좌 및 지원임무 수행
  ・펌프를 활용한 급수체계 구축으로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 활용 선도
- 지방산림청 6개대, 항공본부 2개대 권역별 배치 운영
  ・단별 14명(공무원 등 2~4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12명)으로 구성
  ・조별 진화차 또는 중형펌프 1대, 소형펌프 1셑, 호스 1㎞, 저수조 2개, 개인진화장비 10세트, 무전기, GPS 단말기 등 장비운영 및 휴대

o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상진화 역량강화 유도
- 시・도, 지방청별 자체 경연대회 개최(1~2월), 전국대회 실시(2월)
  ・고도차 100m이상, 호스설치거리 700m이상, 2단 덤핑, 호스내경 13㎜(8.5㎜)
  ・입상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해외연수, 포상금 등 인센티브 방안 강구
- 경연대회 결과를 기초로 “기계화산불진화훈련 매뉴얼”을 제정・운영
- 실제 산불상황에 근접한 경연상황 설정을 통하여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진화대로서 자부심을 고취하며 진화장비의 성능개선을 유도

o 뒷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불정리를 철저히 이행
- 산불발생시 동력펌프・진화차에 의한 급수시스템과 간이수조, 호스진화, 등짐펌프 운반거리 최소화를 통하여 잔불을 완전히 진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잔불진화 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 감시 인력을 반드시 현장에 배치하여 뒷불감시 철저

### 4) 공중진화 역량 극대화 및 산림헬기 안전관리 강화

o 산불위험시기에 가동률 극대화를 위한 산림헬기 정비 조기 완료
- 정비소모품 사전확보와 이동정비팀 운영으로 신속한 정비실시

- 헬기의 효율적인 운용과 다양한 상황발생 대비책 마련
  · 산불진화 헬기는 일출과 동시 이륙 가능하도록 계류 및 승무원 출동 대기
  · 임무 종료 한 헬기는 철저한 예방점검으로 즉시 운항 가능상태 유지

o 항공 안전을 위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
- 「항공 안전운항 정보시스템」 운영, 헬기 위치정보 실시간 공유
  · 운항 및 항공기상 등의 정보제공으로 안전사고 최소화
  · 매 5초 단위로 헬기 위치정보 관리, 조종사와 1:1 음성통화 · 문자 전송
  · 조종사에게 주변 항공기 위치정보, 지상 장애물 정보 제공
- 「시뮬레이터」 활용 등 조종사 반복 훈련으로 안전사고 대처 능력 강화
  · 해상 생환 훈련, 실전형 숙달훈련, 임무수행 브리핑체계 강화
  · 항공임무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안전대책 강화
- '11년 중형헬기(8대)에 장착한 조종실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강화 및 초대형 헬기(4대)에 신규 장착으로 안전운항 제고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을 통한 조종사 기량, 안전운항 등 평가

o 군부대, 지자체 등 산불진화 헬기 공조 투입 강화
- 대형산불시 비상재난주파수 및 공중지휘기 운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사격장 및 군사시설 지역 산불은 물탱크를 장착한 군 헬기로 책임 진화
  · 우리 청에서 지원한 물탱크(7대)를 장착한 공군헬기(HH-32) 활용도 제고

## 라. 추진일정

o 통합지휘권자의 현장 직접 지휘 및 즉시 보고체계 확립 : 산불조심기간

o 진화전담조, 진화단의 준비사항 점검 및 현지순회 교육 : 2012. 1~ 2월

o 기계화진화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한 지상진화 경연대회 : 지역(1~2월), 전국(11월)

o IT 기반 영상전송시스템 신규도입 및 「산불종합상황실」 운영체계 고도화 : 2012. 1~ 6월

o 기계화장비 ·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한 지상진화시스템 정착 추진 : 2012. 1~ 6월

o 공중진화 역량 극대화 및 산림헬기 안전관리 강화 : 2012. 1~ 3월

# 14. 산불조사기능 강화

목 표

◇ 철저한 산불 발생원인 규명 및 가해자 검거율 지속적 향상
- o 산불전문조사반 및 방화범 검거팀 운영 활성화

◇ 산불조사의 과학화 및 조사기술의 선진화 도모
- o 산불조사 담당공무원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현장조사 능력 배양

◇ 실시간 산불통계 정보를 제공하여 대국민 서비스 증진
- o 산불통계의 다양성 및 품질 관리로 국민 수요에 부응

## 가. 정책여건

- o 봄철 이상가뭄, 농·산촌지역 소각행위 증가 및 입산자 부주의 등에 의한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해자 검거율이 저조하여 국민들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 부족
- o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UNFCCC)에 의거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국제적 노력 요구

## 나. 기본방향

- o 산불 발화원인 규명 및 가해자 검거에 주력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 고취
- o 총선, 대선기간 중 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여 사회적 혼란 및 원한 등에 의한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
- o 산불조사 담당공무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 기술교육 강화
- o 산불통계에 바탕을 둔 과학적 산불방지 정책수립 및 실시간 통계자료 대국민 서비스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불전문조사반 운영 내실화로 현장조사 및 감식 활동 강화

- o 산불전문조사반 구성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각 기관별로 기 위촉하여 운영 중인 산불전문조사위원을 재정비하여 상시 현장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기관당 10명 위촉)

- 산불발생시 신속히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불원인 규명 및 가해자 검거에 주력
- 산불조사반 해외교육 이수자는 반드시 현장조사에 참여하여 기술전수
- 입산자실화 산불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유형별 대책 마련
  · 현장조사는 증거물훼손 등을 우려하여 가능한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완료

o 조사반 임무
- 산불 발화원인 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전담
- 대형·방화성 산불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산불 발생시 산불대응력 평가분석 실시

o 조사반 운영기간 : 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

o 산불발생시 발화지점 또는 의심지역 철저히 보존
- 산림관서별로 산불 발생원인 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해「최초 발화지점」반드시 보존
  · 발화지점 폴리스 라인 설치, 발화지점 내 인화물질 등 이동금지
  ※「산불전문조사반」현장조사 완료시까지 발화지점 철저히 보존

## 2) 산불가해자를 철저히 검거하여 대국민 경각심 고취

o 총선·대선기간 중 경찰관서와 합동으로「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여 사회혼란 및 원한 등에 의한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
- 구성 : 반장(관할 경찰서 과장·팀장), 반원(경찰, 산림공무원 합동)
  ※ 2012년 1월중 각 기관별로 구성 완료
- 임무 : 방화·대형 산불발생시 전담수사
- 산림 관서별로 관할지역 경찰서「산불방화범 검거팀」에 협조요청
  · 협조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에서는 신속히 방화범 검거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초동수사 실시

o 산불패트롤을 적극 운영하여 산불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계도

o 산불가해자 검거 시 적극 홍보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

o 산불발생시 진화대응 단계별 기록유지 철저
- 산불진화 전 과정에 대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을 실시하여 가해자 검거, 백서발간, 홍보 등에 적극 활용

### 3) 산불조사의 과학화 및 조사기술의 선진화 도모

o 해외 산불감식전문가 초청, 맞춤형 산불감식 교육 및 새로운 조사기법 개발
- 2012년 3월초(5일간), 캐나다 BC주 산불감식전문가 3명 초청,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장소 : 별도선정)
- 교육대상자는 해외 산불감식교육 이수자, 산불전문조사위원 및 산불담당공무원 등
- 교육내용은 산불현장에서 발화지점 찾기, 증거물 수집 방법 등 교육

o 산불 발화원인 조사 및 감식전문가 양성
- 인원 30명, 교육기간 3주 : 국내 1주, 해외(캐나다) 2주
- 국내교육 2012. 9월, 해외교육 2012 10월 예정(별도통보)
- 인원배정 : 각 도별 2명 , 특·광역시·제주도 각 1명, 산림청·지방산림청·산림인력개발원 각 1명
- 교육대상자 선발 시 고려사항
  · 교육이수 후 최소한 5년 이상 관내 산불발생시 지원이 가능한 자
  · 일상적인 영어사용이 가능한 자 우대(해외기술교육 이수)

o 산불조사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산불감식 교육장 조성
- 산림인력개발원 산불훈련센터 내 조성·관리

### 4) 산불대응의 평가·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대응 능력 향상

o 대형·방화성 산불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산불발생시 대응과정 평가분석
- 산불현장통합지휘체계 및 산불대응 전 과정을 평가·분석하여 현장대응력 향상
- 평가자 : 중앙 산불조사전문위원(5인 내외)

o 산불발생 보고지연, 현장지휘 미흡사항 등에 적극적 개선 조치
- 산불방지 평가를 산불상황 보고, 현장지휘역량 강화 위주로 전환
- 현장지휘·대응 미흡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기관통보 및 사례 전파
- 임차헬기로 자체진화 등 은폐, 뒷불 발생, 지시사항 위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 재발방지

o 산불대응력 평가시 기계화진화시스템 활용실적을 파악하여 지상진화 역량 강화

o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 한 기관이나 관련자에게는 엄중문책 하여 재발방지

### 5) 산불통계의 품질관리로 대국민 서비스 증진

o 산불통계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확도 제고
- 탄소배출 의무감축에 대비한 산불통계의 국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정확도 제고

o 산불피해상황 정정보고 철저히 준수
- 산불조심기간 종료 후 반드시 산불현장을 재조사하여 피해면적, 피해원인, 가해자 검거율 등 변경사항 정정보고
  ・정정보고 기한 : 봄철 5.31, 가을철 12.28까지

o 산불통계연보 및 봄철 간추린 산불통계를 발간하여 통계서비스 제공

o 산림청 홈페이지 내「산불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산불정보를 제공하여 대국민 서비스 증진

o 통계분야 세분화・다양화 확대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관리

o 수준 높은 통계품질 유지로 유관기관과의 자료 공유 증진 및 신뢰도 향상

o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서식 개선(산불방지분야 사업계획 참고)
- 잔불, 뒷불감시 시간 및 동원인원 등 통계조사 항목 추가

## 라. 추진일정

o '11년 산불전문조사반 활동실적 분석 및 조사위원 위촉 정비 : 2012. 1월

o 해외 산불감식전문가 초빙 현장교육 실시 : 2012. 3월

o 산불전문조사반 및 방화범 검거팀 운영 : 2012. 산불조심기간 중

o 산불조사반 교육 대상자 선발 보고 : 2012. 7월

o 산불조사반 전문교육 실시 : 2012. 9~10월

o '12년 봄철 산불조사 사례집 발간 : '12. 6월

o 보고사항
- 산불전문조사위원 위촉현황 보고 : 2012. 1월
- 산불전문조사위원 활동실적 보고 : 2012. 5월, 12월
- 산불피해상황 정정보고 : 2012. 5월, 12월

# 15. 산사태 재해예방·대응체계 확립

목 표

◇ 산사태 재해예방·대응체계 확립으로 인명피해 제로화 구현
- o 사업량 : 산사태복구 824ha
- o 복구비 : 132,257백만원(국고 73,944, 지방비 58,313)

## 가. 정책여건

- o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대형화·집중화 추세
- o 도시·생활권지역 산사태 예방에 필요한 사방시설이 절대 부족
- o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
- o 적극적인 산사태 재해예방·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

## 나. 기본방향

- o '11년 산사태 발생지는 우기 전 견실복구 완료
- o 산사태취약지역의 체계적·적극적 관리
- o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
- o 현장 중심의 산사태 대응역량 강화
- o 산사태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다. 세부추진계획

### 1) '11년 산사태 발생지는 우기 전 견실복구 완료

- o 이월된 산사태복구사업은 복구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우기전 완료
  - 주민생활 불편지역, 2차 피해 우려지역 등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복구
  - ※ 우기전 복구 미완료로 집중호우시 피해가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
- o 주요 복구사업장별로 주민요구사항 검토 반영 및 사전 홍보 실시
- o 현장에 적합한 공종을 적용, 항구복구 추진
  - 구조물 기초터파기, 돌쌓기 등 견실시공을 위한 지도감독 철저
- o 피해조사에서 누락 또는 복구비가 부족한 개소는 총 복구비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

o 시・도, 지방청은 산사태 복구사업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조기・견실복구 실현
-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기관에 대한 원인규명 및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
※ 산림청의 '산사태복구 현장 자문단'을 최대한 활용

o 복구주체・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성 제고

o 양질의 규격품 자재가 사용되도록 검사・검수 철저
- 타분야와 동시 발주로 중장비・복구자재 등 만약의 품귀현상에도 사전대비

o 산사태복구 현장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

o 기타사항은 사방사업법 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및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등에 따라 시행

## 2) 산사태취약지역의 체계적・적극적 관리

o 산사태취약지역을 도시・생활권 중심으로 전면 확대 개편
- 주거지역과 인접한 산지로서 산사태・토석류(土石流)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곳은 취약지역으로 확대 지정
※ ('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산사태취약지역을 형식적으로 지정・관리하여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등
- 이를 위해 시・도, 지방청별 산사태취약지역 현장 실태조사 실시
・전국 황폐지 기초조사 용역('11년, 산림청) 결과 및 산사태위험등급구분도 등을 참조하여 조사 실시
※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지침 : 추후 통보

o 산사태취약지역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 정비계획 수립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특별관리

o 산사태취약지역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방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방사업을 시행
-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종을 도입하여 산사태방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행

## 3)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

o 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 업데이트(현행화) 실시
- 산사태 담당자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개인정보 변경 등록해야 산사태예측정보(SMS)를 자동 수신할 수 있음
※ ('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일부 지자체 등이 시스템 사용자정보를 현행화하지 않았고, 수신자는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음

o 시스템 사용자 등록인원 확대(5명 → 10명)

- 시스템 사용자 등록 대상인원이 종전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되었으므로 추가 등록 실시(지방산림청, 휴양림관리소 등 포함)

※ 필수등록대상 : 기관장, 부기관장, 산림부서장, 재난부서장, 재난상황실장, 산사태 담당계장, 담당직원 등

o 산사태예측정보(SMS) 수신기관에서는 적절한 대응 조치

- 실제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산사태주의보·경보 발령여부 상황판단
- 주의보·경보 발령시 주민홍보(읍·면·동, 리·동장, SMS, 마을앰프 등으로 정보 전달)하고 취약지역 등 상황판단하여 주민대피 등의 조치
- 주의보·경보 발령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등록

※ 산사태예측정보(SMS)는 그 자체가 산사태주의보·경보는 아니며, 일선 지자체 등의 재난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o 시스템의 일부 미흡한 기능에 대한 고도화 작업 추진(산림청)

- 기상청의 동네예보, 초단기예보 등 적용하여 예측정보의 정확성 제고
  ·(현행) 76개 관측소 → (개선) 714개 관측소 강우정보 활용
- 예측정보 전달체계 다양화(SMS, LMS, 유선, 팩스, TV자막 등)
- 산사태취약지역 판정표 개선 및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우량지수 적용
- 토석류 위험규모·범위 예측지도 제작, 위험등급구분도 고(高)축척화 등

## 4) 현장 중심의 산사태 대응역량 강화

o 기관별 현지 실정에 맞는 산사태예방 매뉴얼을 마련하여 신속대응

- (예방단계) 추진대책 수립, 취약지역 지정·관리, 현장점검, 예방사업 등
- (대응단계) 상황실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취약지역 점검, 주민대피 등
- (복구단계) 피해조사, 복구비 확보, 응급복구, 항구복구, 현장점검 등
- (피드백) 문제점·애로사항 발굴, 제도개선, 교육·훈련 등

※ 산사태 방지 워크숍 개최('12. 5월)시 기관별 매뉴얼 품평회 실시 계획

o 산사태 방지 및 사방사업 연찬회, 위탁교육 및 워크숍 등 개최

- 산사태 예방·대응 우수(실패)사례, 기상정보 활용요령, 산사태정보시스템 사용법,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산사태 피해조사 요령 등

o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 평가제도 운영

- 평가지표(산사태예방 노력도, 취약지역 지정·관리의 적극성, 사방시설 관리 등)에 따른 기관별 점수화하여 우수기관은 표창, 해외연수, 사방사업 예산 배정시 등 인센티브 부여

※ 산사태 예방·대응 평가지표 : 추후 통보

### 5) 산사태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산림청)

o 산림보호법령 개정
- 산사태예방 장기대책 수립,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예측정보 제공, 산림청 및 지방청·지자체에 전담조직 신설 추진 등

o 사방사업법령 개정
- 사방사업 편입토지 매수·교환 및 수용근거 등 마련

### 6) 기타사항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부중앙청사) 상황근무요원 파견
- 집중호우, 태풍 등 대규모 재해가 예상될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파견 요청에 의해 우리청 소속 직원 파견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속기관(과학원, 수목원, 북부청 등) 직원 파견

o 기타 사항은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으로 별도 통보
- 단계별(사전예방, 상황대응, 피해발생, 복구지원) 중점 추진대책 등

## 라. 추진일정

o 산사태 방지 및 사방사업 담당자 위탁교육 : 2012. 2월

o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 수립 : 2012. 5월

o 산사태 방지 워크숍 개최 : 2012. 5월

o 산사태 예방 홍보물 제작 배포 : 2012. 5월

o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 2012. 6월

o 산사태복구사업 완료 : 2012. 6월

o (가칭)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 2012. 5~10월

o 산사태 예방·대응분야 자체평가 : 2012. 11월

o 산사태방지 및 사방사업 연찬회 : 2012. 12월

# 16. 생활권 중심의 사방사업 확대

목 표

◇ 생활권지역 산사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시행으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o 사업량

- 사방댐 695개소
- 계류보전사업 416km
- 해안방재림 10ha
- 해안침식지복구 4km
- 물가두기사방댐 8개소
- 사방댐관리 440개소
- 산지보전사업 70ha
- 산사태예방사업 37ha
- 산림유역관리사업 23개소(설계 5, 조성 18) 등

o 사업비 : 305,144백만원(국고 231,685, 지방비 73,459)

##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및 강우강도 증가로 산사태 발생이 대형화·집중화

o 사방시설의 산사태 재해저감 효과가 알려지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

o 도시·생활권지역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 필요성 증대

o 토지소유주 동의를 얻기 위한 사방사업효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시점

## 나. 기본방향

o 생활권 중심 '사전예방' 위주의 사방사업으로 전환

o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 내실화로 사업시행 효과 제고

o 산사태 재해예방에 부합되는 설계 및 시공 추진

o 사방시설 사후관리 강화

o 사방사업 실무자 역량 강화

## 다. 세부추진계획

### 1) 생활권 중심으로 사방사업 대상지 우선 선정

o 생활권 등 인명피해 방지가 필요한 지역 최우선 선정

- 주거지역과 인접한 산지로서 산사태 및 토석류(土石流)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 등

※ 토석류(土石流) :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붕괴된 토석·나무 등이 빗물과 뒤엉켜 빠른 속도로 하류로 밀려내려 생활권에 막대한 재해를 유발('11년 우면산, 춘천 등의 산사태 재해는 대부분 토석류에 의한 피해임)

o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 후 이해관계인 통보 및 동의서 징구 등

- 타당성 평가 후 산주, 지역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읍·면·동 공고 후 타 지역으로 대상지 변경

※ 사방댐 대상지 타당성평가 후 장소 변경 현황('05~'10년, 전국)

| 계 | 산주부동의 | 주민부동의 | 기타 | 비 고 |
|---|---|---|---|---|
| 141개소 | 81 | 39 | 21 | |

o 사방댐과 계류보전사업은 주계류(主溪流) 뿐만 아니라 소계류(小溪流), 오목형(凹) 산지까지 확대 시행

- 종전 주계류 위주로 시행해 왔으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펜션 등 생활권에 피해가 우려되는 소계류, 오목형 산지까지 확대

※ 소계류 등에서 유출되는 토석류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골막이 등을 다단계 형태로 계통적 조성

o 노후화된 사방댐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상·하류 인근에 추가 조성

o 주거지역과 인접한 산불피해지역 중 산사태 우려가 있는 곳은 사방사업 대상지로 선정

o 특·광역시 및 도시지역 산지에 사방사업 확대

- 도시지역 산사태 재해예방 및 생태·환경에 걸맞은 사업으로 추진

o 물가두기사방댐은 산불진화헬기 취수원이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선정

- 반경 5km 이내에 산불진화취수원이 없는 지역 등 대상지 선정에 신중 ('12년 예산편성지침 및 관계관회의('09.11.24) 자료 참조)

## 2)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 내실화

o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평가(사방사업법 등에 따라 사방협회에 위탁하여 추진)

※ 사방사업법 제7조의3 및 제22조의2,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 등 위탁업무 처리지침'('09.1.9) 등 참조

o 사방댐 사전설계제도(다음 년도 사업량의 일부를 사전설계) 신규 도입에 맞추어 타당성평가 실시

o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사업(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 추정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사방댐은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대상면적이 1ha이상인 산지사방·해안방재림조성사업, 대상거리가 0.5km 이상인 계류보전·복원사업, 해안침식방지사업, 산림유역관리사업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은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음)

## 3) 산사태 재해예방에 부합되는 설계 및 시공 추진

o 산사태 재해저감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근의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및 강우강도 증가에 대비한 설계기준 강화
- 다만, 불요불급한 구조물 설계반영 등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자체교육 및 지도감독 실시

o 새로운 사방공법·자재 등을 활용하여 가급적 자연과 조화롭게 시행

o 사방댐 사전설계제도 신규 도입('13년 사방댐 물량의 50%)
- '12년에 사전설계 실시하여 '13년 우기전 사방댐 완공

o 사방사업 자재의 검사·검수 철저로 양질의 규격품이 사용되도록 조치

o 사방사업 설계 및 시공은 사방사업법 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및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등에 따라 시행

## 4) 사방시설 사후관리 강화

o 사방시설 점검은 사방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점검결과 미흡한 지역은 안전조치 철저
- 안전조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사방댐관리 및 사방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활용
- 사방댐 등 사방시설 안전점검 지도감독에 만전('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o 사방댐관리(종전 : 사방댐준설)는 생활권 등 필요한 지역만 준설하되 유지관리 철저
- 사방댐 기능보강을 위한 보완조치 및 안전시설·입간판 등 보수

o 전국 사방댐관리 시스템 구축(산림청)
- 지역별·연도별 사방댐 연혁 관리, 좌표값 및 현재 상태 등 관리체계 구축
※ 사방댐관리 지침 : 추후 통보

### 5) 사방사업 실무자 역량 강화

o 사방사업 및 산사태 담당자 위탁교육 실시
  - 사방사업 실무, 공사감독요령 및 산사태 대응요령 등 실무 위주 교육

o 권역별 사방사업 현장 순회교육 실시
  - 권역별 사방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전문가 현장교육 실시

o 사방 전문교육기관인 '사방기술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

### 6) 기타사항

o 사방댐, 계류보전사업 등 현장 진입로 설치시 과다한 산림훼손으로 인한 민원 야기되는 사례 없도록 유의

o 사방사업 현장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

o '13년 이후 사방사업 대상지 일제조사
  - 전국 황폐지 기초조사 용역('11년, 산림청) 결과를 토대로 시・도, 지방청별 사방사업 대상지 일제조사 실시(산사태 취약지역 현장 실태조사와 연계 실시)
    ※ 사방사업 대상지 일제조사 지침 : 추후 통보

o 사방기술원 운영 준비 철저(경북)
  - 사방 전문교육기관으로 조성 중('10～'12, 경북 포항)인 사방기술원의 세부운영계획 수립 등 교육 운영 준비에 만전

o 사방사업법 개정・시행(2012.1.15)
  -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방청장에게 권한을 부여
  - 법 제19조에 따른 사방사업 원인자부담 제도 폐지

## 라. 추진일정

o 산사태방지 및 사방사업 담당자 위탁교육 : 2012. 2월

o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 및 실시설계 : 2012. 3월

o 전국 사방댐관리 시스템 구축(용역) : 2012. 9월

o 사방사업 대상지 일제조사 : 2012. 9월

o 사방기술원 개원 : 2012. 9월

o 산사태방지 및 사방사업 연찬회 : 2012. 12월

o 권역별 사방사업 현장 순회교육 : 연중

o 사방사업 실시 : 연중

# 17. 산림복원

목 표

◇ 백두대간 등 주요지역 훼손지 복원으로 산림생태계 보전

o 사업량

- 산림생태복원 65ha
- 독도산림생태계복원 1개소
- 철탄산산림복원 1개소
- 백두대간마루금생태축연결 1개소

o 사업비 : 12,578백만원(국비 9,994, 지방비 2,584)

## 가. 정책여건

o 생물다양성협약 등 산림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원 수요 증가

o 기후변화협약 등 산림의 전용·피해 및 황폐화 방지 강화 추세

o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재해 증가 등 산림에 위협 요인 증가

## 나. 기본방향

o 산림복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복원 유형의 다양화

- 물리적 훼손지 복원 중심에서 산림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확대

o 보전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민북지역 등 주요지역 훼손지 복원 지속 추진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림복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복원 유형을 다양화

o 복원 대상·범위 확대 및 유형 다양화

- 백두대간, DMZ 일원 중심에서 정맥, 해안·도서지역으로 복원 대상과 범위 확대
- 물리적 훼손지 뿐만 아니라 산림습원 등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유형 확대

o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서지역 산림생태계 복원

- 섬지역 자생수종 위주로 울릉도 자생경관림 복원(2ha)
-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독도 산림생태계복원 추진
  - ▪ 독도 고유 식생유지를 위해 독도 생육 수종을 증식·복원('11년~'14년, 10억원)
  - ▪ '12년도는 사철나무, 보리밥나무, 섬괴불나무 등 복원수종 양묘 및 토양분석

o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해안방재림 조성
- 재해 발생시 인명·재산피해 우려되는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 중점 추진
- 재해방지기능과 경관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방재림 조성
  *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녹산 산업단지 주변 10ha
- 해안방재림 실태조사(43개소, 48ha)

o 생물다양성 유지 증진을 위한 산림습원 복원·관리 모델 개발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습원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국유림지역 5개소
  ▪ 국립수목원,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복원·관리모델 개발·확산
- 산림내 계곡천 보호·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산림내 계곡천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보호·관리 추진
  ▪ 2011년도 "산림내 계곡천 관리방안" 용역결과를 기초로 법안 마련

## 2) 보전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DMZ 일원 등 주요지역 복원

o 백두대간과 연계하여 정맥지역까지 복원 확대
- 피해 예상정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
  * 낙동정맥(부산 3ha, 울산 3ha), 비학지맥(경북 2ha)
- 외래종의 퇴치·제거 및 자생종 복원사업 추진
  * 부산 장산, 금정산 등 낙동정맥 일원 2.5ha

o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로 역사적 상징성과 생태계 연속성 회복
-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사업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기초로 계획 수립·추진
  * 경북 상주 화남 동관리(비재) 1개소
  ※ '13년이후 대상지는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복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백두대간 폐도로 구간의 복원 가능성 검토

o DMZ 일원 전술도로 주변 산사태 발생지, 폐군사시설 등 생태적 복원 추진
- 전술도로 주변 산사태 등 훼손지는 2차 피해 발생 저감 중점
- 폐 군사시설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지형과 식생복원을 동시 추진
- DMZ일원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육군본부와 협력 체계 유지

## 3) 산림복원의 확산 및 성과 제고

o 복원사업의 파급효과 및 확산을 위해 대규모, 장기간 소요 대상지 발굴 및 조사
  * 사방기념공원주변 특수생태복원

o 산림복원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종합적인 모니터링 기준과 원칙 정립
- 복원 대상·유형별로 대표적 실행지를 대상으로 고정 조사구를 선정 장기적 모니터링 추진

o 우수한 생태복원사례를 발굴하여 복원기술 확산과 관심제고를 위하여 산림생태복원 대회 추진(5월～10월)

## 라. 추진일정

o 백두대간 경작지 매수지 복원계획 : 2012. 3월말까지

o 해안방재림 실태 조사 : 2012. 6월말까지

o 대규모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 2012. 6월말까지

o 산림내 계곡천 보호·관리를 위한 법안 마련 : 2012. 6월말까지

o 산림습원 복원·관리 시범사업
- 대상지 선정 : 2011. 12월말까지
- 사업 추진 : 2012. 11월말까지

o 산림생태복원 대회 추진 : 2012. 5～10월말까지

# 18. 백두대간 보호·관리 강화

목 표

◇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변화실태조사와 '보호지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한 보호·관리 강화

o 총사업비 18,860백만원(국고 9,876, 지방비 8,984)

##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 및 인위적인 훼손으로 산림생태계 핵심축인 백두대간지역의 산림자원, 희귀 동·식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전 대책이 필요

o 백두대간과 연계된 정맥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새로운 산지관리체계 요구

o 백두대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국민들의 정서적 요구도가 증가 추세임

## 나. 기본방향

o 백두대간 기본계획에 부합하며, 시대에 부응하는 백두대간보호사업 추진

o 백두대간자원변화·정맥실태조사를 통해 산림생태계 유지·증진 기반구축

o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보호지역' 지정확대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o 적극적인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확충 및 교육·홍보 강화

## 다. 세부추진계획

### 1) 백두대간 보호·관리 강화

o 태백산권역(강릉~태백)자원변화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 식생군집·식물상 변화상, 동물상 변화 등 변화상 모니터링 추진
- 백두대간 마루금 등 이용실태분석 및 조사 추진
  · 훼손실태, 등산로 이용실태, 권역별 브랜드 선정 등
- 산림문화·경관 등을 이용한 소득창출 방안 마련
  · 산림문화 및 테마가 있는 백두대간 마을 조사
- 소득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보전관리방안 및 '13년 조사 계획구간(속리산 권역) 조사방향 마련

o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세계유산 등재’ 추진
- DMZ·민북 일원 및 보호지역 확대지정 및 사유매수지 추가지정 추진
※ 고성군 7,578ha, 인제군 25,827ha, 연접 매수 사유지 1,338ha
- IUCN 전문가 그룹 및 관련기관과 사전대책회의 개최
- 등재에 필요한 신청서 제출 및 등록에 필요한 사전조사 실시
※ 북한지역의 IUCN 등재는 ’12년 9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시 초청 예정인 중국·북한전문가와 협의 추진 예정

o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및 운영
- 양양, 남원 생태교육장(생태·문화공원) 시설공사 2년차 사업
· 주요시설 : 생태체험실, 영상정보실, 역사실, 산림이용관, 야외체험장 등
· 사 업 비 : 17,968백만원(국고 8,984, 지방비 8,984)
- 생태교육장 운영(충북 괴산, 경북 상주)
· 권역별 특색 있고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탐방객, 교육생 등의 이용객 이력관리 철저로 운영 활성화 추진

## 2) 남한지역 정맥 실태조사

o 낙남정맥(옥산～김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 백두대간 중심의 보전·관리정책을 정맥까지 확대목적으로 보전·관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 자연환경 및 식생, 식물상, 동물상 조사
· 훼손실태 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모색
· 백두대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조사·분석

o 정맥가이드 라인 마련
- 정맥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여 건전한 국토보전
· 정맥의 마루금 위치 설정 및 거리 구명
· 보호지역 면적에 대한 산지전용기준(안)마련으로 산림훼손 최소화

## 3)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 체계 구축

o 국민과 함께하는 백두대간 대청결 운동 전개

o 백두대간 홍보 안내표지판 일제조사·정비 추진
- 종합안내판, 이정표지판, 위치표지판, 백두대간보호지역 표지판 등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추진, 백두대간 홍보 리플렛 등 제작 배포

o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개발행위 협의 사전검토 강화
- 지자체·지방청 위임사항이라도 허가 승인 전 사전검토 강화로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산림훼손 최소화

o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백두대간 관리센터' 조성추진
- 산림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태백, 김천, 울산지역 설계추진 '13년 신축

o 2012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수립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12년 백두대간보호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보호시행계획 수립
※ 4개 중앙부처, 5개 지방청(17개 국유림관소), 6개도(32개 시·군)

o 2011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1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13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보호·관리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자연생태계조사, 훼손지 복원, 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산림재해 등
· 생태체험, 등산로 정비, 국립공원탐방안내소, 전통문화자원 발굴·보전·복원 등
· 백두대간 보전관리강화, 개발행위 제한 및 관리강화, 사유토지 매수 추진 등
· 국민참여 및 교육·홍보 활성화
· 백두대간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확대

## 라. 추진일정

o '12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수립 : 2012. 1월

o '11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2012. 1～4월

o 백두대간 자원실태변화조사 및 정맥 자원실태조사 : 2012. 1～12월

o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추진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 2012. 1～12월

o 백두대간 보호·관리 세미나 개최 : 2012. 10월

o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완료 및 운영상황 보고 : 2012. 12. 31.

o 백두대간 홍보안내판 설치 등 백두대간 홍보 : 2012. 3～11월

o 백두대간 사랑운동 전개 : 분기별

# 19.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관리체제 강화

목 표

◇ 백두대간 지역의 소득창출을 통해서 지역주민을 보호 주체로 육성

o 32개 시・군 : 5,934백만원[국비 4,154(70%), 지방비 1,780 (30%)]

## 가. 정책여건

o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 인구감소 등으로 침체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된 소득창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o 백두대간은 청정지역으로 부각되어 도시민에 의한 농・임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나. 기본방향

o 지역별 고부가가치 특산임산물을 선정・육성

o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관리체제 개선

o 백두대간지역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

## 다. 세부추진계획

### 1)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지원

o 백두대간보호지역내 32개 시・군(108개 읍・면・동) 주민소득증대 특화사업 지원
-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지역 선정 및 사업추진

o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인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

※ 지원제외대상 : 마을회관・찜질방・휴게소・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트랙터, 지게차 등 고가장비 등 경상적 경비, 종묘비(종자, 접・삽수, 묘목 포함) 표고자목 구입비 등 부대경비, 부지 구입비 등

o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
- 지역(마을)을 상징 또는 대표하거나 백두대간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 등 지자체에서 집중 육성 할 수 있는 소득사업을 발굴 추진

o 백두대간에 포함된 마을의 공동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등 2012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우선순위 준수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된 마을(지역)의 마을공동체(공동사업)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된 마을(지역)의 특산품 생산 작목반
-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토지주
- 백두대간 보호에 거주하는 주민
※ 반드시 사업순위에 따라 사업을 신청대상을 신청하되, 사업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우선지원
※ 사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민원방지를 위한 현장점검표 내용 준수

o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기반정착을 위한 관리체제를 강화하여 도별 사업비 인센티브 부여
- 지원사업의 효과 제고 및 기반정착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 2)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o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 등의 보호를 위하여 벌기령이 지난 산림을 대상로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게 소득감소분 지원
- 산림소유자가 입목을 벌채하여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금 상당액의 1년 이자액을 벌채하기 전까지 매년 지원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2005.9.9)당시 공익용산지, 입목벌채 제한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라. 추진일정

o 백두대간 소득 특화사업 지원
- 시·군별 지원 대상지역 및 지원사업 선정·확정 : 2012. 1~3월
- '11년도 지원사업 평가 : 2012. 2~4월
- 기 지원사업지에 대한 지도·점검 : 2012. 4~11월
-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지자체→산림청) : 2012. 12~2013. 2월

o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 평균입목가액과 예금금리 확정 통보(산림청→지자체) : 2012. 3월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원금 지급(시·군) : 2012. 12월

# 20.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목 표

◇ 정밀예찰체계 강화와 압축·예방사업 확대로 피해 최소화

o 반출금지구역 내 서식처 제거 사업 : 4,890ha

o 확산우려 및 피해반복 지역 예방나무주사 : 3,903ha

o 지상·항공방제 : 26,360ha, 감염목 등 고사목 제거 : 142천본

## 가. 정책여건

o 그동안 특별법 제정 이후, 인력·예산 대폭 확충 및 방제방법 보완 등 총력 대응한 결과, '05년 대비 감염목 99%감소

- 감염목 : ('05) 566 → ('07) 185 → ('10) 16 → ('11 예상) 8천본

o 그러나 예찰·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신규 및 재 발생 위험 상존

- 경북 고령군 신규발생, 대구 달성·경남 의령 재 발생(청정지역 해제)

o 재선충병 예찰·방제체계가 미흡한 일부 시·군·구에서는 발생지역 확대

- 울산 남구, 경남 거제시·창녕군·창원시·김해시 등

## 나. 기본방향

o 고사목 등 감염목을 찾는 주기적 지상·항공예찰 강화(IT병해충관리체계 도입)

- 시·군·구별 월1회 "고사목(감염목) 위치도" 작성(의심목 100% 검경)

o 피해지 외곽에서 중심으로 압축방제를 실행하고 단목·서식처 제거가 완료된 지역에 예방나무주사 확대

- 나무주사 : ('11) 2,330ha, 56억원 → ('12) 3,903ha, 93억원(67% 확대)
-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서식처 제거사업을 통한 감염 우려목 등 사전제거
- 반출금지구역 외곽에는 소나무림재해저감사업 및 숲가꾸기 집중 실시

o 「광역권 재선충병 점검회의」 및 전문가 책임컨설팅 강화

o 시·군·구 공무원, 예찰방제단에 대한 주기적 교육 강화(지역별 순회)

## 다. 세부추진 계획

### 1) 소나무숲 관리를 위해 임업적 방제 확대

o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해 **솎아베기 중심의 임업적 방제** 추진
- 재선충병 피해지에 서식처 제거 사업 적극 추진(4,890ha)
  ※ 서식처 제거사업 실행 전에 반드시 감염목 등은 전량 훈증·파쇄 조치 후 사업 실행

o 반출금지구역 밖은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 및 숲가꾸기 적극 추진
- 하층 피압·고사목 등의 사전제거로 재선충병이 발생되더라도 감염목 색출·관리가 용이하고, 방제비용 절감 차원에서 선제적 방제 추진

o 지자체에 소나무림 관리의 필요성 적극 홍보·교육 강화(산림조합과 역할분담)

### 2) 주기적 지상·항공예찰을 통한 감염목 100% 색출

o 공무원 예찰·방제 책임구역제 실시
- 책임구역별 예찰결과를 매월 담당과장이 확인(기록유지)
- 월별 책임구역별 고사목(감염목)발생 상황도 작성·전략에 활용(1/5,000)
- 월별 시·군별 감염목 발생상황도 작성(1/50,000), 선제적·압축방제에 활용

o GPS를 이용 소나무 고사목 정기 전수조사 실시, IT병해충관리시스템에 등재
- 정기 전수조사 기간 : 1~2월(상반기), 9~10월(하반기)

o 정밀 항공(지상)예찰 정례화 및 주기적 예찰체계 강화
- 피 해 지 : 수시(주1회 이상), 위험·경계 지역(3km) : 월2회 이상
- 예찰계획을 수립하여 헬기 지원 요청(산림청 헬기 적극 지원)

o 재선충병 발생지역에 대한「리·동별 관리체계」 정착
- 감염목을 리·동별로 구분, 임황·지형적 특성에 맞는 방제전략 수립
- 발생지역에 대한 임상, 피해내역, 방제실적 등「이력제」추진
- 매월 "감염목 위치도"를 작성하여 방제전략으로 활용

o 시·도 산림환경연구원(소)의 검경결과를 바탕으로 발생 시·군·구별 예찰결과 적정성 검증(국립산림과학원 주관, 월1회)
- 국립산림과학원 주관으로 집중발생 지역 등 정기 모니터링 실시(월1회)
- 검경결과 및 정기 모니터링을 토대로 예찰활동의 적정성을 검증

### 3) 선제적 · 압축방제로 책임방제 실현

o 시 · 군 · 구별 책임방제 실천전략에 따라 발생·방제 전략도 작성

<선제적 방제전략 개념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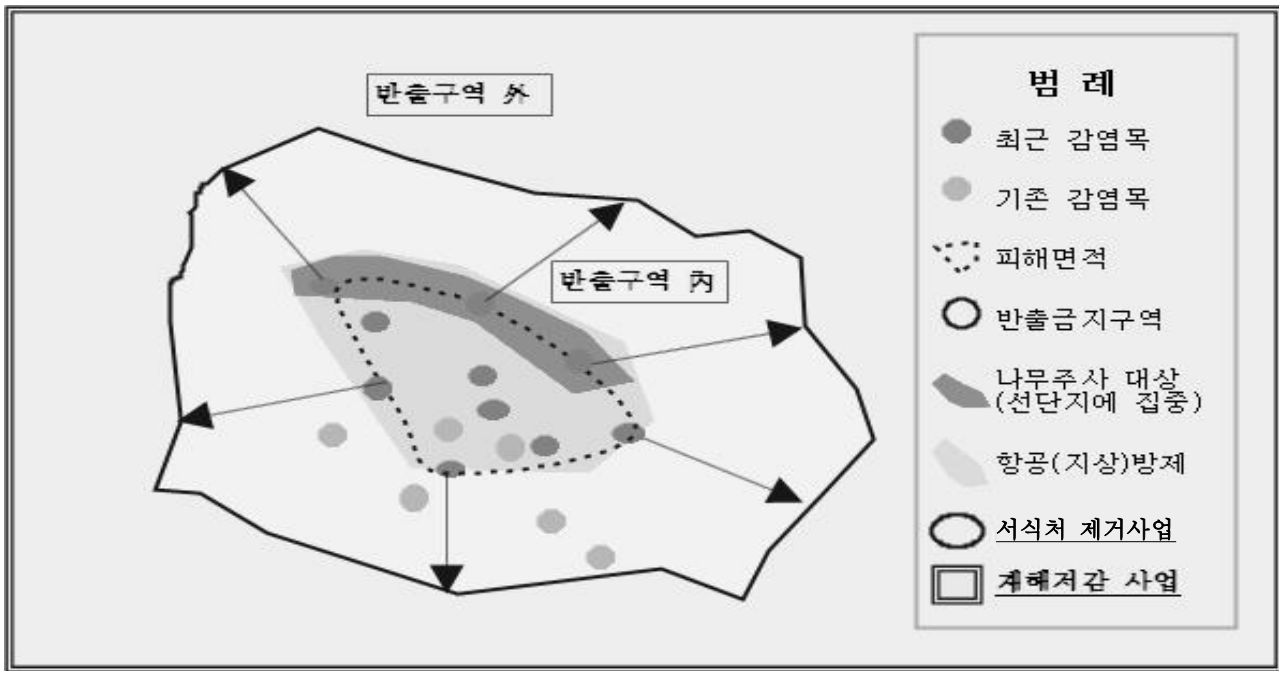


o 선제적 방제를 위한 「서식처 제거사업」 추진

-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림을 강도의 솎아베기 중심의 서식처제거사업 추진(4,890ha)
- 산물은 수집 현장에서 파쇄 · 박피 처리하여 산업용으로 활용

o 임업적 방제 실시 후 예방나무주사 확대 추진

-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확실한 나무주사 확대 실행
- 나무주사 : ('11) 2,330ha, 56억원 → ('12) 3,903ha, 93억원(67% 확대)
- 서식처 제거 사업은 감염목 주변 소규모로 분산 설계(매개충 우화기 이후 실시)
- 전년도 서식처제거사업지 등 임업적 방제를 실시한 지역에 한하여 재선충병 확산우려지, 선단지에 나무주사 집중(2월중)

### 4)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체계 강화

o 「광역권 방제전략 점검회의」 정례화(분기1회)를 통해 전략적 공유 · 연대 강화

- 광 역 권 : 4개(부산, 울산, 경북, 경남 · 전남권)
- 개최주기 : 월 1개 기관씩 순환(울산→경북→경남·전남→부산)
- 운영방법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발표, 참여기관 집중 토론

o 주요내용

- (예찰) 재선충병 감염목 책임구역 예찰결과 및 발생추이 발표
- (방제) 분기별 방제전략 및 추진성과 분석・발표
- (행정) 단속초소 운영, 생산확인증 발급 등 인위적 확산방지 전략

o 전국 재선충병 예찰・방제『책임컨설팅단』운영

- 재선충병 신규발생지 및 피해확산 지역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
- 시・군・구별 책임컨설팅단 운영(11개단, 20명)
  ・산림청, 과학원, 시・도, 산림기술사로 구성
  ・월1회, 2개 시・군 책임방제 모니터링 실시, 개선방안 등 전략 제시

o 시・도(산림환경연구소) 재선충병 예찰・방제 모니터링 강화

- 예찰・방제전략의 공유와 책임방제 추진상황 전략 조언 등
- 시・도 단위 재선충병 책임방제 지원 모니터링반 운용(월 1회 활동)
  ・시・도 자체에서 재선충병 예찰방제 전문가를 별도 운영

## 라. 추진일정

o 2011년 청정지역 지정선포 : 2012. 1월

o 서식처 제거사업 실시설계 추진 : 1월말까지(기본설계 전년도 9월 완료)

o 광역권 재선충병 방제대책 점검회의 개최 : 2012. 1～12월

o 서식처 제거사업 실시설계 등 계약 추진 : 2012. 1월

o 나무주사 실행(발대식) : 2012. 2월, 12월

o 비가시권 재선충병 지상・항공정밀예찰(전국 단위) : 2012. 3월, 6월, 9월, 12월

o 재선충병 감염목, 고사목 제거(춘기) : 2012. 4. 30일까지

o 서식처 제거 춘기 사업 완료 : 2012. 5월말까지

o 예비 청정지역 신청 및 지정 : 2012. 6월

o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 : 2012. 5～8월

o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기간 설정 운영 : 2012. 5～8월

o 하반기 서식처제거 사업 등 임업적 방제 추진 : 2012. 9～11월

o 2012년 청정지역 대상지 심사 : 2012. 12월

# 21.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안정화

목 표

◇ 임업적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근원적 방제를 강화하고 '05년 이전 발생수준(1만ha)으로 피해 안정화 주력

o 사업량 : 임업적방제(재해저감)·나무주사 5,123ha, 해송림 종합방제 11개소

※ 대면적에 약제를 살포하는 항공방제 중단('11년 5,300ha)

o 사업비 : 10,206백만원(국비 5,682, 지방비 4,524)

## 가. 정책여건

o 솔껍질깍지벌레는 지구온난화 영향 등으로 동·서해안을 따라 북상

- 남방계 해충인 솔껍질깍지벌레는 기후변화로 인해 분포지역 확산

o '07년까지 확산되었으나, '08년부터 적극적인 방제로 연평균 28%가 감소

- 발생 추이(ha) : ('07)47,207→('08)41,210→('09)32,497→('10)21,855→('11)12,524

※ '11년 발생면적은 '07년 대비 72% 감소

o 농·어촌 생활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안가 우량 해송림이 관리 소홀, 인위적 피해 등 복합적 원인으로 쇠퇴·고사되는 실정

- 해안방재림 1,229개소(1,479ha), 개장 해수욕장 주변 해송림 351개소

## 나. 기본 방향

o 지역별 방제 5개년 계획('08~'12)에 따라 '05년 이전 피해수준(1만ha)으로 피해 안정화(밀도조절)에 주력

o 주요지역은 "간벌 후 입목기준본수"를 감안한 임업적 방제 실시 후 나무주사 실시

o 서·동해안 선단지에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예찰활동 및 임업적 방제를 집중하고 생물적 방제 도입을 위한 연구 강화

o 해안가 우량 해송림 보전을 위한 종합방제 확대 추진

o 피해 병징이 뚜렷한 5월중 전국 실태조사 및 리·동별 특별관리체계 구축

## 다. 세부추진 계획

### 1) 강도의 솎아베기 중심의 임업적 방제(재해저감사업)을 통해 해송림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

o 발생 선단지, 국립공원 등 주요지역부터 임업적방제(강도의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깍지벌레의 밀도저하 및 서식처를 사전에 제거
- 소나무(해송)림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와 깍지벌레 북상(확산) 차단
- 국립공원 지역은 지역공원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 추진(공문으로 협의)

o 재해저감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산업용재로 공급하고 산주에게는 산물수집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전액 지급
- 대상지선정 등 실행방법은 "소나무림재해저감사업 매뉴얼"에 따름

### 2) 나무주사는 사전에 임업적 방제를 한 후 실행, 방제시기 확대 등으로 방제효과 및 효율성 제고

o 사전에 임업적 방제(재해저감사업 등)를 실행하여 적정 본수를 남긴 후에 나무주사 실행
- "간벌 후 입목기준본수" 이상 나무주사 금지

o "나무주사"는 주요지역 등 우량 소나무림에 적기방제를 통해 방제효과 제고
- 실행시기 확대 : 11월~12월(후약충기), 6월~7월(정착약충기)

### 3) "해안가 우량 해송림 종합방제" 사업 확대 추진

o 농·어촌 생활권 경관보전, 재해방지 등에 핵심 지역인 해안가 우량 해송림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 확대 추진('11년 5개소→'12년 11개소)
-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 대상지 선정·기본설계 완료 개소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사업 반영
- 주민설명회 등을 사전에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사업에 반영하고, 국립공원 지역(변산, 한려해상 등)은 공원관리청과 사전 협의 후 실행
- 토양개량, 가지치기, 솎아베기, 나무주사, 인위적 피해 방지, 비료주기 등 현지 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방제 추진(실시설계 반영)

o 2013년 우량소나무림 종합방제 대상지역은 사전 심의하여 대상지 확정
- 시・도, 지방청에서 2013년 대상지를 기본설계 후, 산림청에 신청(9월말)
- 현장 확인 등 사전심의를 통하여 대상지 확정(10월까지)

### 4) 항공방제는 중단하고 생물적 방제 활용 연구 강화

o 대면적에 일괄적으로 약제를 살포하는 항공방제 중단
- '08년) 3천ha → '09년) 4천ha → '10년) 7천ha → '11년) 5천ha → '12년) 0

o 솔껍질깍지벌레 페르몬 현장적용 기술개발 연구 추진
- 피해 선단지에 대한 예찰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능성 검정

### 5) 리・동별(권역별) 발생 및 방제계획 등 특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피해 유형별 맞춤형 방제 전략 마련

o 2011년 5월 조사・작성한 리・동별 발생조서에 2012년 임업적 방제, 나무주사 등 방제실적 이력관리 지속 추진
- 2012년 솔껍질깍지벌레 리・동별(권역별) 방제계획 수립
- 리・동별(권역별) 깍지벌레 발생・방제・효과 모니터링 체계구축

o 임분 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특성, 피해유형 등에 따른 방제전략 마련
- 피해선단형, 피해초기형, 피해극심형, 피해회복형 등으로 구분·방제

## 라. 추진 일정

o 시・구・군의 리・동별(권역별) 방제계획 수립 : 2012. 1월

o 소나무림재해저감 대상지선정・실시설계・계약 추진 : 2012. 2월

o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추진 : 연중(6~11월 집중)

o 2012 솔껍질깍지벌레 발생 실태조사 : 2012. 5월

o 2013 해안가 종합방제 대상지 선정 및 기본설계 추진 : 2012. 8~9월

o 나무주사 대상지 사전 임업적 방제 실행 : 2012. 9~11월

o 나무주사 실행 : 2012. 6~7월, 11~12월

# 22. 솔잎혹파리방제 내실화

목 표

◇ 강도의 솎아베기 중심의 임업적방제를 중점 실시하여 솔잎혹파리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제

o 사업량 : 13,187ha(사유림 10,687, 국유림 2,500)

o 사업비 : 16,082백만원(국비 10,628, 지방비 5,454)

## 가. 정책여건

o 임업적방제의 지속추진으로 적정밀도 유지 및 건강성 확보로 발생 감소추세, 앞으로 '04년 수준(73천ha)까지 감소되도록 적극적인 방제활동 강화

- 발생면적(천ha) : ('04)73 →('06)196 →('08)183 →('10) 113 →('11) 82

## 나. 추진방향

o 솔잎혹파리 발생지역 특별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방제 실시

o 강도의 솎아베기 중심의 재해저감사업 지속추진

o 지역별 우화상황 조사를 기초로 나무주사 실행

## 다. 세부추진계획

### 1) 솔잎혹파리 발생지역 특별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방제 실시

o 발생지역 특별관리를 위해 리·동별 추진계획(목록)을 작성하여 발생상황, 발생임지의 평균경급, ha당 본수 등에 대한 세부이력을 종합관리

- 신규발생 및 확산지는 목록에 추가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 피해지에 대하여는 방제효과 모니터링 실시

o 시·도 차원에서 리·동별 발생면적이 100ha이상 되는 지역은 반드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예찰 및 책임방제 실시

### 2) 강도의 솎아베기 중심의 재해저감사업 추진

o 2011년 솔잎혹파리 발생지역에 대해 강도의 솎아베기 실시
- “재해저감 사업 솎아베기” 이상 소나무는 제거원칙
- 강도의 솎아베기를 실시하고, 형식적인 고사목・피해목・피압목・생장불량목・형질불량목・소경목의 일부만 제거하는 것은 지양

o 나무좀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하여 방제한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

### 3) 적정밀도로 유지된 임지에 한하여 나무주사 실행

o 지역별 우화상을 설치하여 우화최성기에 나무주사 실시
- 우화최성기는 평균 5월 하순~6월 하순이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우화 최초일이 가장 중요(대체로 우화 최초일로부터 2주 후가 최적기)

o 반드시 임업적방제(솎아베기, 숲가꾸기 등) 실행으로 적정밀도가 유지된 임지에 한하여 나무주사 실행

o 적기방제를 위한 사전 준비 철저
- 예정지조사, 사업설계, 방제인력 수급계획, 방제장비 점검 등

## 라. 추진일정

o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세부지침’ 시달 : 2011. 12월

o 방제용 농약 조달을 위한 단가계약 체결 요청 : 2011. 12월

o 솔잎혹파리 담당공무원 실무교육 : 2012. 2월

o 밀도유지를 위한 재해저감사업 실행 : 2012. 1~12월

o 2012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실행 : 2012. 6~7월

o 솔잎혹파리 발생 및 효과조사 : 2012. 8~9월

# 23. 참나무시들음병 총력대응

목 표

◇ 전국적으로 확산된 참나무시들음병의 발생지역별 복합 방제 추진 및 숲 구조 개선으로 확산 방지

o 사업량 : 624,800본(끈끈이 167,700, 피해목제거 132,020, 모두베기 325,080)

o 사업비 : 8,672백만원(국비 5,002, 지방비 3,670)

## 가. 정책여건

o 2008년을 정점으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가 감소하다 2011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피해가 증가하여 적극적인 방제 노력이 필요함

- 발생지(시・군・구) : ('08) 72개 → ('09) 72개 → ('10) 70개 → ('11) 82개
- 피해목(천본) : ('08) 298 → ('09) 221 → ('10) 181 → ('11) 331(83%↑)

## 나. 기본방향

o 방제성과 제고를 위한 리· 동 단위 특별관리 체계 정착

o 매개충의 생활사 및 현지여건이 반영된 맞춤형 방제 방법 적용

o 중점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전문가 컨설팅제도 도입

o 참나무시들음병에 취약한 숲 구조 개선

## 다. 세부추진계획

### 1) 특별관리체계 정착

o 병해충 발생에서 계획수립, 방제 완료,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세부이력 종합관리

o 확산된 서울, 경기, 충북 지역은 담당자를 지정 책임방제 실시

### 2) 매개충의 생활사에 따른 맞춤형 방제 실시

o 매개충 잠복시기(11월 ~ 이듬해 4월)
- 근원적 방제를 위한 소구역모두베기를 원칙으로 하고, 반출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사목은 벌채 처리

o 매개충 우화시기(5월 ~ 10월)
- 매개충의 밀도를 낮추기 위한 끈끈이롤트랩, 고사목 벌채·훈증, 유인목 설치, 전기충격법 등 친환경 방제 방법으로 추진

### 3) 참나무시들음병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전문가 컨설팅제도 실행

o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방제 추진, 컨설팅 실행
- 중점관리지역 : 사적지, 명승지, 관광지, 주택 연접지, 등산로, 탐방로, 산책로 등 경관 보존지역

o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및 특임관 제도 도입
- 특임관을 지정하고 수도권에 배치하여 방제 지도
-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집중 방제시기에 현장에 부합한 컨설팅 실시

### 4) 참나무시들음병에 취약한 숲 구조 개선

o 신갈나무는 맹아갱신에 의한 2차림이고 벌기령을 초과한 노령목으로 쇠퇴하여 수명을 다하였으므로 소구역모두베기 등으로 갱신 유도
- 모두베기 확대 : ('11) 524 ha → ('12) 756 ha

o 참나무시들음병 종합방제 방안 토론회 개최
- 연구 기관, 학계,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실시

## 라. 추진일정

o 2012년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세부지침 시달 : 2011. 12월

o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담당자 실무교육 : 2012. 2월

o 2012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복합방제 추진 : 2012. 1~12월

o 수도권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대책회의 : 2012. 4월, 8월, 10월

o 2012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조사 : 2012. 7~9월

o 2011년도 벌채·훈증목 처리상황 조사 : 2012. 5월, 10월

# 24. 돌발·외래·일반 병해충 적기대응

목 표

◇ 돌발·외래병해충 등 일반병해충에 대한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조기발견·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o 사업량 : 33,575ha(사유림 33,157, 국유림 418ha)

o 사업비 : 6,278백만원(국비 3,319, 지방비 2,959)

## 가. 정책여건

o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새로운 산림병해충의 대 발생이 우려되고, 기존의 일반 산림병해충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활엽수림을 중심으로 도토리나방, 남포잎벌 등 돌발해충 출현

## 나. 추진방향

o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조기발견·적기방제 체계 정착

o 돌발 병해충은 발생 즉시 전면적 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o 지역별 방제여건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o 부처간 관련 병해충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대처

## 다. 세부추진계획

### 1) 돌발·외래·일반병해충의 적기방제

o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 돌발해충의 예찰조사 철저

o 미국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등 경관을 저해하는 해충은 정확한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발생초기 적극 방제하여 피해 최소화

o 돌발·외래·일반병해충에 대하여는 발생즉시 발생 전면적 방제 실시

### 2) 꽃매미

o 근원적 방제가 가능한 동절기 기주나무의 알 덩어리 제거작업 집중실시
  - 농작물 재배지역 및 주변 산림 등에 지역공동방제 추진

o 약충 시기에 방제효과가 높은 나무주사 및 지상방제 실시

o 성충 시기에 공원, 가로수, 주택 주변 등 생활권지역의 산림에 집중방제

o 발생지역별(리・동별)로 반드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예찰 및 책임방제

### 3) 항공방제 축소

o 밤나무해충은 생물적 방제, 자력방제를 확대하고 최소화
  - 복숭아명나방이 종실을 가해하는 시기에 1회 항공방제 지원(8월)
  - 지상방제 또는 친환경방제(천적살포, 유아등, 유살등 등)로 전환 유도

o 잣나무넓적잎벌 등 돌발해충은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한 후 최소화 실행
  - 대상지를 실사하여 매년반복방제, 지상방제여건, 피해도 등을 종합판단

### 4) 항구주변 아시아매미나방(AGM)의 집중 방제

o '09 한미 공동예찰트랩조사 항구 및 주변산림에 대한 예찰조사 철저
  - 부산, 인천, 울산, 평택, 동해, 옥계, 군산, 목포, 광양, 여수, 포항(11개항)

o 항구주변 녹지 및 산림은 일반병해충 방제와 병행하여 예찰・방제실시
  - 유충발생기(5월~6월)에 항만주변 녹지 및 산림에 지상방제

## 라. 추진일정

o '산림병해충방제 세부지침' 시달 : 2011. 12월

o 꽃매미 발생억제를 위한 알집 제거작업 실시 : 2011. 12~2012. 4월

o 아시아매미나방(AGM) 유충발생기 집중관리 : 2012. 5~6월

o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 2012. 6~8월

o '13년 산림병해충 방제 약종선정 회의 개최 : 2012. 11월

# 25. 생활권 수목진료시책 추진

목 표

◇ 생활권 산림병해충 관리 강화 및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
- o 공립나무병원(수목진단센터) 운영 : 13개소, 700백만원
- o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 3,708건, 742백만원

## 가. 정책여건

- o 도시 생활권에서는 비전문가가 수목방제를 하거나 고독성농약을 사용하는 등 농약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음
- o 수목진료 업무범위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급성장이 예상되나, 대학내 전공자나 전문연구기관 부족으로 전문인력 확보 곤란

## 나. 기본방향

- o 민간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진료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 o 지역별 특성화된 수목진료 전문조직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 o 수목진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산·학·관·연 협의체 구축

## 다. 세부추진계획

### 1)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제도 운영

- o 운영목적
  - 민간(나무병원) 수목진료 전문가를 활용, 대국민 수목진단 서비스 제공 및 농약 오남용의 문제점과 전문적인 수목진료 필요성 홍보
- o 컨설팅 대상
  - 아파트 녹지, 학교숲, 도시숲, 도시공원, 사회·복지·청소년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생활권 녹지
- o 운영체계
  - 컨설팅 대상 선정, 나무병원 등 민간업체와 위탁계약 체결(시·군·구)
    - ·나무병원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수목보호기술자를 보유한 산림조합, 대학, 연구기관 등과 체결(컨설팅 대가 지급기준 : 건당 200천원)

- 민간컨설팅 모니터링 및 분석(국립산림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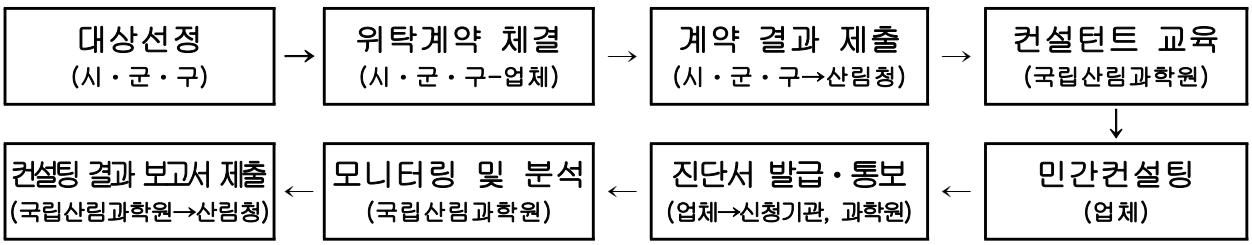


## 2) 공립나무병원(수목진단센터) 운영

o 운영목적

- 지역별 특성화된 수목진료 전문조직 육성 및 전문인력 확충
-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보급 등 수목진료체계의 정부 역할 강화

o 사업계획

- 사업량 : 13개소
  - ・국립산림과학원 나무병원, 3개 대학 수목진단센터, 9개 도 공립나무병원
- 사업비 : 700백만원(국고 400, 지방비 300)
  - ・개소당 50백만원(국고 25, 지방비 25), 국립산림과학원은 100백만원 지원

o 업무내용

- 시범사업, 실태조사 등 실연연구사업을 1과제 이상 수행
- 민원발생 병해충 진단 및 분석, 방제관계자・수목관리자 교육
- 수목진료 관련 팜플렛, 리플렛,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수목진료체계 구축 및 수목진료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o 역할분담

| 구 분 | 연구실연과제 | 주된 역할 | 세부 업무 |
|---|---|---|---|
| 국립산림과학원 나무병원 | 방제농약 직권등록 | 생활권 민간컨설팅 모니터링 등 수목진료 발전협의회 운영 총괄 | ◦ 생활권 병해충 컨설팅 모니터링, 컨설턴트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br>◦ 공립나무병원 운영 총괄, 보고서 작성<br>◦ 산림병해충 기술교본 및 수목병해충도감 발간 |
| 수목진단센터 | 실태조사 등 기초과제 수행 | 방제관계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 학술회의, 강연회, 강습회 등 개최<br>◦ 수목진료 관련 홍보물 개발 |
| 공립나무병원 | 시범사업 등 현안과제 수행 | 민원발생 병해충 조사・분석 공공부분 수목진료 및 홍보 | ◦ 민원발생 병해충 조사・진단<br>◦ 수목진료 관련 홍보물 보급 |
| 나무병원법인 | - | 민간부분 수목진료 및 홍보 (생활권 민간컨설팅) | ◦ 아파트 녹지, 학교 숲 등을 대상으로 수목진단서비스 제공<br>◦ 전문적 수목진료 필요성 등 홍보 |

### 3)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o 산림인력개발원에 개설된 수목보호기술 전문가과정 확대・운영
  - ('11까지) 4회, 120명 → ('12부터) 5회, 150명

o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대학 등을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운영 검토('13년 이후)

### 4) 제도개선 및 산학관연 협의체 구축

o 생활권에서의 올바른 농약선택 및 사용법 등 수목방제기준 제정('12.1.15 시행 예정)

o 업계, 학계, 지자체, 산림청, 연구기관, 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목진료 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해 발전방안 마련

o 수목진료시책 사업의 내용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 추진
  - 발전협의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종합검토, 하위법령 완비 후 추진

## 라. 추진일정

o 생활권 수목방제기준 제정・시행 : 2012. 1. 15일까지(산림청)

o 산림병해충 기술교본 발간 : 2012. 1월말까지(국립산림과학원)

o 민간컨설팅 신청서 접수 및 대상선정 : 2012. 1월말까지(시・군・구)

o 민간컨설팅 위탁용역 계약체결 및 계약결과 제출 : 2012. 2월말까지(시・군・구)

o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2012. 1～10월(산림청)

o 수목진료 발전 및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 2012. 1～10월(산림청)

o 수목진료 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 매분기(산림청)

o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분석결과 보고서 제출 : 2012. 11월말까지(국립산림과학원)

o 공립나무병원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 2012. 11월말까지(국립산림과학원)

o 수목병해충 도감 발간 : 2012. 12월말까지(국립산림과학원)

# 26.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목 표

◇ 백두대간 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산림생물자원화로 지역 및 국토의 균형성장 도모

◇ 영구산림종자저장시설 등 차별성 있는 아시아 최고의 고산 수목원 조성

## 가. 정책여건

o 「생물다양성협약(CBD)」 체결이후 식물자원의 이용가치 증대로 국가간 식물자원 확보경쟁 및 국제협약 이행 노력 강화

o 지구온난화·사막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고산 및 한계성 자생식물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수목원 확충의 필요성 대두

※ 정부의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08.9월)

## 나. 기본방향

o 조성공사·식물식재·토지보상 등의 차질없는 추진

o 수목원 연계 산림사업 및 개원 후 운영프로그램 개발

o 조성사업 단계별 인력 확충 추진

## 다. 세부추진계획

### 1) 사업개요

o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옥석산·문수산 일원)

o 면적 : 5,179ha(중점시설지구 206ha)

o 총사업비 및 2012년 예산 : 2,515억원, 505억원

- ('09~'10) 293억원→('11) 540억원→('12) 505억원→('13) 792억원→('14) 385억원

o 사업기간 : 2009~2014(6년간)

o 주요시설 : 영구종자저장시설 등 연구시설, 테마별 전시원 등 전시공간

o 연차별 추진계획

| '09~'11 | '12~'13 | '14 |
|---|---|---|
| 《계획・설계단계》 | 《보상・시설공사 단계》 | 《운영준비・개원 단계》 |
| ◦ 예비타당성 조사<br>◦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br>◦ 기본 및 실시설계<br>◦ 환경영향 평가 및 문화재시굴조사<br>◦ 토지보상<br>◦ 식물 수급계획 수립<br>◦ 인허가 및 건축 협의 등<br>◦ 조성공사 계약<br>◦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 사업단 신설('11.1) | ◦ **복합 시설공사 시행**<br>- 건축,토목,전기,기계,조경, 전시원, 특수시설(Seed Vault, 고산식물원 등)<br>◦ **전시식물 및 자료 본격 수집**<br>- 식물조사 및 자료 수집<br>- 국내외 식물 확보・식재<br>◦ 토지보상 후속조치 및 대응<br>◦ 수목원 연계 산림사업 추진<br>◦ 수목원 운영프로그램 개발 | ◦ 시설공사 및 공사감리 마무리<br>- 시설・연구 기자재 설치 및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br>◦ 전시식물 및 자료 관리<br>◦ 연구시설, 기자재 등 설치<br>◦ 연구・전시 및 교육・홍보<br>-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br>◦ 운영프로그램 개발・운영<br>◦ 조직・인력·규정 등 운영체계 완비 |

## 2)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공사(4년차)를 차질 없이 추진

o 추진방향 : 청렴하고 투명한 공사감독・관리 및 품질 제고

o 추진일정 : ('11년말) 공사계약 → ('12.4월) 착공식 → ('12.4~'14.6) 시공

o 추진내용

- 건축・토목・전시원 등 조성공사 추진('12: 505억원)
- 토지・영농보상은 상반기까지 완료, 지하수영향조사는 공기별 일정에 따라 완료
- 행정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과 상시 교류협력 구축・운영

## 3) 연계 산림사업 추진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o 추진방향 : 지방청・지자체 등의 협조를 통한 산림사업 추진 및 개원에 대비한 연구시설・전시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

o 연계 산림사업

- 사방사업 :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1km
- 숲가꾸기 및 진입로 가로수 조성 : 중점시설지구 내 206ha
- 생태탐방지구 내 기후변화관측소 설치, 휴게시설 및 bio-top 등 조성

o 운영 프로그램 개발

- Seed Vault, 연구・교육・방문시설, 전시원, 동물원 등 분야별 운영・사후관리 시스템 및 연계 프로그램 등 개발 추진

※ 국립수목원 동아시아 거점 Seed Vault 기반 구축 연구 신규수행(8억원)

※ 동아시아 야생식물 종자 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 표준 매뉴얼 작성

※ 야생동물서식지 관리방안 추진과 연계 호랑이 종 보전 관련 심포지엄 개최

- 개원 시까지 국립수목원·외부전문가 등으로 T/F 재구성·운영
- 수목원 CI 개발 추진
  ·국립수목원·외부전문가 T/F 활용, 개발 용역 추진 검토

### 4) 전시식물 및 유용식물 등 확보

o 추진방향
- 멸종위기식물, 희귀수종 등 주제원 식재 식물과 전시물 확보
- 원산지 정보 및 이력정보가 있는 식물종 위주로 선정
- 자생지 식물 도입시 현지조사표, 야생종 설명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 도입식물 자원의 조사·수집·보존 및 현지외 적응 추진

o 확보예산 : 총 47억원('11~'12 : 19억원)

o 추진내용
- 국·내외 수집대상 식물 중 유용식물·희귀 식물자원 우선 확보
- 일반 조경공사 부분과 분리하여 각 전시원별 조성방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수수종 우선선정 방식으로 추진
- 국외 특수식물확보를 위해 국립수목원 MOU 기관 활용을 통한 협력
- 식물재배지 확보를 통한 증식 및 식재기반 조성
  ·춘양양묘장 포지 증식·조성예정지 내 증식온실(500평)
- 원산지 및 이력(Passport Data)관리 강화
  ·국가식물종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도입식물 이력관리
  ※ 설계 반영 식물 : 2천여종 108만점
  ※ 자체 식물 확보 : ('14까지)1천여종 20만점 확보 추진

### 5)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따른 단계별 인력 확충 추진

o 추진방향 : 현장근무 인력 및 수목원 개원 인력 단계별 확충

o 추진내용 : ('11) 4명 → ('12) 4명 추가 확보 → ('13) 18명 증원 추진
※ '14년까지 고위공무원단 포함, 3개과 체제로 확대 추진

## 라. 추진일정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공사 : 연중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공사 착공식 : 2012. 4월

o 단계별 인력 확충 : 2012. 하반기

o 연계 산림사업 추진 : 2012. 4~11월

o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 재구성 및 운영 : 2012. 7~12월

o 백두산호랑이 종 번식 관련 심포지엄 개최 : 2012. 6월

o 수목원 조성 전시물 및 유용식물 확보 : 연중

< 부 록 >

# 201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 이 내용은 2012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정리한 것임.

○ 2011. 12월 현재 관계법령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음.

# 201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br>(시행일)<br>관계 부서 |
|---|---|---|---|
| 1. 한국임업진흥원 설립 | < 신 설 > | o 임업기술 개발 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극대화하고, 임업인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br><br>※ 한국임업진흥원의 주요사업<br>- 목제품품질인증, 임업기술컨설팅, 임업시험, 임업진흥개발, 특별관리임산물사업 등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br>('12.1.26)<br><br>산림청<br>산림정책과<br>(042-481-4037) |
| 2. 경제림조성 통합단비 | o 내역사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단비적용 및 사업량 배정<br>- 내역사업별 ha당 단비<br>* 경제수조림(331만원), 바이오순환림(510만원), 생태조림(108만원), 속성경제수조림(450만원), 대묘조림(720만원) | o 경제림조성은 통합단비를 적용하고 조림목적에 따라 구분실행<br>- ha당 통합단비 : 479만원<br>* 사업비는 설계지침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산출<br>-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수조림 | 산림자원분야사업계획<br>('12.1.1.)<br><br>산림청<br>산림자원과<br>(042-481-4185, 4183) |
| 3. 바이오순환림 | o 바이오순환림의 개념<br>- 간벌재로 목재펠릿 원료를 공급하는 산림<br><br>o 속성수 식재를 통한 조성<br>- 생태조림(맹아갱신)은 포함되지 않음<br>o 바이오순환림의 60% 이상을 백합나무로 조성 | o 바이오순환림 개념의 확대<br>- 펄프재, 표고자목 등 소,중경재를 산업용재로 공급하는 산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br>o 생태조림(맹아갱신) 적용 가능<br>- 단벌기 순환림으로 조성<br><br>o 백합나무 60% 식재비율 삭제<br>- 지역별 적합수종으로 식재 | 산림자원분야사업계획<br>('12.1.1.)<br><br>산림청<br>산림자원과<br>(042-481-4185, 4183) |
| 4. 특용수조림 | o 속성경제수조림에 특용수 포함<br>- 용재수종 70%, 특용수 30% 식재<br>- 용재수종 조림지에 특용수 병행 식재 | o 경제림조성 사업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 자율적으로 실행<br>- 주거지·경작지 주변에 지원<br>- 민간보조로 편성 가능<br>※ 산주 희망수종 직접 식재 | 산림자원분야사업계획<br>('12.1.1.)<br><br>산림청<br>산림자원과<br>(042-481-4185, 4183)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br>(시행일)<br>관계 부서 |
|---|---|---|---|
| 5. 산림재해방지 조림 | o 재해 복구지에 한하여 조림<br>- 산불, 병해충 등 재해피해지의 복구조림 | o 조림 대상지의 확대 적용<br>- 재해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조림도 가능(산사태등)<br>o 조림면적의 확대<br>- ('11) 600ha → ('12) 2,400ha | 산림자원분야사업계획<br>('12.1.1.)<br>산림청<br>산림자원과<br>(042-481-4185, 4183) |
| 6. 조림설계감리 | o 간접노무비 비율 11%<br>- 전문공사로 적용<br>o 동력식혈기 품셈 없음<br>- 인력공정 적용(12인/ha) | o 간접노무비 비율 10.8%<br>- 조경업종으로 분리 적용<br>o 동력식혈기 품셈 신설<br>- 5인1조 기계운용, 10.3인/ha | 조림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br>('12.1.1.)<br>산림청<br>산림자원과<br>(042-481-4185, 4183) |
| 7.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개발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신청 | o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전용협의·허가 | o 민북지역 개발시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안에서 3만㎡이상을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 |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 산지관리특별법<br>('12.4.5)<br>산림청<br>산지관리과<br>(042-481-4141, 4142) |
| 8. 산촌에 대한 조사체계 개편 | o 10년에 한 번씩 전국의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를 산림청장이 실시 | o 10년에 한 번씩 전국의 산촌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기초조사)는 산림청장이 실시<br>o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산촌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2.1.26)<br>산림청<br>산림휴양문화과<br>(042-481-4245) |
| 9.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및 양성기관 지정제도 | < 신 설 > | o 산림이 가진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및 양성기관 지정 제도 시행<br>- 산림치유지도사를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치유의 숲에 1급, 2급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br>- 산림청장은 양성기관 이수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신청에 의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함<br>-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br>('12.1.15)<br>산림청<br>산림휴양문화과<br>(042-481-4124, 8877)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br>(시행일)<br>관계 부서 |
|---|---|---|---|
| 10. 산림교육전문가 자격부여 및 양성기관 지정제도 | < 신 설 > | o 산림청장이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 교부<br>o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양성기관은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운영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12.7.26)<br>산림청<br>산림휴양문화과<br>(042-481-4124, 8877) |
| 11. 유아숲체험원 등록및 산림교육센터 지정제도 | < 신 설 > | o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고자 하는자는 시설·운영 인력을 갖추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b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경우 : 산림청장에게 등록<br>- 개인·법인이 조성하는 경우 : 시·도지사에게 등록<br>o 산림청장은 국민에게 산림교육을 하기 위해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12.7.26)<br>산림청<br>산림휴양문화과<br>(042-481-4124, 8877) |
| 12.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인터넷 예약제 개선 | o 자연휴양림 객실과 야영장의 예약방식 이원화<br>- 예약시작일<br>· 객실 : 매월 1일(충청·전라·경상도지역 소재 국유휴양림) 09시부터<br>매월 3일(경기·강원도지역 소재 국유휴양림) 09시부터<br>· 야영장 : 사용일 기준 30일 전 09시부터<br>- 예약 대상기간<br>· 객실 : 다음달 1개월<br>· 야영장 : 사용일 기준 30일 | o 자연휴양림 객실과 야영장의 예약방식 일원화<br>-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과 야영장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09시부터 6주간의 기간에 대해 예약이 가능하도록 함<br>※ 매주 화요일은 휴무<br>예시)<br>- '12.1.4~9일까지 1.4~2.13일까지 분에 대해 신청<br>- '12.1.11~16일까지 1.11~2.20일까지 분에 대해 신청 | 2012. 상반기<br>국립<br>자연휴양림관리소<br>(042-580-5571, 5572) |
| 13. 산림사업 추진시 특별산림보호대상종과 그 자생지 피해방지 의무화 | <신 설> | o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시행 전 특별산림보호대상종과 그 자생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 | 산림보호법<br>제18조의2<br>('12.1.15)<br>산림청<br>산림환경보호과<br>(042-481-4241)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br>(시행일)<br>관계 부서 |
|---|---|---|---|
| 14.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 o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지방산림청장임 | o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지방산림청장 외 국립수목원장, 산림인력개발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추가 지정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2.1.15.)<br>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6, 4247) |
| 15.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및 과태료부과 | <신 설> | o 현재 국·공립수목원 안에서 수목자원과 수목원 시설 등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적절한 제재조치 마련<br>-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하는 행위<br>- 인증을 받지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행위<br>-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12.1.26)<br>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8) |
| 16. 국가사무 중 산림청장의 권한 지방이양 | <시·도지사 위임><br>o 수목원 조성<br>-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제7조)<br>- 등록수목원의 휴원신고(제12조)<br>-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제17조)<br>- 청문(제21조)<br>o 수목원 등록<br>- 등록(제9조)<br>- 등록증 교부(제10조)<br>- 등록의 말소(제13조)<br>- 등록취소(제18조)<br><br><산림청장의 권한><br>o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br>- 인증(제18조의2)<br>- 인증 취소(제18조의3) | <시·도지사 이양><br>o 수목원 조성<br>-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제7조)<br>- 등록수목원의 휴원신고(제12조)<br>-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제17조)<br>- 청문(제21조)<br>o 수목원 등록<br>- 등록(제9조)<br>- 등록증 교부(제10조)<br>- 등록의 말소(제13조)<br>- 등록취소(제18조)<br><br><시·도지사 위임><br>o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br>- 인증(제18조의2)<br>- 인증 취소(제18조의3)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2.1.26)<br>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8)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br>(시행일)<br>관계 부서 |
|---|---|---|---|
| 17. 사방지 지정·해제관련 사무 이양 및 권한 부여 | o 산림청장은 사방지의 지정·고시,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 | o 사방지의 지정·고시,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권한 부여 | 사방사업법 제4조, 제6조, 제20조<br>('12.1.15)<br>산림청<br>치산복원과<br>(042-481-4272) |
| 18. 원인자부담 제도 폐지 | o 원인자부담 제도<br>- 사방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 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 | o 원인자부담 제도 폐지:<br>- '62년도에「사방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복구비 예치로 인하여 실제 부담금이 부과·징수된 사례가 없고 제도운용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아 원인자 부담금 제도에 관한 사무를 폐지 | 사방사업법 제19조<br>('12.1.15)<br>산림청<br>치산복원과<br>(042-481-4272) |
| 19.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진료체계 마련 | o 산림병해충 정의를 "산림에 있는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규정<br>-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범위가 산림지역에 국한 | o 산림병해충 정의를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규정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범위를 아파트 등 생활권 녹지공간으로 까지 확대함 | 산림보호법 제2조<br>('12.1.15)<br>산림청<br>산림병해충과<br>(042-481-4038) |
| 20. 수목진료시책 수립·시행 | <신 설> | o 수목진료시책 수립·시행<br>-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br>- '수목진료'란 기후변화,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피해를 조사·진단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함 | 산림보호법<br>제21조의3<br>('12.1.15)<br>산림청<br>산림병해충과<br>(042-481-4038) |